

PUBLIC DESIGN of GURI-CITY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b>I. 개요</b>	<b>01</b>	<b>V.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b>	<b>241</b>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3	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243
2. 계획의 범위	04	1.1. 개요 및 분석	243
3. 계획의 수립체계	05	1.2. 기본방향	244
4. 계획의 성격 및 위상	06	1.3. 가설울타리	245
		1.4. 가설게이트	247
		1.5. 가설가림막	252
		1.6.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253
<b>II. 조사 및 분석</b>	<b>07</b>	2.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특화가이드라인	256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09	2.1. 개요 및 분석	256
2. 구리시의 이해	11	2.2. 가이드라인 및 통합설계안	258
3. 공공디자인 현황	18		
4. 관련법규	62	<b>VI. 실행계획</b>	<b>265</b>
5. 상위계획 및 선행계획	67	1. 실행계획의 개요	267
6. 유사사례	76	2.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	268
7. 의식조사	81	2.1.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방향	268
8. 종합분석	87	2.2.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	270
		2.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276
<b>III. 공공디자인 기본방향</b>	<b>89</b>	3. 공공디자인 운영체제 개선(안)	278
1. 공공디자인법의 이해	91	3.1.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방안	278
2. 공공디자인 정의 및 영역	92	3.2.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284
3.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95	3.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활용방안	286
		3.4. 공공디자인 교육방안	288
<b>IV.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b>	<b>115</b>	<b>별첨.</b>	<b>289</b>
1. 가이드라인의 개요	117	1. 구리시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91
2. 가로공간	121	2.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자료	304
2.1. 공통사항	121	3. 공공디자인 의식 조사 설문지	308
2.2. 생활가로	127		
2.3. 구조물 연결가로	164		
3. 건축물공간	179		
3.1. 공통사항	179		
3.2. 외관	185		
3.3. 외부공간	193		
3.4. 내부공간	210		
4. 공원·휴양공간	224		
4.1. 공통사항	224		
4.2. 공원	230		
4.3. 녹지	234		
4.4. 광장	237		
4.5. 휴양공간	239		



## **제 출 문**

구리시청 귀하

본 보고서를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제 출 일** 2020.09

(주)인아웃에스씨



## CONTENTS / 표 목차

### I. 개요

〈표 1-01〉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적 범위	04
〈표 1-0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06

### II. 조사 및 분석

〈표 2-01〉 구리시 인구 및 가구 현황	12
〈표 2-02〉 구리시 행정구역별 인구비율	12
〈표 2-03〉 구리시 인구구조 형태	12
〈표 2-04〉 구리시 지목별 토지현황	13
〈표 2-05〉 구리시 토지이용현황	13
〈표 2-06〉 구리시 도시정비현황	13
〈표 2-07〉 구리시 기후 현황	14
〈표 2-08〉 구리시 표고 및 경사 현황표	14
〈표 2-09〉 구리시 수계 현황표	14
〈표 2-10〉 갈매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23
〈표 2-11〉 동구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29
〈표 2-12〉 인창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34
〈표 2-13〉 교문1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40
〈표 2-14〉 교문 2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45
〈표 2-15〉 수택 1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50
〈표 2-16〉 수택 2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54
〈표 2-17〉 수택 3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60
〈표 2-18〉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61
〈표 2-19〉 공공디자인법의 주요 내용	62
〈표 2-20〉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63
〈표 2-21〉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64
〈표 2-22〉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주요 내용	65
〈표 2-23〉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66
〈표 2-24〉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수립 현황	69
〈표 2-25〉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계획표	70
〈표 2-26〉 구리시 경관기본전략	72
〈표 2-27〉 구리시 공공디자인 권역별 기본방향	73
〈표 2-28〉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사업	74
〈표 2-29〉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대상 분석표	75
〈표 2-30〉 구리시 공공디자인 권역별 기본방향	75
〈표 2-31〉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사업	75
〈표 2-32〉 관계부서 인터뷰 결과 종합진단	86

## CONTENTS / 표 목차

### III.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표 3-01〉 공공디자인법의 공공시설물 세부 영역	92
〈표 3-02〉 경기도 공공디자인 세부영역	93
〈표 3-03〉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공공시설물 세부 영역	93
〈표 3-04〉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세부 영역 개정(안)	94
〈표 3-05〉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방향	95
〈표 3-06〉 구리시 공공디자인 계획의 단계별 구상	95
〈표 3-07〉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체계	96

### IV.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표 4-01〉 공공디자인법의 공공시설물 세부 영역	118
〈표 4-02〉 경기도 공공디자인 세부 항목	119
〈표 4-03〉 구리시 공공정보매체 세부 항목	119
〈표 4-04〉 보도 4m이상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27
〈표 4-05〉 가로공간 공공정보매체 서체 적용기준	133
〈표 4-06〉 가로공간 공공정보매체 구조체 및 정보 색채 적용기준	133
〈표 4-07〉 보도 2~4m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35
〈표 4-08〉 보도 2m이하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40
〈표 4-09〉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서체 적용기준	144
〈표 4-10〉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색채 적용기준	144
〈표 4-11〉 보차혼용도로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45
〈표 4-12〉 보행자 보호구역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49
〈표 4-13〉 자전거도로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54
〈표 4-14〉 교차로 및 횡단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58
〈표 4-15〉 보도 4m이상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64
〈표 4-16〉 보도육교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69
〈표 4-17〉 통로박스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74
〈표 4-18〉 공공정보 표기체계 서체 적용기준	182
〈표 4-19〉 구리시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의 디자인 유형	182
〈표 4-20〉 건축물공간 외부 접근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93
〈표 4-21〉 건축물공간 내부 편의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99
〈표 4-22〉 건축물공간 내부 민원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203
〈표 4-23〉 특정 주차구역별 전용색 적용 기준	208
〈표 4-24〉 건축물공간 내부 공용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210
〈표 4-25〉 건축물공간 내부 민원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219
〈표 4-26〉 공원 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230
〈표 4-27〉 녹지의 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234

	〈표 4-28〉 광장의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237
	〈표 4-29〉 휴양공간의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239
<b>V.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b>		
	〈표 5-01〉 분진망의 권장색 범위 및 예시	246
	〈표 5-02〉 가설게이트 출입문 마감권장색 범위 및 예시	248
	〈표 5-03〉 가설게이트 공공정보 표기체계 서체 적용기준	249
	〈표 5-04〉 가설게이트 공공정보 안내사인의 색채 적용기준	249
	〈표 5-05〉 가설가림막의 구성 요소 및 조합 예시	252
	〈표 5-06〉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관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58
<b>VI. 실행계획</b>		
	〈표 6-01〉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방향	267
	〈표 6-02〉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수단	267
	〈표 6-03〉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행 관련 조례 현황	268
	〈표 6-04〉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행 통합조례 개정(안)의 구조	269
	〈표 6-05〉 구리시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278
	〈표 6-06〉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280
	〈표 6-07〉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자문 대상	281
	〈표 6-08〉 사회기반시설부문 경관심의 대상 및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비교	281
	〈표 6-09〉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대상 및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비교	282
	〈표 6-10〉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284
	〈표 6-11〉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전담조직(조직명/인원수)의 현황	285
	〈표 6-12〉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대상	286

## CONTENTS / 그림 목차

### I. 개요

〈그림 1-01〉 구리시 행정구역 및 현황도	04
〈그림 1-02〉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체계	05
〈그림 1-03〉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위상	06

### II. 조사 및 분석

〈그림 2-01〉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및 분석 구조	09
〈그림 2-02〉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및 분석 체계	10
〈그림 2-03〉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항목	10
〈그림 2-04〉 구리시 행정구역 현황	11
〈그림 2-05〉 구리시 표고현황도	14
〈그림 2-06〉 구리시 생태자연도	14
〈그림 2-07〉 구리시 산림경관 현황도	15
〈그림 2-08〉 구리시 수경관 현황도	15
〈그림 2-09〉 구리시 전원경관 현황도	15
〈그림 2-10〉 구리시 시가지경관 현황도	16
〈그림 2-11〉 구리시 도로경관 현황도	16
〈그림 2-12〉 구리시 역사문화경관 현황도	16
〈그림 2-13〉 구리시 시정 및 분야별 목표	17
〈그림 2-14〉 공공디자인 요소의 예시	18
〈그림 2-15〉 갈매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19
〈그림 2-16〉 동구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24
〈그림 2-17〉 인창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30
〈그림 2-18〉 교문 1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35
〈그림 2-19〉 교문 2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41
〈그림 2-20〉 수택 1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46
〈그림 2-21〉 수택 2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51
〈그림 2-22〉 수택 3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55
〈그림 2-23〉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지도	61
〈그림 2-24〉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67
〈그림 2-2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67
〈그림 2-26〉 경기도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68
〈그림 2-27〉 경기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68
〈그림 2-28〉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도	70
〈그림 2-29〉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전략 체계	70
〈그림 2-30〉 구리시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70
〈그림 2-31〉 구리시 경관기본구상도	71
〈그림 2-32〉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및 로드맵	72

〈그림 2-33〉 구리시 경관기본구상도	72
〈그림 2-34〉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및 로드맵	73
〈그림 2-35〉 구리시 공공디자인 권역	73
〈그림 2-36〉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구역	76
〈그림 2-37〉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76
〈그림 2-38〉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현황	76
〈그림 2-39〉 하남시 행정구역	77
〈그림 2-40〉 하남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전략	77
〈그림 2-41〉 하남시 공공디자인 전략사업대상지 및 시범사업예시안	77
〈그림 2-42〉 리용시 행정구역	78
〈그림 2-43〉 리용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78
〈그림 2-44〉 리용시 경관조명 및 빛 축제 이미지	78
〈그림 2-45〉 코펜하겐시 행정구역	79
〈그림 2-46〉 코펜하겐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79
〈그림 2-47〉 코펜하겐시의 자전거 관련시설 이미지	79
〈그림 2-48〉 가나자와시 행정구역	80
〈그림 2-49〉 가나자와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80
〈그림 2-50〉 가나자와시 공공디자인 이미지	80
〈그림 2-51〉 구리시 의식조사의 내용	81
〈그림 2-52〉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종합분석 및 방향성	87
<b>III 공공디자인 기본방향</b>	
〈그림 3-0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위상	95
〈그림 3-02〉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	97
〈그림 3-03〉 구리시 공공디자인 목표	98
〈그림 3-04〉 구리시 공공디자인 실행목표	98
〈그림 3-05〉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99
〈그림 3-06〉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1	100
〈그림 3-07〉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2	101
〈그림 3-08〉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3	102
〈그림 3-09〉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4	103
〈그림 3-10〉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104
〈그림 3-11〉 구리시를 대표하는 상징요소	105
〈그림 3-12〉 단계별 야간조명연출계획 및 빛을 이용한 도시 사례	105
〈그림 3-13〉 구리시 내 주요 공공건축물의 현황	106
〈그림 3-14〉 공공건축물의 G마크 적용 예시	106
〈그림 3-15〉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	107

## CONTENTS / 그림 목차

〈그림 3-16〉 실물로 보는 가이드라인의 활용 예시	107
〈그림 3-17〉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의 현황	108
〈그림 3-18〉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전담조직(조직명) 현황	108
〈그림 3-19〉 주요 선행계획 및 상위계획	109
〈그림 3-20〉 가로공간 공통사항 가이드라인의 예시	109
〈그림 3-21〉 구리시 내 보도의 현황	110
〈그림 3-22〉 보도 유효 폭 확장을 위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110
〈그림 3-23〉 구리시 내 자전거 거처 현황	111
〈그림 3-24〉 상업지역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예시	111
〈그림 3-25〉 구리시 내 공공정보의 현황	112
〈그림 3-26〉 공공정보매체 및 공공정보의 디자인 개선방안	112
〈그림 3-27〉 구리시 공공디자인 의식조사의 주요결과	113
〈그림 3-28〉 픽토그램을 활용한 공원시설의 디자인 예시	113

### IV.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림 4-01〉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조	117
〈그림 4-02〉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120
〈그림 4-03〉 가로공간의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121
〈그림 4-04〉 장애물존의 단면 구조	122
〈그림 4-05〉 장애물존의 유형 및 예시도	122
〈그림 4-06〉 비상용 장애물존의 개념 및 설치기준	122
〈그림 4-07〉 보도 포장의 예시	123
〈그림 4-08〉 보행유도블럭의 설치 예시	123
〈그림 4-09〉 기능별 포장재의 예시	123
〈그림 4-1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및 하천변 자전거전용도로의 예시	124
〈그림 4-11〉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설치 예시	124
〈그림 4-12〉 자전거도로 상충구간 적용 사례 및 표준색 기준	124
〈그림 4-1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의 예시	125
〈그림 4-14〉 통합지주의 디자인 예시 및 설치 사례	125
〈그림 4-15〉 공공시설물 권장 색 범위 및 예시	125
〈그림 4-16〉 횡단보도 경계부 점자블럭 및 블라드 설치 기준	126
〈그림 4-17〉 차량진출입부 설치 기준	126
〈그림 4-18〉 구리시 내 보도 4m이상의 공공디자인 현황	127
〈그림 4-19〉 보도 4m 이상 단면구조의 예시	130
〈그림 4-20〉 버스/택시정류장의 공간 유형	130
〈그림 4-21〉 보도 4m 이상 버스/택시정류장의 가로수 식재 및 공공시설물 설치 지양구간	130

〈그림 4-22〉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설치 예시	131
〈그림 4-23〉 버스정류장 점자블럭 설치기준	131
〈그림 4-24〉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점자블럭 설치기준	131
〈그림 4-25〉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간 설치 예시	132
〈그림 4-26〉 버스승차대 디자인 가이드라인	132
〈그림 4-27〉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안	132
〈그림 4-28〉 자전거보관대 설치 예시	133
〈그림 4-29〉 현수막계시대 상부 안내 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134
〈그림 4-30〉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간 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적용 예시	134
〈그림 4-31〉 구리시 내 보도 2~4m의 공공디자인 현황	135
〈그림 4-32〉 2~4m 보도 단면구조 예시	138
〈그림 4-33〉 2~4m 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단면구조 예시	138
〈그림 4-34〉 대형 공공시설물의 설치 사례	138
〈그림 4-35〉 버스/택시정류장의 공간유형	138
〈그림 4-36〉 버스/택시정류장의 가로수 식재 및 공공시설물 설치 지양구간	139
〈그림 4-37〉 버스정류장 점자블럭 설치기준	139
〈그림 4-38〉 보도 폭에 따른 버스승차대의 설치 방향	139
〈그림 4-39〉 구리시 내 보도 2m이상의 공공디자인 현황	140
〈그림 4-40〉 보도 2m이하 단면구조의 예시	143
〈그림 4-41〉 보도 2m이하의 버스정류장 설치기준	143
〈그림 4-42〉 경기도 웅벽형 인공벽면(보도용) 권장 디자인안	143
〈그림 4-43〉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144
〈그림 4-44〉 구리시 내 보차혼용도로의 공공디자인 현황	145
〈그림 4-45〉 상업지역 보차혼용도로의 조성 예시	148
〈그림 4-46〉 보행동선 확보 및 감속유도 시설의 조성 예시	148
〈그림 4-47〉 보차혼용도로의 보행동선 구분을 위한 펜스 권장 디자인 예시	148
〈그림 4-48〉 구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공공디자인 현황	149
〈그림 4-49〉 보행자보호구역의 보도 조성 예시	152
〈그림 4-50〉 보행자보호구역의 보도펜스 설치 예시	152
〈그림 4-51〉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의 예시	152
〈그림 4-52〉 고원식 교차로 조성 예시	153
〈그림 4-53〉 학교 주출입구 조성 예시	153
〈그림 4-54〉 어린이보호구역 픽토그램 안내표지 설치 예시	153
〈그림 4-55〉 구리시 내 자전거도로의 공공디자인 현황	154
〈그림 4-56〉 자전거도로 상충구간 조성 예시	156

〈그림 4-57〉 자전거횡단도 조성 예시	156
〈그림 4-58〉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의 조성 예시	157
〈그림 4-59〉 자전거도로 간이 쉼터의 조성 예시	157
〈그림 4-60〉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디자인 기본형	157
〈그림 4-61〉 구리시 내 교차로 및 횡단도 공공디자인 현황	158
〈그림 4-62〉 도로의 유형에 따른 횡단보도의 조성 예시	161
〈그림 4-63〉 횡단보도 전면 점자블럭 설치 기준	161
〈그림 4-64〉 횡단보도 전면 블라드 설치 기준	162
〈그림 4-65〉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162
〈그림 4-66〉 횡단보도 위 맨홀 설치 기준	162
〈그림 4-67〉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	163
〈그림 4-68〉 횡단보도 주변 공공시설물의 설치 권장사례	163
〈그림 4-69〉 구리시 내 고가도로의 공공디자인 현황	164
〈그림 4-70〉 고가도로 경사로 양측면 식수대의 조성 예시	167
〈그림 4-71〉 경기도 인공 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콘크리트 옹벽의 권장 디자인안	167
〈그림 4-72〉 고가도로 경관조명 연출의 권장 및 지양 사례	167
〈그림 4-73〉 고가차도 하부 주차공간 및 편의공간 조성 사례	167
〈그림 4-74〉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용 예시	168
〈그림 4-75〉 고가도로 하부 조명시설 지양 및 권장사례	168
〈그림 4-76〉 고가도로 하부 주차공간의 공공정보매체 설치 예시	168
〈그림 4-77〉 구리시 내 보도육교의 공공디자인 현황	169
〈그림 4-78〉 보도육교 시종점부 점자블럭 설치 기준	172
〈그림 4-79〉 보도육교와 동선 연결을 위한 접근시설의 설치 예시	172
〈그림 4-80〉 보도육교의 승강기 차양막 및 경사로 설치 예시	173
〈그림 4-81〉 보도육교의 자전거경사로 설치 예시	173
〈그림 4-82〉 보도육교 하부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된 지양사례	173
〈그림 4-83〉 구리시 내 통로박스의 공공디자인 현황	174
〈그림 4-84〉 통로박스 내부 보행동선 조성 예시	177
〈그림 4-85〉 통로박스 시종점부 입면의 조성 예시	177
〈그림 4-86〉 경기도 광교신도시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디자인 개발안	177
〈그림 4-87〉 보도가 조성되는 통로박스 내부 입면 마감의 예시	178
〈그림 4-88〉 통로박스 차로중앙의 구조체 설치 예시	178
〈그림 4-89〉 안전시설 설치 예시	178
〈그림 4-90〉 보차도 경계부 방호울타리 설치 예시	178
〈그림 4-91〉 건축물공간의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179

〈그림 4-92〉 공공건축물 G마크 안내사인 디자인(안)	180
〈그림 4-93〉 공공건축물 G마크 안내사인 디자인 적용 예시	180
〈그림 4-94〉 개방성을 강조한 공공건축물 주출입구 조성 예시	181
〈그림 4-95〉 공공건축물 대지경계부의 권장 및 지양사례	181
〈그림 4-96〉 공공건축물 접근동선 및 주출입구 조성 예시	183
〈그림 4-97〉 화장실 픽토그램 부착 예시	183
〈그림 4-98〉 G화장실 조성 예시	183
〈그림 4-99〉 내부마감재의 사용색 범위 및 권장색의 예시	184
〈그림 4-100〉 공공건축물 내부 공간 마감재 사례	184
〈그림 4-101〉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외관의 공공디자인 현황	185
〈그림 4-102〉 공공건축물 주조색의 권장 범위 및 권장색의 예시	186
〈그림 4-103〉 건축물 야간조명연출의 권장 및 지양사례	187
〈그림 4-104〉 공공청사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188
〈그림 4-105〉 교육연구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188
〈그림 4-106〉 문화집회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189
〈그림 4-107〉 사회복지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189
〈그림 4-108〉 환경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190
〈그림 4-109〉 환경시설 외관에 부착되는 공공정보픽토그램의 예시	190
〈그림 4-110〉 공중화장실의 외관 및 내부시설의 예시	191
〈그림 4-111〉 환경시설 권장색을 적용한 외관의 예시	192
〈그림 4-112〉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외부 접근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193
〈그림 4-113〉 공공건축물 주출입 동선 조성 예시	195
〈그림 4-114〉 공공건축물 내부 주출입구 조성 예시	195
〈그림 4-115〉 공공건축물 내부 주출입구 조성 예시	195
〈그림 4-116〉 공공건축물 건물명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196
〈그림 4-117〉 공공건축물 건물명 및 주차안내사인 설치 예시	197
〈그림 4-118〉 공공건축물 건물명 주차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197
〈그림 4-119〉 공공건축물 가로형 건물명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198
〈그림 4-120〉 공공건축물 독립형 종합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198
〈그림 4-121〉 건축물공간 내부 편의공간의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199
〈그림 4-122〉 공공건축물 외부 개방형 구조의 편의공간 조성 예시	201
〈그림 4-123〉 보도와 단차가 있는 편의공간의 조성 예시	201
〈그림 4-124〉 공공건축물 외부 개방형 구조의 편의공간 조성 예시	201
〈그림 4-125〉 주차공간과 공간을 분리시킨 편의공간의 조성 예시	202
〈그림 4-126〉 공공건축물 외부 편의공간의 차폐 식재 지양 사례	202

〈그림 4-127〉 공공건축물 외부의 흡연부스 설치 사례 및 흡연부스 권장 디자인의 예시	202
〈그림 4-128〉 구리시내 건축물공간외부 주차공간의공공디자인현황	203
〈그림 4-129〉 주차공간 주출입구 조성 예시	206
〈그림 4-130〉 주차공간 내 안전시설의 적용 사례	206
〈그림 4-131〉 특정 주차구역 조성 예시	207
〈그림 4-132〉 주차공간 내 식수대의 조성 예시	207
〈그림 4-133〉 공공건축물 내 특정 주차구역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208
〈그림 4-134〉 공공건축물 내 특정 주차구역 안내사인 상세 디자인 가이드라인	209
〈그림 4-135〉 구리시내 건축물공간내부 공용공간의공공디자인현황	210
〈그림 4-136〉 공공건축물 주출입문 방풍실의 조성 예시	213
〈그림 4-137〉 공공건축물 로비공간의 편의시설 조성 예시	213
〈그림 4-138〉 공공건축물 계단실의 조성 예시	214
〈그림 4-139〉 공공건축물 계단실 미끄럼방지 시설의 조성 예시	214
〈그림 4-140〉 공공건축물 내부 장애인 화장실의 배치 예시	214
〈그림 4-141〉 공공건축물 화장실 주출입 동선의 조성 예시	214
〈그림 4-142〉 공공건축물 화장실 내부 칸막이 설치 예시	215
〈그림 4-143〉 공공건축물 화장실 내부 변기 및 소변기 설치 예시	215
〈그림 4-144〉 공공건축물 G 화장실의 조성 예시	215
〈그림 4-145〉 공공건축물 벽부형 종합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216
〈그림 4-146〉 공공건축물 계단형 층별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217
〈그림 4-147〉 공공건축물 벽부형 층별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217
〈그림 4-148〉 공공건축물 실별안내사인 및 부서별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218
〈그림 4-149〉 공공건축물 화장실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218
〈그림 4-150〉 구리시내 건축물공간내부 민원공간의공공디자인현황	219
〈그림 4-151〉 공공건축물 민원공간 상담테이블 예시 이미지	222
〈그림 4-152〉 건축물 내부 민원공간 가구의 권장색 범위 및 예시도	222
〈그림 4-153〉 독립형 상담공간 조성방안	222
〈그림 4-154〉 민원 대기공간의 사무기기 배치방안	223
〈그림 4-155〉 무인민원서비스기기 배치방안	223
〈그림 4-156〉 공공건축물 민원 업무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223

〈그림 4-157〉 공공건축물 팀별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223
〈그림 4-158〉 공원·휴양공간의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224
〈그림 4-159〉 공원·휴양에 적합한 인증제품의 예시	225
〈그림 4-160〉 야외운동시설의 사용색 범위 및 적용 예시	225
〈그림 4-161〉 공원·휴양공간 내 조형물 및 포장 지양사례	225
〈그림 4-162〉 공원·휴양공간의 대형 그림문자 디자인 기본형 및 적용 예시	226
〈그림 4-163〉 교량 하부 쉼터공간 조성 예시	227
〈그림 4-164〉 겨울철 빛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의 권장상태	227
〈그림 4-165〉 공원·휴양공간의 경계시설 설치 지양사례	228
〈그림 4-166〉 개방형 구조의 식수대 조성 예시	228
〈그림 4-167〉 폐쇄형 식재 지양사례와 개방형 식재의 예시	228
〈그림 4-168〉 공원이용 시 규제사항을 명시한 공공정보매체의 사례	229
〈그림 4-169〉 공원·휴양공간 규제사항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229
〈그림 4-170〉 공원·휴양공간 주차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229
〈그림 4-171〉 구리시 내 공원의 공공디자인 현황	230
〈그림 4-172〉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원 내 구조물 및 건축물	233
〈그림 4-173〉 공원 내 공공정보매체의 설치 예시	233
〈그림 4-174〉 구리시 내 녹지의 공공디자인 현황	234
〈그림 4-175〉 보도와 평행한 연결녹지 내 보행로 조성의 예시	236
〈그림 4-176〉 방음벽을 설치하는 완충녹지 조성의 예시	236
〈그림 4-177〉 녹지 내 시설물 설치 예시	236
〈그림 4-178〉 구리시 내 광장의 공공디자인 현황	237
〈그림 4-179〉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광장 내 구조물 및 건축물	238
〈그림 4-180〉 구리시 내 흡연부스 설치사례 및 디자인 권장사례	238
〈그림 4-181〉 구리시 내 휴양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239
〈그림 4-182〉 수택가족캠핑장 내부 편의시설 등의 건축물	240
〈그림 4-183〉 휴양공간 내 체육시설 경계시설의 색채 지양사례	240
〈그림 4-184〉 캠핑장 내부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공공그림표지의 디자인	240

**V.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그림 5-01〉 구리시 내 공사장 울타리 등 설치 현황	243
〈그림 5-02〉 구리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243
〈그림 5-03〉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구조 및 용어의 정의	244
〈그림 5-04〉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절차	244
〈그림 5-05〉 가설울타리의 구성요소 및 조합 예시	245
〈그림 5-06〉 가설울타리 설치의 권장 및 지양사례	245

## CONTENTS / 그림 목차

### V.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그림 5-07〉 울타리 및 분진망의 재료 예시	246
〈그림 5-08〉 가설울타리 위 홍보그래픽 권장 및 지양사례	246
〈그림 5-09〉 가설게이트의 구성 요소 및 조합예시	247
〈그림 5-10〉 가설게이트 주출입구설치의 권장 및 지양사례	247
〈그림 5-11〉 공사안내사인 및 건축허가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248
〈그림 5-12〉 공사명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249
〈그림 5-13〉 소음 및 분진 측정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250
〈그림 5-14〉 보행출입구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250
〈그림 5-15〉 가설게이트 설치의 권장 및 지양사례	251
〈그림 5-16〉 가설가림막의 구성요소 및 조합 예시	252
〈그림 5-17〉 가설가림막의 홍보그래픽 권장 및 지양사례	252
〈그림 5-18〉 저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설치 현황	253
〈그림 5-19〉 저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253
〈그림 5-20〉 고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설치 현황	254
〈그림 5-21〉 고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254
〈그림 5-22〉 고층집합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설치 현황	255
〈그림 5-23〉 고층집합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255
〈그림 5-24〉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현황	256
〈그림 5-25〉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개선방향	257
〈그림 5-26〉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공공디자인 통합설계도	258
〈그림 5-27〉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의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263
〈그림 5-28〉 동구릉 주변 횡단도보 및 자전거횡단도 가이드라인	263
〈그림 5-29〉 동구릉 주변 버스승차대 설치 가이드라인	263
〈그림 5-30〉 동구릉 주변 보도 내 차량진출입구 조성방안	264
〈그림 5-31〉 공공시설물 디자인 권장안 및 권장색 범위	264

### VI. 실행계획

〈그림 6-01〉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개정방향	269
〈그림 6-02〉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	283
〈그림 6-03〉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283
〈그림 6-04〉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현황	284
〈그림 6-05〉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개선방안	285
〈그림 6-06〉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의 예시	287
〈그림 6-07〉 구리시 공공디자인 교육의 제안 대상	288
〈그림 6-08〉 공공기관에서 주체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시행 사례	288

# I.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3
2. 계획의 범위	04
3. 계획의 수립체계	05
4. 계획의 성격 및 위상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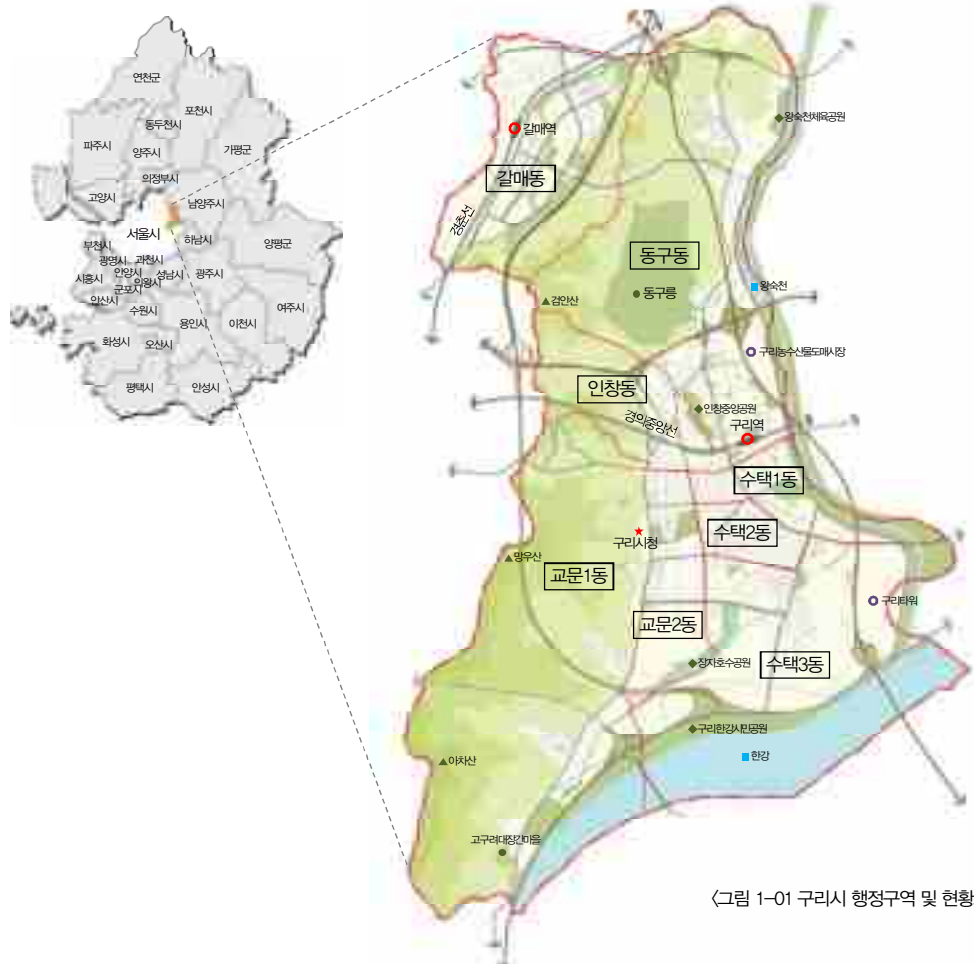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

-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도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부합하는 공공 디자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사회범죄, 안전사고,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도시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디자인 측면의 접근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도시 내 과디자인을 유발하는 공공디자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공공디자인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 가시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무분별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및 이벤트성 정책을 지양하고 구리시 고유의 특성과 우수한 자연경관에 순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계획의 목적

- 구리시 공공디자인 환경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한다.
- 구리시의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행력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을 구현한다.
- 공공디자인 관련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도시차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행정기반을 구축한다.



〈그림 1-01 구리시 행정구역 및 현황도〉

##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행정구역 전지역
  - 면적 : 33.33km<sup>2</sup> (경기도의 0.33%)  
(개발제한구역 : 20.54km<sup>2</sup> (62%) / 군사시설보호구역 : 11.05km<sup>2</sup> (33%))
  - 행정구역 : 8동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2동, 수택1·2·3동)
  - 인구 : 198,212명 (남:98,386명, 여:99,826명 / 세대수 : 80,840세대)
- \* 출처 : 구리시청 홈페이지 (2020년 7월 30일 기준)

- 내용적 범위**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수립한다.
  -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도시의 현황조사 및 분석,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및 중점실천전략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디자인 특화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주요한 내용적 범위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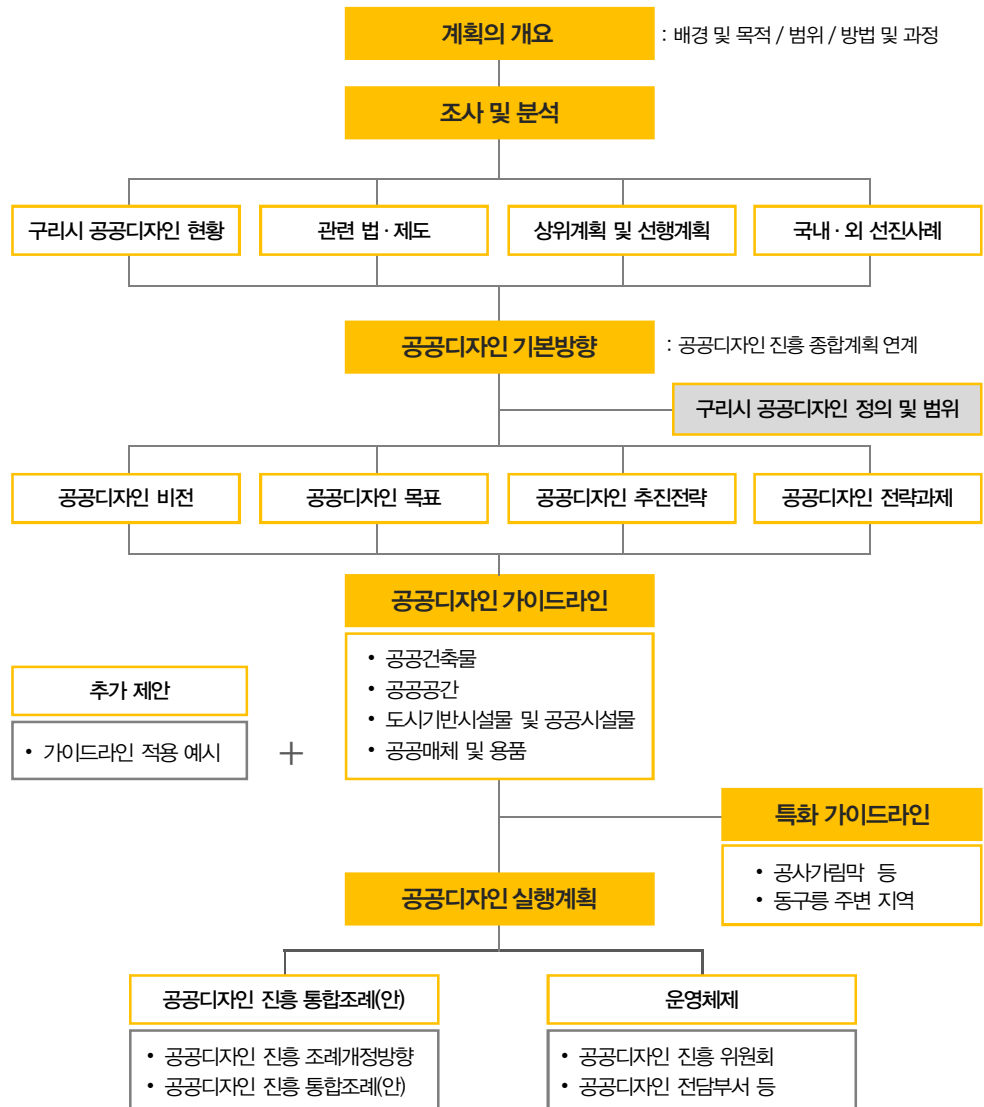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현황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제도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경관법 / 구리시 관련 조례 등</li> <li>• 상위계획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li> <li>•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 공공디자인 요소별 도시 현황 조사</li> <li>• 국내·외 사례 : 국내외 공공디자인 선진사례</li> </ul>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디자인 : 구리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디자인 정책 등</li> <li>• 통합차별화 디자인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디자인 정책 실행 로드맵 수립 등</li> <li>• 배려하는 디자인 : 교통의 요지·주거·상업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디자인 통합방안</li> <li>• 유니버설디자인 :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벽 없는 환경 조성방안</li> </ul>
공공디자인 중점실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지원공모사업 대상 등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과제 선정</li> <li>• 시범지구 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 도서 작성</li> </ul>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색채 협의에 대한 지침과 기준</li> <li>•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조례 등) 및 위원회 운영방안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등</li> <li>• 공공디자인 개발 및 사업 등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li> <li>•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공공디자인 마인드 제고 방안</li> <li>• 양질의 디자인을 생산·유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li> <li>•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실천전략, 정책과제, 세부 실천과제 제안</li> </ul>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 구리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주변과 조화되는 설계지침</li> <li>•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디자인개념을 도입한 유연한 공간계획</li> <li>• 도시기반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기능성, 안전성, 심미성을 고려한 기준</li> <li>• 공공매체 및 용품 가이드라인 : 무분별한 정보매체 등의 통합설치 및 정보의 최적화</li> </ul>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 벽화, 담장, 공사가림막 기준 및 가이드라인</li> <li>•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li> <li>• 무장애도시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계획</li> <li>• 각 분야 부서별 예정사업을 연계한 전략적 시범사업 제시</li> </ul>

〈표 1-01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적 범위〉

### 3. 계획의 수립체계

#### 계획의 수립체계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영역의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하되 구리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내용과 수립체계를 구성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되 계획의 위계를 고려하여 개요, 조사 및 분석, 기본방향(과업내용서의 중점실천전략 포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실행계획(과업내용서의 진흥계획)의 6단계로 구성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범위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공공시설물을 포함하여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공공디자인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계획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도시기반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가이드라인의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한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보고서 p.118 참고)



〈그림 1-02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체계〉

## 4.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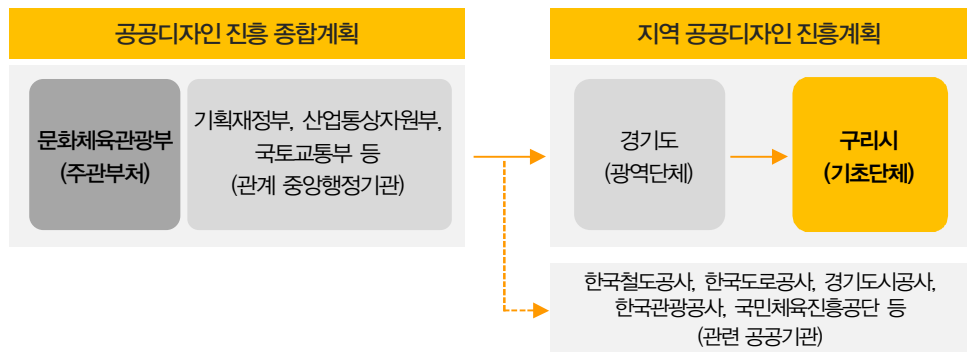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구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공공디자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원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2020) 등을 준수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디자인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li> </ul>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li> <li>•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이용</li> <li>•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균형 형성</li> <li>•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유도</li> <li>•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구현</li> </ul>

〈표 1-0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계획의 위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의 연계성을 부여하여 수립하고 도시 내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본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03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위상〉

## II. 조사 및 분석

<b>1. 조사 및 분석의 개요</b>	<b>09</b>	<b>5. 상위계획 및 선행계획</b>	<b>67</b>
<b>2. 구리시의 이해</b>	<b>11</b>	5.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67
2.1. 일반현황	11	5.2.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68
2.2. 인문환경	12	5.3.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69
2.3. 도시계획	13	5.4. 2020년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70
2.4. 자연환경	14	5.5.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계획	71
2.5. 경관자원	15	5.6. 2020년 기본경관계획	72
2.6. 시정 및 브랜드 현황	17	5.7.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73
<b>3.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b>	<b>18</b>	5.8.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74
3.1. 개요	18	<b>6. 유사사례</b>	<b>76</b>
3.2. 갈매동	19	6.1. 국내사례 1: 행정중심복합도시	76
3.3. 동구동	24	6.2. 국내사례 2: 하남시	77
3.4. 인창동	30	6.3. 국외사례 1: 리옹	78
3.5. 교문1동	34	6.4. 국외사례 2: 코펜하겐	79
3.6. 교문2동	41	6.5. 국외사례 3: 가나자와	80
3.7. 수택1동	46	<b>7. 의식조사</b>	<b>81</b>
3.8. 수택2동	51	7.1. 개요	81
3.9. 수택3동	55	7.2. 설문 : 공공디자인 의식	82
3.10.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종합진단	61	7.3. 관계부서 인터뷰	86
<b>4. 관련법규</b>	<b>62</b>	<b>8. 종합분석</b>	<b>87</b>
4.1. 근거법	62		
4.2. 관련 법령	63		
4.3.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64		
4.4.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65		
4.5.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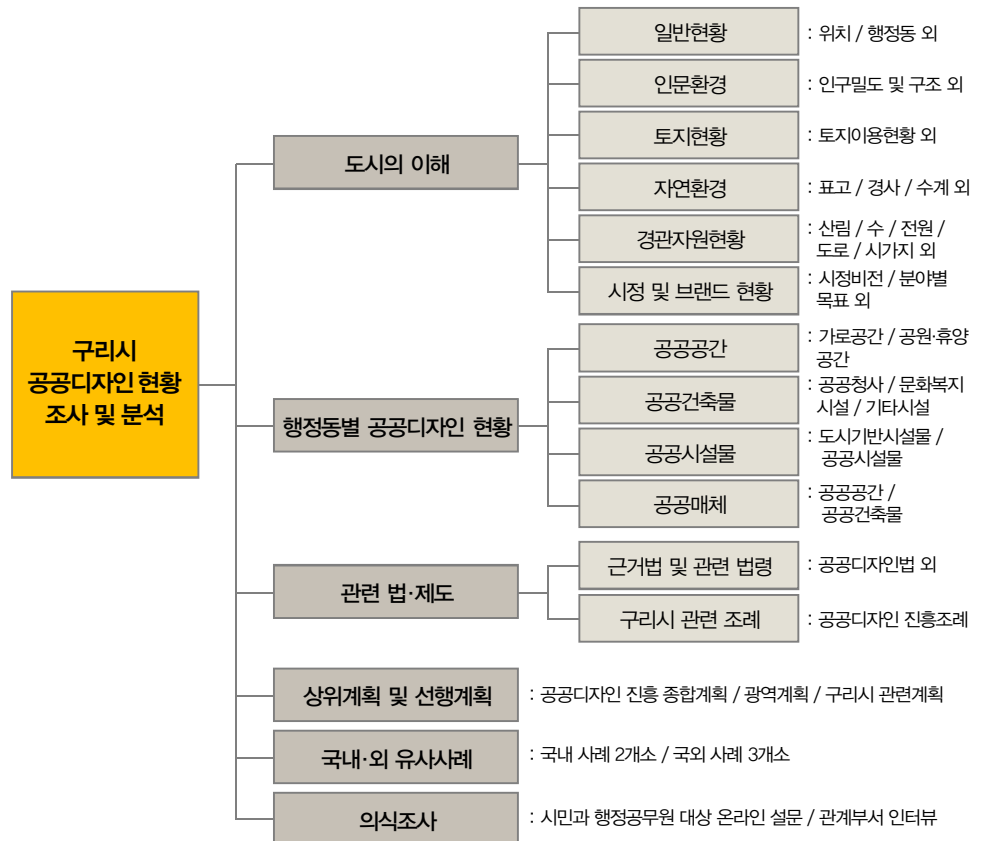


#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 조사 및 분석의 개요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의 이해,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관련 법·제도, 상위 계획 및 선행계획, 국내·외 유사사례, 의식조사 결과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 도시의 이해 부분에서 구리시의 일반현황, 인문환경, 토지현황, 경관자원의 특성 등 공공디자인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함께 도시의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공공디자인 현황은 8개의 행정동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으로 구분되는 공공디자인 요소별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 관련 법·제도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근거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을 포함하여 『경관법』, 『건축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내용을 조사한다.
- 상위계획은 공공디자인법에 근거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과 광역에서 수립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준용하고 구리시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 계획,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여 상호 연계성을 부여한다.
- 유사사례의 경우 국내사례와 국외사례로 구분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사업, 정책 등의 선진사례를 분석한 후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주안점을 도출한다.
- 의식조사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관계부서 인터뷰를 진행한 후 분석결과를 반영한 진흥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한다.

## 조사 및 분석의 구조



〈그림 2-01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및 분석의 구조〉

### 조사 및 분석의 체계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구리시의 도시 특성 및 규모에 부합하는 분석기준에 맞추어 결과를 진단함으로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그림 2-02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및 분석의 체계〉

### 공공디자인 요소 조사 항목

-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해 공공디자인 영역 및 세부 요소를 구분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전략사업 대상지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공공매체의 경우 향후 가이드라인 등의 활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공공정보매체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그림 2-03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항목〉

### 공공디자인 요소 조사 방법

- 공공디자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정동별 단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이용이 집중되는 중심상업지역, 거점형 공원 및 휴양공간,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세부 요소별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 아차산에서 동구릉으로 연결되는 산림녹지축과 한강 및 왕숙천 등 수경관자원을 배경으로 조망되는 공공디자인 현황의 입체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원경, 중경, 근경 등 조망거리에 따른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공공디자인 요소의 디자인적 특징과 함께 제작 및 시공품질, 설치되는 공공공간과의 조화성, 이용자의 편리성 및 쾌적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공공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고려하여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가로공간, 도시기반시설물), 조망거리에 따른 도시 내 인지성(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 도시 내 디자인 측면에서의 연속성(공공시설물)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 공공정보매체의 경우 공공공간(가로공간 및 공원휴양공간)과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기타 시설 등) 내·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안내사인 등을 조사분석하며 매체의 외형(규모, 형태, 색채, 재료 등)과 정보의 위계, 서체, 레이아웃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2. 구리시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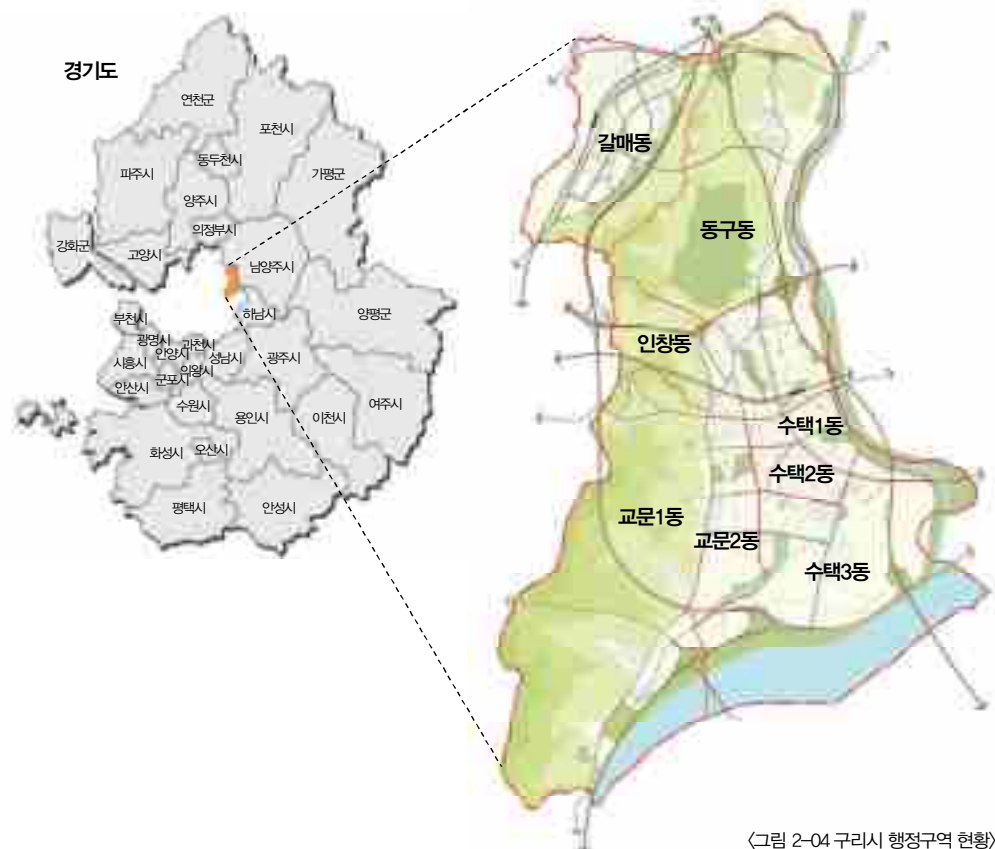
### 2.1. 일반현황

#### 입지여건

- 구리시는 경기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33.3km<sup>2</sup>으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군에 단체에 해당하나, 도시 내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을 통해 질적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 아차산에서 망우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가 위치하고 한강 이남의 강동구, 도시 서측의 왕숙천을 경계로 경기도 남양주시와 접하고 있다.
- 국가하천인 한강이 도시 남측에 맞닿아 있고 한강의 지류로 유량이 풍부한 왕숙천이 도시 서측 경계부에 위치하여 수변도시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고 도시 동측의 아차산에서 망우산으로 연결되는 산림녹지축이 도시의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도시 내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경기도지정문화재 2개소 등 총 6개소의 문화재가 분포하며 그 중 세계 문화유산인 동구릉은 조선왕조 전대에 걸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시대 능침지이며 구리시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자원이다.
-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구리(세종)-포천고속도로,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의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매우 발달한 교통요충지로서의 특징을 전제로 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행정구역

- 구리시는 2020년 07월 기준으로 33.3km<sup>2</sup>, 8개동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80,840세대 198,212명(남:98,386명, 여:99,826명)이 거주하고 있다.
- 인구밀도는 5,952명/km<sup>2</sup>이며, 구리시 내에 총 14,648개(66,759명)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중심행정 기관인 구리시청 및 의회는 교문1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04 구리시 행정구역 현황>

## 2.2. 인문환경

### 인구 및 가구

- 2020년 07월 기준 구리시의 총인구는 198,212명으로 2017년 10월 기준 196,316명 대비 1,896명 증가했으며, 경기도 인구의 약 1.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인구수			구성비			성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소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갈매동	31,605	15,703	15,902	15.95	7.92	8.08	98.75	12,263	2.58
동구동	38,678	19,112	19,566	19.51	9.64	9.87	97.68	14,028	2.76
인창동	22,539	11,078	11,461	11.37	5.59	5.78	96.66	8,670	2.60
교문1동	16,430	8,332	8,098	8.29	4.20	4.09	102.89	8,253	1.99
교문2동	22,514	10,939	11,575	11.36	5.52	5.84	94.51	7,951	2.83
수택1동	18,629	9,250	9,379	9.40	4.67	4.73	98.62	9,041	2.06
수택2동	25,701	12,846	12,855	12.97	6.48	6.49	99.93	11,528	2.23
수택3동	22,116	11,126	10,990	11.16	5.61	5.54	101.24	9,106	2.43
합 계	198,212	98,386	99,826	100.00	49.64	50.36	98.56	80,840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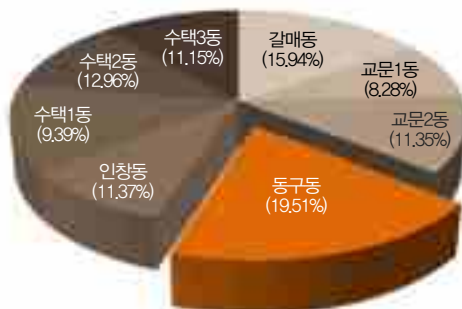
〈표 2-01 구리시 인구 및 가구 현황〉

###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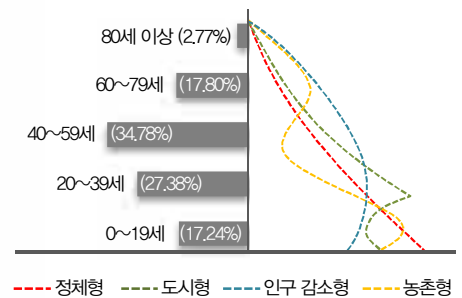
- 구리시의 인구밀도는 5,952명/km<sup>2</sup>(2020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509명/km<sup>2</sup>(2015년 기준) 및 경기도 31개 시·군 1,145명/km<sup>2</sup>(2020년 기준)과 비교하면 높은 상황이다.
- 구리시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구동이지만 갈매동 공공택지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갈매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면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동별 인구밀도의 경우 저층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인 수택2동 42,835명/km<sup>2</sup>(2020년 07월 기준)으로 구리시 내에서 가장 높아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 인구구조

- 구리시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40~59세 인구가 68,944명으로 전체인구198,212명의 3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구리시의 인구구조 형태는 방추형과 유사하며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로 인해 도시 내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자연녹지지역의 비율이 높아 주거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문1동을 제외하면 행정동별 인구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도시 내 택지개발사업 및 구도심 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인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표 2-02 구리시 행정구역 별 인구비율〉



〈표 2-03 구리시 인구구조 형태〉

## 2.3. 도시계획

### 지목별 토지현황

- 구리시의 지목별 토지현황 중 임야가 전체면적의 3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는 전체 면적의 12.7%인 4.2km<sup>2</sup>이다.
- 2010년 토지현황과 비교해보면 구리시 내 전, 답, 과수원, 목장 등의 비율이 줄고 있는 반면 대지와 도로 비율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지속적인 개발 및 확장이 토지이용현황에 나타나고 있다.

연도	합계(km <sup>2</sup>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2010	33,986	4,906	1,339	0,272	0,202	12,578	3,946	48,216
2011	33,032	4,925	1,309	0,268	0,202	12,286	3,978	49,257
2012	33,266	4,886	1,286	0,273	0,202	12,254	4,022	53,818
2013	33,311	4,550	1,271	0,273	0,201	12,232	4,030	57,522
2014	33,311	4,568	1,225	0,267	0,201	12,217	4,045	62,516
2015	33,312	4,552	1,207	0,265	0,200	12,182	4,092	65,161
2016	33,310	4,513	1,190	0,263	0,200	12,173	4,107	66,542
2017	33,311	4,424	1,137	0,257	0,177	12,147	4,227	67,057
2018	33,316	4,158	1,069	0,305	0,172	11,909	4,232	68,521

\* 출처 : 국토해양부 『지적통계』, 토지정보과 / 단위 m<sup>2</sup>

〈표 2-04 구리시 지목별 토지현황〉

### 토지이용현황

- 구리시의 토지이용현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면적 대비 61.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면적(Km <sup>2</sup> )	구성비(%)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86	8.5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5	5.27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6	6.50
	준주거지역	0.32	0.9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0.51	1.53
	유통상업지역	0.18	0.53
	근린사업지역	0.05	0.1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25.48 (20.49)	14.94 (61.58)
합 계		33.31	100.00

\* 출처 : 2019 구리시 일반 및 분야별 기본현황

〈표 2-05 구리시 토지이용현황〉

### 도시정비현황

- 인창수택재정비지구와 같은 구도심의 정비를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현황은 〈표2-06〉과 같다.

연도	명칭	면적(m <sup>2</sup> )	현황	일자
재개발	인창재개발	33,739	공사중	2018.04 ~
	딸기원지구	147,530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2016.09.12
	딸기원2지구	83,835	조합설립인가	2016.01.27
재건축	수택지구	20,159	이주 및 철거	2017.10 ~
	수택1지구	32,535	사업시행변경인가	2018.11.05
	수택42통	12,540	사업시행인가	2017.03.21

\* 출처 : 2019 구리시 일반 및 분야별 기본현황

〈표 2-06 구리시 도시정비현황〉

## 2.4. 자연환경

### 기후의 특성

- 연평균 기온은 12.3°C이며,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의 평균 기온은 - 1.5°C,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기온은 26.5°C로서 약 25°C의 연교차를 나타낸다.

구분	기온(°C)			강수량 (mm)	상대습도(%)		풍속(m/s)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소	평균	최대
2010	10.9	16.7	6.2	1,939.5	67.0	12.0	1.7	10.2
2011	11.1	16.8	5.9	2,311.2	64.0	7.0	1.4	9.9
2012	11.0	17.4	6.0	1,383.9	64.0	6.0	1.7	12.6
2013	12.3	17.5	7.8	1,240.1	72.0	16.0	1.7	8.6
2014	13.1	18.6	8.5	1,029.1	67.90	11.0	2.1	9.7
2015	13.5	19.0	8.8	751.1	68.0	10.0	1.8	8.8
2016	13.6	19.1	9.0	1,023.4	68.0	13.0	1.8	10.5
2017	12.6	18.3	7.8	1,328.6	67.0	10.0	1.8	8.8

〈표 2-07 구리시 기후 현황〉

### 표고 및 경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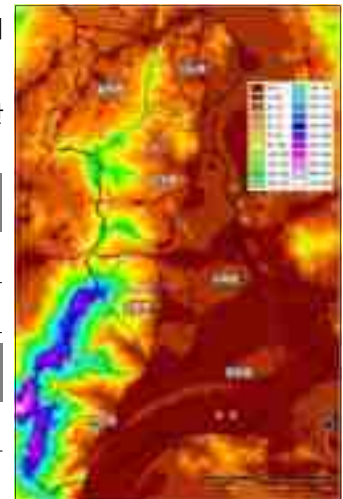
- GIS에 의한 표고분석 결과 150m 이상인 지역이 구리시 전체의 6.82%, 60m 미만의 완만한 지역이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 경사도가 5%이하인 지역이 전체 면적 중 51.0%로 비교적 완만한 지대가 분포하고 있다.

표고	60m 미만	60~ 90m	90~ 150m	150~ 240m	240~ 300m	300m 이상
면적(km <sup>2</sup> )	23.53	3.68	3.81	1.88	0.38	0.01
구성비(%)	70.68	11.05	11.45	5.65	1.14	0.03

경사	5% 이하	5~ 10%	10~ 15%	15~ 20%	20~ 25%	25% 이상
면적(km <sup>2</sup> )	17.01	4.22	5.51	4.03	1.60	0.92
구성비(%)	51.0	12.7	16.6	12.1	4.8	2.8

〈표 2-08 구리시 표고 및 경사 현황표〉



〈그림 2-05 구리시 표고현황도〉

### 수계분석

- 구리시에는 국가하천인 한강이 위치하고 있으며, 왕숙천을 포함한 18개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한강의 지류를 형성하고 있다.

구분	명칭	위치	연장(km)
국가하천	한강	교문동, 수택동	5.1km
지방하천	왕숙천	동구동, 인창동, 수택동	7.4km
	갈매천	갈매동	1.5km
	용암천	동구동	2.2km
	불암천	갈매동	0.9km

구분	유입수로	명칭
소하천	한강	이문안천, 셋다리개울, 백개천, 아치울천, 우미천, 유입수로
	왕숙천	갈매3천, 내동1천, 내동2천, 내동3천, 언제말개울, 동구천, 안말개울, 안말1개울

〈표 2-09 구리시 수계 현황표〉



〈그림 2-06 구리시 생태자연도〉

## 2.5. 경관자원

### 산림경관

- 도시 서측의 아차산에서 검안산으로 연결되는 산림녹지축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서고동저형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서측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 도시 내 산림녹지의 비율이 높고 도시의 지형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림녹지축이 도시의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주요한 산림자원에서 도시 내부로의 조망성이 우수하여 조망축으로 연결되는 시가지경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2-07 구리시 산림경관 현황도〉

### 수경관

- 구리시 내에는 국가하천인 한강을 포함하여 18개소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수변도시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 구리한강시민공원 및 왕숙천수변공원의 경우 유량이 풍부하며 공원 내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구리 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많은 도시의 대표적인 거점경관이다.
- 한강 및 왕숙천 너머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 등에서 조망되는 수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및 색채경관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2-08 구리시 수경관 현황도〉

### 전원경관

- 동구동 북측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를 배경으로 조망되는 건축물의 색채경관 관리가 시급하다.
- 동구동 및 수택3동 일부 지역에 산업시설의 가설건축물 조성 비율이 높아 해당 건축물의 경관관리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농경지 및 산업시설 집중 분포지역의 경우 향후 도시개발의 확장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2-09 구리시 전원경관 현황도〉

### 시가지경관

- 도시의 지형이 완만한 서측지역에 시가지가 분포해 있으며, 중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인창동과 수택동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 인창동 및 수택동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구시가지는 재정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규모의 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경관이 우수한 신시가지 우수사례로 주목되는 갈매동의 경우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시가지가 확장될 예정이다.



〈그림 2-10 구리시 시가지경관 현황도〉

### 도로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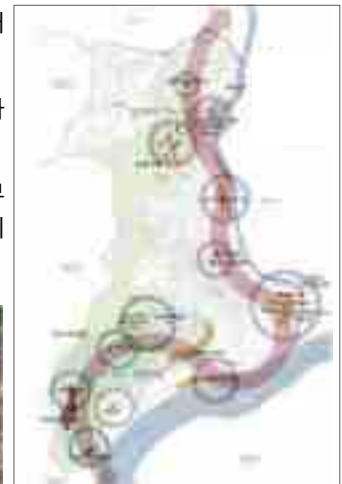
-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의 광역 교통망이 발달한 교통요충지이다.
- 교통망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도시기반시설물의 노출빈도가 높아 도시 내 인공적인 경관이 부각되어 보행자 및 운전자 시점에서의 경관개선이 요구된다.
-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운전자의 시점에서 구리시 내·외부로의 진출입 및 구리시만의 차별성을 인지도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림 2-11 구리시 도로경관 현황도〉

### 역사문화경관

- 도시 내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경기도지정문화재 2개소 등 총 6개소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은 조선왕조 전대에 걸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시대 능침지이며 구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다.
- 동구릉, 고구려대장간마을 등 역사성이 우수한 역사문화경관 내부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는 양호하나 주요 진입도로 및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측면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림 2-12 구리시 역사문화경관 현황도〉

## 2.6. 시정 및 브랜드 현황

### 시정비전 및 전략



### 시 상징물

#### 구리시 마크

- 원안의 "ㄱ", "ㄴ"은 구리시의 구리를, 중앙의 원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녹색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의미하며 붉은색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고 희망찬 꿈의 미래도시를, 8개의 선은 수송과 교통체계의 거점 도시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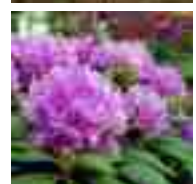
#### 시목:은행나무

- 노란 은행잎이 거리에 뿔궂때면 사람들은 가을을 느낀다. 구리시에도 1천 2백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세가 곧고 뿌리가 깊어 곳곳하고 변함 없이 발돋움하는 구리시민의 기상을 상징한다 하여 1986년 4월 4일 구리시 시목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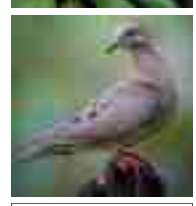
#### 시화:철쭉

- 봄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온 산하를 분홍빛으로 물들인 듯 장관을 이루는 철쭉 꽃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습이 더욱 청아하고 순수하다. 1986년 4월 4일 구리시민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시의 꽃으로 지정되었다.



#### 시조:비둘기

- 비둘기의 왕성한 번식력은 날로 발전하는 시세를 상징하고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구리시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하여 1986년 4월 4일 시조로 지정되었다.



#### 시마스코트:아리미

-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적이고 꿈과 희망이 있는 친환경도시 캐릭터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바람직한 미래생태도시를 구현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 3. 공공디자인 현황

#### 3.1. 개요

##### 행정동별 분석의 개요

- 구리시의 8개 행정동별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공공디자인 요소의 디자인적 특징 및 설치기준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다.
-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의 세부 진단이 가능하며, 시 차원에서 행정동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향후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요소별 세부 진단을 통해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 결과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 차원에서의 균형감 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 행정동별 분석의 대상

- 행정동별 분석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로 구분되는 4가지 공공디자인 영역 및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여 조사·분석한다.



공공공간	가로공간	: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등
	공원 및 휴양	: 근린공원, 수변공원, 광장 등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 도서관, 박물관, 아트홀 등
	기타시설	: 철도역사,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 보도육교, 교량,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물	: 대중교통시설, 편의시설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사인 등
	공공건축물	: 건물명사인, 주출입구사인 등



〈그림 2-14 공공디자인 요소의 예시〉

##### 행정동별 분석방법

- 공공디자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정동별 최소 5회 이상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이용이 집중되는 중심상업지역, 거점형 공원 및 휴양공간, 주거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세부 요소별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 아차산에서 동구릉으로 연결되는 산림녹지축과 한강 및 왕숙천 등 수경관자원을 배경으로 조망되는 공공디자인 현황의 입체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원경, 중경, 근경 등 조망거리에 따른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공공디자인 요소의 디자인적 특징과 함께 제작 및 시공품질, 설치되는 공공공간과의 조화성, 이용자의 편리성 및 쾌적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3.2. 갈매동

**개요**



- 갈매동(2020년 07월 기준)은 면적 3.95km<sup>2</sup>으로 구리시 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2,263세대 31,605명(남:15,703명, 여:15,902명)이 거주하고 있다.
- 서울시 노원구, 중랑구와 면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고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 지구(예정), 구리공공주택지구 등의 신도시택지개발지구가 조성(예정)되어 있다.
- 47번 국도, 경춘선 철도, 세종포천(구리-포천)고속도로 등과 같이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우수하여 거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의 시점에서 도시차원의 공공디자인 환경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보도-자전거도로-장애물존으로 구분된 가로공간의 구조 및 자체도의 색채,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 공공시설물 등의 우수사례가 많아 구리시 전체로 확장이 용이하다.
-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구리공공주택지구와의 디자인적 연계성을 부여하여 구리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공공간	갈매천공원(수변/체육), 갈매중앙공원, 신마루공원 등	
공공건축물	갈매역,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및 대중교통시설물, 보도육교, 경춘선 방음벽 등	시설물 우수사례
공공매체	도시슬로건 안내표지, 현수막 게시대 등	



〈그림 2-15 갈매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공공공간 / 가로공간



- 구리시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갈매동은 계획도시로서의 성격이 명확하여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으로 구분되는 가로공간의 위계가 명확한 우수사례이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동선 연결은 우수하나 갈매동 전체에 적색포장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자전거도로 상충(위험)구간의 암적색 포장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혼재하는 교차로의 경우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볼라드 및 점자블럭 설치기준 등이 부재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갈매동의 자연녹지(구릉지)를 이용한 구리둘레길, 신마루공원, 갈매천변 수변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 공원 및 휴양공간 내 식재한 교목의 수관 폭이 좁거나 생육상태가 미흡하여 여름철 녹음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목의 성장속도를 고려한 편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공공공간 현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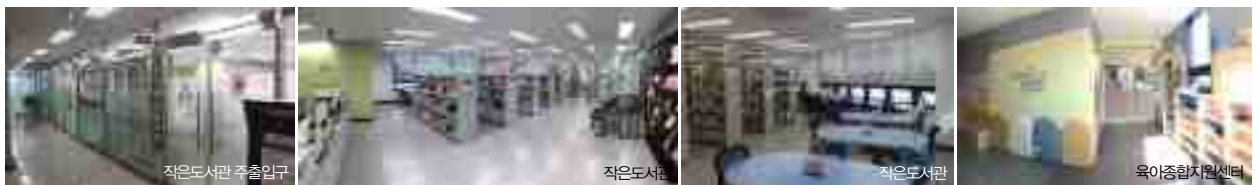
- 시민들의 주요 동선이 되는 가로공간의 위계가 명확한 우수사례이며 거주지역에서 공원 및 휴양공간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도시차원에서 자전거도로의 일관성 있는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는 인근 부지에 복합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상업시설 5층에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안내매체 등이 미흡하여 도시 내 시인성이 미흡하다.
- 공공공간에서 보여지는 행정복지센터 외벽이 유리벽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투명 쉬트 및 각종 홍보물이 부착되어 차폐율이 높아 시각적으로 답답한 공간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 행정복지센터 내부공간에 자연광이 유입되어 밝고 쾌적한 공간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민들의 대기공간 및 편의공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행정복지센터 6층에 위치한 작은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어린이방문객의 비중이 높지만 바닥, 벽체, 천정의 마감계획이 다소 차갑고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공공건축물 / 기타



- 갈매역은 외부 마감재의 노후화로 인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조망되는 공공디자인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용객을 수용해야 하는 역앞광장은 개방적인 이미지가 다소 미흡하다.
- 거주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철도 이용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전거 주차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며 역사 배면에 위치한 야외 편의공간 등에서 일몰 후 우범화가 우려된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시민들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쉽게 찾고 빨리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외관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고 내부공간의 경우 밝고 쾌적하며 친근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



- 갈매천을 횡단하는 4개의 보차도 교량과 보도교 등은 구조체의 시각적 상징성보다는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이다.
- 일부 교량 하부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위치하는 경우 일몰 후 우범화 되지 않도록 조도의 상향 조정 및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식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상업지역에 위치한 보도육교의 경우 승강기와 계단을 설치하여 구조체의 부피감을 최소화시켰으나 승강기 외벽 및 난간 등에 유색 유리를 사용하여 배경이 되는 공공공간과의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구리공공주택지구 내에는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적용하여 디자인 품질이 우수하므로 향후 도시 내 공공시설물 추가 설치 및 교체 시 권장사례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시설물 자체의 디자인은 우수하지만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의 동선을 방해하거나 점자블럭 및 블라드와 같이 관련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 도시기반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자체의 디자인 품질은 우수하지만 공공공간 내 설치 및 배치기준이 부재하여 주변의 다른 시설물 및 설치공간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공공정보매체는 설치공간, 설치주체, 설치시기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어 도시차원에서 구리시만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 공공정보매체의 규격, 형태, 재료, 색채, 서체(크기 및 글꼴) 등의 위계가 불명확하여 정보전달력보다는 구조체의 장식성 또는 디자인적 특징이 강조되는 사례가 많다.
- 도시 슬로건을 홍보하는 안내사인의 디자인 유형이 다양하고 설치빈도가 높아 시각적 피로도가 우려되므로 별도의 매체를 설치하기 보다는 온라인 및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가변형 콘텐츠를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내·외부에 설치한 공공정보매체의 경우 정보의 위계 및 설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으로 많은 정보가 동시에 노출되어 정보전달력이 매우 낮으며, 공간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광역에서 개발한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보표기기준으로 활용하되 설치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설치 위치 및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갈매동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품질이 우수하여 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구도심 재정비사업 등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구리시만의 정체성을 부여한 공공디자인 환경의 구축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경우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도시 내 시인성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장을 권장한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3	3	2	2	2	3	3	2	2	22

〈표 2-10 갈매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3.3. 동구동

**개요**



- 동구동(2020년 07월 기준)은 면적 7.3km<sup>2</sup>으로 구리시 면적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4,028세대 38,678명(남:19,112명, 여:19,566명)이 거주하고 있다.
- 동구동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사적193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산업시설(가설건축물) 밀집 지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주거지역과 함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역 등과 같은 거점형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 도시 남북방향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서방향을 남북간선도로, 구리IC와 퇴계원IC, 사노IC 등이 위치하여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으며, 해당 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구리시 내부로의 조망이 용이하므로 공공디자인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보행량이 집중되는 구리역 인근의 경우 보도 폭이 좁거나 주차공간과 보도의 물리적 구분이 모호하여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보도의 유효폭(1.5m)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빈번하므로 보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을 우선으로 한 공공시설물의 배치 및 가로수 식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공공간	왕숙천수변공원, 왕숙체육공원, 구리광장, 늘푸른공원, 구리역공원 등	
공공건축물	구리역,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여성 및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물	경의중앙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의 도시기반시설물	집중관리 필요
공공매체	시설명칭안내사인, 공간명칭안내사인, 내부 안내사인 등	



〈그림 2-16 동구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공공공간 / 가로공간



-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보행공간 내에 가로수, 공공시설물, 민간 지장물 등으로 인해 보도의 유효 폭이 축소되어,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의 양방향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 빈번하다.
- 도시 내 보도펜스의 설치비율이 높은 상황이며 필요(권장)공간과 지양공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보행자의 안전성과 가로공간의 심미성 등을 고려한 설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포장 재료, 색채, 패턴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가로공간의 연속성이 미흡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구리역을 중심으로 구리역공원, 구리광장, 늘푸른공원, 인창공원 등이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옥외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의 문화체육시설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녹음을 형성하는 자연 속 휴식공간의 조성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공공공간 현황 종합

- 보행자도로의 폭을 고려한 가로수 식재기준,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공원 내 휴식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는 대규모의 독립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교실, 헬스장, 대강당 등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보행동선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으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거주민의 방문이 집중되는 민원실의 경우 다양한 색과 질감의 무늬목 마감재가 혼재되어 있으며, 가구 및 바닥마감 등과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주·야간 상시 보행량이 집중되는 구리역 인근에 위치한 노인·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은 보도와 연결하여 장애인주차구역과 셔틀버스 주차공간을 운영 중으로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므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노인·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대지가 보도와의 단차를 형성하여 노약자의 접근성이 미흡하며 경사로 등의 설치기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 구리시청 옆에 신축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향후 기존 시설의 일부 이전과 노인회관의 기능공간 재배치 시 공공건축물로의 개방성과 쾌적성을 전제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구리보건소와 인창도서관은 연접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형태, 색채, 재료의 외관으로 조성되어 공공건축물 상징성이 미흡하며 밀도가 높은 경계식재로 인해 외부공간에서의 시인성이 다소 미흡하다.
- 가로공간에서 건물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보차도 동선이 분리되어 있으며 외부 휴게공간 및 자전거 주차공간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우수사례이다.
- 화장실의 경우 다른 공공건축물과 달리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였으나 서로 상충되는 재료와 색채를 혼용하여 조화성이 미흡하며 다소 복잡한 공간이미지를 조성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 기타



- 구리역의 경우 환승하는 차량 및 자전거이용자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등의 대기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성이 미흡하며,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근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전거주차공간을 확장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



- 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부피감으로 인한 위압감 형성이 우려되며,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여 계단을 설치할 경우 유모차, 휠체어, 짐수레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 보행동선이 연결되는 도시기반시설물 설계 시 구조체의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거더, 교각, 캐노피, 방음벽 등에 고채도 색채를 적용한 사례가 많아 배경이 되는 도시공간과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의 설치주체, 시기, 예산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 색채, 재료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우수 사례와 지양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 동일한 종류의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도 다양한 디자인이 혼재되어 유지관리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며, 설치 위치에 대한 일관성이 부재하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 도시기반시설물의 경우 위압감을 순화시키면서 노약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공공시설물은 우수사례와 지양사례가 혼재하므로 우수사례의 단계별 확장을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공공정보의 위계가 불명확하고 정보매체의 외형적 디자인만을 부각시킨 사례가 많아 정보전달력이 미흡하며 일부 도시 내 과디자인을 유발하고 있다.
- 정보매체가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인접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정보매체의 시각적 상징성만을 우선으로 계획하여 주변공간과의 조화성이 미흡하다.
- 정보의 업데이트를 고려한 매체의 디자인이 필요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차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을 찾는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정보의 위계를 설정하고 정보매체간의 디자인적 연계성 부여를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정보매체 각각의 디자인보다는 도시차원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도시 내 과잉정보를 지양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동구릉을 포함하여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동구동의 경우 공공디자인의 우수사례와 지양 사례가 혼재하고 있어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인식 제고를 통해 우수 디자인의 단계별 확장을 권장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여성회관 신축사업 등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1	3	2	3	2	2	2	2	1	18

〈표 2-11 동구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3.4. 인창동

**개요**



- 인창동(2020년 07월 기준)은 면적 2.02km<sup>2</sup>으로 구리시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8,670세대 22,539명(남:11,078명, 여:12,461명)이 거주하고 있다.
- 인창동의 동측은 구릉산, 검안산, 망우산이 위치하여 산세가 도시 내부로 뻗어있는 입체적인 지형이며, 상대적으로 완만한 행정구역 서측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다.
- 도시의 지형으로 인해 경사면에 조성된 저층 주거지역의 밀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고층 공동주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우범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형으로 인해 옹벽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경관 및 공공디자인 환경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급경사로 조성된 기존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배려한 가로공간의 구조 체계를 마련하고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행안전시설물의 확충을 권장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공공간	인창중앙공원, 어린이보호구역, 경사지 이면도로 등	
공공건축물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경춘선 방음벽, 경사지 옹벽 등	
공공매체	공사가설울타리 위 도시슬로건, 시설방향안내사인, 위험안내사인 등	



〈그림 2-17 인창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공공공간 / 가로공간



- 인창동은 동구릉로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이면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가로공간이 차량 중심의 공간 구조로 조성되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 보도 폭이 좁거나 보차혼용도로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며, 이면도로 교차로의 경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양방향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도시의 원지형으로 인한 급경사 이면도로의 경우 노약자를 배려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의 경계시설과 일몰 후 일정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시설의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인창동과 동구동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인창중앙공원은 최근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공간구조를 경험할 수 있으나, 공원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은 주변 자연녹지와와의 조화성이 다소 미흡하다.
- 근린공원, 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운동시설)에 고채도 색상이 적용된 사계가 많아 겨울철 주변 녹지의 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된다.

공공공간 현황 종합

-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공간구조의 개선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공원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색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2019년 7월 노후된 기존 청사 재건축으로 인해 인근의 상업시설 2층 임대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주출입구에 대한 인지성이 다소 미흡하다.
- 간선도로에서의 접근성은 용이하나 주차공간(주차타워)이 매우 협소하고, 전면공지 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과 보도 사이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동선이 일부 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민원실 내부는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외부 복도(공용)공간은 조도가 낮고, 건물 내 동선 체계가 복잡하여 다른 목적의 기능시설 및 화장실 등으로 연결되는 안내체계의 시인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노인상담센터, 체육센터 등 거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준공시점이 오랜 시간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시설과 부분 리모델링한 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디자인 측면의 조화성이 미흡하다.
- 부분 리모델링 공간의 마감재 선정 시 색상 및 재질감을 부각시킨 계획보다는 밝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며 유행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시설 내부의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추후 디자인의 확장성을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내외부, 공공건축물, 도시차원의 디자인적 일관성을 부여한 계획이 요구된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건축물의 준공시점이 오랜 시간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의 거더, 교각, 방음벽 등의 구조체에 고채도 색을 적용한 사례가 많아 가로공간에서의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 경의중앙선 철도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경우 설치구간별로 다양한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어 도시차원에서의 높이, 색채, 재료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 시가지 내 옹벽 등에 적용되는 벽화사업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탈색, 변색 등이 진행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벽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재도색이 가능한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어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 설치되는 주변공간과의 조화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인창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한 지역의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품질이 우수하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권장사례와 지양사례를 공유하여 단시간 내 효과적인 개선을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너무 많은 공공정보가 노출되어 시각적 피로감이 우려되며, 내용의 전달 보다는 매체 자체의 시각적 상징성을 부각시킨 사례가 빈번하다.
- 서체의 크기 및 글꼴 등에 대한 위계가 불명확하여 시인성이 미흡하며, 출력물로 부착된 정보면의 탈색, 훼손 등으로 인해 가독성이 미흡하다.
- 공공정보매체의 내용(S/W)적 측면과 구조(H/W)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기준이 요구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의 건물명사인, 외부공간 안내사인, 시정홍보게시판, 실별안내사인, 각종 픽토그램 등의 위계 및 디자인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보전달력이 낮은 상황이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정보매체 각각의 디자인보다는 도시차원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도시 내 과잉정보를 지양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인창동은 구도심의 비율이 높아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를 통해 공공디자인 요소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재건축하는 공공청사 내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과 함께 주거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면도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제안한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1	2	2	1	1	1	1	1	1	11

〈표 2-12 인창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3.5. 교문1동

**개요**



- 교문1동(2020년 07월 기준)은 면적 7.55km<sup>2</sup>으로 구리시 면적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8,253세대 16,430명(남:8,332명, 여:8,098명)이 거주하고 있다.
- 교문1동은 구리시 내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동이며 도시 서측에 아차산과 망우산이 위치하여 산림자원을 배경으로 아차마을, 한다리마을 등의 특화된 전원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시청(본관 및 별관), 시의회, 아트홀, 여성회관(신축 중)이 집중 배치된 구리시의 중심행정타운을 형성하고 있어 시민은 물론 외부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다.
- 도시의 남북방향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아차산로와 동구릉로를 이용하는 통과교통량이 많아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환경을 인지도시킬 수 있는 공공공간이지만 차량 중심의 가로공간 구조로 계획되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구리시청을 중심으로 한 중심행정타운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공공디자인 환경을 개선하여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지도시키고, 기대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장시킬 것을 권장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공공간	구리시립체육공원, 이문안지(호수공원), 고구려대장간마을 등	
공공건축물	구리시청, 구리아트홀, 고구려박물관,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및 보행안전시설물	기대효과 우수
공공매체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안내사인 등	



(그림 2-18 교문1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공공공간 / 가로공간



- 아차산로-동구릉로를 이용하는 통과 교통량이 많아 도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조망되는 공공디자인 환경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주요 공공공간이지만 구리시만의 차별성이 미흡하다.
- 아차산로의 경우 차량 중심의 공간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며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
- 구도심의 이면도로는 보차혼용도로의 비율이 높으며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보행 동선은 물론 차량의 양방향 교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아차산로를 중심으로 시청을 포함한 중심행정타운의 맞은편에 위치한 이문안호수공원은 시청과 양방향으로의 개방성을 확보하여 중심행정타운의 위치성을 부각시키는 상징요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음을 제공하는 휴식공간의 조성이 요구된다.

공공공간 현황 종합

-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 내 이동할 경우 공공디자인 환경의 연속성을 부여하여 구리시만의 차별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중심행정타운의 상징성 및 위치성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시청 및 시의회는 경우 아차산로를 따라 이동하는 운전자의 시점에서 인지성이 미흡하여 진출입구의 개방감 확보가 시급하다.
- 시청(본관 및 별관), 시의회, 아트홀, 여성회관(신축 중)이 집중 배치되어 있으나 건축물 각각의 디자인적 연계성이 미흡하여 도시행정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이 미흡하다.
- 내부 공간의 천정고가 낮아 상대적으로 좁고 답답해 보이므로 불필요한 장식물을 최소화시키고 무늬목 보다는 중·고명도의 모노톤 색채 및 투명유리 등의 마감재 적용을 권장한다.
- 공공정보매체 및 가구 등에 적용한 고채도 색채가 주변공간과 부조화를 초래하며 복잡한 공간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공연전시장



- 구리아트홀은 금속 패널과 커튼월(투명 유리벽체)로 마감된 외관이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의 경우 다소 차갑고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 내부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비교하여 외부공간의 활용도가 낮으며, 입체적인 지형과 이용객의 조망시야를 전제로 한 식재계획 및 야외 휴게공간 조성계획 등이 필요하다.
- 경사면에 위치한 건축물 주출입구의 주요 동선에 단차 변화가 많아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자를 배려한 경사로 및 보행안전시설 등의 확충이 요구된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체육시설



- 구리 멀티스포츠센터와 구리시 체육관, 그리고 구리시 배드민턴장은 구리시립체육공원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이나 건축물 외관의 디자인적 연계성이 미흡하다.
- 체육공원의 입체적인 자연지형으로 인해 경사로 및 계단을 통해 접근해야 하므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 공공건축물 진입도로 및 건물간 연결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식재계획이 요구된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도서관



- 교문도서관은 1994년 준공되어 오랜 시간 시민들이 이용률이 높은 문화시설이지만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접근성이 다소 미흡하다.
- 리모델링을 진행한 일부 공간의 경우 밝고 쾌적한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화장실 및 계단실 등의 공용공간 등에 사용된 무늬목 필름, 적색 바닥재 등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도시행정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공청사를 포함한 문화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구리시를 상징하는 공공건축물로서의 인지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디자인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



- 도림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는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동선을 연결함과 동시에 서울방향에서 도시 내부로 진입하는 동선에서 상징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불필요한 장식물을 배제하고 기능성 및 안전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운전자 시점에서의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보행자의 안전성을 배려한 야간조명계획을 수립한 우수사례이다.
- 단,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 및 유모차, 짐수레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상부 캐노피의 경우 구조물의 부피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내구성은 우수하나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이 미흡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재료로 한 공공시설물이 많은 상황으로 구리1동 내 다른 공공디자인 요소와 비교하여 디자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표면이 변색되는 사례가 많아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합성목의 사용을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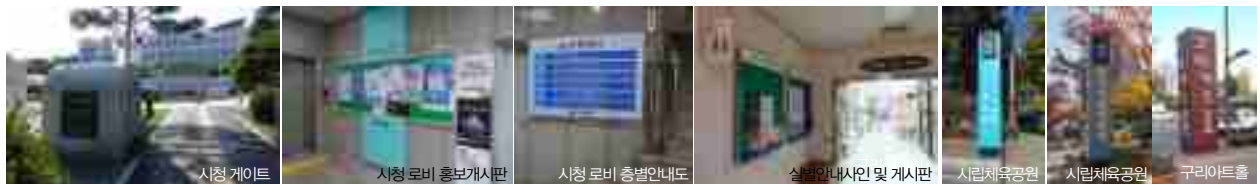
- 도시 내 공공시설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단계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아차산로를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물 개선 시범사업을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공공정보매체의 구조체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정보면의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지속성이 미흡하다.
- 정보매체가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성을 결여되어 있으면 정보매체 배면의 거친 마감이 노출되어 공공 공간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 정보매체의 설치 목적을 고려한 구조체의 디자인 및 내부 정보면에 대한 위계 설정이 필요하며, 도시 차원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추후 구리시 상징 서체의 개발을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시민의 민원업무가 집중되며 구리시의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시청 내·외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보 매체의 H/W 및 S/W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한 공공정보매체의 설치 위치, 규격, 크기 등의 매체의 디자인과 정보면의 색채, 서체(크기 및 글꼴), 배치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도시행정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집중된 교문1동의 경우 구리시만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표현하면서 공공건축물로서의 인지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단시간 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공정보매체,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공공 디자인 개선을 우선 시행하여 시민들과 행정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권장한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2	2	2	2	2	3	1	1	1	16

〈표 2-13 교문1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3.6. 교문2동

개요



- 교문2동(2020년 07월 기준)은 면적 1.15km<sup>2</sup>으로 구리시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7,951세대 22,514명(남:10,939명, 여:11,575명)이 거주하고 있다.
- 교문2동은 아차산로를 중심으로 교문1동의 중심행정타운과 마주하고 있어 간선도로 양변으로 조망되는 구리시만의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90년대에 건축된 고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장자대로는 보도의 유효 폭이 넓고 가로수의 식생 환경이 우수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한 상징가로의 조성이 용이하다.
- 면적 개념의 공원녹지인 장자호수공원이 교문2동과 수택3동에 걸쳐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며, 생태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 가로공간의 유효 폭이 넓어 주거지역에서 연결되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으나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및 안전성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공공간	장자대로 가로공간, 장자호수공원(일부), 광개토태왕 광장 등	
공공건축물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생태체험관 등	
공공시설물	자전거 거치대, 공원 내 편의시설물 등	
공공매체	공원 내 시설안내사인, 시설방향유도사인, 위험안내사인 등	



(그림 2-19 교문2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공공공간 / 가로공간



- 보도의 유효 폭이 넓은 장자대로 내 장애물존-자전거도로-보도로 연결되는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의 동선 구분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공간으로 육성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도 등에 고채도 포장색의 적용비율이 높아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차량의 속도저감구역, 자전거 상충구간 등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포장색의 기준과 상충되고 있다.
- 자전거이용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보관대의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보행 및 자전거의 동선과 중첩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장자대로와 아차산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조성되어 있는 광개토태왕광장은 서울방향에서 구리시 내부로 접근할 경우 조망성이 우수하나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
- 장자호수공원은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 내 자연녹지공간의 우수사례이나 생활공간과 인접한 소규모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도시 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자대로 내에 자전거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갈매동의 사례를 토대로 장애물존 - 자전거도로 - 보도로 연결되는 가로공간의 위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는 전면 유리벽체 위 유색의 고반사 슈트를 취부하여 공공건축물로서의 개방성이 다소 미흡하다.
- 공공건축물의 주차공간 조성 시 법적 대상인 장애인 주차구역을 우선으로 계획하되,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유모차, 임시 부상자) 등을 배려한 주차구역의 운영을 권장한다.
- 민원실 내부의 경우 무늬목을 주요 마감재로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어둡고 딱딱한 공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행정동 단위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와 함께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의 경우 각각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이나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이미지가 부족하다.
- 생태체험관은 장지호수공원 내에 위치한 문화시설로 외관은 주변의 자연녹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내부 공간의 마감은 다소 차갑고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찾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부여하고, 오랜 시간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마감재 및 가구의 선정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



- 입면녹화의 경우 우리나라의 계절변화에 따라 겨울철에는 미관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지양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구조체와 일정거리 이격시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중소교량의 경우 불필요한 기능의 장식을 설치할 지양하며, 야간 이용자의 안전성을 배려하여 보행등 또는 블라드 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장자대로 및 이문안로 등의 보행량이 많아 대중교통시설물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빈도가 높으나 시설물별 다양한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다.
- 차량진입방지의 목적과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설치하는 블라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료(석재, 스틸)와 높이, 폭(원형의 지름)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자전거보관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기능이 미흡하거나 노후된 시설물이 많아 기능성과 심미성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공디자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과 함께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가로공간의 개방성 유지를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구리시의 주요 거점공간인 장자호수공원 및 광개토태왕 광장, 주요 간선도로변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호 디자인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 정보를 접하게 되는 보행자와의 거리, 매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체 위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고풍택 스테인리스 스틸의 마감은 지양한다.
- 저상형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기존 5~6단 현수막게시대를 축소하여 제작하고 있으나 보차도 경계부에 설치됨에 따라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며 복잡한 가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행정복지센터 내·외부에 수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어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며, 방문객의 시점에서 정보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정보면 각각의 디자인과 완성도를 강조하기 보다는 **연접하여 설치되는 정보와의 위계 및 설치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구리시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자대로를 대상으로 가로공간의 위계를 정비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 도시 내 상징적인 거점공간이 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의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2	3	2	2	1	1	1	1	1	14

〈표 2-14 교문2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3.7. 수택1동

**개요**



- 수택1동(2020년 07월 기준)은 면적 1.58km<sup>2</sup>으로 구리시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9,041세대 18,629명(남:9,250명, 여:9,379명)이 거주하고 있다.
- 수택1동은 경춘로를 중심으로 인창동과 동구동이 마주하는 구리시의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춘로와 검배로가 교차하는 돌다리 사거리의 보행량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 인창수택재정비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사지역인근의 범죄예방 및 가로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측면에서의 관리가 요구된다.
- 보차혼용도로로 구성된 이면도로가 많아 불법주차 및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한 가로공간의 구조를 고려하여 보행동선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일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 검배로를 우수사례로 하여 보행자의 녹시율을 높이고 주야간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검배근린공원 및 왕숙천수변공원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생활공간과 밀접한 자연녹지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공공간	검배근린공원, 왕숙천수변공원 등	
공공건축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	보행안전시설(이면도로), 생활체육시설(근린공원 및 수변공원) 등	
공공매체	공원 내 시설안내사인, 시설방향유도사인, 위험안내사인 등	



〈그림 2-20 수택1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공공공간 / 가로공간



- 가로공간 개선사업이 완료된 검배로와 경춘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도가 매우 좁으며 가로수 및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유효폭이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1.5m 이하인 경우가 빈번하다.
- 유효폭이 좁은 보도 내 가로수 식재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식수형 장애물존 조성 시 교목의 식생환경을 고려한 폭원의 확보를 권장한다.
- 보차혼용도로로 조성된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경우 차량동선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보행동선을 확보하여 주·야간 상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왕숙천수변공원의 경우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나 급경사로 조성된 보행 진출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고체도의 포장색을 적용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경우 구리시 전체의 일관성 있는 포장색 가이드라인을 연계하여 배경이 되는 수목지공간과의 조화성을 도모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공간 현황 종합

- 일부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내 차량과 보행의 물리적인 동선 구분이 요구되며, 인근 주거지역에서 연결되는 보행 진출입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외관이 주변 주거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인지도가 향상되었다.
- 외관의 마감재는 중명도의 석재타일로 마감하여 간결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내·외부에 설치된 불필요한 장식요소가 부조화를 초래한다.
- 주출입구를 시작으로 배너형, 벽면 부착형, 게시판형, 천정 거치형 등의 다양한 공공정보매체를 부착하여 복잡한 공간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 기타



- 구리전통시장으로 연결되는 이면도로의 경우 노점이 운영되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정보매체의 체계도 미흡하다.
-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상 주차전용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칭패널을 외장재로 사용하여 내부 주차공간의 환기가 양호하다.
- 주차장의 층별안내사인, 구역안내사인 등이 부재하여 위치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장애인, 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안내사인의 시인성이 낮은 상황이다.
- 보행주출입구의 인지도가 미흡하며, 방문객의 인원 대비 내부 편의시설의 협소하므로 신축 예정인 제2 공영주차장 계획 시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공공건축물 본래의 기능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의 제공 및 공공서비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



- 왕숙천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왕숙천 보도육교의 경우 경사로를 조성하여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배려했으나 구조체에 고채도 도장색을 적용하여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 왕숙천을 횡단하는 왕숙교 하부 공간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를 배려하여 일몰 후 우범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검배로의 경우 가로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양호하나 보행량이 집중되는 경춘로는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설치 빈도가 높아 동구동, 인창동과 함께 도시차원에서의 연속성을 부여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왕숙천수변공원을 포함한 공원 내에 설치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은 배경이 되는 녹지의 계절별 색변화에 고루 조화될 수 있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을 권장하며, 원거리에서의 주목성이 필요한 안전설비 등에 대해서만 주목성이 강한 색채의 사용을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 보행량이 집중되는 검배로, 경춘로 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디자인의 품질 향상과 함께 보도 내 배치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수택천로에 설치된 현수막과 같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지정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현수막계시대의 추가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옹벽 및 담벼락에 적용되는 공공미술의 경우 선정기준이 부재하여 형태, 색채, 사용되는 재료 등이 매우 다양하며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 공공정보 표기 시 픽토그램(그림문자) 및 다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안내사인물의 규모, 형태, 색채, 설치위치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정보전달력이 낮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공공정보매체의 주요 목적인 정보전달을 우선으로 하여 불필요한 조형물 및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구리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가로공간의 공간구조 및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구시리의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경춘로를 대상으로 인창동, 동구동과 함께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1	3	2	1	1	1	1	1	1	12

〈표 2-15 수택1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공공공간 / 가로공간



- 수택2동 행정경계부에 위치하는 안골로, 검배로, 이문안로 등의 경우 도시차원에서 디자인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보차혼용 구조로 조성된 이면도로에 설치된 보도펜스 또는 방호울타리를 이용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도색만 적용한 경우 실효성을 미흡하다.
- 불법주차를 방지하지 위해 방호울타리 또는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가로공간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주거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나 공원 경계부의 차폐식재 및 경계시설물 등으로 인해 연접한 가로공간과의 시각적, 공간적 단절이 우려된다.
- 공원 내 지형의 변화가 급격한 사례가 많아 어린이, 노인,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모두를 배려한 보행 안전시설의 확충을 권장한다.

### 공공공간 현황 종합

- 보차혼용도로 내에서 보행과 차량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한 가로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보도와 연접한 공원경계부의 시각적, 공간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권장한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이면도로에 위치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도로에서의 인지도가 매우 미흡하며, 차량 주차공간은 물론 자전거 주차공간도 협소한 상황이다.
- 방문객이 많은 민원실 내부공간에 다양한 색의 무늬목 필름을 혼용하여 상대적으로 좁고 답답한 공간이 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청색의 공공정보매체와 상호 이질감을 나타내고 있다.
-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한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의 일관성과 상호 조화성을 고려한 부분 도색, 벽면 인테리어 필름 및 가구의 마감재 덧시공 등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한 개선공사를 권장한다.

공공건축물 현황 종합

■ 도로에서 공공건축물의 위치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건물명 안내사인의 설치가 필요하며, 도색 및 가구와 정보매체의 교체 등을 통해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공공건축물로의 개선을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으로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비율이 높아 일부 버스승차대 등을 제외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보도펜스 등에 거치하거나 방치된 사례가 많아 일부 민간시설과의 협조를 통해 가로공간의 미관을 고려한 자전거 보관대의 확충을 권장한다.
- 보차혼용도로 및 급경사의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블라드 등이 가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기능성과 심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 보차혼용도로 내에서 보행과 차량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보도펜스, 블라드 등의 기능을 대체하여 설치 가능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의 선정이 요구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공원 내 안내사인의 경우 반복적으로 표기되는 공통정보를 토대로 매체 및 정보면의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중소규모의 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이 지속됨에 따라 공사현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사용 가설울타리 위 안내사인 및 홍보사인 적용에 대한 도시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건물명안내사인, 주출입구사인, 주차안내사인, 종합계시판, 내부 실별안내사인, 부서안내사인, 화장실 안내사인 등에 적용된 서체 및 색채에 대한 일관성이 미흡하다.
- 도시 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구리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안내사인은 원거리에서의 인지성을 부각 시켜 운전자의 시점에서 빨리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도시차원의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공공정보매체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업을 권장한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인구밀도가 높은 구도심 지역으로 주거지역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동선의 물리적 구분을 위한 경계시설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 주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의 협조를 통해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여 가로공간의 공공디자인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유도를 권장한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1	2	1	1	1	1	1	1	1	10

〈표 2-16 수택2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3.9. 수택3동

**개요**



- 수택3동(2020년 07월 기준)은 면적 9,35km<sup>2</sup>으로 구리시 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9,106세대 22,116명(남:11,126명, 여:10,990명)이 거주하고 있다.
- 수택3동은 구리시의 서남측에 위치하며 한강 및 왕숙천과 면하고 있어 친수공간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 한강 남측에 위치한 강동구에서 수택3동을 포함한 구리시의 전경이 조망되므로 수변도시로서의 상징성이 뚜렷한 시가지 공공디자인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남구리IC 주변 개발가능지역은 향후 수변도시로서의 상징성과 구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도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 구리한강시민공원, 왕숙천수변공원, 장지호수공원은 구리시민은 물론 외부인의 방문이 많아 공원 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공공공간	구리한강시민공원, 왕숙천수변공원, 장지호수공원, 토평공원 등	집중 관리 필요
공공건축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리타워, 곤충생태관 등	
공공시설물	공원 내 편의시설, 보행안전시설 등	
공공매체	공원 내 종합안내사인, 시설안내사인, 시설방향유도사인, 위험안내사인 등	



<그림 2-22 수택3동 공공디자인 요소 분포도>

공공공간 / 가로공간



- 수택3동은 보도의 연속성이 우수하나 장애물존 및 자전거도로의 확보가 미흡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도의 확장이 요구된다.
- 토평초등학교 및 부양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조성되어 인지도가 명확하지만 암적색 포장 구간인 경우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공간 / 공원 및 휴양



- 구리시민한강공원, 왕숙천수변공원, 장지호수공원과 같은 도시 내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환경이 우수하여 시민들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나 주변의 상업시설 및 도시 내 관광 시설로의 동선 연계가 미흡하다.
- 대규모의 거점형 공원으로 생태환경이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공원 내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공공 정보매체 등의 디자인이 주변의 자연녹지와 조화롭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
- 공원 조성 시 주차공간과 편의공간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방문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공간 현황 종합

- 대규모 거점형 공원 및 휴양공간과 도시 내 상업시설,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외부 방문객의 동선을 확장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를 권장한다.

공공건축물 / 공공청사



-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공연장, 보건지소,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여성가족과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복합청사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2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층간 이동이 용이하여 어린이, 노약자, 유모차, 환자(보건지소 이용객)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 층별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기능시설 내부공간(벽면 인테리어 마감, 가구 디자인 등)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정보매체의 경우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구리시를 대표하는 복합청사로서의 상징성이 다소 미흡하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문화시설



- 행정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고체도의 원색을 이용한 벽면 마감 및 가구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 토평도서관은 인창, 교문도서관과 함께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개관하였으나 내부 시설의 유지관리상태가 우수하다.
- 성인, 어린이, 유아 등 이용객의 특성에 부합하는 열람실과 북카페, 카페테리아, 옥상 휴게공간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상시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우수사례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건축물 / 문화·복지시설 / 문화시설



- 구리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수자원정화시설시설과 함께 곤충생태관,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어린이교통 안전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어 유치원, 초·중·고생의 단체 견학이 용이하다.
- 곤충생태관과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의 경우 내부 전시컨텐츠가 일방향의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능동적인 체험을 유도하면서 다양한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건축물 /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내부 시설의 경우 점자, 촉지도, 보행동선의 안전바 등의 시설이 관련 기준에 맞춰 잘 조성되어 있다.
- 단, 일부 가구 및 벽면 그래픽의 경우 주변공간과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각종 안내 사인에 대한 디자인측면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공공건축물 / 기타



- 구리환경사업소 내부 정화시설의 시스템이 우수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의 방문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후된 건물 외벽 및 정화시스템을 홍보하는 안내사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공간 현황 종합

-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외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양호한 우수사례이나 일부 문화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확장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공시설물 / 도시기반시설물



- 왕숙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시야를 고려하여 교량 하부 거더, 교각, 교대 부분의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미관 개선이 요구된다.
- 박스형 통로 구조물의 경우 내부 공간의 우범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변 공간의 정비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24시간 감시장치 및 비상벨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 및 대수선 공사 시 불필요한 장식요소 및 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구조물의 시각적 상징성 보다는 도로의 연속공간으로 인지시킬 것을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물



- 구리시민은 물론 외부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규모 거점형 공원이 집중 조성되어 있어 공원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공원녹지를 배경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설치 시 주변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재 또는 유색 유리 및 유색 아크릴 계통의 마감재를 지양한다.

공공시설물 현황 종합

-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시각적 상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배경이 되는 자연녹지 등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전제로 계획하되 구리시민의 정체성을 부여한 디자인 공통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공간



- 다양한 디자인 유형의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보의 가독성이 우수한 사례가 적으며, 정보를 접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시각적 피로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



- 다양한 기능이 집중된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설별, 층별, 기능별 안내사인의 위계가 불명확하여 정보전달력이 미흡하며 정보량이 과다하여 복잡한 공간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 노인, 어린이, 인지장애인 모두 쉽게 찾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상위계획인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설치공간의 특성에 따라 크기, 수량, 설치 위치 등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현황 종합

▪ 대규모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이 다수 조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공공정보매체의 수량도 많으나 정보매체의 및 공공정보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여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결과

- 구리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거점형 공원 및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디자인 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디자인 요소 중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집중 개선을 통해 공공디자인 환경 전반에 대한 우수사례로 육성할 것을 권장한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진단 결과	2	3	3	3	3	1	2	1	2	20

〈표 2-17 수택3동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3.10. 종합분석

####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종합진단

- 구리시 내 8개의 행정동별 지역특성 및 공공디자인 요소별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가 <표 2-18>과 같다.

(우수 : 3 / 양호 : 2 / 미흡 : 1)

요소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소계
	가로 공간	공원 휴양	공공 청사	문화 복지	기타	도시 기반	공공 시설	공공 공간	공공 건축	
갈매동	3	3	2	2	2	3	3	2	2	22
동구동	1	3	2	3	2	2	2	2	1	18
인창동	1	2	2	1	1	1	1	1	1	11
교문1동	2	2	2	2	2	3	1	1	1	16
교문2동	2	3	2	2	1	1	1	1	1	14
수택1동	1	3	2	1	1	1	1	1	1	12
수택2동	1	2	1	1	1	1	1	1	1	10
수택3동	2	3	3	3	3	1	2	1	2	20
소계	13	20	16	15	11	13	11	10	9	-

<표 2-18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표>

-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점수(27점 만점)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한 진단지도는 <그림 2-00>과 같다.



<그림 2-23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지도>

- 구리시 내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또는 시범사업 선정 시 도시차원에서의 균형감있는 발전을 위해 행정동별 진단점수 및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 점수를 토대로 사업의 대상 및 내용의 선정을 권장한다.
- 향후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요소별 진단점수가 20점(27점 만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4. 관련 법규

### 4.1. 근거법

#### 공공디자인법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공공디자인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에 한번씩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공공디자인법 제6조)

제1장 총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유도</li> </ul>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li> <li>•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li> <li>•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li> <li>-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li> <li>-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li> <li>-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li> <li>-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li> <li>-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등</li> </ul> </li> </ul>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li> </ul>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li> </ul>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공공디자인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li>•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li> </ul>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의 기본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li> <li>-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 지향</li> <li>-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 유도</li> <li>-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li> <li>- 공공시설물 등을 관할하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구현 유도</li> </ul> </li> </ul>
추진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 설치</li> </ul>
전문가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li> </ul>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li> </ul>

〈표 2-19 공공디자인법의 주요 내용〉

## 4.2. 관련 법령

###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 공공디자인법 이외에 공공디자인, 경관, 유니버설디자인 등 관련 법령, 행정규칙, 상위 설계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한다.

<p><b>경관법</b></p> <p>국토교통부 제정 2007. 11. 08 개정 2019. 3.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 조성</li> <li>•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정의</li> </ul>
<p><b>건축법</b></p> <p>국토교통부 제정 1962. 1. 20 개정 2019. 4.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유도</li> <li>•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정의</li> </ul>
<p><b>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b></p> <p>국토교통부 제정 2006. 1. 27 개정 2019. 4.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유도</li> <li>•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li> </ul>
<p><b>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b></p> <p>국토교통부 제정 1999. 8. 9 개정 2015. 7.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 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 규정</li> </ul>
<p><b>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b></p> <p>보건복지부 제정 1997. 4. 10 개정 2016. 1.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li> <li>•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li> </ul>
<p><b>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b></p> <p>행정안전부 제정 2012. 2. 22 개정 2017. 7.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 유도</li> <li>•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li> </ul>
<p><b>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b></p> <p>행정안전부 제정 1996. 7. 6 개정 2017. 7.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유도</li> <li>•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의</li> </ul>
<p><b>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b></p> <p>행정안전부 제정 1996. 7. 28 개정 2017. 2.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 규정</li> <li>•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 축소 가능</li> </ul>
<p><b>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b></p> <p>행정안전부 제정 2011. 1. 21 개정 2017. 7. 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li> <li>• 초등학교 등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해당하며, 노인복지시설 등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으로 정의</li> </ul>
<p><b>산업디자인 진흥법</b></p> <p>국토교통부 제정 1977. 12. 31. 개정 2018. 12. 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li> </ul>

〈표 2-20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4.3.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 공공디자인법 이외에 공공디자인, 경관, 유니버설디자인 등 관련 법령, 행정규칙, 상위 설계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한다.

<b>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7.8.7</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유도</li> </ul>
<b>경기도 경관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6.12.16</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li> <li>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수립</li> </ul>
<b>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6.11.8</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li> <li>"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li> </ul>
<b>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9.10.1</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유도</li> <li>"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종합계획"이란 도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내 31개 시·군이 고르게 증진 및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세우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정의</li> </ul>
<b>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9.10.1</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유도</li> <li>"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정의</li> </ul>
<b>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7.11.13</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li> <li>"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li> </ul>
<b>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9.11.12</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하는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li> <li>"공공시설물"이란 교통시설물, 위생시설물, 휴게시설물, 광고시설물, 보행시설물, 판매·관리 시설물,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인정하는 시설물로 정의</li> </ul>
<b>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9.8.6</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주민의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li> <li>"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으로 정의</li> </ul>
<b>경기도 건축 기본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6.5.17</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li> </ul>
<b>경기도 건축 조례</b> <small>일부개정 2019.10.31</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li> </ul>
<b>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b> <small>제정 2016.1.4</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li> </ul>

〈표 2-21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4.4.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li> </ul>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이란 구리시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li> <li>•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li> <li>•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li> <li>-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li> <li>-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li> <li>-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li> <li>-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li> <li>-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등</li> </ul> </li> </ul>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li> <li>-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ul>
주민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li> <li>•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li> </ul>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아래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li> <li>- 법 15조 및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li> <li>- 별표1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li> <li>- 제2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li> </ul> </li> </ul>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li> <li>•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 수립</li> <li>•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 상정</li> <li>•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li> <li>•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이 불가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 후 적용</li> </ul>

〈표 2-22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주요 내용〉

## 4.5.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이외에 도시계획, 경관, 건축 등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2-23>과 같다.

구분	세부 내용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6.20 /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li> <li>구리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li> </ul>
구리시 건축조례 시행 2018.10.2 / 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li> <li>구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li> </ul>
구리시 경관조례 시행 2016.5.9 /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li> <li>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li> <li>공공건축물</li> <li>공공시설물</li> <li>공공매체</li> </ul>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시행 2017.6.19 /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li> <li>"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li> <li>공공건축물</li> <li>공공시설물</li> <li>공공매체</li> </ul>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5.26 /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공원, 녹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li> <li>도시지역 내 기존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li> <li>공공시설물</li> <li>공공매체</li> </ul>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시행 2017.9.25 /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21조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li> <li>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조성·관리</li> </ul> <p>* 별표 1 : 광로(40m 이상/병렬다층식), 대로(25~40m/병렬식), 중로(12~25m/다층식), 소로(12m 미만/단열단층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li> </ul>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 /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li> <li>"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상징조형물(동상·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과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그리고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매체</li> </ul>
구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 2019.4.15 /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li> <li>"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li> <li>"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li> <li>공공시설물</li> </ul>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7.12.13 /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li> <li>공중화장실 등 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건축물</li> <li>공공시설물</li> </ul>

<표 2-23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 5. 상위계획 및 실행계획

### 5.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목표와 의의**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한다.

**계획의 기본방향**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구조, 대상, 주체, 효과, 방식 등의 5가지 내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그림 2-24>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구조	개별 ▶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별, 지역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던 사업과 정책을 상호 협력·연계하는 형태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모형 개발</li> </ul>
대상	물리적 환경 + 서비스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 옴팡 등의 물리적 공공디자인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도구, 체계 등을 포괄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의 확대</li> </ul>
주체	정부 + 지자체 +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지자체, 기관 주도의 공공디자인에서 주민 소통 및 참여를 통한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실현</li> </ul>
효과	이벤트 ▶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회성, 보여주기식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국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제시</li> </ul>
방식	재개발 ▶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획일적, 기계적 개발방식에서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유지 발전시키는 접근 정착</li> </ul>

<그림 2-24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	
목표	“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	
추진 전략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li> <li>교통안전 디자인</li> <li>재난대비 안전 디자인</li> </ul>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li> <li>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li> <li>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li> </ul>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li> <li>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li> <li>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시설 만들기</li> <li>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li> </ul>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li> <li>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li> <li>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li> <li>밤에도 품격 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li> <li>공공공간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li> </ul>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디자인 교육 및 참여 확대</li> <li>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li> <li>공공디자인 R&amp;D 기반 조성</li> <li>공공디자인 관리 및 검수체계 구축</li> </ul>

<그림 2-2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전략>

## 5.2.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 비전과 목표**
- 상위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비전을 수립한다.
  - 종합계획의 목표가 지니는 함의를 포용하면서 경기도 도정 비전인 공정, 평화, 복지의 가치와 시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비전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공공디자인”
목표	“시·군을 함께 이끌어가고 도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디자인”

〈그림 2-26 경기도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 경기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은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평가체계 확립으로 구분되는 3가지 전략과 6가지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기초를 확립한다.
  -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며 품격을 높이는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고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평가로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유도하는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b>기반 구축</b>	명확한 공공디자인 운영체계 및 관리를 통한 튼튼한 기반 구축
--------------	-----------------------------------

» 기초를 세우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의 정책과 사업의 관리 체계를 정리·통합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공디자인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행정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 도모
- 도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

<b>사업 추진</b>	도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높은 공공디자인 구축
--------------	-----------------------------------

» 생활 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공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더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감 향상
- 다양한 사용자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공간 조성

»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디자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산
- 경기도의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문화환경 조성
- 도민들의 전반적인 보행권 향상을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과 시설 조성

» 알기 쉬운 공공디자인

-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내체계 구축으로 접근성과 이동의 편리함 향상
- 길 찾기 안내 체계의 표준화로 경기도 어디서나 일관된 공공정보가 제공되는 환경 조성

»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지역의 다양한 공간 특성에 맞고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 품격 향상
- 공개공지의 환경 개선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로 소통하는 지역 이미지 형성
- 도민의 유희공간 확보와 도민간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b>평가체계 확립</b>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발전 도모
----------------	---

» 순환하는 공공디자인

- 일관되고 통일된 조사방법을 적용한 공공디자인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림 2-27 경기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 5.3.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 2020년 현재 광역에서 개발하여 운영중인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총 20종이 수립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2-24>과 같다.
- 향후 추가로 수립되거나 내용의 업데이트되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 등의 경우 최신의 내용을 준용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 법·제도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설계지침이 수립될 경우 법·제도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 광역계획(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위계에 따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No.	수립 연도	명칭	밀접도			공공디자인 영역			
			매우 밀접	밀접	보통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매체
01	2020(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02	2020(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03	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04	2012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05	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06	2011	경기도 보금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07	2012	경기도 광역 환승거점 버스승강장 디자인							
08	2010	경기도 택시승강장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09	2011	경기 명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0	2013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디자인 가이드라인							
11	2013	경기도 자전거주차장 표준디자인							
12	2011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13	2012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14	2012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15	2013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16	2013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17	2008	경기도 공사안내 표시 디자인 매뉴얼							
18	2015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디자인 가이드라인							
19	2014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경기도							
20	2014	캠핑시설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21	2014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표준설계 디자인							
22	매년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 (제품안내)							

<표 2-24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수립 현황>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서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단, 공공매체 중 공공미술 분야는 제외함.)
-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지향하고 공유해야 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고려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으로 조화성, 확장성, 안전성, 효율성, 일관성, 지속성, 범용성, 개방성, 가독성, 편의성, 접근용이성, 심미성, 상징성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해당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 5.4. 2020년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계획의 배경** - 상위관련계획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구리시 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정체성(Identity) 확립을 위한 도시미래상 정립 등 도시여건의 변화 수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을 수립한다.

**계획의 성격**

- 상위 또는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구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 구리시의 공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까지도 포괄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 변화와 함께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 구리시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기반시설 확충 등의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 도시미래상

<b>역사·문화도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역사의 흔이 서려있는 동구릉과 아차산을 연계하여 역사문화 공간 조성</li> <li>• 고구려 및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투어형 테마파크] 조성</li> </ul>
<b>친환경도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호한 자연환경(동구릉-아차산-한강-왕숙천)과 조화된 친환경 도시건설</li> <li>• 장지못을 생태근린공원화하여 친환경 교육의 장 및 교육휴식공간 조성</li> </ul>
<b>유통·서비스도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지식집약형 정보유통도시건설</li> <li>• 지리적 교통요충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서비스거점도시 건설</li> </ul>

〈그림 2-28 구리 도시미래상〉

### 도시개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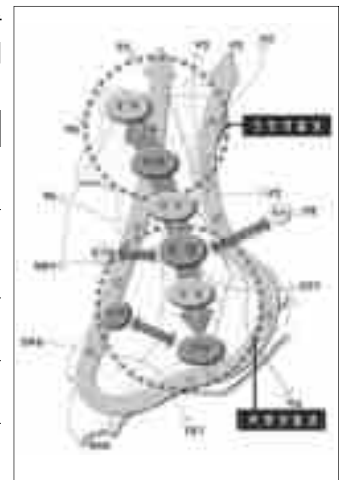
- 조선·고구려 문화유산을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역사문화테마도시 조성**
- 산악경관과 수변경관 등 도시 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테마도시 조성**
-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지식 집약적 정보유통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 거점도시 조성**
-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을 수용하여 **도시전체의 공간체계 구성**
- 광역교통망과 도시 내 **교통망**의 유기적 연계도모 및 도로의 **기능별 위계 정립**

〈그림 2-29 구리 도시개발 목표〉

### 도시공간구조

- 도시공간구조의 설정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하천 등의 특성과 기존 시가지 형성구조, 개발가능지 분포, 도시성장축을 감안하여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구분	주요 내용
공간구조	• 2개의 중생활권(도평, 인창)과 7개의 소생활권(교문, 도평, 수택, 아천, 인창, 갈매, 사노)으로 구분
개발방향	• 기존생활권을 반영하고 갈매지역의 시가지확장을 고려한 도평 - 수택 - 인창 - 사노 - 갈매의 남북축 기능 강화
토지이용	• 기존시가지의 확장과 함께 도시개발축을 중심으로 낙후된 북측지역의 개발 유도
교통	•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기존 국도를 중심으로 각 생활권의 연계체계 구축
오픈스페이스	• 퇴계원 - 동구릉 - 아차산으로 연결되는 산악녹지축과 왕숙천 - 한강을 연결하는 수변경관축 형성



〈표 2-25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계획표〉 〈그림 2-30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도〉

## 5.5.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계획

### 계획의 개요

- 구리시의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측면에서 도시비전과 발전전략, 정책과제 및 전략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 구리시의 주요 이슈

서울의 베드타운 짧은 정착기간	소비일변의 도시 신도시개발로 인한 위상변화	양호한 자연환경 지역관광 및 농업자원	경기도의 젊은 도시 도시와 전원의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 취업자 중 거주지 외 통근비율 64.7%</li> <li>• 거주기간 5년미만 전체의 25%, 그 중 20~30대의 비율 6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수 전체의 90.5%</li> <li>•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업중심의 이동 및 인구 유출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차산과 동구릉을 잇는 녹지생태축, 한강과 양속천을 잇는 수변축 형성</li> <li>• 동구릉, 아차산 고분군 보루 등의 관광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출발 지점에서 선택하는 도시</li> <li>• 젊은 인구의 도시문화와 가족 단위의 전원생활이 복합된 생활권</li> </ul>

### 도시발전비전 체계

“희망을 시작하는 곳, 구리 행복특별시”			
발전목표	주요 정책과제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전략사업	
더 오래 살고 싶은 복지교육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시민 / 다문화통합</li> <li>• 주민복지 / 평생학습</li> <li>• 안심도시 / 여성친화도시</li> <li>• 선진보육체계 / 학교교육</li> <li>• 장애인 / 노인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자호수공원 동물교감차유공원 조성</li> <li>•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어르신 기억도서관</li> <li>• 세대공감 모래·정원 놀이터 조성</li> <li>• 선진놀이교육 보급 실내 안전놀이터</li> <li>• 인지증 공동체 돌봄마을</li> </ul>	
4차산업 지식공유 스마트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산업혁명 육성</li> <li>• 신성장산업 / 일자리창출</li> <li>• 사회적경제 육성</li> <li>• 소상공인 경영혁신</li> <li>• 친환경 도시농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도시 구리를 위한 스마트 종합 대책</li> <li>• 시민이 만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li> <li>• 갈매 스마트 헬스 지식산업 센터</li> <li>• 정원에서 공부하는 교실 혁명</li> <li>• 4차 산업 주도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li> </ul>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친환경주거단지</li> <li>• 임대주택 공급</li> <li>• 미세먼지 저감 / 공원녹지</li> <li>• 재생에너지/자원순환</li> <li>• 친환경 교통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창 C, 수택 E 재정비</li> <li>• 구리역 공공허브 물리적 접근성 개선</li> <li>• 구리역 환승센터 설치</li> <li>• 조립식 천연잔디 차 없는 거리 조성</li> <li>• 1공동주택 1발전소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등)</li> </ul>	
시민여가중심 관광활력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인프라 구축</li> <li>• 문화관광상품 개발</li> <li>• 문화축제 개발</li> <li>• 문화콘텐츠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통사도시 구리 조성</li> <li>• 갈매동 전통문화특화지역 조성</li> <li>• 빛과 허브식물을 활용한 건강한 빛 축제</li> <li>• 동구릉 입구 광장 한문화체험마을 조성</li> </ul>	
시민이 만드는 자치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li> <li>• 행정혁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랜드마크 행정복지센터 건립</li> <li>• 공모사업 대응태세 강화</li> </ul>	
			

(그림 2-31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전략 체계)

## 5.6. 2020년 기본경관계획

### 계획의 배경

- 구리시 전역의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형성 및 유도·관리를 위한 적용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구리시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우리 시에 잠재된 도시·자연·역사·문화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관형성·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정체성을 확립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을 추구한다.

###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 향유하는 감성(感成)도시 구리 ”		
역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있는 경관만들기</li> <li>-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및 정비(동구릉, 아차산보루군 등)</li> <li>- 역사·문화거점경관 형성(고구려/조선왕조테마공원 등)</li> <li>- 흔적이 있는 문화거리(시청 일대) 조성</li> </ul>	
친환경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가능한 자연과 수자원을 만끽하는 경관만들기</li> <li>- 산림(아차산·동구릉)조망경관 관리 및 확보</li> <li>- 공원·녹지 및 수자원의 정비 및 관리</li> <li>- 저수지 공원화 및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등</li> </ul>	
시민중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교류하고 풍요로운 삶을 소통하는 경관만들기</li> <li>- 갈매역(철도역) 주변 이벤트광장 조성</li> <li>- 쌈지공원 조성 및 걷고 싶은 거리(등곶길)조성</li> <li>- 경관시범사업 및 경관협정사업 유도</li> </ul>	
신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매력적인 경관만들기</li> <li>- 도시스카이라인의 관리 및 형성</li> <li>- 상징거점(시청, 교문사거리, 구리타워)의 관리 및 형성</li> <li>- 야간경관특화방안 마련</li> </ul>	

〈그림 2-32 구리시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 경관기본전략 및 경관기본구상

-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관자원의 현황 및 도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전, 관리, 형성으로 구분한 전략을 수립한다.

구분	주요 내용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하여 구리시만의 자연적, 역사적 특성 지속</li> <li>• 우수한 조망경관 (동구릉, 아차산) 보전</li> <li>• 수변경관(한강, 왕숙천) 보전</li> <li>• 역사문화자원경관(문화재, 문화시설) 보전</li> </ul>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설계지침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시경관 관리의 틀 마련</li> <li>• 가로경관에 대한 경관설계지침 제시</li> <li>• 도심경관 및 철도경관에 대한 경관설계지침 제시</li> <li>•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제시</li> </ul>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시범사업과 협정사업의 추진을 통해 향유하는 감성도시 구리시 실현</li> <li>• 경관시범사업 제시 (가로 정비, 광장 및 시설정비 등)</li> <li>• 경관협정사업 제시 (문화거리조성,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등)</li> </ul>

〈표 2-26 구리시 경관기본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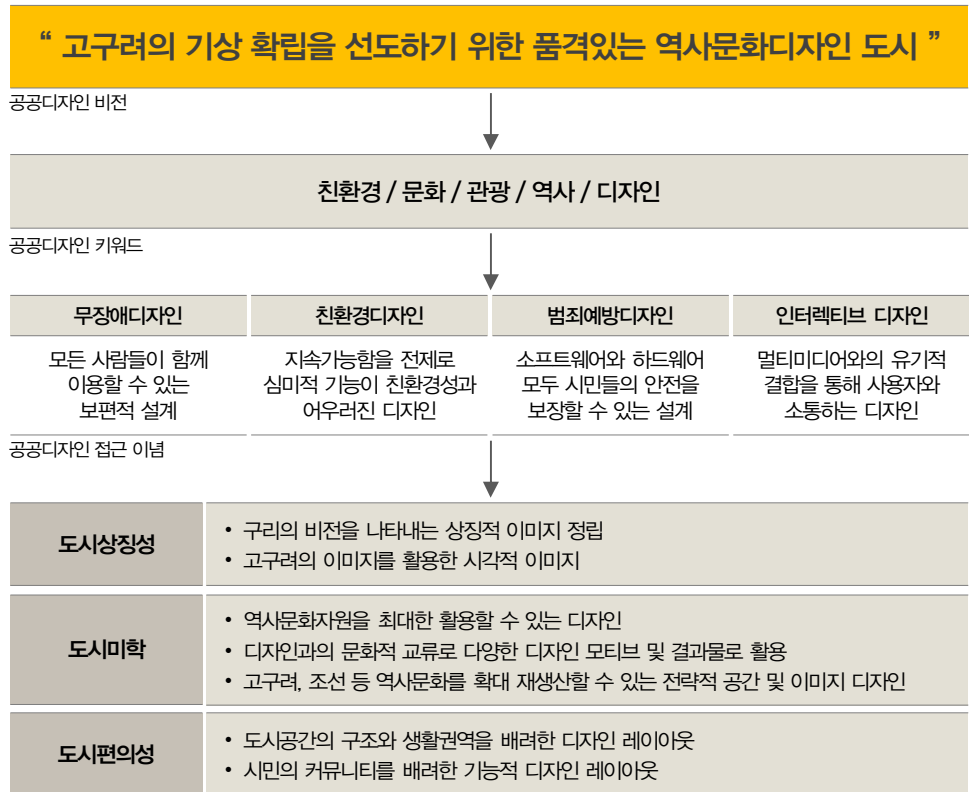
〈그림 2-33 구리시 경관기본구상도〉

## 5.7.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

- 구리시의 가치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통합디자인 개념의 공공디자인 방향과 목표를 정립하고 도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공공디자인을 창출한다.
- 물리적, 시각적으로 시민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도시시각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본구상을 제시한다.

###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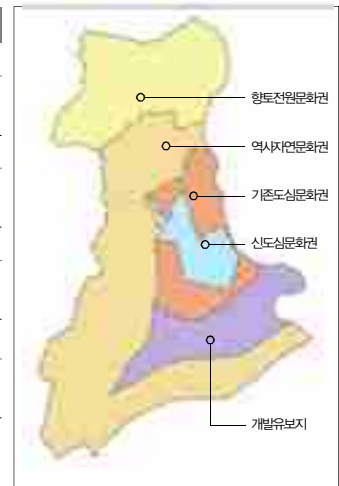


〈그림 2-34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및 로드맵〉

### 공공디자인 권역별 기본방향

구분		주요 내용
기존도심 문화권	대상	• 교문동, 토평동, 인창 1, 2 택지 개발지
	기본 방향	• 활력 넘치는 중심권역 조성을 위해 기존 도심 구성요소 업그레이드
신도심 문화권	대상	• 인창동, 수택동 일원
	기본 방향	• 미래를 담은 신개념의 주거환경 및 생활공간
역사자원 문화권	대상	• 아차산길, 동구릉길 서쪽편 지역
	기본 방향	• 역사와 지역테마가 있는 활동과 이벤트가 있는 복합공간
향토전원 문화권	대상	• 동구동, 갈매동, 벌말지구
	기본 방향	•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여유로운 공간
개발 유보지	비고	• 현재 그린벨트 구역으로 도시정비계획에 맞추어 역사자연문화권 또는 신도심문화권으로 흡수 예정

〈표 2-27 구리시 공공디자인 권역별 기본방향〉



〈그림 2-35 구리시 공공디자인 권역〉

## 5.8.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사업

- 구리시의 시정비전 및 분야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19년 구리시의 주요업무계획 중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사업은 <표 2-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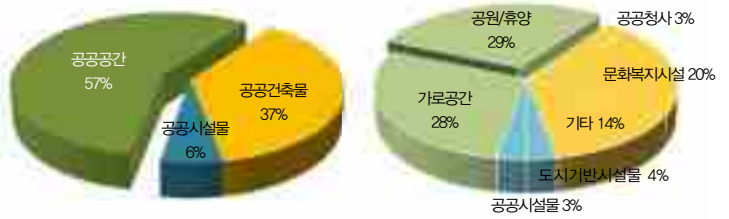
분야	구분	사업명	사업연도					공공디자인 영역			
			18	19	20	21	22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매체
A.안전	A-1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						■			
	A-2	안전한 등굣길 조성 및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			
	A-3	구리전통시장 제2주차빌딩 건립							■		
	A-4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		
	A-5	도시 녹색정원 조성						■			
	A-6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문안 햇살골목 조성									
	A-7	보행자 중심 구리역~청소년수련관 배품길 조성						■			
	A-8	왕숙천 세원교 철거 및 재설치									■
	A-9	토평초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			
	A-10	신나는 뭉돌이터 조성사업									
	A-11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조성									
	A-12	검배공원 조성사업									
	A-13	명품 가로숲길 조성									
	A-14	곤충생태공원화 조성사업						■			
B.경제	B-1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			
	B-2	갈매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벤처창업지원센터)							■		
	B-3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설							■		
	B-4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C.문화	C-1	고구려대장간마을 활성화 추진						■			
	C-2	고구려(아차산)역사공원 추진									
	C-3	자연쉼터 가족캠핑장 조성							■		
	C-4	갈매공공 체육시설 건립							■		
	C-5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			
	C-6	검배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		
	C-7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		
D.복지	D-1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		
	D-2	갈매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			
	D-3	무장애도시 조성									
	D-4	장애인 및 일반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
	D-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							■		
E.교육	E-1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2019 투자/ 건설 사업	F-1	갈매지구~용암천 왕숙천간 자전거도로연결 개설공사						■			
	F-2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			
	F-3	시청사 증축건립							■		
	F-4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		

<표 2-28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주요 사업>

**사업의 주요 영역**

- 2019년 구리시의 주요업무계획 중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총 35건이며 공공디자인 영역 중 공공공간 관련 사업 20건(54%), 공공건축물 관련 사업 13건(40%), 공공시설물 관련 사업 2건(6%)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 관련 사업 진행 시 내·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 등이 포함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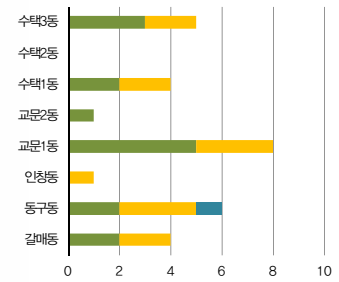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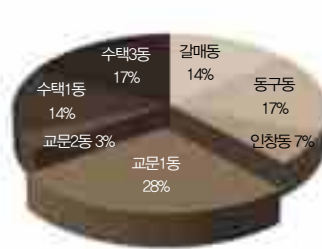
공공 공간	가로공간
	공원/휴양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기타
공공 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공공 정보매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표 2-29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영역 분석표〉

**사업의 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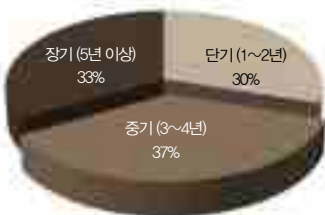
- 2019년 구리시의 주요업무계획 중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대상지역을 분석한 결과 행정청사가 밀집된 교문1동이 8건(28%)의 비율이 높으며 수택2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다.
- 구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 및 사업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수택2동, 교문2동, 인창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추가 개발이 요구된다.



〈표 2-30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대상 분석표〉

**사업의 기간**

- 2019년 구리시의 주요업무계획 중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기간을 단기(2년 이하), 중기(2년 초과~4년 미만), 장기(4년 이상)로 구분할 경우 중기 사업이 총 11건(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지속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단기 사업의 완료 후 준공 후 피드백(진단)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장기 사업에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분류	피드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시	기간
A-1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	중기
A-2	안전한 등갯길 조성 및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중기
A-7	보행자 중심 구리역 ~ 청소년수련관 배품길 조성	단기
A-9	토평초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단기
D-1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장기
E-3	시청사 증축 건립	단기

〈표 2-31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기간 분석표〉

## 6. 유사사례

### 6.1. 국내사례 1: 행정중심복합도시

#### 도시 개요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기면, 금남면 일부
- 면적 : 72.91km<sup>2</sup> (구리시의약 2.1배)
- 인구 : 2019년 6월 기준 237,338명 (구리시의약 1.2배)
- 주요 특징 :
  - 2007년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원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그림 2-36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구역〉

####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디자인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부여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도시를 도시이미지로 설정하고 "Green Design"이라는 공공디자인 설계 주제를 도출하여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속성에 충실한 인간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모범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환상도시”

공공디자인 설계 이미지

절제된 디자인 / Simple	조화로운 디자인 / Harmony	맥락적인 디자인 / Sequ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장식성을 지양하고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li> <li>• 자연을 강조하고 인공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한 디자인</li> <li>• 누구나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간단한 디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도시와 인간이 조화되는 디자인</li> <li>• 통합성과 차별성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디자인</li> <li>• 시간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하며 경험하는 이미지의 연속성을 고려한 디자인</li> <li>•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li> <li>• 단계적 도기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li> </ul>

공공디자인 설계 원칙

〈그림 2-37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공공디자인 계획의 주요 특징

- 대규모로 개발되는 계획도시의 특성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계 성과물을 제시하는 공공디자인 설계영역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만의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공공공간 통합설계를 진행하였다.
- 도시의 공공디자인 이미지, 설계 주제, 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요소보다는 주변공간과의 조화성을 강조하여 도시의 배경이 되는 공공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한 공공공간 통합설계의 경우 보도-자전거도로-장애물존으로 연결되는 가로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공공시설물, 토목, 전기, 조경, 건축 등의 공정간 분리발주한 설계를 통합조정된 설계도를 작성한 후 시공함으로써 도시차원의 통합설계를 유도하였다.
- 공공공간 통합설계를 통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차별화는 물론 공공시설물 설치수량의 최소화, 가로수(교목 및 관목)와의 규칙성 등을 통해 도시차원에서의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중복시공의 예방을 통한 비용의 절감, 행정의 효율성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그림 2-38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현황〉

## 6.2. 국내사례 2: 하남시

### 도시 개요

- 위치 : 경기도 하남시(13개 행정동)
- 면적 : 93.05km<sup>2</sup> (구리시의약 2.8배)
- 인구 : 2019년 11월 기준 271,574명 (구리시의약 1.4배)
- 주요 특징 :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17년 착수하여 2018년 9월 경기도에서 첫번째로 지역진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사업, 관리방안 등의 로드맵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9 하남시 행정구역〉

###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하남시 내에 위치한 한강, 검단산 등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예술, 체육 등 시민참여를 도모하는 문화교류 공공디자인, 지역의 역사를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역사·공감 공공디자인을 실행하여 하남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발현하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공공환경 조성 “자연, 문화,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하남”

공공디자인 비전

생활문화 활성화 공공디자인	역사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이웃을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이웃을 배려하는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역사·테마	생활·안전	생태·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체육 거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상생활 기반의 고품격 도시문화 지원 공공디자인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문화재의 테마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연결성있는 역사 공간 체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택지지구와 원도심의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 공공 디자인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변 친수공간과 활용형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여가생활 공간의 다양화</li> </ul>

공공디자인 전략

〈그림 2-40 하남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전략〉

### 공공디자인 계획의 주요 특징

- 공공디자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사업 20개소를 발굴하여 사업 단위의 추진 용이성을 향상시키고 부서간 이해를 돕고 협업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다.
- 공공환경이 새로 형성되고 있는 신규택지지구와 달리 열악한 원도심 지역 공공디자인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도심 공공디자인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공공디자인 전략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계획-실행-관리의 3단계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진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공디자인 정책은 공공시설의 공공적 사용성을 담는 전략, 공공디자인 사업은 단위 사업개념으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공공디자인 관리는 사업의 예산과 제도적 시스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2-41 하남시 공공디자인 전략사업 대상지 및 시범사업 예시안〉

### 6.3. 국외사례 1: 리옹(Lyon)

#### 도시 개요

- 위치 : 프랑스 남동부 오베르뉴 론알프주
- 면적 : 47.87km<sup>2</sup> (구리시의 약 1.4배)
- 인구 : 2016년 1월 기준 513,275명 (구리시의 약 2.6배)
- 주요 특징 :
  - 손강의 서쪽, 론강의 동쪽에 위치한 리옹은 매해 개최되는 빛 축제,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예술,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융합의 도시이며, 구시가지의 보존과 재생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디자인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그림 2-42 리옹시 행정구역〉

####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과거 레지스탕스(저항)의 본거지로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좁고 복잡한 도로로 인해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시재생을 위해 역사적 문화유산들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였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디자인 “**빛(Lumieres)의 도시 리옹(Lyon)**”

도시 공공디자인 정책

빛으로 물드는 수변도시	걸으면서 만나는 예술문화도시	유서 깊은 역사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천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리옹 구시가지(Vieux Lyon)와 푸르비에르(Fourvière) 언덕 주요 유적지, 강둑, 시가지, 거리 등 도시 전체가 빛의 캔버스가 되어 화려한 축제를 만나기 위한 관광객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가 "토니 가르니에"의 도시 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리옹 구시가지 내 벽화마을 조성</li> <li>• 노후된 건축 외벽을 이용하여 사실 감있는 벽화 작품을 연출하고 정기적인 리뉴얼 진행 (Cite Crea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유 리옹(Vieux Lyon)은 리옹의 구시가지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대 로마 원형극장을 포함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고 도시의 입체적인 지형으로 인해 주야간 도시 전경의 조망성 우수</li> </ul>

리옹의 공공디자인 차별화 전략

〈그림 2-43 리옹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공공디자인 계획의 주요 특징

- 좁은 도로와 급경사의 지형, 2개의 강(론강과 손강)과 접하고 있는 수변도시 등 리옹시만의 구조적 특성과 자연경관을 전제로 한 도심재생사업(Blue Plan)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콩플뤼앙스(Confluence)는 수변 구도심 재생사업의 선진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 도시 내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도 및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차로)의 연속성 및 주행성을 향상시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성공하였다. (단, 차량의 저속 주행이 불가피한 도로 구조임)
- 1989년 당시 리옹의 시장이었던 앙리 사베르가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도시조명계획을 시도하여 2000년부터 매해 12월 8일 전후로 개최되는 리옹 빛 축제가 시작되었다.
- 2018년 개정된 도시조명계획에 따라 리옹은 350여개의 건축물과 관광지로 빛나는 아름다운 야경 도시가 되어 빛 축제기간 이외에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4 리옹시 경관조명 및 빛 축제 이미지〉

## 6.4. 국외사례 2: 코펜하겐(Copenhagen)

### 도시 개요

- 위치 : 덴마크 셸란 섬 동쪽 해안
- 면적 : 86.39km<sup>2</sup> (구리시의약 2.6배)
- 인구 : 2019년 10월 기준 633,021명 (구리시의약 3.1배)
- 주요 특징 :
  - 바이킹 어촌 마을이었던 코펜하겐은 15세기 초 덴마크의 수도가 되었으며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시내 중심가에 보행자 거리와 자전거 트랙이 조성된 이후 도시 내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하였다.



〈그림 2-45 코펜하겐시 행정구역〉

###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코펜하겐은 자전거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오는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제로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도시의 재생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꾸준히 수립하고 있다.

자전거의 천국 “유럽의 녹색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도시 공공디자인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감성이 숨쉬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운 동화를 배경으로 전통과 현대감각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북유럽 디자인의 선진 도시</li> <li>• 모던과 혁신을 기반으로 코펜하겐 고유의 환경과 역사를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개념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관련 정책 추진</li> <li>• 자전거의 주행성, 안전성, 편의성을 배려한 도시 내 390km의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도시 면적86.39k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펜하겐을 상징하는 풍경으로 유명한 누하운(Nyhavn)은 다채로운 색채를 가진 목조주택이 늘어서 있는 지역으로, 옛날 선원들이 항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술집 거리를 그대로 간직한 역사문화 보존지구 조성 (도시 랜드마크)</li> </ul>

코펜하겐의 공공디자인 차별화 전략

〈그림 2-46 코펜하겐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공공디자인 계획의 주요 특징

- 코펜하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도심 내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유도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2018년 자전거 통행량이 전체 이동수단의28%를, 통근 수단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 덴마크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12,000km 이상의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차도 및 보도와 연속적으로 분리된 2m 내외의 자전거 도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 자전거를 대중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차, 지하철을 통한 자전거 수송을 허용하고 자전거를 위한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통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해줄 수 있는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Cycle Snake)와 교외지역의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Cycle super highways)를 운영 중이며, 도심 내 자전거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림 2-47 코펜하겐시의 자전거 관련 시설 이미지〉

## 6.5. 국외사례 3: 가나자와(Kanazawa)

### 도시 개요

- 위치 :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 면적 : 468.63km<sup>2</sup> (구리시의약 14배)
- 인구 : 2019년 6월 기준 464,263명 (구리시의약 2.3배)
- 주요 특징 :
  - 에도시대부터 도시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꾸준히 계승함과 동시에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아시아 국가 중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가나자와시만의 도시 경쟁력과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2-48 가나자와시 행정구역〉

###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400년 이상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에는 역사가 보존된 거리가 남아 있으며,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으로 상징되는 현대 예술과 새로운 문화가 전통 위에 더해지며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견고 싶은 도시 “역사·문화·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가나자와”

도시 공공디자인 정책

자연경관에 순응하는 도시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품격도시	시민 참여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자연경관에 순응하는 도시 색채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도시의 도시의 자연과 역사문화가 돋보이는 공간환경 조성</li> <li>• 도시 권장색은 가나자와의 전통적인 거리 풍경으로서 땅의 색채와 나무의 색채를 기준으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관련 정책 추진</li> <li>• 자전거의 주행성, 안전성, 편의성을 배려한 도시 내 390km의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도시 면적86.39k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적인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중</li> <li>• 도시의 역사성 보존을 위한 실천과 노력에 덧붙여 시민과 사업자간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도시 형성</li> </ul>

가나자와시의 공공디자인 특성

〈그림 2-49 가나자와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공공디자인 계획의 주요 특징

- 가나자와 시는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가진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심 시가지의 절반 이상을 "전통환경보존지역" 및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지역"으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다.
- 가나자와시는 경관 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에 기조색의 경우, 먼셀표 색계를 기준으로 원색(R·Y·YR)과 형광색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색채 가이드라인과 운영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 시민들의 적극적 합의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보행자 중심의 중세마을을 보존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상업환경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가로시설물의 구조 및 소재나 패턴, 색채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통해 가나자와시만의 장소성과 도시브랜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2-50 가나자와시의 공공디자인 이미지〉

## 7. 의식조사

### 7.1. 개요

#### 조사 목적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특징과 이미지, 인식도 등을 파악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구리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공공디자인 교육 참여의사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조사 대상 및 방법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의식조사는 구리시민, 구리시 내 사업체 종사자, 행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의식조사의 방법은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은 실시하고 시청 내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경우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기간

- 온라인 설문 : 2019년 11월 18일 ~ 2019년 12월 13일
- 대면조사(인터뷰) : 2019년 12월 3일 ~ 2019년 12월 5일

#### 조사 내용

- 온라인 설문은 일반사항 7개 문항과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 조사의 경우 부서별 공통사항 6개 문항과 부서별 계획 및 업무에 따른 5~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51 구리시 의식조사의 내용〉

## 7.2. 설문: 공공디자인 의식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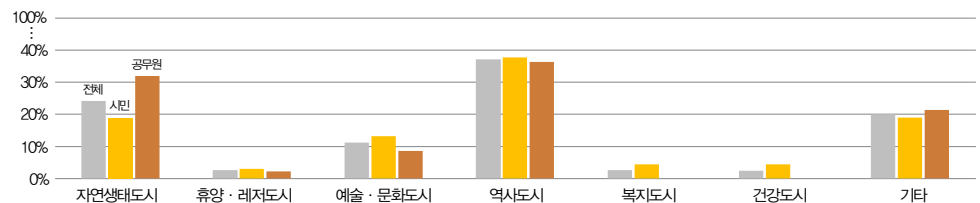
#### 1. 구리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 공공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 2. 구리시를 대표하는 도시(상징)이미지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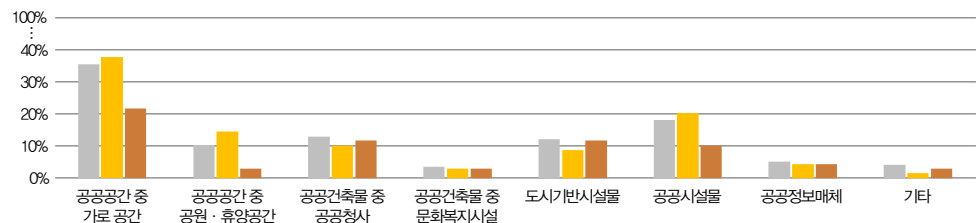
- ① 자연생태도시      ② 휴양·레저도시      ③ 예술·문화도시      ④ **역사도시**      ⑤ 복지도시  
⑥ 건강도시      ⑦ 기타



- 구리시의 도시(상징)이미지는 역사도시(37.06%)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동구릉 및 대장간마을 등의 내·외부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개선 및 관리가 요구된다.

#### 3. 도시 내 공공디자인 요소중 가장 우수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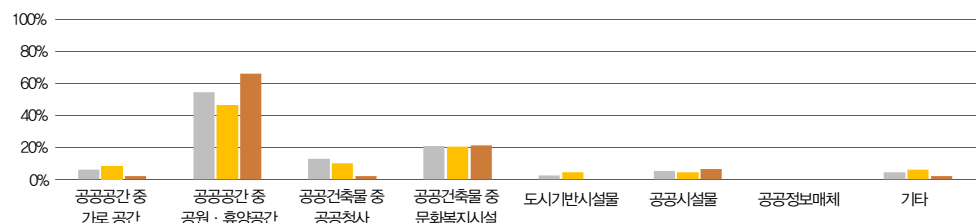
- ① **가로공간**      ② 공원·휴양공간      ③ 공공청사      ④ 문화복지(공공건축물)  
⑤ 도시기반시설물      ⑥ 공공시설물      ⑦ 공공정보매체      ⑧ 기타



- 가로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로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도시기반시설물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통합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 4. 도시 내 공공디자인 요소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가로공간      ② **공원·휴양공간**      ③ 공공청사      ④ 문화복지(공공건축물)  
⑤ 도시기반시설물      ⑥ 공공시설물      ⑦ 공공정보매체      ⑧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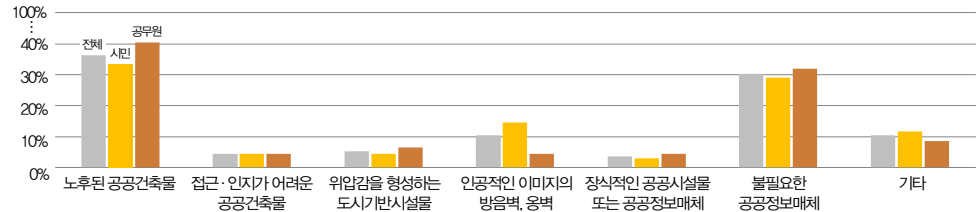


-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휴식, 여가, 체육활동을 즐기는 공원·휴양공간의 개선을 통해 도시 내 옥외활동 활성화 유도를 권장한다.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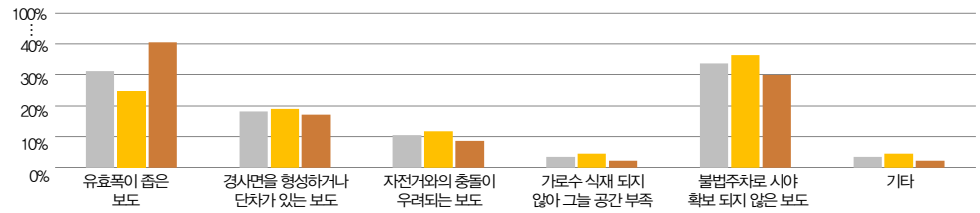
5. 도시의 공공디자인 환경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노후된 공공시설물 ② 접근·인지가 어려운 공공건축물 ③ 위압감을 형성하는 도시기반시설물  
④ 인공적인 이미지의 방음벽·옹벽 ⑤ 장식성을 강조한 공공시설물 등 ⑥ 불필요한 공공정보매체 ⑦ 기타



6. 도시 내 도로(걸어서) 이동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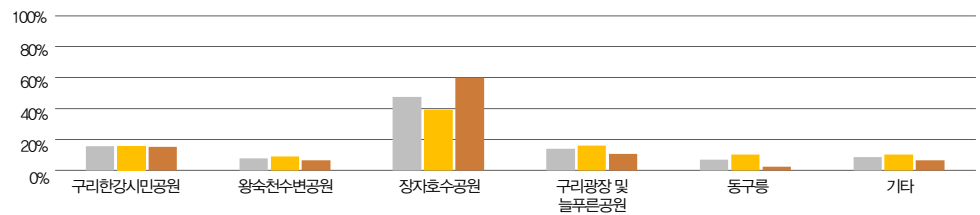
- ① 유효폭이 좁은 보도 ② 평탄하지 않거나 단차가 있는 보도 ③ 자전거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보도  
④ 가로수 식재 되지 않아 그늘 공간 부족 ⑤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보도 ⑥ 기타



• 보행의 쾌적성 및 안전성을 전제로 한 유효폭의 확장 및 시각적·공간적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7. 귀하께서 구리시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휴양 공간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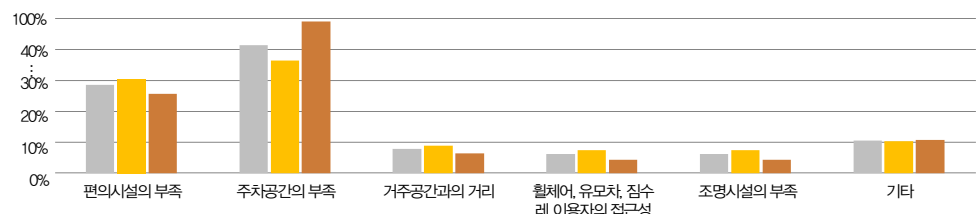
- ① 구리한강시민공원 ② 왕숙천수변공원 ③ 장지호수공원 ④ 구리광장 및 늘푸른공원  
⑤ 동구릉 ⑥ 기타



• 장지호수공원의 장점을 토대로 도시 내 공원 및 휴양공간의 접근성 강화 및 내부 시설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8. 공원 및 휴양공간 이용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편의시설의 부족 ② 주차공간의 부족 ③ 거주공간과의 거리  
④ 휠체어, 유모차 등 침수레 이용자의 접근성 저하 ⑤ 조명시설의 부족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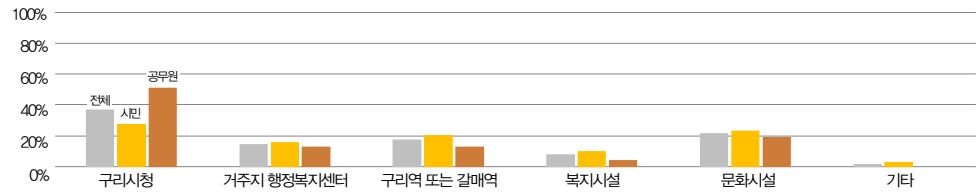


• 도시 내 주차공간 부족은 공통적인 문제이며, 공원·휴양공간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9. 귀하께서 구리시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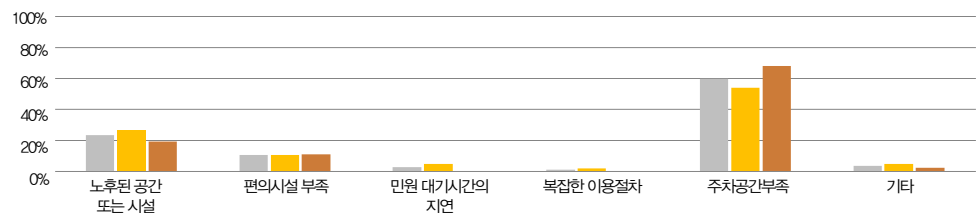
- ① 구리시청      ②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③ 구리역 또는 갈매역      ④ 복지시설  
⑤ 문화시설      ⑥ 기타



• 구리시청의 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서의 우선 검토를 권장한다.

10. 공공건축물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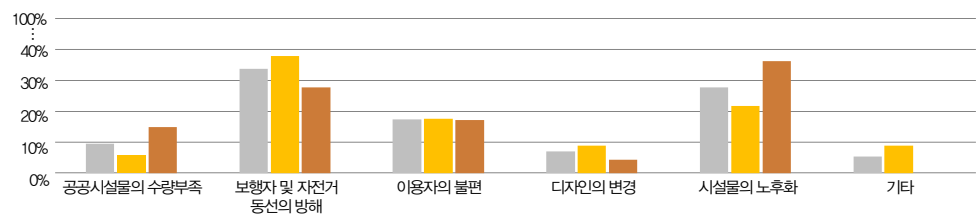
- ① 노후된 공간 또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부족      ③ 민원 대기시간의 지연      ④ 복잡한 이용절차  
⑤ 주차공간의 부족      ⑥ 기타



•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경사면에 위치한 주차공간, 주변 지역 유료주차 안내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11. 공공시설물을 개선할 경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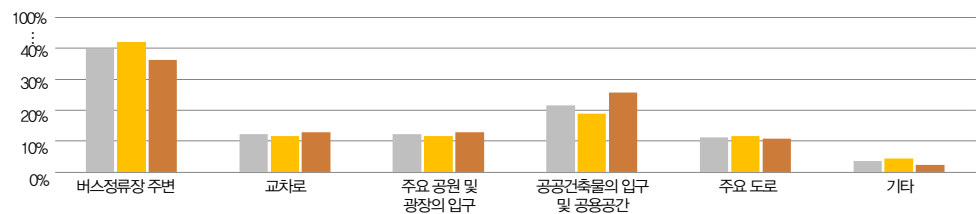
- ① 공공시설물의 수량 부족      ② 보행자 및 자전거 동선의 방해      ③ 이용자의 불편  
④ 디자인의 변경      ⑤ 시설물의 노후화      ⑥ 기타



• 자전거의 설치기준, 지속가능하고 보수가 용이한 마감재 선택을 통해 개선된 환경을 형성한다.

12. 공공정보매체(안내사인)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 ① 버스정류장 주변      ② 교차로      ③ 주요 공원 및 광장의 입구      ④ 공공건축물의 입구 및 공용공간  
⑤ 주요도로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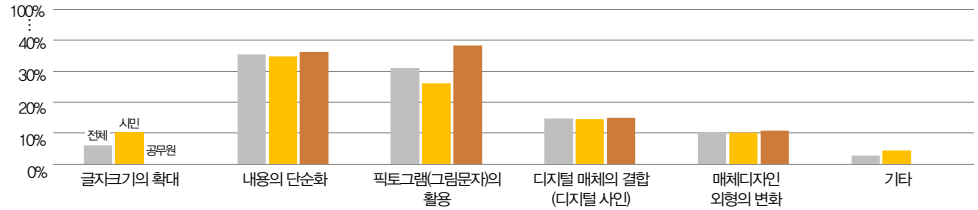


• 버스승하차 전후로 이용하는 주변지역 안내사인 및 버스도착시간알리미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조사결과

13. 공공정보매체(안내사인)를 개선할 경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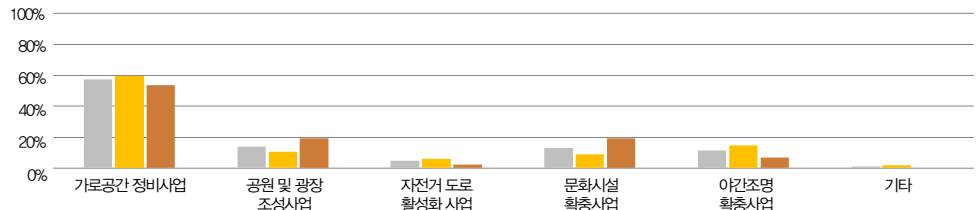
- ① 글자크기의 확대      ② 내용의 단순화      ③ 픽토그램의 활용      ④ 디지털 매체의 결합  
⑤ 매체 디자인 외형의 변화      ⑥ 기타



• 도시 내에서 누구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위계 정립 및 픽토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14.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선되었으면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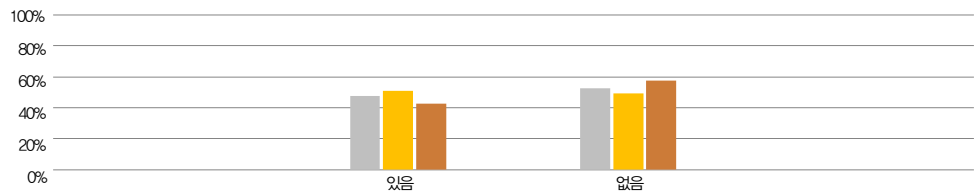
- ① 가로공간 정비사업      ② 공원 및 광장 조성사업      ③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④ 문화시설 확충사업      ⑤ 야간조명 확충사업      ⑥ 기타



• 보행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보도의 유효폭 확장,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의 설치 및 배치 등 통합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5. 추후 공공디자인 교육 또는 공청회 진행 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올바른 개념 공유 및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소식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권장한다.

■ 종합분석

-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올바른 방향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공공디자인의 정의, 영역, 필요성, 기대효과, 권장 및 지양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가로공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공디자인 요소로 지목된 반면 가장 개선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공공디자인 요소로 지목되어 도시차원에서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공원 및 휴양공간과 공공건축물 이용 시 불편한 요소로 분석된 주차공간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동선의 확보, 공용주차장의 증설, 주차안내 공공매체의 개선 등 단계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7.3. 관계부서 인터뷰

부서별 인터뷰  
종합분석

부서명	부서의 주요 업무	전담부서 협의 여부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기타 요청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및 계획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 매체	
홍보 미디어팀	• 구리소식 발간 •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시정 홍보 • 시정홍보게시판 설치 및 관리	X				●	• 픽토그램 개발
		X				●	
아트홀 운영팀	• 아트홀 시설 관리 • 인쇄홍보물 제작 / 홍보게시대 설치·관리	X				●	• 전용서체 개발
	• 아트홀 내부 보수공사(안내사인 등) • 아트홀 전용 홍보게시대 설치·관리	X				●	
장애인 복지팀	• 장애인편의시설 건축 협의 • 장애인 차별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X		●			• 무장애도시 시범사업 선정
	• 무장애도시 조성 • 소규모 점포 진입로 설치 시범사업	X	●	●			
문화팀 / 관광팀	• 공공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 고구려대장간마을(전시관) 운영관리	X		●		●	• 픽토그램 개발 • 공공정보매체 기본형 개발
	-	X					
재산 관리팀	• 공공청사 건립 추진 • 시청사 및 공공청사 유지관리·보수	▲		●			• 본청 공공정보 매체 설치기준
	• 별관 준공 및 시설 이전공가 • 2020년 2월 본청 부서 재배치	●		●			
체육 진흥팀	• (공간형)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 (건축물형)체육시설 신축 및 관리	X	●	●	●		• 생활체육시설 디자인 선정 기준 마련
	• 구리시 체육관 리모델링 • 초·중·고 내 실내체육관 건립	X		●			
여성 가족팀 / 보육팀	• 여성회관 신축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및 관리	X		●			• 여성회관 내부 인테리어디자인 가이드라인
	• 여성회관 신축 등 • 기존 노인회관 내부 재정비 등	X		●		●	
도로 개설팀 / 도로 시설팀	• 도로 신설, 확장사업 • 자전거도로의 개설, 정비, 관리 •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시설물 설치, 정비, 관리 등	X	●		●		• 보도 포장 디자인 기본형 • 공공디자인 위원회 상정 세부 기준
	• 아치울마을 인근 도로 신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계획	X	●				
교통 기획팀 / 교통 시설물	• 교통약자 기본계획 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X	●		●		• 공공디자인 위원회 상정 세부 기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X	●		●		
도시 공원팀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도시공원 조성 / 시설 및 녹지 정비·관리	X	●		●		
	•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검배공원 및 체육관공원 조성사업 등	X	●				
산림 녹지팀	•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따복지 포함) • 중앙분리대 화단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 조림사업	X	●				• 보도 폭에 따른 가로수 식재 기준
	• 가로수 수목보호대 교체 사업	X	●		●		

〈표 2-32 관계부서 인터뷰 결과 종합진단〉

## 8.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방향성 도출

- 구리시의 일반현황, 행정동별 공공디자인 현황, 관련 법·제도, 상위계획 및 선행계획, 국내외 유사사례, 공공디자인 의식 조사 등을 종합분석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b>도시 구조적 측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의 우수한 공공디자인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구도심지역의 공공디자인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li> <li>• 우수한 수경관자원인 한강 및 왕숙천과 맞닿아 있으나 하천과 함께 조망되는 시가지 전경에 대한 공공디자인환경의 관리가 미흡하여 수변도시로서의 상징성 미흡</li> <li>• 구도심재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내 재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부재</li> </ul>
<b>도시 정책적 측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도시와 구분되는 구리시의 행정경계가 불명확하고 및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구리시만의 정체성 및 인지성 미흡</li> <li>• 구리시의 도시이미지와 직결되는 브랜드 이미지 부재</li> <li>• 주변 도시로 연결되는 통과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해당 교통량을 도시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관광문화 콘텐츠 부족</li> <li>• 공공디자인 우수사례와 지양사례의 구분 모호</li> </ul>
<b>도시 실천적 측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의 유효폭이 매우 좁거나 보도 내 지장물 설치 사례가 많아 보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저하</li> <li>• 도시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의 연결성 부족 및 자전거 보관대의 수량 부족</li> <li>• 공원·휴양공간 및 역사문화공간 내 편의시설의 설치 수량 및 시인성 부족</li> <li>• 역사문화자원 내·외부공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환경 관리 미흡</li> </ul>
<b>도시 운영적 측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전문성 미흡 (인력 충원 및 위상 변화 필요)</li> <li>•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진행 시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에 대한 인식 부재</li> <li>• 행정공무원의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li> <li>•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우수한 선행 결과물의 부재</li> <li>• 과도한 공공정보로 인해 시각적 피로감 유발</li> </ul>



- **구리시의 도시 브랜드와 직결되는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특화 전략 수립**  
 : 도시차원에서의 인지성과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전략 및 정책
-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행정기반 강화**  
 :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 협의에 대한 강제성 부여
- **쉽게 이해하고 빨리 확장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영역별 우수 시공사례 육성**  
 : 글과 그림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공디자인 우수 시공 사례를 통해 단기간 내 확장 유도
- **무조건적인 제작 및 설치를 지양한 공공디자인 다이어트 프로젝트 시도**  
 : 불필요한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다이어트를 통해 가로공간의 시각적, 공간적 확장 유도

〈그림 2-52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종합분석 및 방향성〉



## III.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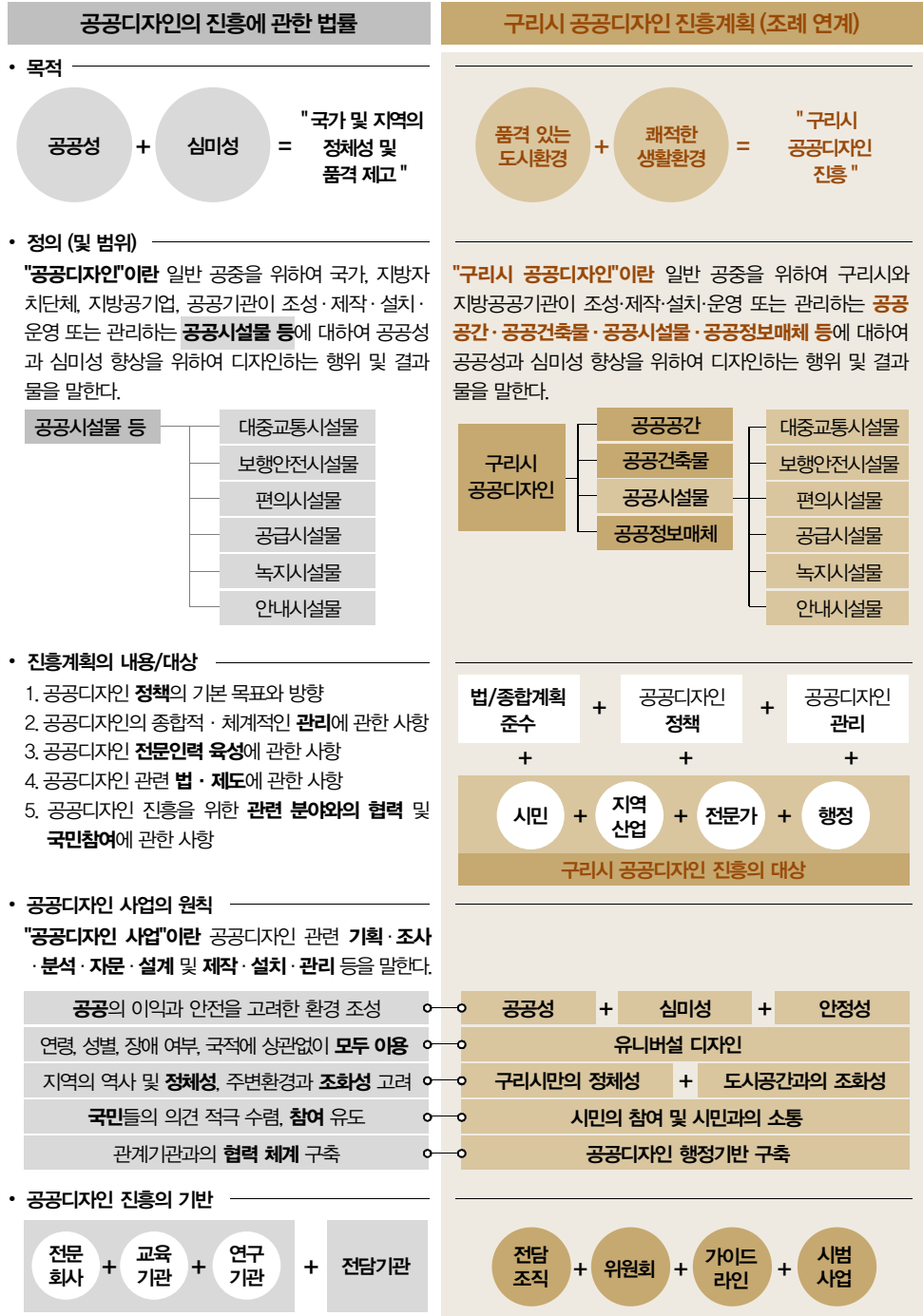
1. 공공디자인법의 이해	91
2. 공공디자인 정의 및 영역	92
3.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95
3.1.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95
3.2. 공공디자인 비전	97
3.3. 공공디자인 목표	98
3.4.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99
3.5.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104



# 1. 공공디자인법의 이해

## 공공디자인법의 연계 방안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근거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해를 전제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목적, 정의, 대상 등을 계획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법을 준수하되 계획의 범위를 확장시켜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영역을 포괄하여 계획하고 시민, 지역산업, 전문가, 행정을 고루 진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2.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영역

### 공공디자인법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영역

- 공공디자인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하며 <표 3-01>과 같다.

구분		세부 항목
공공시설물 등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편의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기타 시설물	위 항목에 준하는 시설물

<표 3-01 공공디자인법의 공공시설물 세부 영역>

###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영역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2017/경기도)에서 정의하는 "공공디자인"이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도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0조 및 별표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세부 항목은 <표 3-02>와 같이 세분화한다.

구분		세부 항목
공공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썬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예술문화거리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 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기타	도 및 도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 (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등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영역

가로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가. 버스·택시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 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감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횡스(교량용, 자전거도로용 포함)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보안등 포함)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배수구 덮개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쉼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포함)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등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기타	도 및 도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 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 안내, 도로 및 건물 안내, 공원 안내, 관광 안내, 문화재 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표 3-02 경기도 공공디자인 세부 영역〉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영역 (현재)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2017/구리시)에서 정의하는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리시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하며 〈표 3-03〉과 같다.

구분	세부 항목	
공공시설물 등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편의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기타 시설물	위 항목에 준하는 시설물

〈표 3-03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공공시설물 세부 영역〉

종합분석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명시된 공공시설물의 세부 영역과 비교하여 동 조례 제7조 및 제23조에 관련한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대상의 경우 공공시설물 이외에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영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영역은 근거법, 경기도 조례, 자치법규 등을 토대로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현황 및 도시차원에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고려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정의

- "공공디자인"이란 구리시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결과물을 말한다.
-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장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영역

- 공공디자인법에서 제시하는 공공디자인의 영역은 공공시설물의 세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구리시 공공디자인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진흥을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으로 확장시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영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0조와 관련한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7조 및 제23조와 관련한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대상을 근거로 하되 도시 내 공공디자인 현황 및 향후 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표 3-04>와 같이 계획한다.

구분		세부 영역
공공공간	가로공간	가.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차도, 공개공지 나.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라. 특화가로,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공원 및 휴양공간	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녹지형 공공공지 다. 경관광장, 교통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라. 하천·산림 공공이용공간, 캠핑장 등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나. 청사 다. 행정복지센터 라. 소방서 마. 지구대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연구소 마. 도서관
	문화집회시설	가. 공연장 나.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등) 다.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가. 복지회관 나. 여성회관 다. 노인회관 라. 청소년회관 마. 의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포함)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발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상하수도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기타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물	도로시설물	가. 교량 (철교 포함) 나. 고가도로 (고가철도 포함)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보행연결로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가. 보행·차량신호등 나. 통합지주 다. 버스·택시승차대 라. 중앙분리대 마.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보행등 나. 보행등 다. 볼라드 라. 보도펜스 마.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휴지통 다. 파고라 라. 공중전화부스 마. 가로판매대 바. 음수대 사. 운동시설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교통신호제어함 라. 가로등제어함 마. 트랜치 바. 환기구 사. 제설함 아. CCTV외함 자. 지상식·육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가. 수목보호대 나. 화분대 다. 분수대 라. 울타리 등
	기타시설물	가. 방음벽 나. 석축 및 옹벽 다. 낙석방지망 등
공공매체	정보매체	가. 가로공간 관련 안내표지 나. 공원·휴양공간 관련 안내표지 다. 공공건축물 관련 안내표지 라.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안내표지
	공공미술	가. 벽화 다. 슈퍼그래픽 라. 미디어아트 등
비고	공공디자인법 공공디자인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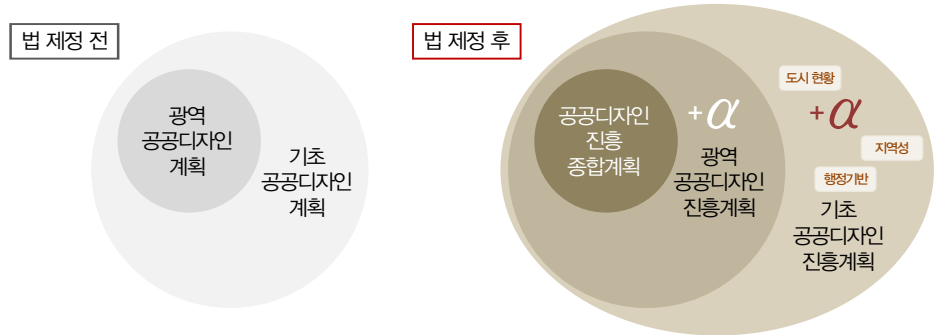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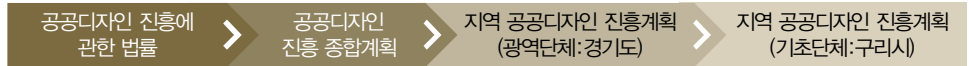
<표 3-04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세부 영역 개정안>

### 3.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 3.1.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 계획의 방향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하며 종합계획을 준용하여 구리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 공공디자인법 제정 전후로 수립되는 공공디자인 계획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에 수립하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상위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구리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여 수립한다.



〈그림 3-0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위상〉

##### 계획의 방향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의 구조, 범위(대상), 주체, 효과, 방식으로 구분되는 5가지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구조	개별 >> 협력	• 행정동별, 부서별, 공정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던 계획과 사업을 상호 협력·연계하여 도시차원에서 통합 시행
범위	물리적 환경 + 서비스 환경	• 공공디자인 물리적 환경과 함께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의 통합 개선
주체	시민 + 지역 산업 + 행정 기관	•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민, 지역산업, 행정기관이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실현
효과	이벤트 >> 일상	• 일화성, 보여주기식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방식	재개발 >> 재생	• 무조건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구리시의 공간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

〈표 3-05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방향〉

##### 계획의 단계별 구상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진흥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초기 공공디자인 기반을 확충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도시 전체로 확장하며 군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b>1단계 (2020 ~ 2025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행정기반 확충</li> <li>• 공공디자인 본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li> <li>• 지역(행정동)별 공공디자인 요소의 통합화</li> </ul>	<b>2단계 (2026 ~ 2030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 서비스 환경의 적극 개선</li> <li>•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민 참여 확대</li> <li>• 공공디자인 환경의 지속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li> </ul>
--	---

〈표 3-06 구리시 공공디자인 계획의 단계별 구상〉

계획의 체계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차원에서 지향하고 공유해야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원칙, 전략사업 등을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개념(이하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이라고 정의한다.
-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리시와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은 구리 시민, 지역 사업체(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체), 위원회, 행정조직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공동의 가치를 말한다.
- 공공디자인 전략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을 확장시켜 적용 하거나 추가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통해 도시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li> </ul>									
	구리시 공공디자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슬로건</li> </ul>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가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li> </ul>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li> </ul>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반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 공공디자인 주요 요소를 대상으로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전제로 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 계획, 설계(디자인), 시공, 감리, 자문, 심의 시 지켜야 할 지침</li> </ul> <p>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리시의 도시 특성에 기초한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td> </tr> <tr> <td>공공디자인 요소 상호의 관계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td> </tr> <tr> <td>구리시의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적용 사례로 이해하는 가이드라인</td> </tr> </table>	구리시의 도시 특성에 기초한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요소 상호의 관계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구리시의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적용 사례로 이해하는 가이드라인						
	구리시의 도시 특성에 기초한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요소 상호의 관계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구리시의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적용 사례로 이해하는 가이드라인											
구리시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디자인 관련 법·제도, 전담조직, 운영체계, 교육 등의 행정기반을 강화 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기대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ackground-color: #34495e; color: white;">공공디자인 통합 조례</td> <td style="background-color: #34495e; color: white;">공공디자인 전담조직</td> <td style="background-color: #34495e; color: white;">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td> <td style="background-color: #34495e; color: white;">공공디자인 전략사업</td> <td style="background-color: #34495e; color: white;">공공디자인 교육</td> </tr> <tr> <td>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합한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제정</td> <td>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위상 강화 및 개편</td> <td>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심의 기준 개선</td> <td>관련사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요소 도출 및 예산 확보</td> <td>공공디자인의 올바른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td> </tr> </table>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공공디자인 전략사업	공공디자인 교육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합한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제정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위상 강화 및 개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심의 기준 개선	관련사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요소 도출 및 예산 확보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공공디자인 전략사업	공공디자인 교육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합한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제정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위상 강화 및 개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심의 기준 개선	관련사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요소 도출 및 예산 확보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							

〈표 3-07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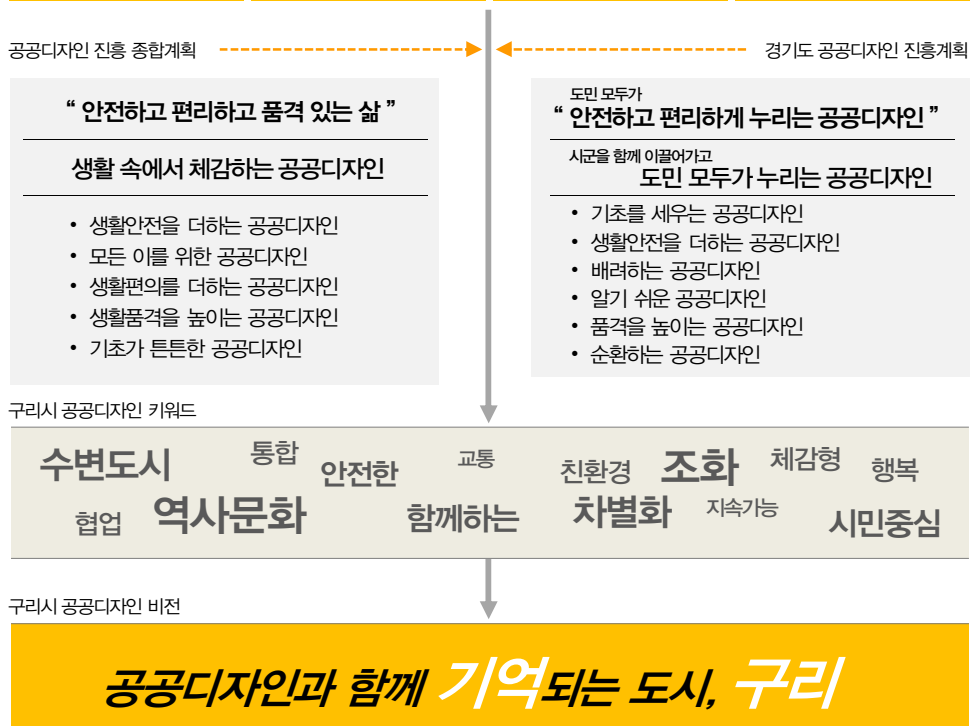
### 3.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 3.2. 공공디자인 비전

#####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

-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은 진흥계획을 통해 도시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의미하며 도시의 발전방향 및 시책, 대내·외적인 위상, 공공디자인의 역할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은 도시 정책적, 구조적, 운영적, 실천적 특성을 전제로 하되 상위 계획인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2020/경기도청)"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도시 내 모든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은 <그림 3-02>와 같이 "공공디자인과 함께 기억되는 도시, 구리"로 설정하여 공공디자인 본래의 순기능을 통해 구리 시민은 물론 외부인에게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의 변화를 도모한다.

도시 정책적 측면	도시 구조적 측면	도시 실천적 측면	도시 운영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도시와 차별화되는 구리시만의 정체성 및 인지성 부각</li> <li>구리시의 도시이미지와 직결되는 브랜드 이미지 부재</li> <li>통과하는 도시가 아닌 머물러 즐길 수 있는 도시로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도시(갈매지구)와 구도심(수택동, 인창동 등)간 공공디자인 환경의 조화</li> <li>우수한 수경관자원을 배경으로 한 시가지 공공디자인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변도시로서의 상징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li> <li>쉽게 이해하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도시 내 편의시설 확충</li> <li>장애물존과 보행안전존 개념을 도입한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도시관리팀)</li> <li>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와의 협업 강화</li> <li>공공디자인의 필요성 및 올바른 방향성을 공유하는 마인드 향상 교육(단계별 교육 프로그램)</li> </ul>
공공디자인으로 기억되는 도시	공공디자인으로 조화되는 도시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도시	공공디자인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



<그림 3-02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

### 3.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 3.3. 공공디자인 목표

**구리시 공공디자인 목표**

- 구리시 공공디자인 목표는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슬로건으로 정의한다.
- 공공디자인 목표(핵심 슬로건)과 함께 3가지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그림 3-03 구리시 공공디자인 목표〉

- 구리시 공공디자인 목표 "2025 Guri Up"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도시의 공간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구리시의 브랜드이미지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유도하고자 한다.
- 공공디자인 목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3가지 실행목표는 각각의 목적과 방법을 〈그림 3-04〉와 같이 계획하며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강화한다.



〈그림 3-04 구리시 공공디자인 실행목표〉

### 3.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 3.4.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은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으로 정의한다.
-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종합분석 내용(p.87)을 토대로 도시정책, 도시구조, 도시행정, 시민체감 측면에서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은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공공디자인 사업 등이 도차원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계획한다.
-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간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는 기준역할을 하며 각종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은 9가지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향후 도시 내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등에 적극 도입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identity*

#### 전략 1. 구리시의 정체성을 인지시키는 공공디자인

-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통요충지인 구리시의 도시구조를 활용하여 도시의 진출입거점을 강조하고 도시의 장소성과 함께 구리시민의 정체성을 인지시키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정책 측면에서 구리시민의 정체성 및 인지성 미흡

*harmony*

#### 전략 2. 구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공디자인

- 구리갈매지구,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와 구도심과의 극명한 대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구조 측면에서 구도심과 신도시 간 공공디자인 환경의 극명한 대비

*sustainable*

#### 전략 3. 기초가 튼튼한 지속가능형 공공디자인

- 변화하는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반 구축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운영 측면에서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을 포함한 행정기반 미흡

*universal*

#### 전략 4. 생활공간과 밀접한 체감형 공공디자인

- 시각적 상징성만을 부각시키는 과도한 디자인 개념 및 행정성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상생활의 안전과 품격을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실천 측면에서 생활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족

〈그림 3-05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1

identity



전략 1. 구리시의 정체성을 인지시키는 공공디자인

-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통요충지인 구리시의 도시구조를 활용하여 도시의 진출입거점을 강조하고 도시의 장소성과 함께 구리시만의 정체성을 인지시키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정책 측면에서 구리시만의 정체성 및 인지성 미흡

추진전략1의  
배경

- 구리시의 면적은 33,31km<sup>2</sup>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시·군 중 면적이 가장 작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광역도로망이 매우 발달하여 통과교통량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 시경계를 기점으로 도시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시점에서 구리시의 위치성에 대한 인지가 어려우며 인접한 도시와 차별화된 정체성이 미흡하다.
- 교통량이 집중되는 강변북로를 따라 이동 시 구리시 행정구역을 인지시키기 위한 태극기가 365일 걸려 있으며 한강시민공원, 광개토대왕광장 등의 주요 거점에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만 다른 도시에도 태극기를 활용한 사례가 많아 구리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는 차별성이 다소 미흡하다.



▲ 현재 구리시의 주요 상징요소 (태극기, 투구게이트, 구리타워 등)

(그림 3-06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1)

전략의 기본방향

- 시경계 진입부게이트, 조형물 등을 이용한 과디자인을 지양하고 도시 내에 구성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조망되는 공공디자인 특화요소를 개발한다.
- 빠른 시간 내에 도시를 관통하는 운전자의 시점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면적 개념의 디자인 요소를 개발하고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원경, 중경, 근경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주·야간 상시 도시의 위치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수립 예정인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을 부여하여 색채, 야간경관 등의 경관요소를 활용하여 공공영역은 물론 일부 민간영역을 활용하여 도시차원에서의 단계별 확장계획을 수립한다.

» 연계 전략과제 : ① 빛나는 구리 (보고서 p.105 참고)  
② 'G'를 찾아라 (보고서 p.106 참고)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2

harmony

전략 2. 구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공디자인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개발지구와 구도심과의 극명한 대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구조 측면에서 구도심과 신도시간 공공디자인환경의 극명한 대비

추진전략2의  
배경

- 구리시의 경우 생활공간 주변 우수한 자연경관 및 광역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창동 및 수택1, 2동과 같은 구도심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등의 신도시(택지개발지구)의 공공디자인 환경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
-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건축 및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고, 구리갈매지구와 연결되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구체화되면서 기존 구도심과 시각적, 공간적 분절이 우려된다.
-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운전자의 시점에서 구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기준으로 공공디자인 환경이 직접적으로 대비되어 가로환경의 훼손은 물론 도시차원에서의 연속성이 저하된다.



(그림 3-07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2)

전략의 기본방향

- 도시개발지구별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기 보다는 구리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도시 내 공공 디자인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향후 개발사업 및 구도심을 대상으로 단계별 확장방안을 수립한다.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소형 개발지구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시 구도심과의 연결성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및 자문기준을 마련한다.
-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함께 설치되는 공공공간 내에서의 설치 및 배치에 대한 올바른 사례를 제시하고 통합지구와 같이 시설물간 통합을 유도하여 공공시설물의 기능성을 충족시키되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여 보행의 유효 폭을 확장함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연계 전략과제 : ① 공공디자인우수 샘플 만들기(보고서 p.107 참고)  
 ② 이것만은 지키자 가이드라인(보고서 p.109 참고)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3



기초가 튼튼한 지속가능형 공공디자인

sustainable

- 변화하는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반 구축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운영 측면에서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을 포함한 행정기반 미흡

추진전략3의  
배경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기반이 미약하여 구리시만의 도시특성을 전제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는 행정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다.
- 공공디자인 행정기반은 법·제도, 전담조직, 운영체제로 구분하여 구리시의 행정기반 강화를 위한 각각의 표준모델이 요구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2020)를 근거로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한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가 시급하며 전담부서의 역할을 강조한 부서명 변경 및 팀 내 조직개편이 시급하다.



〈그림 3-08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3〉

전략의 기본방향

-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토대로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조례 제정(안)을 마련한다.
- 조례와 연계하여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의 가시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 행정기반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전담조직의 경우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팀 내 전문직을 충원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디자인 및 경관 관련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연계 전략과제 : ① 도시디자인팀과 함께(보고서 p.108 참고)  
② 이것만은 지키자 가이드라인(보고서 p.109 참고)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4

universal

전략 4. 생활공간과 밀접한 체감형 공공디자인

- 시각적 상징성만을 부각시키는 과도한 디자인 개념 및 행정성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상생활의 안전과 품격을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 종합분석 연계 사항 : 도시실천 측면에서 생활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족

추진전략4의  
배경

-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만을 강조하거나 행정적인 성과만을 위해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로 귀결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이 상이하여 개선효과가 미흡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도시 내 자전거도로의 조성 비율이 낮고 노면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자전거주차공간 매우 부족)
- 새로운 공공시설물과 공공매체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공공디자인 요소의 양적 확대에 따라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며 보행자의 동선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노출된다.
- 특정 공간, 특정 대상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본래의 공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그림 3-09 구리시 공공디자인 추진전략4)

전략의 기본방향

-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환경을 구축한다.
- 기 설치된 과디자인 요소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장소에 꼭 필요한 기능을 전제로 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순기능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
- 차량보다는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 배려하여 가로공간의 위계를 정립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유효 폭을 확장한다.

» 연계 전략과제 : ① 보도 30cm 넓히기(보고서 p.110 참고) ③ 공공정보 다이어트(보고서 p.112 참고)  
② 100m마다 만나는 자전거주차장(보고서 p.111 참고) ④ 그림으로 찾는 편의시설(보고서 p.113 참고)

## 3.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 3.5.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는 공공디자인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으로 정의한다.
- 공공디자인 전략과제는 추진전략,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공공디자인 행정기반 구축방안, 2021~2020년 구리시 부서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강화한다.
- 9가지 공공디자인 전략과제는 가이드라인(●), 조례(●), 전담조직(●), 위원회(●), 교육(●), 사업(●) 등의 실행계획 연계방안을 색으로 구분한 기호로 표시한다.

#### No. 1 빛나는 구리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원경, 중경, 근경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주야간 상시 도시의 위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한 야간조명계획 수립 (경관계획 연계)

#### No. 2 "G"를 찾아라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이 되는 공공건축물 외관에 구리(Guri)시를 상징하는 "G"마크를 설치하여 주·야간 모두 인지도가 우수한 구리시만의 공공디자인 특화요소 개발

#### No. 3 공공디자인 우수 샘플 만들기

무조건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도시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요소별 우수한 디자인의 검증을 통해 실물로 보는 가이드라인 역할 부여

#### No. 4 도시디자인팀과 함께

공공디자인 행정기반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전담조직의 전문성(인력) 보완, 위상(부서명칭 변경) 강화, 전문업무의 집중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력 도모

#### No. 5 이것만은 지키자!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공통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공공디자인 환경의 개선효과를 향상시키고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 부각

#### No. 6 보도 30cm 넓히기

보도의 유효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구도심 가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물존 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공공시설물 및 가로수 배치의 규칙성을 부여하여 보행자도로의 유효폭 확보

#### No. 7 100m마다 만나는 자전거주차장

보행량이 집중되는 중심상업지역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빈도를 높여 자전거의 방치 또는 보도 점유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No. 8 공공정보 다이어트

공공정보의 위계를 마련하고 정보매체의 불필요한 조형요소를 덜어내고, 복잡한 정보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여 정보전달력을 향상시켜 공공정보로서의 기능 회복

#### No. 9 그림으로 찾는 편의시설

화장실, 주차공간, 안내데스크 등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누구나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림 문자(픽토그램)를 이용한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적용

〈그림 3-10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1

No. 1 **빛나는 구리**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원경, 중경, 근경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주야간 상시 도시의 위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한 야간조명계획 수립 (경관계획 연계)

계획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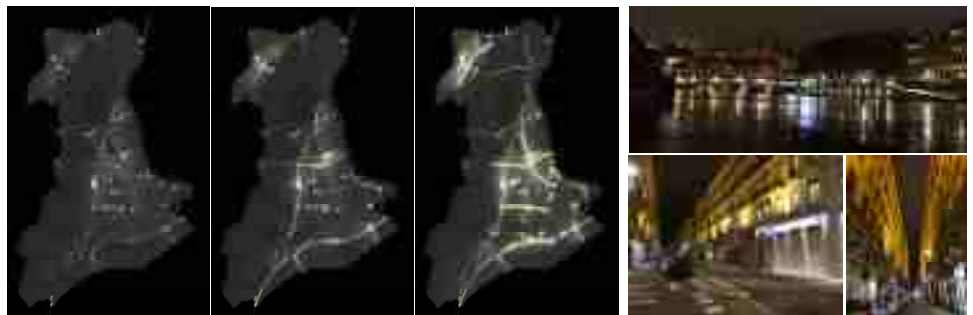
- 수도권 내 대표적인 교충요충지로 통과교통량이 집중되지만 구리시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디자인 특성 및 상징요소가 미흡하여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미흡하다.
- 도시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도시 내부에서의 조망은 물론 한강, 왕숙천 너머로 조망되거나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원거리에서 조망되는 구리시의 위치성 및 차별화된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요소가 필요하다.
-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수도권 내 유일한 고구려유적인 대장간마을 등의 역사경관, 한강 및 아차산 등의 자연경관, 태극기의 도시 구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시각적 홍보효과가 미흡하다.



〈그림 3-11 구리시를 대표하는 상징요소〉

기본개념

- 공공건축물 외관 및 도심을 관통하는 고가도로, 고가철교 등의 도시기반시설물을 이용하여 하부 투광 (Up-Light)형식의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도시 내 면(面)적 개념의 빛의 조형미를 연출한다.
- 구리시청을 포함한 주요 거점이 되는 공공건축물 외관,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고가도로 및 고가철교 등을 1단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빚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명연출을 계획하고 빛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의 야간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조도, 휘도, 색온도, 점·소등시간계획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적 측면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권장한다.
-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여름철 빛을 이용한 도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도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도시의 경관자원과 문화컨텐츠를 연계하여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한다.



〈그림 3-12 단계별 야간조명연출계획 및 빛을 이용한 도시 활성화 사례〉

기대효과

- 면적 개념의 상징요소로 야간에 원거리에서 구리시의 위치성을 인지할 수 있으며 단계별 확장사업으로 계획하여 초기 투입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용이하다.
- 단계별 확장방안을 통해 신규 건축물 및 구조물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2

No. 2 "G"를 찾아라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이 되는 공공건축물 외관에 구리(Guri)시를 상징하는 "G"마크를 설치하여 주·야간 모두 인지성이 우수한 구리시만의 공공디자인 특화요소 개발

계획의 배경

- 도시 내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경우 시민은 물론 외부인의 방문이 집중되는 공공건축물이나 도시차원에서 구리시만의 상징성이 미흡하다.
-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임대건축물, 경사로 등에 조성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보행자 및 운전자가 건물 주출입구 및 주차공간 출입구에 대한 인지가 어려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 공공건축물 외관에 부착되는 건물명사인 및 자주형 사인의 경우 설치 주체, 시기, 예산에 따라 각기 다른 매체(규격, 형태, 재료, 색채 등)와 공공정보 표기체계(서체, 레이아웃, 외국어 병기 등)가 적용되어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 및 정보전달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림 3-13 구리시 내 주요 공공건축물의 현황〉

기본개념

- 공공청사를 포함한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공공건축물의 외관에 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주야간 상시 원거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G마크를 설치하여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 및 도시 내 인지성을 강화시킨다.
- G마크는 구리시의 영문 명칭인 Guri City를 의미하며 G마크는 특정 서체(글꼴)이 아닌 구리시만의 고유한 상징마크로 개발하여 적용한다.
- G마크의 크기, 서체, 설치 위치 등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명이 매입된 블랙아웃시트로 제작하여 주간에는 사인패널의 색으로 인지하고 야간에는 조명형 글자로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공건축물 외관에 부착하는 G마크를 확장하여 G주차장, G화장실 등의 조성 및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3-14 공공건축물의 G마크 적용 예시〉

기대효과

-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G마크를 통해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표현하고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 특화요소로 활용하여 구리시의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킨다.
- G마크를 설치한 공공건축물은 도시 내 위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점공간으로 계획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3

No. 3 공공디자인 우수 샘플 만들기

무조건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도시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요소별 우수한 디자인의 검증을 통해 실물로 보는 가이드라인 역할 부여

계획의 배경

- 구리시 내 중소규모의 도시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증가 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한 채 새로운 공공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혼재함에 따라 기존 공공디자인 요소와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
- 무조건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이 우수사례가 될 수 없으나 공공시설물 등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경우 기존과는 달라야한다는 선입견이 도시 내 디자인적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의 공공디자인 요소별 가이드라인과 함께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여 실물로 보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사업의 개선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림 3-15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

기본개념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도시 내 공공디자인 요소별 세부 항목(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공간 유형 참고(표 4-01)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실물로 보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부여한다.
- 글과 그림으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홍보하여 검증 받은 디자인을 도시 내 확장시켜 적용한다.
- 기 시공된 우수 디자인을 선정할 경우 디자인의 외형은 물론 내구성, 유지관리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우선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요소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단시간 내에 공공디자인 환경의 개선효과를 도모한다.



〈그림 3-16 실물로 보는 가이드라인의 활용 예시〉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 분야의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개선효과를 향상시킨다.
- 글과 그림으로 된 가이드라인에서 표현할 수 없는 색채와 재료 등의 섬세한 디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개선안을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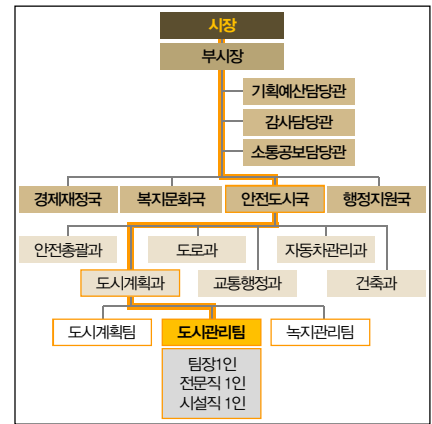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4

No. 4 도시디자인팀과 함께

공공디자인 행정기반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전담조직의 전문성(인력) 보완, 위상(부서명칭 변경) 강화, 전문업무의 집중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력 도모

계획의 배경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은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으로 운영중이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담조직의 위상 및 조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 팀장 1인과 전문직 1인, 행정직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디자인 업무를 포함한 경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협약, 도시관리계획 조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그림 3-17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의 현황〉

기본개념

-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중심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을 충원한 후 전담부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 조직의 명칭은 "도시관리팀"에서 "도시디자인팀" 또는 "경관디자인팀"으로 변경하여 부서의 역할 및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부서간 협의 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전문직 팀장 1인, 전문직 2인, 행정직 1인, 최소 4인으로 구성하여 공공디자인, 경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환경을 구축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시행 시 반드시 전담조직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활용하여 실무경험을 전제로 한 전문성을 보완한다.

가평군	도시경관팀	남양주시	경관디자인팀	안양시	도시디자인팀	의정부시	디자인정책팀
고양시	경관디자인팀	동두천시	기획팀	양주시	도시디자인팀	이천시	경관디자인팀
과천시	도시디자인팀	부천시	경관디자인팀	양평군	경관디자인팀	파주시	도시디자인팀
광명시	공공디자인팀	성남시	도시경관팀	여주시	도시경관팀	포천시	도시미관팀
광주시	마을만들기팀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연천군	건축관리팀	하남시	도시디자인팀
구리시	도시관리팀	시흥시	도시디자인팀	오산시	경관디자인팀	화성시	도시디자인정책팀
군포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안산시	도시디자인팀	용인시	공공디자인팀	도시디자인팀 : 11개 시·군 경관디자인팀 : 5개 시·군	
김포시	도시디자인팀	안성시	도시디자인팀	의왕시	건축허가팀		

〈그림 3-18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전담조직(부서명)의 현황〉

기대효과

- 전담조직 외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단 시간 내에 가시적인 개선이 용이하다.
-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조직 내 시스템을 강화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정책 및 법정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교육, 공모사업 참여, 관련 사업의 협의 등에 집중함으로써 전문 업무의 성과를 도출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5

No. 5 이것만은 지키자!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필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공공디자인 환경의 개선효과를 향상시키고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 부각

계획의 배경

- 2014년 수립한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가이드라인 보다는 시범사업 제안의 비중이 높아 관련 계획 및 사업 시행 시 지침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여 활용도가 낮다.
- 활용도가 다소 미흡한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경우 그림보다는 글의 비중이 높고 전문 용어가 많아 전문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 상황이다.
-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공공정보표기체계디자인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광역에서 개발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으나 구리시의 도시 현황 및 대상지의 특성과 상이한 경우 일부 응용 또는 변형이 요구되어 적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림 3-19 주요 선행계획 및 상위계획>

기본개념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로공간, 건축물공간, 공원·휴양공간의 3가지 공공공간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가이드라인의 공통사항을 작성한다.
- 공통사항은 공공공간 유형별 개요,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필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하고 필수 가이드라인은 5가지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 세부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해당 내용과 함께 공통사항의 필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한다.
- 필수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 중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부족한 경우 해당 공공공간 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연동하여 적용한다.



<그림 3-20 가로공간 공통사항 가이드라인의 예시>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내용을 대상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시간 내 개선효과 향상을 도모한다.
- 도시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위치, 특성, 주체, 예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환경을 유도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6

No. 6 보도 30cm 넓히기

보도의 유효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구도심 가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물존 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공공시설물 및 가로수 배치의 규칙성을 부여하여 보행자도로의 유효폭 확보

계획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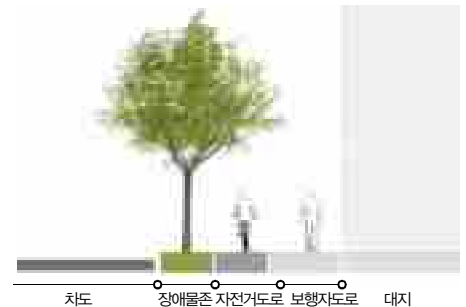
- 구리시 내 인구밀도가 높은 구도심의 경우 차량 중심의 가로공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차도와 비교하여 보행자도로의 폭이 좁은 지역이 많다.
- 보행자도로의 폭이 좁은 구간에서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공공시설물의 설치, 민간 지장물 등의 불법 적치 등으로 인해 보행동선의 확보가 어렵거나 노면 등의 요철 및 기울기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보행자도로의 권장 유효 폭(2m)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조성하거나 식수대를 조성하여 보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식수대(장애물존) 각각의 기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21 구리시 내 보도의 현황>

기본개념

- (건물 대지 내 공지)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장애물존-차도로 연결되는 가로공간의 위계를 재정립하고 식수대를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물을 집중 배치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유효 폭을 확보하고 각각의 원활한 동선을 연결한다.
- 보도와 연접한 대지 내 공지 사이의 경계시설(보도펜스, 조경석 등) 설치 및 단차변화를 지양하고 두 공간의 디자인적 연계성을 부여한 통합설계를 통해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 보도포장의 경우 지역별, 시기별, 설치 주체별, 예산별로 각기 다양한 디자인(패턴, 색채, 재료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로공간의 시각적 확장감을 유도하기 위해 패턴이 없는 단색으로 적용하고 보행자의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중명도의 회색톤을 적용한다.
- 보도의 유효 폭을 고려한 가로공간 유형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공통사항 및 생활가로)을 준수한다.



<그림 3-22 보도 유효 폭 확장을 위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기대효과

-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내 가로공간의 구조를 토대로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의 기능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 보도와 연접한 대지 내 공지와의 통합설계, 패턴이 없는 중명도 보도포장계획, 각종 공공시설물의 집중 배치를 위한 장애물존의 조성 등을 통해 보도의 시각적, 공간적 확장감을 유도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7

No. 7 100m마다 만나는 자전거주차장



보행량이 집중되는 중심상업지역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빈도를 높여 자전거의 방치 또는 보도 점유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계획의 배경

- 광역도로망의 발달로 도시 내 교통량이 많아 차량정체 현상의 발생빈도가 높고 공용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도시차원에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공공지역 등 택지개발,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가로공간의 폭이 확장되면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신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비용이 낮아 보도 및 건축물 주출입구 인근에 거치하여 보행의 동선을 단절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공공건축물 및 공원·녹지 등의 공공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로 인해 가로공간의 미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자전거 주차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림 3-23 구리시 내 자전거 거치 현황〉

기본개념

- 보행량이 집중되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비율을 높여 도시 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보도형 장애물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로공간의 유효 폭이 좁아 자전거보관대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한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하되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 및 관리의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중심상업지역에 한해 100m마다 1개소 이상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
- 자전거보관대가 보행 및 건물의 진출입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복수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집중배치하여 가로공간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림 3-24 상업지역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예시〉

기대효과

- 자전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되 보행동선을 안전하게 연결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모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자전거보관대에 오랜 시간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또는 폐기)하는 등 지속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차 가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8

No. 8 공공정보 다이어트

공공정보의 위계를 마련하고 정보매체의 불필요한 조형요소를 덜어내고, 복잡한 정보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여 정보전달력을 향상시켜 공공정보로서의 기능 회복

계획의 배경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요소별 현황을 행정동별로 분석한 결과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요소가 공공정보매체이며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 내에서 노출빈도가 매우 높은 요소이다.
- 가로공간, 공원녹지, 공공건축물 내·외부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시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
- 공공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올바른 전달이 우선되어야 하나 정보매체(구조체)의 형태, 색채, 규모 등의 시각적 상징성을 부각시켜 도시 내 과디자인을 유발하고 공공정보의 표기체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림 3-25 구리시 내 공공정보의 현황>

기본개념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구리시만의 특성과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 간결한 정보매체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정보 전달력이 우수한 공공정보의 위계를 설정한다.
- 공공정보의 설치 위치(높이, 거리 등)에 따른 인지성 및 보행자 및 운전자의 조망거리를 고려하여 정보매체의 합리적인 규모와 공공정보의 서체(글꼴), 글자 크기, 자간(글자 간격), 장평(글자 폭) 등의 표기 기준을 설정한다.
- 도시 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정보의 경우 정보매체의 디자인 및 정보표기체계에 규칙성을 부여하여 도시 내 인지성을 강화한다.
- 공공정보매체 및 공공정보의 디자인 시 반드시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정보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그림 3-26 공공정보매체 및 공공정보의 디자인 개선방안>

기대효과

- 정보의 위계를 설정하여 정보전달력을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공공정보를 최소화하여 시각적 피로감을 완화시킨다.
- 공공정보매체의 형태, 색채, 재료, 규격 등으로 인한 과디자인을 지양하여 도시차원에서 정돈되고 안정감있는 공공디자인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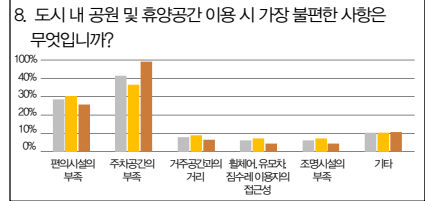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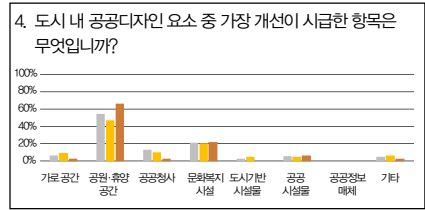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 9

No. 9 그림으로 찾는 편의시설

화장실, 주차공간, 안내데스크 등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누구나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림 문자(픽토그램)를 이용한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적용

계획의 배경

- 구리시 공공디자인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구리시민, 구리시 내 사업체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 도시 내 공공디자인 요소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 공원·휴양공간이 지목되었으며 공원·휴양공간 내에서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 공공정보매체와 관련한 설문결과 중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줄이고 내용의 단순화 및 픽토그램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3-27 구리시 공공디자인 의식조사의 주요 결과〉

기본개념

- 구리시 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픽토그램은 일관성있게 적용하여 의미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화장실, 주차공간, 안내데스크 등 원거리에서의 인지성이 요구되는 편의시설의 경우 픽토그램을 이용한 공공정보 표기체계를 개발하여 과디자인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정보전달력을 향상시킨다.
- 야간에도 인지성이 필요한 편의시설은 조명형 정보매체를 설치하되 픽토그램만 점등되는 형식으로 계획하여 빛공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시민들의 안전 및 관련 법령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규칙 등은 픽토그램과 정보를 함께 표기하여 정보전달력을 향상시키고, 도시 내 동일한 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규칙성을 강화한다.



〈그림 3-28 픽토그램을 활용한 공원시설의 디자인 예시〉

기대효과

- 픽토그램을 이용한 공공정보매체의 설치를 확대 적용하여 편의시설의 인지성을 강화하되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도모한다.
- 구리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공디자인 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IV.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b>1. 가이드라인의 개요</b>	<b>117</b>
<b>2. 가로공간</b>	<b>121</b>
2.1. 공통사항	121
2.2. 생활가로	127
2.2.1. 보도 4m 이상	127
2.2.2. 보도 2m~4m	135
2.2.3. 보도 2m 이하	140
2.2.4. 보차혼용도로	145
2.2.5. 보행자보호구역	149
2.2.6. 자전거도로	154
2.2.7. 교차로 및 횡단보도	158
2.3. 구조물 연결가로	164
2.3.1. 고가도로	164
2.3.2. 보도육교	169
2.3.3. 통로박스	174
<b>3. 건축물공간</b>	<b>179</b>
3.1. 공통사항	179
3.2. 외관	185
3.3. 외부공간	193
3.3.1. 접근공간	193
3.3.2. 편의공간	199
3.3.3. 주차공간	203
3.4. 내부공간	210
3.4.1. 공용공간	210
3.4.2. 민원공간	219
<b>4. 공원·휴양공간</b>	<b>224</b>
4.1. 공통사항	224
4.2. 공원	230
4.3. 녹지	234
4.4. 광장	237
4.5. 휴양공간	239



# 1. 가이드라인의 개요

## 배경 및 목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에 근거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구리시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시민, 공공디자인 전문업체(설계, 시공), 전문가, 공무원을 주체로 하여 도시 내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설계(디자인), 시공, 감리, 자문, 심의 시 지켜야 할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디자인으로 기억되는 도시 구리"를 직·간접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상위 계획인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8년)과 광역 지자체에서 수립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준용하되 도시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구리시만의 정체성을 제고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공공디자인 요소별 현황에 나타내는 주요한 공공공간을 유형화시켜 각각의 공간구조와 함께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설계 및 설치 지침 등을 제시하여 공공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이드라인의 구조



〈그림 4-01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조〉

##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 구리시의 도시 특성에 기초한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

- 구리시의 도시 구조 및 경관자원, 공공디자인 요소별 현황, 시민의 공공디자인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공간을 유형화시킨 공간개념의 가이드라인 수립
- 도시 내 상징성, 시민들의 이용성, 보행자 및 운전자 시점의 조망성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한 가로공간, 건축물공간, 공원·휴양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

### / 공공디자인 요소 상호의 관계성을 고려한 공공공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 공공디자인 요소 각각의 설계 및 설치기준은 물론 상호 관계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디자인 요소와 함께 토목, 건축, 조경 등과 같은 공공공간 설계 및 시공 시 밀접한 요소를 대상으로 도시차원에서 서의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환경 구현 유도

### / 구리시의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적용사례로 이해하는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구리시의 실제 공간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응용이 쉬운 가이드라인 수립
- 글보다는 그림, 전문용어보다는 쉬운 우리말, 일반론보다는 구리시의 사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

가이드라인의 구성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조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실효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디자인의 범위로 지정한 공공시설물은 물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를 포함한 공공디자인 환경 전반으로 확장하여 수립한다.
- 구리시의 도시 구조적 특성과 공공디자인 현황에 기초하여 공공공간을 유형화시킨 후 각각의 공간구조,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설계기준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유사 법·제도 및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물리적 구분보다는 실제 구리시의 도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가로공간, 건축물공간, 공원휴양공간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가이드라인의 영역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영역은 가로공간, 건축물공간, 공원·휴양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 유형을 세분화시켜 공간구조,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설계 및 설치기준을 <표 4-01>과 같이 계획한다.

공공공간 유형			공간 구조	공공 시설물	공공 정보매체	
가. 가로공간	공통사항		●	●	●	
	생활가로	4m이상 보도	일반구간 / 버스·택시정류장 (중앙차로 포함)	●	●	●
		2~4m 보도	일반구간 / 버스·택시정류장 (중앙차로 포함)	●	●	●
		2m이하 보도	일반구간 / 버스·택시정류장	●	●	●
		보차혼용도로	상업지역 / 주거지역	●	●	
		보행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마을주민보호구역	●	●	●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	●
		교차로 및 횡단도	-자형 / T자형 / +자형 / 고원식 횡단보도	●	●	●
	구조물 연결 가로	고가도로	고가도로 / 고가철교	●	●	
		보도육교	보도육교 / 보행연결로	●	●	
통로박스		통로박스	●	●		
나. 건축물공간	공통사항		●	●	●	
	외관	공공청사	공공기관 / 청사 / 행정복지센터 / 소방서 / 지구대 등	●		●
		교육연구시설	학교 / 교육원 / 직업훈련소 / 연구소 / 도서관 등	●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등) / 체육관	●		●
		사회복지시설	복지회관 / 여성회관 / 노인회관 / 청소년회관 /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		●
		환경시설	쓰레기소각장 / 재활용선별장 / 공중화장실 등	●		●
	외부공간	접근공간	외부 주출입구 / 보도	●	●	●
		편의공간	공개공지 / 쉼터	●	●	
		주차공간	노면주차공간 / 건축물주차공간	●	●	●
	내부공간	공용공간	주출입구 및 로비 / 계단실 / 화장실	●		●
민원공간		민원실 / 상담실 / 회의실	●		●	
다. 공원·휴양공간	공통사항		●	●	●	
	공원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역사공원 / 문화공원 / 수변공원 / 모지공원 / 체육공원	●	●	●	
	녹지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연결녹지 / 녹지형 공공공지 (쌈지공원)	●	●	●	
	광장	경관광장 / 교통광장 /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 분수광장	●	●	●	
	휴양공간	하천·산림 공공이용공간 / 캠핑장 등	●	●	●	

<표 4-01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영역>

**공공시설물  
세부항목**

- 공공디자인 요소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에 근거하여 세분화되는 공공시설물은 <표 4-02>와 같이 구분하며 공공공간의 유형에 따라 필요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공공시설물의 세부 항목은 공공디자인법 제2조 제3항을 준용하되,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현황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 세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유사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적용한다.

<b>공공시설물</b>	<b>대중교통시설물</b>	보행·차량신호등 / 통합지주 / 버스·택시승차대, 중앙분리대 / 자전거보관대 등
	<b>보행안전시설물</b>	가로등 / 보행등 / 볼라드 / 보도펜스 / 방호울타리 등
	<b>편의시설물</b>	벤치 / 휴지통 / 파고라 / 공중전화부스 / 가로판매대 / 음수대 / 운동시설 등
	<b>공급시설물</b>	맨홀 / 배전함 / 교통신호제어함 / 가로등 제어함 / 트랜치 / 환기구 / 제설함 / CCTV 외함 / 지상식·옥외 소화전 등
	<b>녹지시설물</b>	수목보호대 / 화분대 / 분수대 / 울타리 등
	<b>기타 시설물</b>	방음벽 / 옹벽 / 낙석방지망 등

<표 4-02 구리시 공공시설물 세부 항목>

**공공정보매체  
세부항목**

- 공공디자인 요소 중 세분화되는 공공정보매체는 <표 4-03>과 같이 구분하며 공공공간의 유형에 따라 필요 세부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공공정보매체의 세부항목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각매체 중 공공정보가 포함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 공공정보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현황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구성한다.
- 세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공정보매체의 디자인 개발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유사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후 적용한다.
- 공공정보매체의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정보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서체의 글꼴, 크기, 간격 등을 참고하여 구리시 내 공공건축물의 규모 및 기존 공공정보매체의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b>공공정보매체</b>	<b>가로공간</b>	<b>생활가로</b>	시경계표지 / 종합안내표지 / 지역안내표지 / 시설안내표지 / 지주형 버스노선안내표지 / 시설방향유도표지 /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 현수막 게시대 등
		<b>구조물 연결 가로</b>	구조물명칭표지 (교명주 포함) /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
	<b>건축물공간</b>	<b>외관</b>	건물명표지 / LED 전광판 등
<b>외부공간</b>		주차안내표지 / 방향유도표지 /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	
<b>내부공간</b>		종합안내표지 / 층별안내표지 / 실별안내표지 / 방향유도표지 / 부서안내표지 / 직원배치표지 / 민원안내표지 등	
<b>공원·휴양공간</b>		관광안내표지 / 공원 및 광장 종합안내표지 / 시설안내표지 / 시설방향유도표지 / 시설명칭표지 /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	

<표 4-03 구리시 공공정보매체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의  
구성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공통사항과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세분화하여 계획한다.
- 공통사항은 각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함께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공 공간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정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명시한 개요, 가이드라인을 구리시 내 공간에 적용한 예시도, 세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한다.



〈그림 4-02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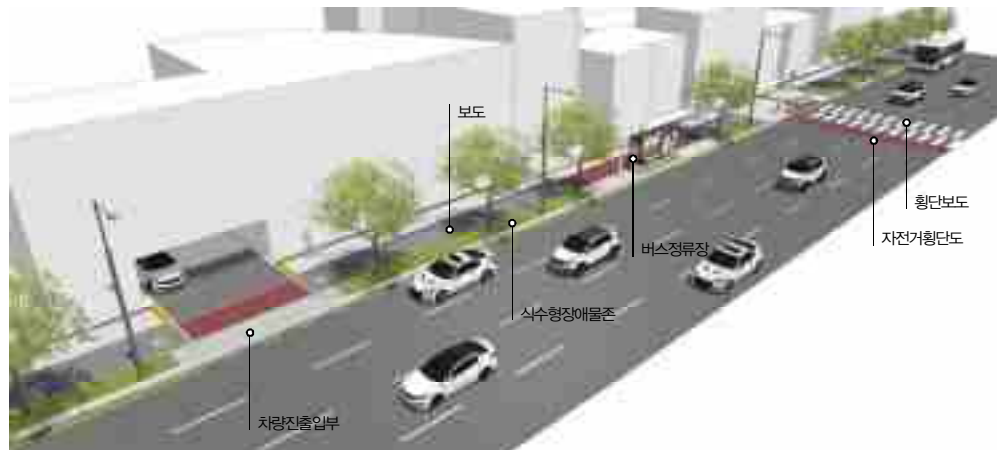
## 2. 가로공간

### 2.1. 공통사항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가로공간의 공통사항은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 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구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한다.

####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그림 4-03 가로공간의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필수 가이드라인

# 1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장애물존

- 장애물존이란 보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조경시설, 식재 등을 일정한 폭의 공간에 집중 배치하여 보행의 유효폭을 확장하고 정돈된 공공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그림 4-04 장애물존의 단면 구조>

- 장애물존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식수형과 보도포장을 적용하는 보도형으로 구분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하되 보행량이 많은 상업지역은 보도형 장애물존의 조성을 권장한다.
- 장애물존은 보도의 유효 폭 확보를 우선하여 폭 3m 이상인 보도를 대상으로 조성하며, 3m 미만인 경우 장애물존의 물리적 구분은 지양하되 공공시설물의 배치를 보차도 경계석에 밀착 설치하여 장애물존의 공간적 개념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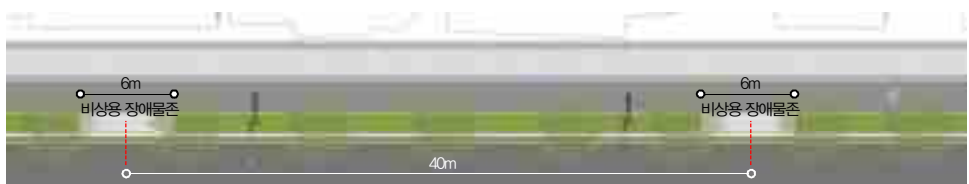


▲ 장애물존의 유형 및 예시도

▲ 3미터 미만의 보도 내 장애물존의 개념만 유지한 가로공간 예시도

<그림 4-05 장애물존의 유형 및 예시도>

- 장애물존의 폭은 양변에 설치되는 경계석의 폭을 포함한 치수이며, 장애물존에 설치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규격 및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1.5m ~ 2m 폭을 권장하지만 구리시 내 보도의 폭이 넓지 않은 구도심은 현장여건에 따라 1.2m까지 완화시켜 적용할 수 있다.
- 보도형 장애물존은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를 적용하며 보도-장애물존으로 조성하는 가로공간의 경우 보행유도블록으로 경계석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 식수형 장애물존의 폭이 1m 미만인 경우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교목의 식재를 지양하고 관목만을 식재하거나 보도형 장애물존으로 조성한다.
- 식수형 장애물존을 조성하는 경우 40m마다 6m 폭의 보도형 장애물존을 조성하여 비상 시 보도와 차도의 상호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이를 비상용 장애물존으로 정의한다. 단, 보도펜스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비상용 장애물존을 설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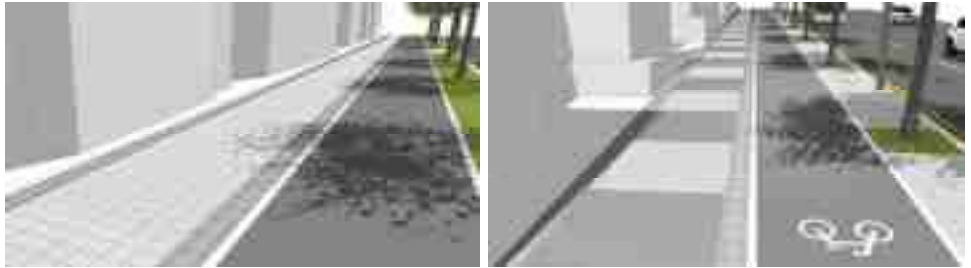


<그림 4-06 비상용 장애물존의 개념 및 설치기준>

필수 가이드라인

## 2 확장감을 유도하는 보도

- 보도의 유효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에 따라 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하나 기존 도로의 구조 및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가로공간의 시각적 확장감을 유도하기 위해 보도 포장재는 패턴이 없는 단색으로 적용하고, 보행자의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증명도의 회색톤을 적용한다.
- 포장재의 심미성, 경제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수성블럭을 주재료로 적용하며, 경계석의 경우 내구성이 우수한 화강석을 권장한다.
- 경사가 있는 보도의 경우 노면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줄무늬 형태의 요철이 있는 투수성블럭을 적용하되, 점자블럭 및 보행유도블럭과 구분되는 색채 및 질감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4-07 보도 포장의 예시〉

- 폭 2m 이상의 보도 양변에는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유도하는 보행유도블럭의 설치를 권장한다. 보행유도블럭은 기존 도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형)블럭의 기능을 대체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동선이 보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보행유도블럭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포장재, 경계석, 점자블럭과 색채 및 질감이 구분되어야 하며, 선형의 요철이 있어 발의 촉감으로 보도의 공간적 영역 및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보도의 시종점부,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구간 등 보행동선의 단절 또는 교차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보행유도블럭이 아닌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08 보행유도블럭의 설치 예시〉

- 투수성블럭, 미끄럼방지블럭, 보행유도블럭 등 기능별 포장재의 예시는 〈그림 4-09〉과 같다.



▲ 투수성블럭

▲ 미끄럼방지 투수성블럭

▲ 보행유도블럭

〈그림 4-09 기능별 포장재의 예시〉

필수 가이드라인

### 3 도시차원의 연속성을 부여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2016)'을 적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재료 고유의 색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보도와 평행한 단면구조로 설치되는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의 유효 폭은 1.5m, 보도의 유효 폭은 2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구도심 및 이면도로 등과 같이 도로의 구조 및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을 1.5m로 축소할 수 있다.
- 하천변에 조성하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유효폭은 일방향 1.5m, 양방향 3m이상으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측면에 각각 0.5m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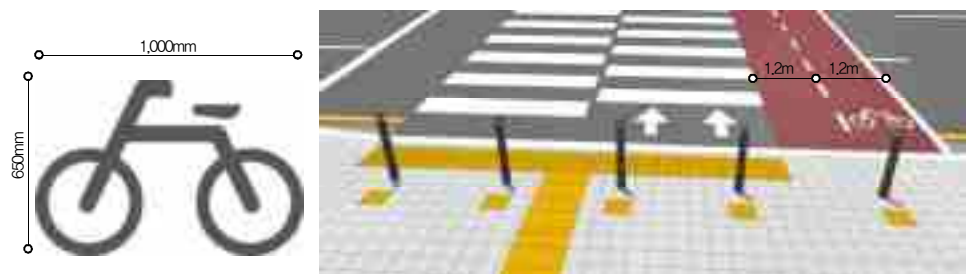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하천변 자전거전용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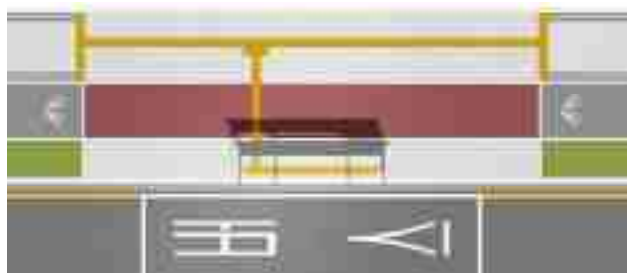
〈그림 4-10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및 하천변 자전거전용도로의 예시〉

- 보도와 연결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차로 내 자전거횡단도 설치 시에는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교차로 순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의 노면에는 자전거 노면표지(픽토그램)를 주행방향에서 정면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수변 자전거전용도로의 시종점부를 포함하여 100m 간격으로 노면표지를 적용한다.



〈그림 4-11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예시〉

- 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하여 버스정류장, 차량 진출입구간 등과 같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동선과 교차하거나 중첩되는 자전거도로에는 상충구간을 나타내는 암적색(어두운 빨강) 포장을 적용한다.



자전거 횡단도 표준색 기준	
Munsell	5R 3 / 4
KS	0075
L*a*b	30,25 / 20,68 / 8,56
sRGB	105 / 58 / 59
CMYK	0 / 45 / 44 / 59

〈그림 4-12 자전거도로 상충구간 적용 사례 및 표준색 기준〉

필수 가이드라인

## 4 심미성과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공공시설물

- 가로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광역차원에서 심미성, 경제성, 사용성 등을 검증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의 경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제품 선택 시 인증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최초인증 3년, 재인증 2년) 내에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림 4-1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의 예시〉

- 공공시설물의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이 결합된 통합지주의 설치를 유도하여야 한다. 인증제품을 우선으로 설치하되 통합지주에 추가 부착물이 필요한 경우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지주와 동일한 색으로 도장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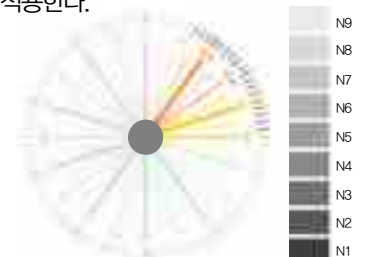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지주 사례

▲ 갈매동 통합지주 사례

〈그림 4-14 통합지주의 디자인 예시 및 설치 사례〉

-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고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조명시설 및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수량을 증가시킬 것을 권장한다.
- 인증제품이 선정되어 있지 않는 공공시설물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거나 기존 기성품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그림 4-15〉와 같이 공공시설물의 권장색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중 목재, 석재, 유리, 강화플라스틱 등 마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료 고유의 색을 적용하되 유리 및 강화플라스틱의 경우 투과성을 우선하여 유색마감재 또는 유색필름 등을 제한한다. 단, 유리면 인지를 위해 부착하는 필름의 경우 백색 또는 고명도 무채색만을 적용한다.

구분		권장색		N2	N3
유채색	색상 (H)	YR / Y			
	명도 (V)	40이하	2.5Y 2/1	2.5Y 4/1	
	채도 (C)	20이하			
무채색 (회색톤)	색상 (H)	N	5YR 2/1	5YR 3/1	
	명도 (V)	30이상	7.5YR 2/1	10YR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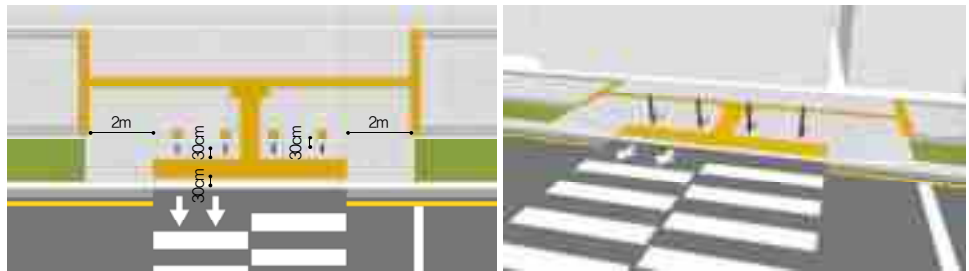


〈그림 4-15 공공시설물 권장 색 범위 및 예시〉

필수 가이드라인

## 5 교통 약자를 배려한 횡단보도 및 차량진출입부

-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교통 약자의 우선 배려가 필요한 횡단보도 및 차량 진출입부 조성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2020)』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도시차원에서 일관성있는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 경계부는 전면경사로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단차는 높이 2cm이하, 횡단보도 방향의 보도 기울기는 1/120이하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 편도2차로 이하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택밀집지역 등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 횡단보도 전면 점자블럭 및 블라드의 설치기준은 <그림 4-16>과 같으며, 블라드의 경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형 블라드의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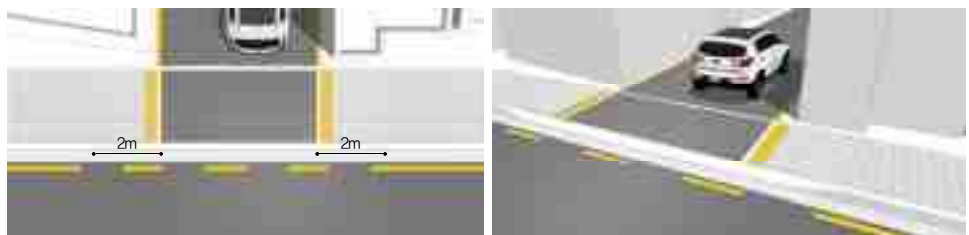


<그림 4-16 횡단보도 경계부 점자블럭 및 블라드 설치 기준>

- 보도 내 차량진출입부 조성 시 시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결되는 보도와 다른 색상(보도 색상과 비교하여 명도 2단계 이상 낮은 어두운 색) 및 질감(미끄럼방지를 위한 줄무늬 형태의 요철이 있는 투수블럭)을 적용하고 자전거도로는 상충구간인 암적색 포장을 적용한다.
- 차량의 진출입 시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진출입구간 양변에 1m~2m의 여유 폭을 포함한 차량진출입부를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의 단면구조에 따른 세부 설치 기준은 <그림 4-17>과 같다.



▲ 장애물존이 있는 차량진출입부



▲ 장애물존이 없는 차량진출입부

<그림 4-17 차량진출입부 설치 기준>

## 2. 가로공간

### 2.2. 생활가로

#### 2.2.1. 보도 4m이상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보도 4m이상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통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도로의 폭이 4m 이상 이거나 장애물존 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보행자도로의 폭이 4m 이상인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보도 4m이상은 구리시 내에서 신시가진 길매동과 교통 및 보행량이 집중되는 경춘로, 장차대로, 벌말로 등과 같이 도로의 설계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주요 간선도로에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전거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 보도-자전거도로-장애물존-차도, 자전거도로-보도-장애물존-차도, 보도-장애물존-자전거도로-차도의 단면구조가 혼재하고 있어 도시차원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 상대적으로 넓은 보도 폭을 활용하여 식수대를 조성하고 있으나 보도 중앙에 위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장애물존과 분리된 식수대 고유의 기능만으로 조성하여 보도의 확장감이 미흡하여 공간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다.



▲ 식수대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시키고 시설물을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사례 (길매동)    ▲ 식수대를 보도보다 높게 설치한 사례 (검배로)  
▲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 (정차대로)    ▲ 자전거도로와 장애물존을 결합한 사례 (인창동)    ▲ 장애물존과의 구분이 없는 사례 (시청 앞)

(그림 4-18 구리시 내 보도 4m이상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보도 4m이상에는 보행 및 자전거의 동선으로 활용되는 일반구간과 버스 및 택시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버스/택시정류장 등으로 공간구조가 구분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04>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일반구간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등이 조성되는 가로공간
	버스/택시정류장	간선·지선·시외버스, 택시 이용을 위한 버스/택시정류장 (중앙차로 포함)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차량신호등, 통합표, 버스/택시승차대, 중앙분리대,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블라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교통신호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트랜치, 환기구, 제설함, CCTV 외함, 지상식 소화전, 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등
공공정보매체	기타시설물	방음벽, 옹벽 등
	공공공간	지역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보행자용),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	시설안내표지(버스/택시승차대), 버스노선안내도, 각종 픽토그램 등

(표 4-04 보도 4m이상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경춘로



▲ 시외버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 부피가 큰 공공시설물의 설치 빈도가 높은 보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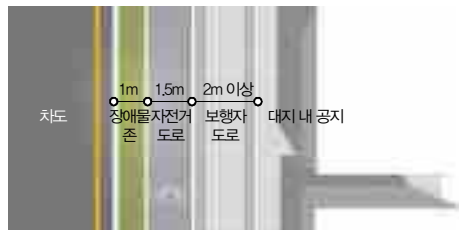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도 4m이상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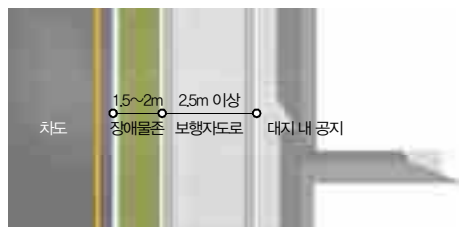
- 구리시의 보도 4m이상은 장애물존 개념을 도입하여 보도 - 자전거도로(선택) - 장애물존 - 차도의 단면 구조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와 연결하는 대지 내 공지는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색채, 패턴)을 적용하여 가로공간의 시각적, 공간적 확장감을 유도하여야 한다.



▲ 보도 - 장애물존으로 구성된 단면구조



▲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을 조성한 보도 4m이상의 예시이미지



▲ 보도 - 자전거도로 - 장애물존으로 구성된 단면구조



▲ 보도와 장애물존을 조성한 보도 4m이상의 예시이미지

〈그림 4-19 보도 4m 이상 단면구조의 예시〉

- 장애물존의 폭이 1.5m 미만인 경우 배전함, 판매대, 자전거보관대 등과 같이 점유면적이 넓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보도와 인접한 대지 내 공지 및 공원 녹지 등에 설치하여 보행 및 자전거의 원활한 동선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버스/택시정류장의 승하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이(bus bay)형 구조를 권장하나, 대상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스탱형(bus stop)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한다. 버스정류장에 조성되는 자전거도로는 상층구간인 암적색 포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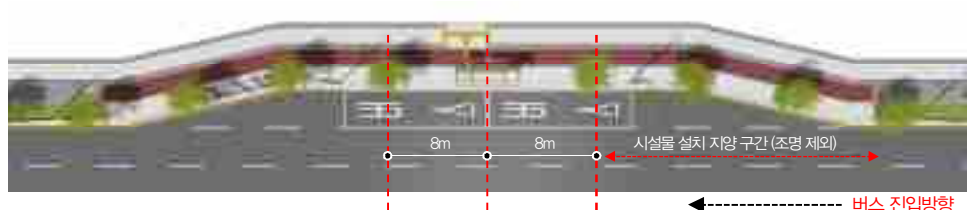
▲ 버스베이형



▲ 버스스탑형

〈그림 4-20 버스/택시정류장의 공간 유형〉

- 버스/택시정류장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기사가 상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버스/택시승차대 설치 중심점에서 좌우 8m 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며 버스의 진입방향인 버스/택시승차대 좌측에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단, 정류장의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조명시설은 예외로 한다.



〈그림 4-21 보도 4m 이상 버스/택시정류장의 가로수 식재 및 공공시설물 설치 지양구간〉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도 4m이상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중앙차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버스승차대의 가로 폭이 넓은 확장형을 설치하거나 노선의 구분에 따라 기본형 버스승차대를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격시켜 반복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벤치, 보행등, 휴지통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버스정차 구간 전체를 연결한 확장형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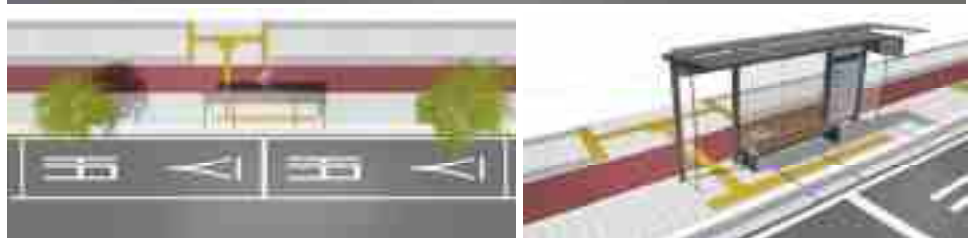


▲ 경기도 광역 환승거점 승강장 기본형 설치 예시



〈그림 4-22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설치 예시〉

- 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도에서 버스 정차지점까지 연결되는 점지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그림 4-23〉과 같다. 버스스탑은 보도 2~4m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그림 4-23 버스정류장의 점지블럭 설치기준〉

- 중앙차로에 위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부에서 버스정차지점까지 연결되는 점지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24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점지블럭 설치기준〉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옥외소화전 설치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5m 구간 등과 같이 소방시설 주변 주차차 금지구간을 설치하는 경우 경계석을 적색으로 설치하며 이를 "레드코트"라 정의한다.
- 레드코트에 설치하는 적색 경계석은 소화전 설치 중심점을 기준으로 중앙의 1개소, 양측 경계부에 각각 1개소(총 3개소)에 "소방시설 주차차금지"를 표기한 백색 사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4-25 소방시설 주차차금지구간 설치 예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버스승차대의 디자인은 갈매동, 경춘로(신규 설치 디자인) 등에 설치한 "경기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승강장 디자인"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일반 가로공간의 경우 가로변 버스승강장 디자인을 적용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경우 "경기도 광역 환승거점 승강장 디자인"을 적용한다.



▲ 중앙차로 버스승차대 : 경기도 광역 환승거점 승강장 디자인 ▲ 일반가로 버스승차대 : 경기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승강장 디자인 (일반형 / 역상형)  
〈그림 4-26 버스승차대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의 기능 및 이용 행태에 따라 버스/택시승차대, 벤치, 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은 보도형 장애물 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 4m 이상 가로공간에 설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대, 구두수선대, 방범용 CCTV지주 등은 인증제품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광역에서 수립한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 판매대 ▲ 구두수선대 ▲ 방범용 CCTV 지주  
〈그림 4-27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안〉

-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도펜스의 경우 무단횡단방지펜스와의 중복 설치를 지양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한하여 지역 경찰서와의 협의에 통해 설치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보도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도로의 선형 및 높낮이에 따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부분교체 및 보수 등이 용이한 인증제품을 권장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한 가로공간의 연속성 및 개방성을 부여한 수평방향의 부재를 적용한 보도펜스 디자인을 적용한다.
- 보도형 장애물존에 식재하는 교목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철재구조 등의 수목보호대는 향후 잔디보호매트로 변경할 것을 권장한다.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도 4m이상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버스승차대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의 경우 보행동 겸용 가로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가로수의 생육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설치간격에 규칙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 자전거 거치 시 점유면적이 넓고 미관을 저해하게 되는 자전거보관대의 경우 장애물존 내 설치를 지양하고 보도와 인접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공공공간은 물론 보행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상업지역의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는 공공시설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 평균 100m마다 1대의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공원녹지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예시

▲ 상업시설 전면공지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예시

(그림 4-28 자전거보관대 설치 예시)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가로공간에 설치하는 시경계 안내사인, 지역안내사인, 시설안내사인, 시설방향유도사인 등과 공공정보매체는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표 4-05>와 같이 적용한다. 단,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서체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사인명칭 / 시정구호(국문)	윤고딕 340~35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사인명칭 / 시정구호(영문)	윤고딕 330~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③ 소재목(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④ 소재목(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⑤ 사인내용	윤고딕 320~330	-25 (최대 -35)	100%	조정 불가
⑥ 숫자 또는 기호	윤고딕 320~330	-25	100%	조정 불가

(표 4-05 가로공간 공공정보매체 서체 적용기준)

- 가로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정보매체의 구조체 제작 시 공공시설물의 권장색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정보의 배경면과 글자 색 등은 <표 4-06>과 같이 적용한다. 단, 동일한 정보매체 내에서 정보의 색채 혼용 시 3가지 이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단, 레드코트와 같이 노면에 직접 도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 (서체, 기호 등) 일반색	정보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백색 또는 흑색 (정보의 위계에 따라 회색톤 중에서 선택 적용 가능)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표 4-06 가로공간 공공정보매체 구조체 및 정보 색채 적용기준)

- 가로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정보매체에 공공정보 픽토그램을 적용할 경우 KS S ISO 7001: 그래픽 심볼 공공안내심볼(국가표준기술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정보 중 주기적인 내용의 변경 및 교체가 이루어지는 내용은 구조체에 직접 인쇄 및 부착방식을 지양하고 실사출력 또는 그래픽 슈트로 시공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단, 햇빛, 눈, 비 등 외부환경에 의해 변색, 변형이 적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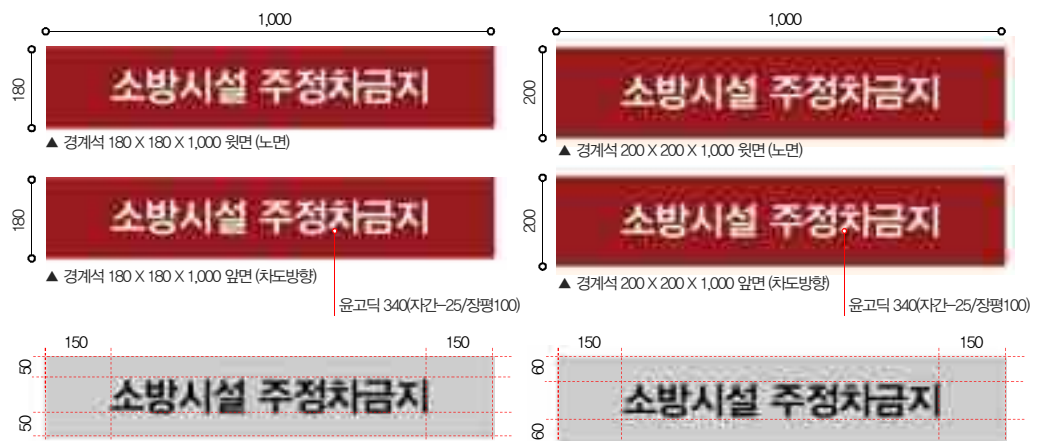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광고로 인한 시각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의 설치를 지양하고 시에서 허가한 지정 현수막게시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현수막게시대의 상부 정보면은 구리시의 공공정보를 안내하는 "G마크(공공건축물 공통사항 가이드라인 참고)와 도시 슬로건(시정 구호)을 <그림 4-29>과 같이 적용한다.



<그림 4-29 현수막게시대 상부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적용 예시>

- 레드코트에 설치하는 적색 경계석 위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구간임을 명시한 공공정보의 표기기준은 <그림 4-30>과 같다.



<그림 4-30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간 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적용 예시>

## 2. 가로공간

### 2.2. 생활가로

#### 2.2.2. 보도 2~4m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보도 2~4m는 보행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통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도로의 폭이 2m초과~4m이하 이거나 식수대(장애물존) 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보행자도로의 폭이 2m초과~4m이하인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보도 2~4m는 구리시 내에서 상업시설이 집중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 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보행량이 집중되는 가로공간이지만 보도와 함께 자전거도로, 장애물존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위계 및 물리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동선이 중첩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유효 폭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보도 폭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 사례가 빈번하여 가로수의 수형을 고려하지 않은 전정(가치치기)을 하여 미관을 훼손하거나 수목보호대와 보도의 단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부피감이 큰 시설물 및 기초부위가 노출된 지주형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이 부재하여 보도를 점유하거나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다.



▲ 보도 내 상업시설의 지장물 설치 ▲ 보도와 대지 내 공지와의 통합설계 미흡 ▲ 대지 경계부에 안충녹지와 경계시설(펜스)이 중복 설치



▲ 보행자 및 운전자 시점에서의 녹시율 우수

▲ 버스정류장 구간의 보행 유효폭 축소 ▲ 개방형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여 보행동선 확보

〈그림 4-31 구리시 내 보도 2~4m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보도 2~4m에는 보행 및 자전거의 동선으로 활용되는 일반구간과 버스 및 택시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버스/택시정류장 등으로 공간구조가 구분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07>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일반구간	보도, 장애물존 등이 조성되는 가로공간
	버스/택시정류장	간선·지선버스, 택시 이용을 위한 버스/택시정류장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차량신호등, 통합폴, 버스/택시승차대, 중앙분리대,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블라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공공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교통신호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트랜치, 환기구, 제설함, CCTV 외함, 지상식 소화전, 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등
	기타시설물	방음벽, 옹벽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지역안내표지, 시설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보행자용) 등
	공공시설물	버스노선안내도, 각종 픽토그램 등

〈표 4-07 보도 2~4m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이문안로



▲ 보도 내 점유면적이 큰 버스승차대

▲ 상업시설의 지장물이 돌출되어 있는 보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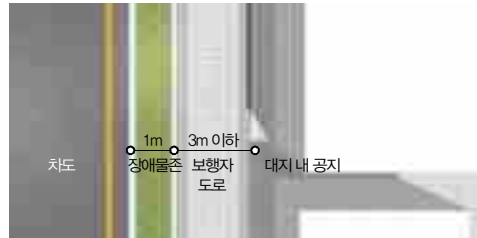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도 2~4m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구리시의 보도 2~4m에는 장애물존 개념을 도입하여 보도 - 장애물존 - 차도의 단면구조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와 연결하는 대지 내 공지는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색채, 패턴)을 적용하여 가로공간의 시각적, 공간적 확장감을 유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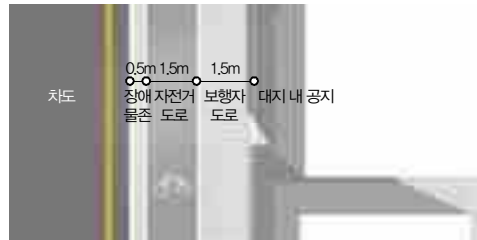
▲ 보도 - 장애물존으로 구성된 단면구조



▲ 보도와 장애물존을 조성한 2~4m 이상 보도의 예시이미지

(그림 4-32 2~4m 보도 단면구조의 예시)

- 보도의 유효 폭이 좁아 자전거도로의 조성은 지양하나 자전거동선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장애물존은 최소 폭으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각각 1.5m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 때 대지 내 공지에 보도의 연장공간으로서 개념을 부여하여 보도의 확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 보도 - 자전거도로 - 장애물존으로 구성된 단면구조



▲ 보도 - 자전거도로 - 장애물존을 조성한 2m~4m 보도의 예시이미지

(그림 4-33 보도 2~4m 내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단면구조의 예시)

- 배전함, 판매대, 자전거보관대 등과 같이 점유면적이 넓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보도와 인접한 대지 내 공지 및 공원 녹지 등에 설치하여 보행 및 자전거의 원활한 동선 확보를 권장한다.



▲ 지장 : 보도 내에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침범하는 사례



▲ 권장 : 공원·녹지 또는 대지 내 공지 등에 설치한 사례

(그림 4-34 대형 공공시설물의 설치 사례)

- 버스/택시정류장의 승하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이(bus bay)형 구조를 권장하나, 대상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스탑형(bus stop)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단, 승차대의 폭을 고려하여 장애물존은 최소 폭 1.5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역상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베이



버스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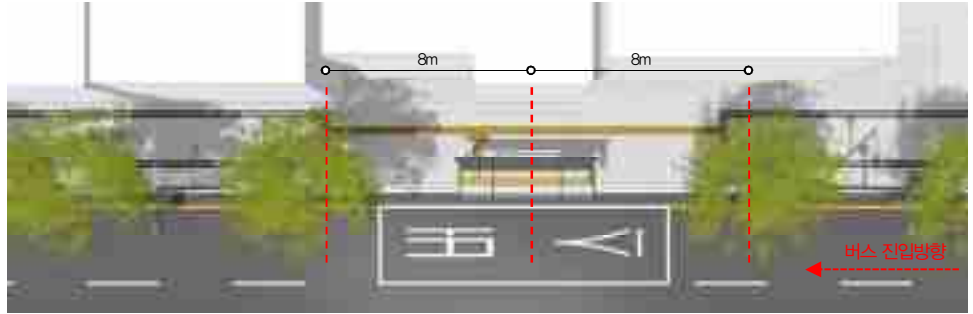


(그림 4-35 버스/택시정류장의 공간 유형)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도 2~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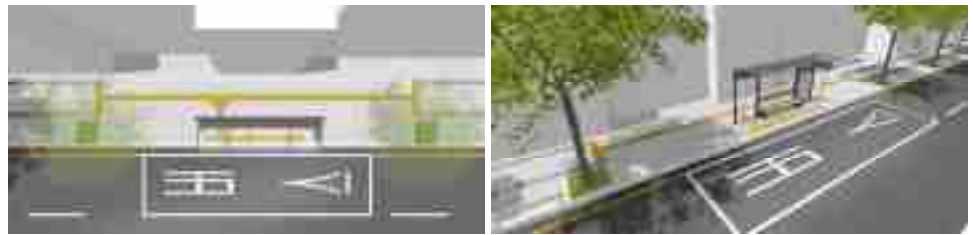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버스/택시정류장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지사가 상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버스/택시승차대 설치 중심점에서 좌우 8m 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며 버스의 진입방향인 버스/택시승차대 좌측에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한다.



〈그림 4-36 버스/택시정류장의 가로수 식재 및 공공시설물 설치 지양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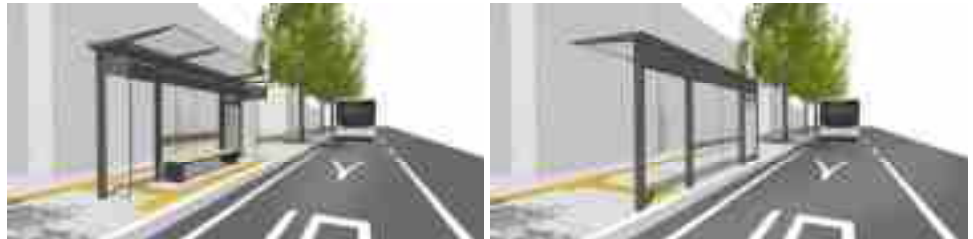
- 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도에서 버스승차대가 위치한 장애물존까지 연결되는 점지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그림 4-37〉과 같다.



〈그림 4-37 버스정류장의 점지블럭 설치기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버스승차대는 버스베이 및 버스탑 중심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물존을 포함한 보도 폭이 3m미만 인 경우에는 버스승차대의 지주방향이 차도 방향으로 설치되는 역상형 버스승차대를 설치하여 보행의 유효폭 확보를 권장한다. 단, 보도와 연결하여 단차가 없는 공공공간 또는 대지 내 공지 등이 조성되어 보행의 유효 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방향으로 설치한다.



▲ 보도 폭이 3m 이상이거나 개방형 구조의 대지 내 공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 보도 폭이 3m 이하로 버스승차대로 인해 보행동선의 단절이 우려되는 경우

〈그림 4-38 보도 폭에 따른 버스승차대의 설치방향〉

- 보도형 장애물존에 식재하는 교목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철재구조 등의 수목보호대는 향후 잔디보호매트로 변경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의 여건상 장애물존의 폭이 1.2m 미만(양측 경계석 포함)인 경우 교목의 식재는 지양한다.
- 버스승차대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의 경우 보행등 겸용 가로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 가로수의 생육을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설치간격에 규칙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 보도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도로의 선형 및 높낮이에 따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부분교체 및 보수 등이 용이한 인증제품을 권장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한 가로공간의 연속성 및 개방성을 부여한 수평방향의 부재를 적용한 보도펜스 디자인을 적용한다.

## 2. 가로공간

### 2.2. 생활가로

#### 2.2.3. 보도 2m이하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보도 2m이하는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의 폭이 2m 이하인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보도 2m이하는 구리시 내에서 차도와 분리된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생활가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도심 지역의 분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 일부 가로공간의 경우 보도의 최소 유효폭 1.5m가 확보되지 않으나 가로수 식재,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휠체어 이용자, 짐수레를 이용하는 노약자 등의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 보도의 시종점부, 횡단보도 경계부, 차량 진출입구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턱낮추기 유효폭 0.9m, 기울기 12분의 1 이하)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보도 내 요철(보도 포장의 품질 저하)로 인해 보행에 장애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 보도의 폭이 좁아 보도와 접하고 있는 대지 내 공지와 통합설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옹벽조성, 단차 발생, 경계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보도의 시각적, 공간적 확장이 불가능하고 일부 부피가 큰 대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상업시설의 불법 지장물이 설치되어 보행동선이 단절되는 구간이 있다.
- 시공의 용이성 및 경제성을 우선고려하여 보도 포장재에 녹색, 적색 등과 같이 고체도의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적용하여 주변 공간과 조화롭지 못한 공공공간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 대지 경계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공공시설물 및 가로수가 식재되어 보행의 유효 폭 확보가 어려운 사례



▲ 보도의 경사가 급격하여 신체약자의 보행이 어려운 사례 (수택2동)

▲ 고체도 포장색을 적용한 사례

〈그림 4-39 구리시 내 보도 2m이하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보도 2m이하에는 보행동선으로 활용되는 일반구간과 버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 등으로 공간구조가 구분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08〉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일반구간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도가 조성되는 가로공간
	버스정류장	지선버스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차량신호등, 통합플, 버스승차대, 중앙분리대,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볼라드, 보도펜스,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교통신호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트랜치, 제설함, CCTV 외함, 지상식 소화전, 옥외소화전 등
	기타시설물	방음벽, 옹벽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시설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보행자용) 등
	공공시설물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등

〈표 4-08 보도 2m이하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도 2m이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장자대로37번길



▲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데지 내 공지와 연결한 버스정류장



▲ 차도방향으로 돌출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횡단보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도 2m이하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보도의 유효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2019)』에 따라 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보도의 확장을 우선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인접한 대지의 구조 및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 2m이하의 가로공간에서는 보행의 유효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 보도와 분리되는 장애물존 및 자전거도로의 조성을 지양하며 (그림 4-40)과 같은 단면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대지 내 공지 유무에 따른 보도 2m 이하의 단면구조

▲ 보도 2m 이하의 예시이미지

〈그림 4-40 보도 2m이하 단면구조의 예시〉

-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도시구조 및 지형상 보도의 유효 폭이 1.5m미만인 경우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2019)』에 따라 50m마다 1.5mX1.5m의 휠체어 교행구간을 규칙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보도 2m 이하의 가로공간에 버스정류장을 조성할 경우 보도의 점유면적의 넓은 버스승차대의 설치를 지양하고 지주형 버스안내표지의 설치를 권장한다. 이용자가 많아 버스승차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역상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형 안내표지를 설치한 버스정류장

▲ 역상형 승차대를 설치한 버스정류장

〈그림 4-41 보도 2m이하의 버스정류장 설치기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보도 2m이하의 가로공간에서는 보행의 유효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시설물 외의 설치를 최소화하며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보차도경계선에 밀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경계에 옹벽이 조성되는 경우 보행자 및 운전자 시점에서의 인공적인 이미지를 순화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개발한 보도용 디자인의 적용을 권장한다.



〈그림 4-42 경기도 옹벽형 인공벽면(보도용) 권장 디자인〉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지주형 버스안내표지의 설치는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개발한 소형 지역안 내사인을 토대로 버스정류장 픽토그램 및 버스 노선을 표기한다.
-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어르신 및 어린이를 배려하여 〈그림 4-43〉과 같이 디지털 버스도착알림판을 지주형 버스안내표지에 매입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내에 시정홍보문구 및 그래픽 패턴 등의 적용은 지양하며 정보면의 서체 적용기준은 <표 4-09>과 같다. 단,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정류장 안내 국문	윤고딕 340	-25(최대 -35)	100%(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정류장 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③ 정류장 번호 숫자	윤고딕 340	-25(최대 -35)	100%	조정 불가
④ 버스 노선번호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⑤ 버스정류장명	윤고딕 330 / 340	-25(장평 -50)	100%(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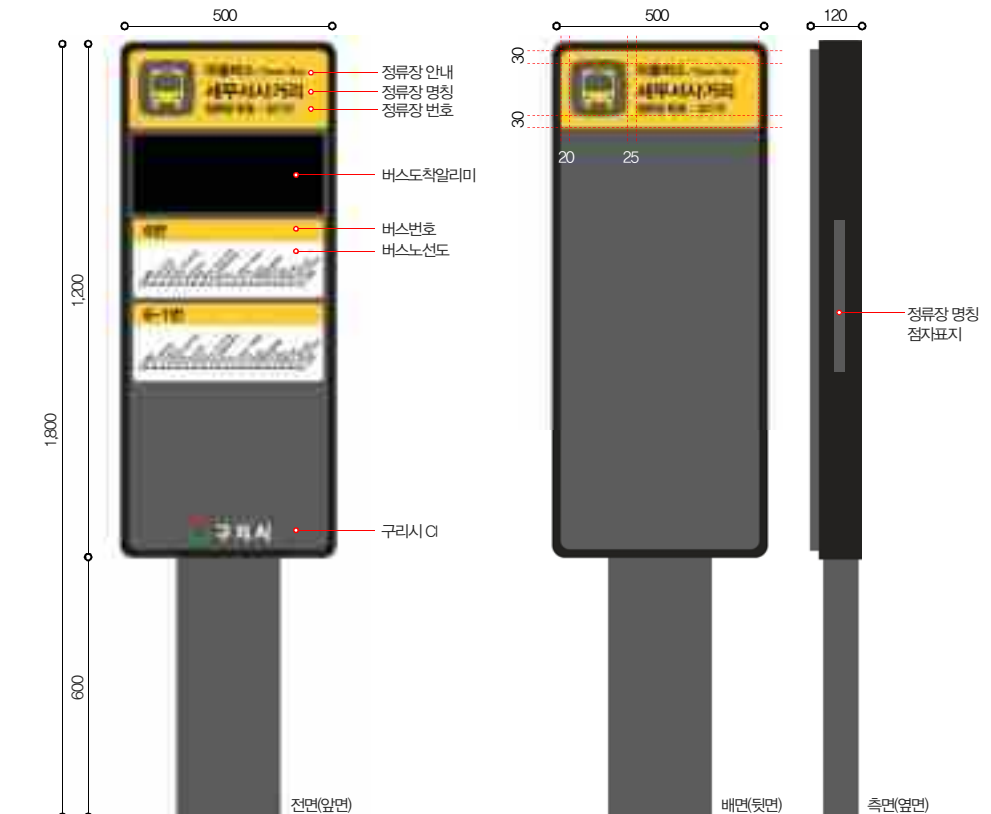
<표 4-09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서체 적용기준>

- 지주형 버스안내표지의 구조체 및 정보면의 색채 적용기준은 <표 4-10>과 같다.

지주 / 정보면 구조체	패널 배경색	정보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Black U C69 / M63 / Y62 / K58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표 4-10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색채 적용기준>

- 디지털 버스도착알림판을 지주형 버스안내표지는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세부 디자인 및 정보의 표기 기준은 <그림 4-43>과 같다.



<그림 4-43 지주형 버스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 2. 가로공간

### 2.2. 생활가로

#### 2.2.4. 보차혼용도로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보차혼용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물리적인 구분 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도심의 경우 저밀 주거지역이 집중되어 있으며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상업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동선을 연결하는 보차혼용도로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 어린이의 통합동선으로 이용하되는 초등학교, 학원가, 주택밀집지역 인근 보차혼용도로의 경우 불법주차, 상업시설의 불법 광고물 (입간판, 풍선 광고물 등) 등으로 자연감시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 구도심의 재정비지구 내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사용 중장비, 트럭, 화물차 등의 통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 주변지역에 대한 방법이 미흡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일몰 후, 약천 후에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 상업지역 이면도로의 경우 각종 폐기물 및 저장물이 방치되어 있거나 가스, 전기설비의 노후된 배관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노출되어 있다. 또한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접근 및 보행자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일부 보차혼용도로에서 노면 도색, 방호울타리 및 차로봉의 설치 등을 통해 보행동선을 구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토대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야간 안전한 가로환경의 조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 상업지역의 경우 불법주차를 감시하는 CCTV의 설치를 확대하여 상업시설 전면 보행자의 접근성 향상과 동시에 인근 공용주차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공공정보매체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보도펜스 및 노면도색으로 동선을 분리한 어린이보호구역 (동인초교)



▲ 노면도색을 적용하였으나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동선 단절



▲ 보도펜스만 설치하여 동선을 분리한 사례



▲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 발생 우려  
(그림 4-44 구리시 내 보차혼용도로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보도 2m이하에는 보행동선으로 활용되는 일반구간과 버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버스정류장 등으로 공간구조가 구분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11>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면도로
	주거지역	저밀 주거지역 및 구도심 주거지역 이면도로
공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보행등(보안등),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
	공급시설물	맨홀, 가로등 제어함, 트랜치, 제설함, CCTV 외함, 옥외소화전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노면표지 등

(표 4-11 보차혼용도로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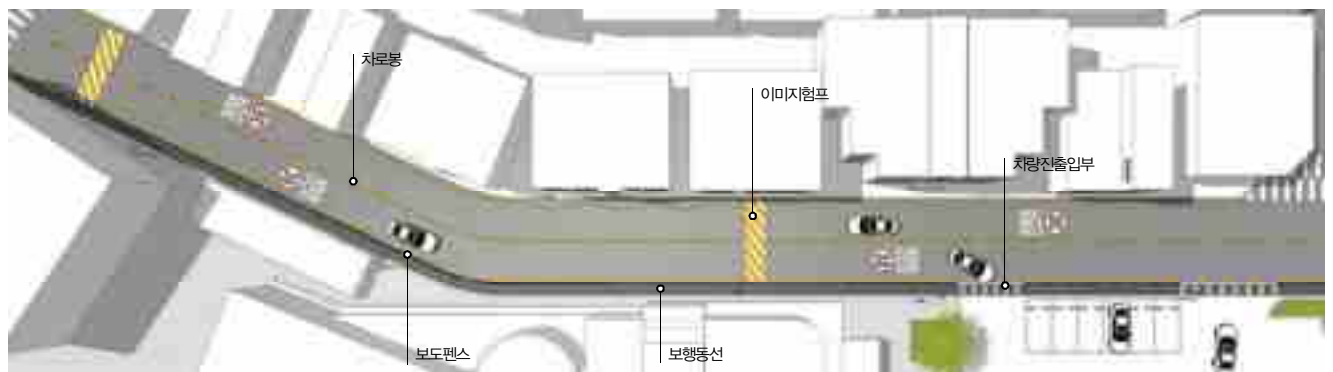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안골로30번길(주거지역/교문도서관 인근)



▲ 불법주정차된 차량 및 상업시설의 지장물로 인해 보행동선 확보 불가

▲ 소방차 등의 접근 및 보행자의 신속한 대피 불가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차혼용도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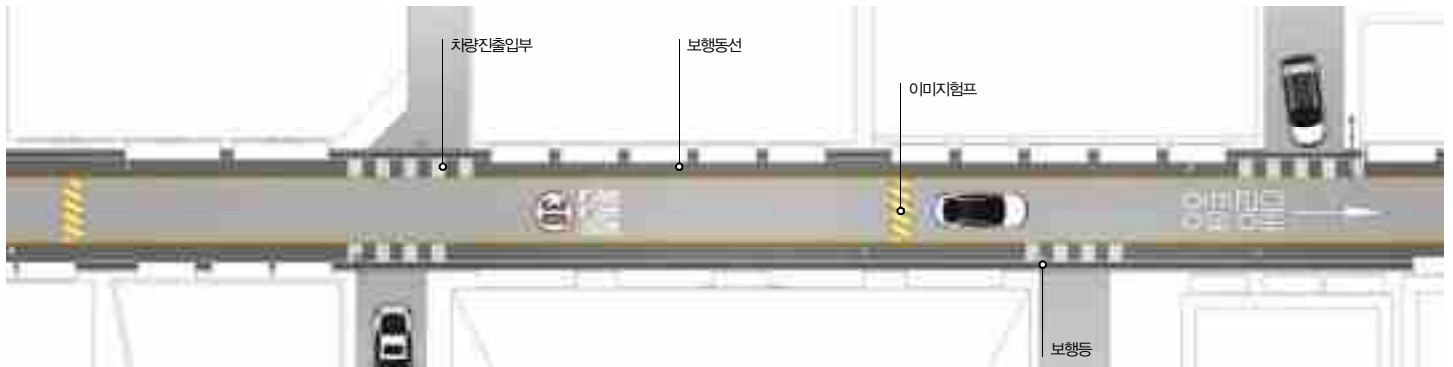
■ 검배로72번길(상업지역)



▲ 불법주정차된 차량 및 상업시설의 지장물로 인해 보행동선 확보 불가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차 등의 접근 및 보행자의 신속한 대피 불가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상업지역 보차혼용도로는 대지 경계부를 벗어난 입간판, 풍선형 광고물, 간이 테이블, 판매대 등을 설치하여 공공공간을 사유화하거나 폐기물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재해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상통로는 상시 확보되어야 하며, 도로 선형의 굴곡이 심한 경우 반드시 일정거리마다 회차공간(차량의 주행방향 변경을 위한 개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도로 양변에 각각 1m 내외의 보행로를 확보하고 중앙 통로를 차량의 동선으로 활용하며, 동선을 구분하는 노면 도색 또는 포장재를 적용을 권장한다. 보행량 및 공간의 특성에 따라 화강판석, 인조화강석블럭(보차도겸용), 칼라콘크리트, 아스팔트 위 도색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45 상업지역 보차혼용도로의 조성 예시>

-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물품반입을 위한 조업차량의 정차시간, 점심·저녁의 방문객 집중시간 등을 고려한 주정차 가능 시간을 운영하고 주정차 관련 운영규칙 및 인근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공공정보매체의 설치를 권장한다.
- 주거지역 보차혼용도로는 도로 양방향 또는 일방향의 보행로를 확보하고 차량 동선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보도펜스 및 도로 중앙에 차로봉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출입부 전면에 보도를 조성하는 경우 포장색의 변화를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보차혼용도로의 경우 이미지험프(도색만을 적용한 평면 방지턱) 또는 지그재그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림 4-46 보행동선 확보 및 감속유도 시설의 조성 예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보행통로를 분리하기 위해 보도펜스를 설치하는 경우 내구성이 우수한 교량용펜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부재에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일몰 후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림 4-47 보차혼용도로의 보행동선 구분을 위한 펜스 권장디자인의 예시>

- 야간, 우천 시에 조도가 낮아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로의 특성상 전신주와 결합된 보행등의 설치를 권장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 2. 가로공간

### 2.2. 생활가로

#### 2.2.5. 보행자보호구역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보행자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모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공공 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의 주요한 통학동선으로 이용되는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보차혼용도로의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교문초, 인창초교 등을 시작으로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설계와 시공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고 대상지별 각기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와 어린이 사이의 시야확보가 어려우며 보행 동선이 단절된 구간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노인회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호구역 내에는 시종점부 안내표지 및 노면 표지 등의 공공정보매체는 설치되어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보행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다.
- 급경사 지형의 도로, 상업지역 이면도로, 보차혼용도로 등에 지정된 보행자 보호구역의 경우 차량의 동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행동선의 확보가 요구된다.



▲ 보차혼용도로 내에 보도펜스 및 노면도색으로 동선을 분리한 동인초교 인근



▲ 경사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 원색 포장을 적용한 부양초교 인근



▲ 정자/백문초교 인근



▲ 기준에 부적합한 경계시설



▲ 횡단보도 전면 노면표지

〈그림 4-48 구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보행자 보호구역의 공간구조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근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인근의 노인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12>와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차량 신호등, 통합폴,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중앙분리대, 자전거 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볼라드, 보도펜스, 무단횡단방지펜스, 방호울타리 등
	공급시설물	맨홀, 교통신호제어함, 가로등제어함, CCTV 외함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보호구역시종점부 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보행자용), 규제표지, 노면표지 등
	공공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픽토그램 등

〈표 4-12 보행자 보호구역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안골로19번길(교문초등학교 인근)



▲ 미끄럼 방지(안적색) 포장에 대한 기준 부재

▲ 횡단보도의 위치가 모호하며 점자블럭의 설치 기준 부적합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행자보호구역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의 가로공간 조성 시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보도를 확보하여 주야간 상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권장한다.
- 기존 이면도로에 위치한 통학로의 구조적 변경이 어려워 보차혼용도로의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보행동선을 구분하는 노면 도색 및 보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보도 및 장애물존 조성

▲ 보차혼용도로의 조성이 불가피하여 보행동선을 구분하고 보도펜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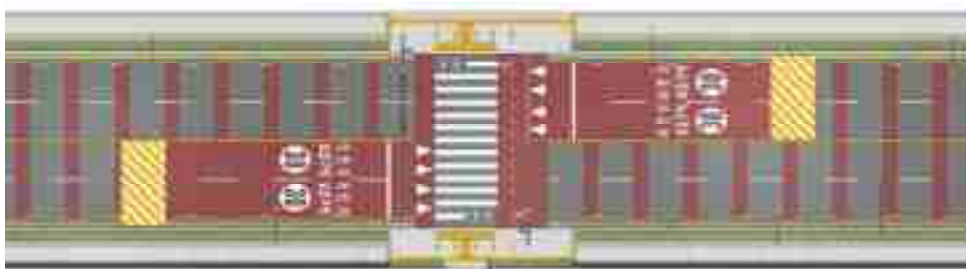
〈그림 4-49 보행자보호구역의 보도 조성 예시〉

- 어린이 보호구역에 장애물존은 완충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식수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되 관목의 수고가 0.8m 이하로 유지관리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행자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보도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학교 주출입문의 차량 진출입부를 제외한 구간에서 펜스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4-50 보행자보호구역의 보도펜스 설치 예시〉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함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 등을 준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지, 시종점부 안내표지 등을 적용하여 원거리에서의 인지성을 강화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종점부, 횡단보도 전후, 교차로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적용하며 과속방지턱(또는 이미지험프), 지그재그 차선을 함께 적용하여 시인성 강화를 권장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은 전면 도색방식과 일정 간격 띄어 도색하는 이격방식을 혼용하여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도색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용한다.
- 미끄럼방지포장의 암적색 도료는 자전거도로의 상층구간과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여 암적색 포장구간에서는 모든 교통수단의 감속을 유도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권장한다.



〈그림 4-51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의 예시〉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보행자보호구역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통학동선 내에 위치하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보행의 연속성을 강화한 고원식으로 조성하여 차량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4-52 고원식 교차로 조성 예시>

-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학교 주출입구는 보행을 우선으로 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폭, 횡단보도 조성 여부, 경사형 진입도로 등에 따라서 <그림 4-53>과 같이 조성한다.



▲ 장애물존 - 자전거도로 -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 주출입구

▲ 보도만 조성되어 있는 학교 주출입구

▲ 횡단보도를 설치한 학교 주출입구

▲ 경사면에 위치한 학교 주출입구

<그림 4-53 학교 주출입구 조성 예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보행자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보도펜스는 사다리 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세로형 부재를 적용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안내하는 픽토그램을 부착할 경우 보도펜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펜스 4개 당 1개소의 픽토그램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4-54 어린이보호구역 픽토그램 안내표지 설치 예시>

## 2. 가로공간

### 2.2. 생활가로

#### 2.2.6. 자전거도로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주행을 위한 노면포장(재료 및 도색 등) 및 노면표지, 지주형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자전거도로용 펜스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의 동선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연결되는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시의 자전거도로는 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도시 남측에 한강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지만 해당 구간은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갈매동을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 중 보도 4m 이상의 가로공간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도로의 위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보도와 장애물존과 함께 조성되는 단면구조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차도방향으로 조성하는 경우 가로등, 신호등과 같은 지주형 시설물을 자전거도로 위에 설치하여 관련 법령에 제시하는 최소 유효 폭(1.5m)의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빈번하다.
- 왕숙천, 갈매천을 따라 조성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자전거의 주행성은 우수하나 보행동선과 교차하는 부분의 노면표지 및 횡단보도 조성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몰 후 원거리 시야확보가 어려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차도방향으로 설치한 갈매동 및 인창동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지 경계에 밀착시켜 설치한 수택3동



▲ 보행동선과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한 왕숙천

▲ 보행동선 교차구간(왕숙천)

▲ 갈매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림 4-55 구리시 내 자전거도로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구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공간구조가 구분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13〉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경계선, 분리대 등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블라드, 자전거도로 펜스,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파고라, 음수대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시설방향유도표지,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자전거노면표지 등

〈표 4-13 자전거도로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자전거도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구리중학교 앞(장자대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자주형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가로수 식재로 인해 최소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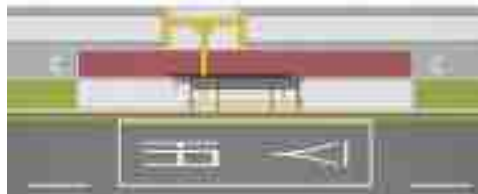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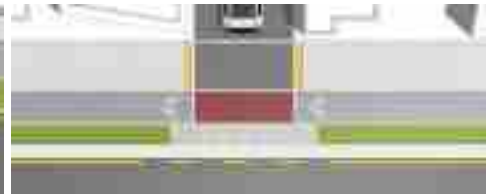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재료 고유의 색을 적용하되 보행 및 차량동선과 교차 또는 중첩이 우려되는 <그림 4-12>와 같은 상충구간에서는 지정 암적색 포장을 적용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을 항상 시켜야 한다.
- 차량동선과 교차하는 자전거도로의 상충구간은 차량운전자의 시인성과 차량의 정지 거리를 고려하여 25m 내외의 완충구간을 포함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도로의 상충구간 시점부와 종점부에는 자전거 노면표지를 적용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지그재그 차선 및 "천천히" 노면표지 등을 추가하여 자전거의 서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버스베이형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의 상충구간



▲ 버스탑형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의 상충구간



▲ 보도 내 차량진출입구간에 설치되는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의 상충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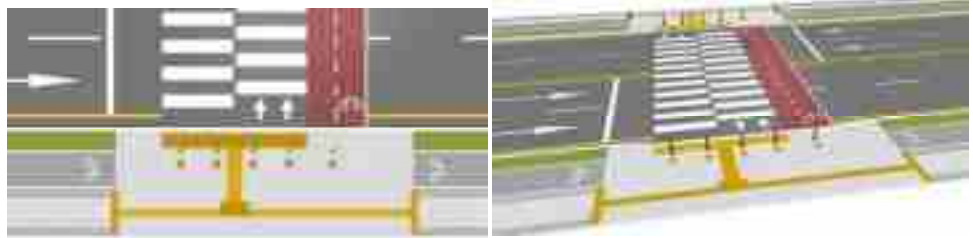
▲ 보행동선과 교차하는 수변 자전거 전용도로의 상충구간



▲ 급경사의 진출입로 하부 수변 자전거 전용도로의 상충구간

<그림 4-56 자전거도로 상충구간 조성 예시>

- 자전거 횡단도는 양방향 차로를 구분하여 2.4~3.0m로 설치하며 중앙선을 표시하고, 우측 통행을 기준으로 시점부에 자전거 노면표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자전거 횡단도는 상충구간과 동일한 암적색 포장을 적용하고 횡단도 전면 보차도 경계선은 2cm 이하의 단차로 조성하여 자전거의 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그림 4-57 자전거횡단도 조성 예시>

- 자전거도로와 연속된 보행연결로, 보도육교 등의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계단부 측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경사로의 폭은 15cm이상 (자전거바퀴의 홈이 있는 경우 9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물 펜스 설치지점에서 20cm 이상 여유 폭을 확보하여 자전거의 페달 및 핸들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자전거도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수변 자전거도로의 동선과 연결되는 교량 설치 시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된 경우 폭 4.5m 이상, 비분리된 경우 3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동선이 연결되는 교량의 경우 자전거도로용 펜스의 설치를 권장하나, 하천의 홍수위를 고려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교량 양변에 높이 30cm 이하의 경계석을 설치하고 반사쉬트가 부착된 표지병등을 설치하여 추락사고의 위험을 인지시킬 것을 권장한다.



〈그림 4-58 자전거도로 연결 교량의 조성 예시〉

- 왕숙천 및 갈매천 등과 같이 하천을 따라 자전거 동선이 연결되는 경우 5~10km의 간격으로 자전거거치대, 벤치, 보행등, 음수대 등을 설치한 간이 쉼터의 조성을 권장한다.



〈그림 4-59 자전거도로 간이 쉼터의 조성 예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자전거도로 펜스의 자전거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하천 등과 같이 추락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은 높이 1.4m 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보행량이 드문 수변공원 등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보행등을 추가 설치하여 20x 이상의 조도 확보를 권장한다.
- 수변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비상차량 및 관리차량의 동선으로 활용할 경우 진출입구에 매입형 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자전거도로에 설치하는 공공정보매체는 관련 법규에서 제시하는 교통표지 외에 노면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대규모의 공원 및 수변공원 내에 조성하는 자전거도로 주변에 공공정보매체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광역에서 개발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디자인 매뉴얼"을 준용하여야 한다.



〈그림 4-60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디자인 기본형〉

## 2. 가로공간

### 2.2. 생활가로

#### 2.2.7. 교차로 및 횡단도

##### 개요

- ★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 교차하는 지점의 접속지점으로 정의하며 횡단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 또는 도로표시에 의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의 횡단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다.
- ★ 본 가이드라인에서 교차로 및 횡단도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동선 연결을 목적으로 조성한 횡단도를 중심으로 연접한 보도, 교통섬(횡단도 사이의 대기공간) 등을 포함한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일몰 후, 악천 후 시에는 원거리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인지성이 다소 미흡하다.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과 같은 보행자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조성 시에도 고원식이 아닌 평면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례가 많아 노약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도시 내 자전거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횡단보도와 함께 자전거횡단도가 조성되어 있는 빈도가 낮은 상황이다.
- 횡단보도 경계부의 보도 기울기, 접지블럭 및 블라드 설치기준, 자전거횡단도 조성기준 등이 관련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많으며 블라드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이 혼재되어 있다.
- 신호등, 가로등, 도로표지, 교통표지, 시설방향유도표지 등과 같은 지주형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중복 설치로 인해 복잡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한 갈매동 우수사례 (단, 일부 요소의 기준 수정필요)

▲ 횡단보도 전면에 공공시설물 설치 또는 가로수를 식재한 사례



▲ 교차로 내 지주형 시설물이 중복 설치된 사례

▲ 접지블럭 및 블라드의 설치 기준이 부적합한 사례

〈그림 4-61 구리시 내 교차로 및 횡단도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교차로는 도로의 형태 및 차로 수에 따라 T자형, +자형, 원형으로 구분하고, 횡단도는 평면형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세분화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14〉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자형 교차로 중 대상지의 특성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각선 교차로를 혼용할 수 있다.

공간구조	평면형 횡단도	차도와 동일한 높이에서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횡단도
	고원식 횡단도	보행우선구역 내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한 횡단도
	T자형 교차로	T자형 구조의 3갈래 교차로
	+자형 교차로	+자형 구조의 4갈래 교차로
	원형 교차로	+자형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이 설치되어 신호 없이 교행하는 도로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차량신호등, 통합폴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블라드, 보도펜스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교통신호제어함, 가로등제어함, 트랜치, 제설함, CCTV 외함 등

〈표 4-14 교차로 및 횡단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평면형 횡단보도



■ 고원식 횡단보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4차 교차로 및 횡단보도



■ 회전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에 조성하는 횡단보도는 주행성을 우선으로 하여 노면표지만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과 같이 보행자 보호구역에서는 보도와 평탄면을 유지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에 조성하는 횡단보도

▲ 보행자 우선도로에 조성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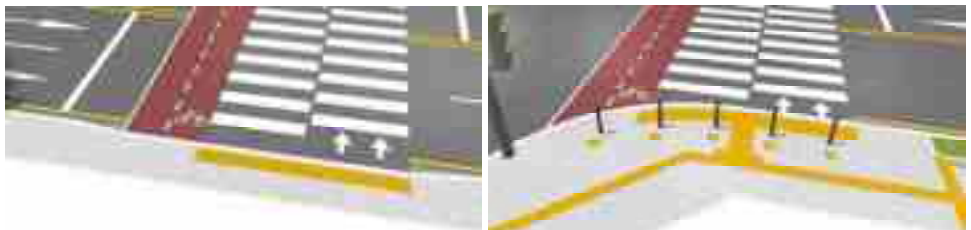
〈그림 4-62 도로의 유형에 따른 횡단보도의 조성 예시〉

-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부로 연결되는 보도의 기울기는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180이하로 조성하되 보도의 폭이 좁아 기울기를 충족시키는 못하는 경우 1/120이하로 완화시켜 적용할 수 있다.
- 횡단보도 전면 보차도 경계선은 노면과 2cm 이하로 설치하여 바퀴 장착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 전면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 폭에 따른 점자블럭의 설치기준은 〈그림 4-63〉과 같다.
- 횡단보도 전면 점형 점자블럭은 경계선 끝선을 기준으로 30cm 이격시킨 지점에 2줄(행)로, 횡단보도의 폭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단, 자전거횡단도 전면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선형 점자블럭은 횡단보도와 동일한 각도로 보도의 5분의 4지점(80%)까지 2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방향의 선형 점자블럭이 만나는 지점에는 점형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방향의 전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 경계부가 곡면으로 조성되는 경우에도 점형 점자블럭을 횡단보도와 동일한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유도존에서 연결되는 횡단보도 전면 점자블럭 설치 시

▲ 보행유도존이 조성되지 않는 보도의 횡단보도 전면 점자블럭 설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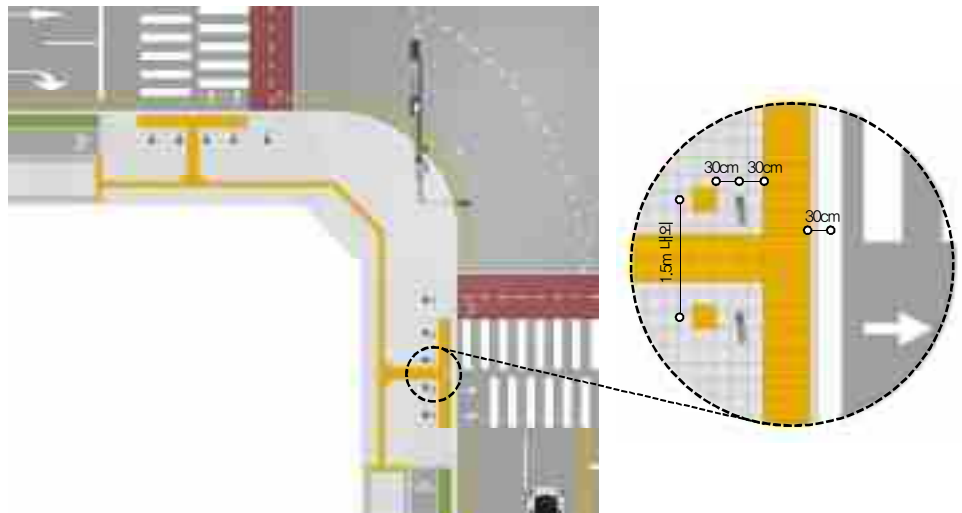
▲ 2m 미만의 보도의 횡단보도 전면 점자블럭 설치 시

▲ 곡선부 횡단보도 전면 점자블럭 설치 시

〈그림 4-63 횡단보도 전면 점자블럭 설치 기준〉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주행속도가 빠른 차량이 집중되는 간선도로, 불법주차 등이 우려되는 상업지역 등 현장여건에 따라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블라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 설치기준은 <그림 4-64>과 같다.
- 블라드의 설치간격은 1.5m 내외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횡단도 전면에 블라드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자전거횡단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설치하여 자전거의 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림 4-64 횡단보도 전면 블라드 설치 기준>

- 점자블럭과 블라드는 중첩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동선을 연결하는 선형 점자블럭의 경우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 횡단보도 사이에 가로등, 신호등, 통합지주 등과 같은 지주형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전면 30cm 지점에 점형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이 유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와 함께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그림 4-65>과 같이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 2개소

▲ 자전거횡단도 3개소

▲ 자전거횡단도 4개소

<그림 4-65 자전거횡단도 설치 기준>

- 횡단보도는 고휘도 발색도료를 적용하며 횡단보도에 맨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맨홀을 개폐할 때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맨홀 표면에는 횡단보도의 노면표시(도색)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관장 예시

▲ 지양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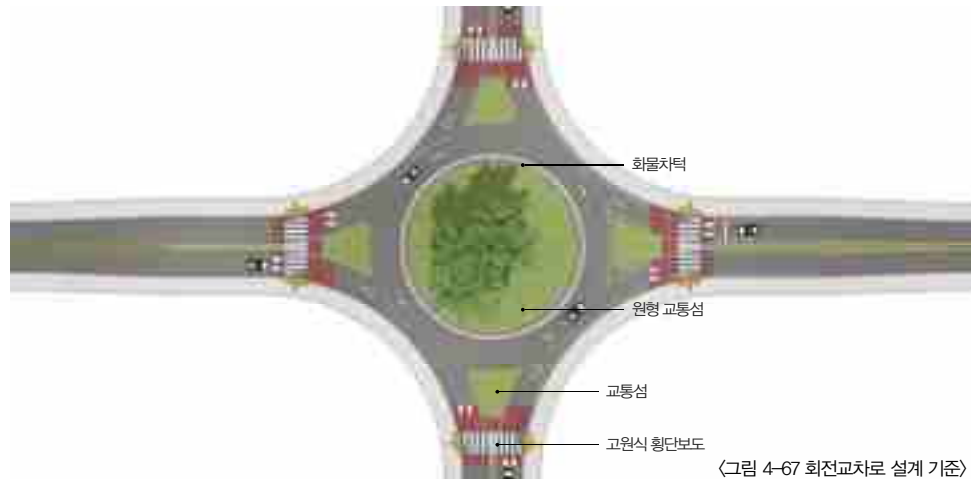
▲ 지양 예시 2

<그림 4-66 횡단보도 위 맨홀 설치 기준>

- 가로공간
- 생활가로
- 교차로 및 횡단보도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그림 4-67>과 같이 설계한다.
- 회전교차로의 유형은 차로수에 따라 1차로형과 2차로형으로 구분하며 중앙의 원형교통섬의 크기가 차로수에 따라 달라지며 교통상황 및 현장여건에 따라 22~31m 내외의 지름으로 조성한다.
- 원형교통섬의 경계부에는 폭 0.5m의 사면 경계석을 설치하고 안쪽으로 1.5~2.0m의 완충공간(이하 화물차턱)을 조성하여 대형 차량의 회전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화물차턱은 사고석 등과 같은 요철이 있는 포장재를 적용하여 진동을 통해 차로 이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화물차턱 안쪽 경계석에 표지병을 설치하여 야간의 인지성 강화를 권장한다.
- 회전교차로 인근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횡단보도 중앙에 분리식수대를 설치하여 양방향 차로의 물리적 구분 및 동선의 유도를 권장한다.
- 원형 교통섬 내부는 식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나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지하고가 높은 장소 등의 교목 식재를 권장한다. 이외 조형물, 장식물, 관목 식재 등은 지양한다.



<그림 4-67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교차로 내에 설치빈도가 높은 신호등, 가로등, CCTV, 도로표지판, 시설방향유도표지 등과 같은 지주형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를 결합한 통합지주를 설치하여 지주의 설치 수량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야간에 고속 주행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별도의 투광기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인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을 권장한다.
- 보행량이 집중되는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통합지주와 결합하여 바닥면에서 높이 1~1.3m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신호의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보행속도가 느린 보행자를 배려하여야 한다.



<그림 4-68 횡단보도 주변 공공시설물의 설치 권장사례>

## 2. 가로공간

### 2.3. 구조물연결가로

#### 2.3.1. 고가도로

##### 개요

- ★ 고가도로는 철도나 다른 도로와 입체 교차 또는 병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면에서 높이 띄워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토목 구조물)로 정의한다.
- ★ 구리시 내 고가도로는 대부분 고속도로 및 철도와 연결되는 구조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구리시의 가로공간과 연결되는 고가도로의 옹벽, 하부공간 등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의 연결을 목적으로 설치된 고가도로는 지면과의 높이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 옹벽 및 교각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도시 내 인공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고가도로 하부 도로 및 인근 가로공간 등 다양한 시점에서 조망되는 고가도로의 거더 및 교각 등에 녹색, 청색 등과 같은 고채도의 도색을 적용하거나 교각에 슈퍼그래픽을 적용하여 배경이 되는 주변 도시공간 및 가로공간과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다.
- 고가도로에서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에도 고채도의 색을 적용한 사례가 빈번하여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주차공간, 편의공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보행량이 집중되는 가로공간의 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몰 후 또는 악천후 시 자연감사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우범화가 우려된다.
- 구리역, 갈매역과 같이 시민들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집중되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경우 외부 방문객을 배려한 진·출입 동선의 안내 및 장소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공공정보매체의 설치가 미흡하다.



▲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조도가 낮아 우범화가 우려되는 사례 (동구동 / 인창동)

▲ 고가도로 하부에 주차공간 및 편의공간을 조성한 사례 (인창동)



▲ 고가도로의 구조체 및 방음벽에 고채도 색을 적용한 사례

▲ 교각 등에 벽화를 적용한 사례

〈그림 4-69 구리시 내 고가도로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고가도로는 가로공간 공중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특성상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되지만 공간구조는 단일 유형으로 계획하고, 〈그림 4-15〉와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고가도로	지상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면보다 높은 공중에 토목 구조물을 설치한 가로공간 및 구조물 하부공간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방호울타리 등
	공급시설물	제설함 등
	기타시설물	방음벽, 옹벽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도로표지, 교통표지,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

〈표 4-15 보다 4m이상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 가로공간
- 구조물연결가로
- 고가도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고가도로(하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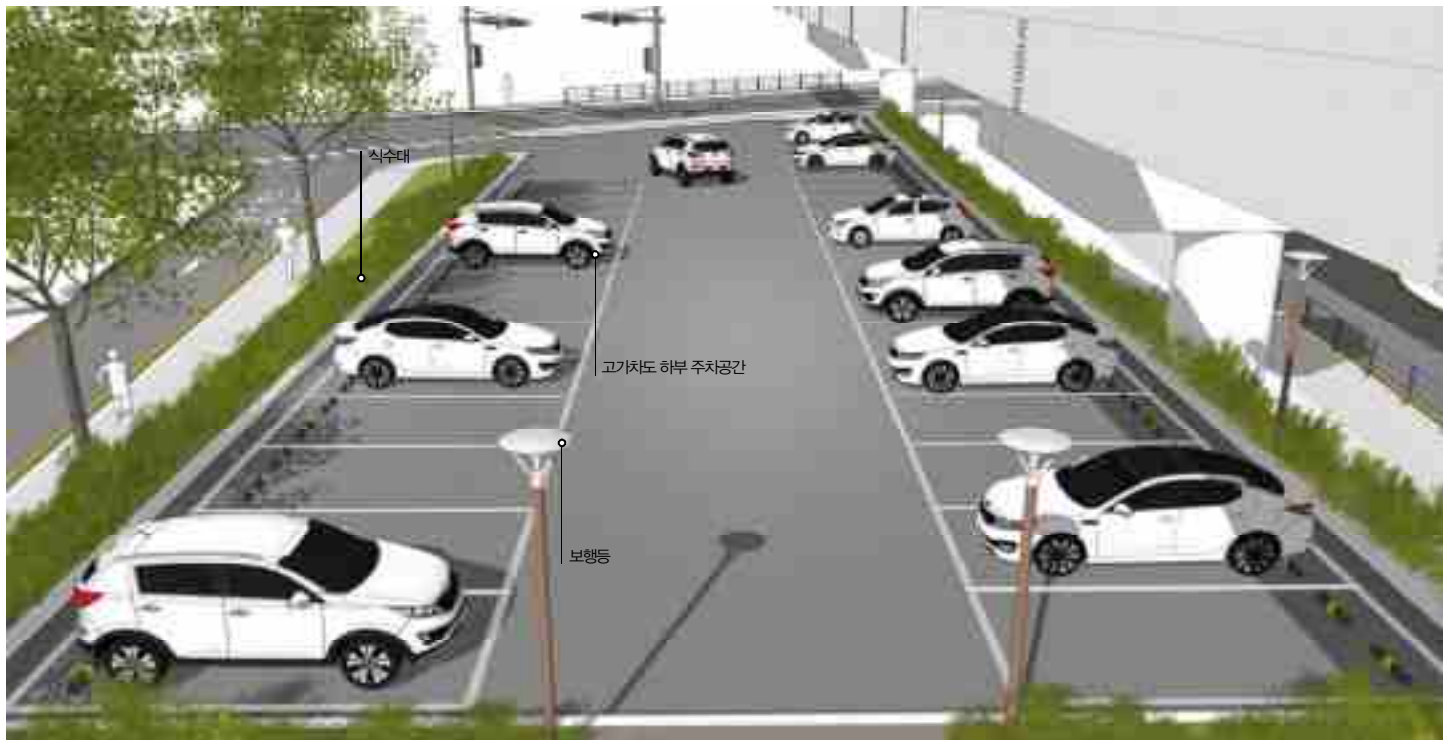


▲ 인접한 가로공간에서의 접근성 미흡



▲ 야간시 조도가 낮으며 공원 내 편의시설(편의공간)의 부족

가이드라인 적용  
평면(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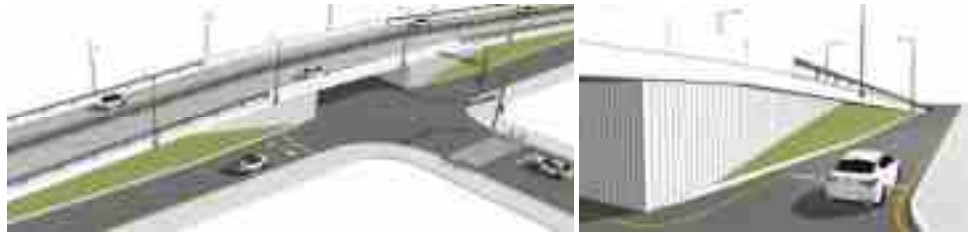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가로공간
- 구조물연결가로
- 고가도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공중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특성상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되는 고가도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주변 가로공간 및 시가지와 조화로운 중·저체도의 색채 및 재료 고유의 질감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고가도로와 측면 도로의 계획고가 달라지는 경사로 양측면의 경우 완만한 경사의 식수대 조성을 권장하나 도로의 폭이 좁아 옹벽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슈퍼그래픽, 장식물 등의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마감을 권장한다.



〈그림 4-70 고가도로 경사로 양측면 식수대의 조성 예시〉

- 고가도로의 옹벽 조성 시 문양거푸집을 적용할 경우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콘크리트 중력식 옹벽의 차도용 권장디자인을 참고하여 선형패턴 등의 단순한 문양을 권장하며 특정 사물 및 동식물의 형상화, 전통문양, 석재(호박돌) 패턴 등은 지양한다.



〈그림 4-71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콘크리트 옹벽의 권장디자인안〉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도시 내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더, 교각, 구조물 하부공간 등을 투사하는 경관조명의 연출을 권장한다. 단, 평균 조도를 3000K 내외로 계획하여야 하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눈부심 현상이 없어야 한다.
- 고가도로 하부의 경관조명 연출 시 백색 조명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체도의 유색 조명, 색변화가 있는 조명, 점등효과가 반복되는 조명의 연출은 지양한다.



▲ (타 도시)관장사례 : 백색 조명 연출

▲ (타 도시)지양사례 : 화려한 색이 변화하는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빛공해를 유발

〈그림 4-72 고가도로 경관조명 연출의 권장 및 지양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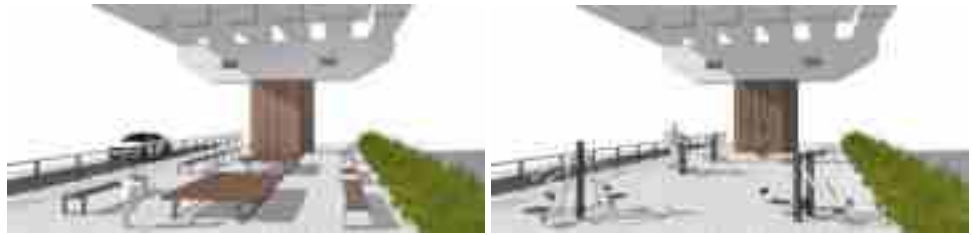
- 고가차도 하부공간에 불필요한 지장물의 설치를 지양하나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개방형 구조의 주차공간 및 편의공간 등의 조성은 권장한다.



〈그림 4-73 고가차도 하부 주차공간 및 편의공간 조성사례〉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고가차도 하부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자연감시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진출입동선 및 주차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공공정보매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가차도 하부에 쉼터 및 운동시설 등과 같은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거주민이 쉽게 접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의 성격을 부여하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차폐할 수 있는 교목 및 수고가 높은 관목의 식재는 지양한다. 또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림 4-74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용 예시〉

- 고가도로 하부에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공간,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보행등, 교각 및 거더 하부의 투광등과 같은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지양 : 조도가 낮아 시인성이 미흡한 사례 (구리역 하부)

▲ 권장 : 보행등을 설치하여 이용성이 우수한 사례 (가나저와시)

〈그림 4-75 고가도로 하부 조명시설 지양 및 권장사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고가차도 하부에 교차로가 조성되어 가속차량의 회전 및 유턴이 빈번한 경우 교각을 이용하여 반사시트를 취부하고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횡단보도 및 교통섬을 설치하는 경우 보차도 경계석을 이용한 반사시트 취부 및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고가차도 하부를 관통하는 보도 조성 시 경계부에 반사시트가 부착된 보도펜스의 설치를 권장하며 교대 및 교각에 조명시설의 설치하여 주변 가로공간 보다 조도의 상향 조절을 권장한다.
- 고가차도 하부에 편의공간 조성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인접한 가로공간과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동시설의 경우 교체도 색의 적용을 지양한다.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고가차도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옹벽, 교각, 교대 등에 벽화의 적용 및 벽면 녹화는 일체 지양한다.
- 고가차도 하부 주차공간 내 진출입동선 및 주차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공공정보매체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지주를 설치하지 않고 교각을 이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한다.



〈그림 4-76 고가차도 하부 주차공간의 공공정보매체 설치 예시〉

## 2. 가로공간

### 2.3. 구조물연결가로

#### 2.3.2. 보도육교

##### 개요

- ★ 보도육교는 보행자가 도로나 철도 등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다리 모양의 구조물로 육교(陸橋) 또는 가도교(架道橋)라고도 말한다.
- ★ 본 가이드라인에서의 보도육교는 다리 모양의 구조물을 중심으로 보행동선이 연결되는 보도 접점공간, 구조물 하부공간 등을 포함한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시 내의 보도육교는 차량의 주행 속도가 빠르고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의 횡단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 구도심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보도육교의 접근시설은 경사로 및 승강기(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으로 설치된 사례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휠체어, 유모차, 짐수레(핸드카트) 등의 비취장착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 서울시에서 아천IC를 거쳐 구리시로 진입하는 경우 시청 인근에 있는 보도육교가 도시의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어 야간조명을 연출하여 상징성을 부각시켰으나 조명의 연출방법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형태 및 모노톤 색채를 적용한 공공디자인 측면의 우수사례이다.
- 신도심지역인 갈매동에 조성한 보도육교의 경우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강기 및 난간 등에 유색 유리를 설치하여 주변 가로공간 및 도시공간과의 조화성이 미흡하다.
- 일부 보도육교의 구조체에 고채도 도색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시각적 부피감과 인공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구리시 내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치하여 가로공간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 구리시청 인근 보도육교의 디자인 우수사례



▲ 보도육교 승강기 및 난간 등에 고채도 청색의 유리마감을 적용한 사례 (갈매동)

▲ 구조체에 고채도의 도색을 적용한 사례 (수택1동)

〈그림 4-77 구리시 내 보도육교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보도육교는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공공공간의 특성에 따라 보도를 연결하는 보도육교, 공원 및 녹지 등을 연결하는 보행연결로로 공간구조를 구분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16〉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보도육교	보행자가 차량 중심의 도로 및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 조성하는 구조물
	보행연결로	도로로 보행자의 접근동선이 단절된 공원, 광장 등으로 연결되는 구조물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보행등, 보도펜스,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공급시설물	제설함 등
	기타시설물	투석방지망 등

〈표 4-16 보도육교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갈매동 보도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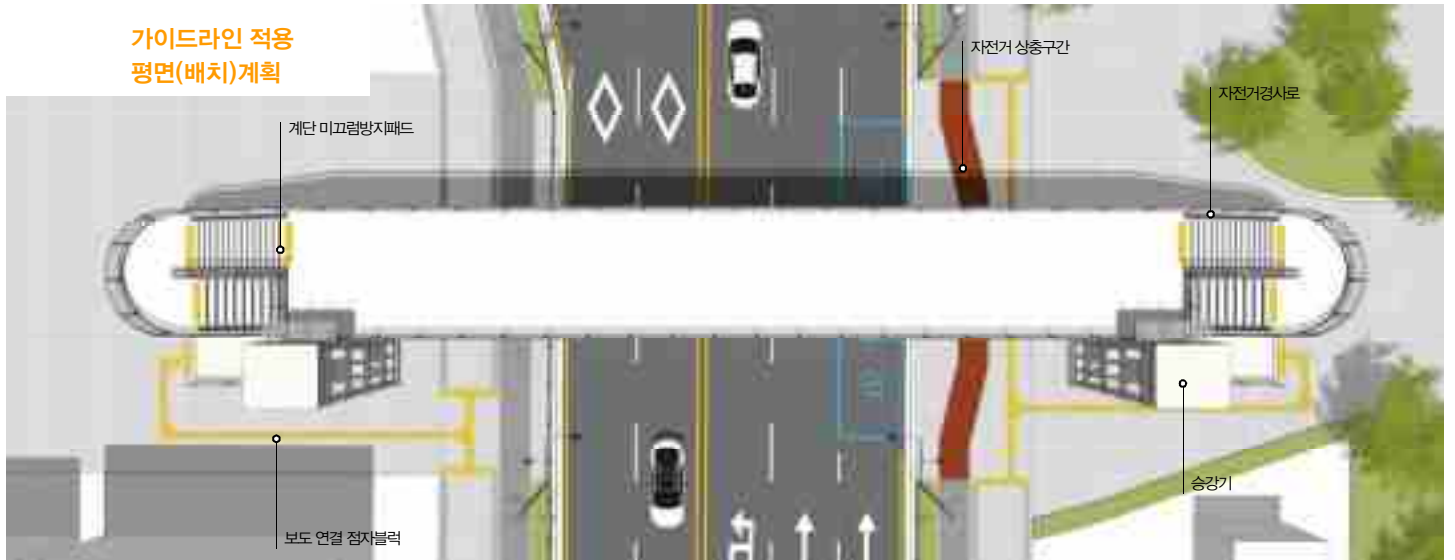


▲ 승강기 및 난간에 교체도 청색유리 설치



▲ 접근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평면(배치)계획



- 가로공간
- 구조물연결가로
- 보도육교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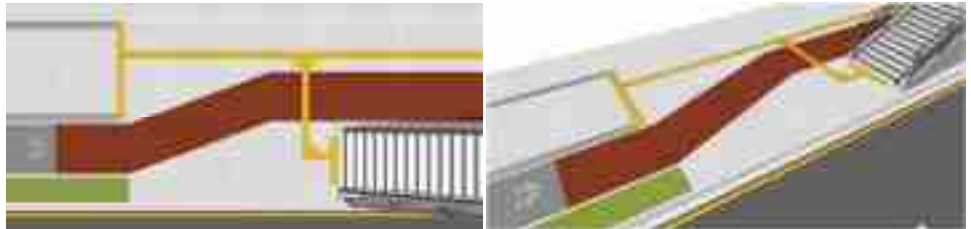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보도육교는 보행자보다는 차량의 주행성을 우선으로 하여 도로 위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계단,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도로 상부를 횡단하는 구조물이므로 향후 도시 내 택지개발 및 구도심 재정비 시에는 보도육교의 조성보다는 횡단보도의 설치를 권장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략과제와 연계하여 도시 내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육교의 거더, 교각, 계단 부 및 슬래브 바닥면 등을 투사하는 경관조명의 연출을 권장한다. 단, 평균 조도를 3000K 내외로 계획하여야 하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눈부심 현상이 없어야 한다.
- 보도육교의 경관조명 연출 시 백색 조명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채도의 유색 조명, 색변화가 있는 조명, 점등효과가 반복되는 조명의 연출은 지양한다.
- 보도육교의 접근시설은 계단, 경사로, 승강기(엘리베이터)의 3가지 유형이 있으나 구조물의 위압감을 완화시키고 휠체어, 유모차, 짐수레 등의 바퀴장착시설물 이용자를 배려하여 계단과 승강기를 혼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도육교의 거더, 교각, 난간 등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을 최소화시키고 차양막(캐노피)의 설치는 지양한다.
-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보도에서 연결되는 점자블럭 및 계단, 승강기 전면 등에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78 보도육교 시종점부 점자블럭 설치 기준〉

- 보도육교의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접근시설이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접한 공공공지, 공원, 광장 등에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 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우회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육교 설치로 인해 자전거도로의 단절 및 유효 폭이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상충구간인 암적색 포장을 적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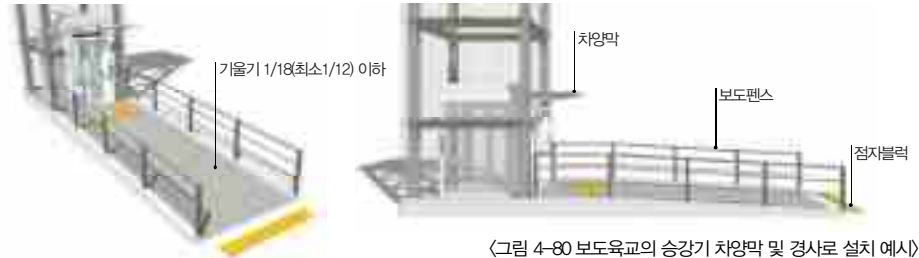


〈그림 4-79 보도육교와 동선 연결을 위한 접근시설의 설치 예시〉

- 보도육교의 노면,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방지를 고려한 포장재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채도의 색상을 적용한 포장재는 지양한다. 석재타일을 적용하는 경우 요철이 있는 버너마감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경사로를 설치하는 보도육교의 경우 가로형 줄눈이 시공되어 있는 포장재를 적용하여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계단모서리에는 미끄럼방지패드 또는 동일한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구성이 미흡한 탈부착용 테이프 및 슈트의 부착을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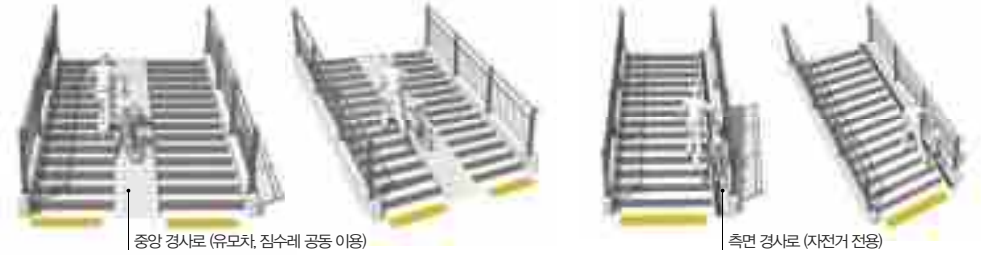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보도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유리를 주재료로 한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승강기 내부는 휠체어의 회전에 가능한 규모로 계획하고 안전바 및 점자버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육교 승강기 출입구의 바닥면은 보도와의 단차를 고려한 기울기 1/180이하(불가피한 경우 1/120이하)의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며 경사로 양측면에 높이 1.2m 이상의 안전바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승강기 대기공간은 수평면은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승강기 대기공간 상부에는 차양막(캐노피)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차양막은 수평면 대기공간의 폭과 같거나 1.2m 이상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한다.



〈그림 4-80 보도육교의 승강기 차양막 및 경사로 설치 예시〉

- 자전거도로와 동선이 연결되는 보도육교 설치 시 계단부 중앙 또는 측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경사로의 폭은 15cm이상 (자전거바퀴의 흠이 있는 경우 9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에서 20cm 이상 여유 폭을 확보하여 자전거의 페달 및 핸들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81 보도육교의 자전거경사로 설치 예시〉

- 보도육교 계단 및 경사로 하부에 불필요한 지장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설함,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육교 하부 공간의 효율성 및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교각 하부 및 계단 시종점부 등의 콘크리트 기초가 보도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그림 4-82 보도육교 하부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된 지양사례 (타 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도로의 차량 주행속도가 빨라 투석방지망이 필요한 경우 난간과 일체형으로 제작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육교에 보행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에서의 조망시야를 고려하여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일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노면 양측면 경계석을 이용한 매입형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공간

### 2.3. 구조물연결가로

#### 2.3.3. 통로박스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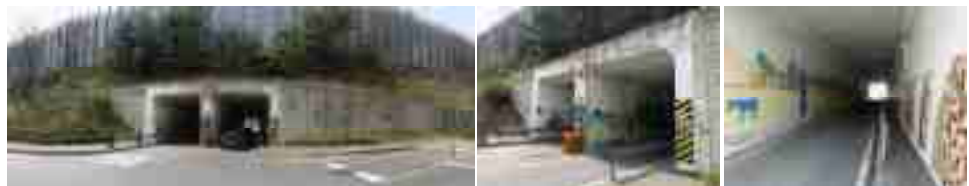
- ★ 통로박스는 도로 및 철도 하부로 차량 및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을 말하며 통로암거(通路暗渠) 또는 지하통로라고도 말한다.
- ★ 본 가이드라인에서 통로박스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마감, 시중점부 날개벽의 입면, 구조물과 연결되는 가로공간 등을 포함한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공원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동선상에 위치하는 통로박스의 경우 낮은 조도 및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통로박스 시중점부와 인접하여 교차로가 위치하는 경우 맞은편 차량에 대한 시인성이 미흡하여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충격흡수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 벽면의 도색 마감등이 노후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유지관리가 어려운 벽화, 슈퍼그래픽 등이 적용되어 주변 공간과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 일부 통로박스의 경우 통행량이 적어 일몰 후 우범화가 우려되고 자연감시가 어려워 방범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 통로박스의 기능성 및 경제성을 우선으로 계획하여 콘크리트 구조체의 시각적 부피감과 도시 내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으며 시중점부 상부에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는 경우 구조체의 디자인적 일관성이 미흡한다.
- 통로박스의 연결도로에 보도가 조성되지 않아 보행동선이 단절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보도의 확보가 필요하다.



▲ 마감이 노후하였으며 내부 입면에 벽화를 적용한 지양사례



▲ 인공적인 이미지의 콘크리트 울벽과 방음벽이 노출된 사례

▲ 안전시설이 노후되어 있거나 기능성이 미흡한 사례

〈그림 4-83 구리시 내 통로박스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통로박스는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의 유무에 따라 보차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분하며,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17>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보차도용 통로박스	차량의 통행과 함께 보행자의 동선이 연결되는 구조물
	차도용 통로박스	차량의 통행 목적으로 조성된 구조물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	중앙분리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보행등(벽부등),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
	공급시설물	제설함, CCTV 외함 등
	기타시설물	울벽, 방음벽, 투석방지망 등

〈표 4-17 통로박스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 가로공간
- 구조물연결가로
- 통로박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구리한강시민공원 접근로



▲ 통로박스 내부의 조도가 낮아 인지성 저하 우려

▲ 차로 중앙 구조체의 충돌사고 우려

▲ 보행자에 대한 배려 미흡

가이드라인 적용  
평면(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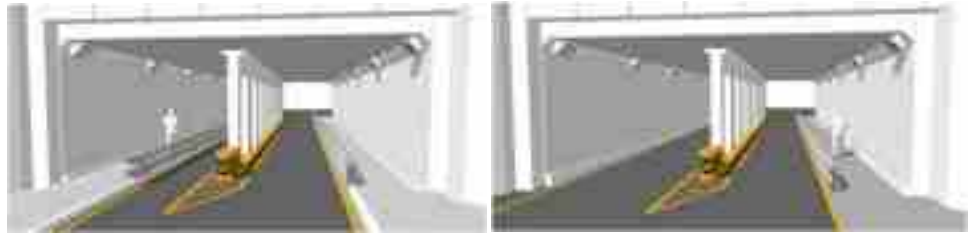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가로공간
- 구조물연결가로
- 통로박스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통로박스는 기능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며 구조물의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통로박스 보행동선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보도와 차도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구조물 내부의 폭원이 좁아 보차도 동선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보행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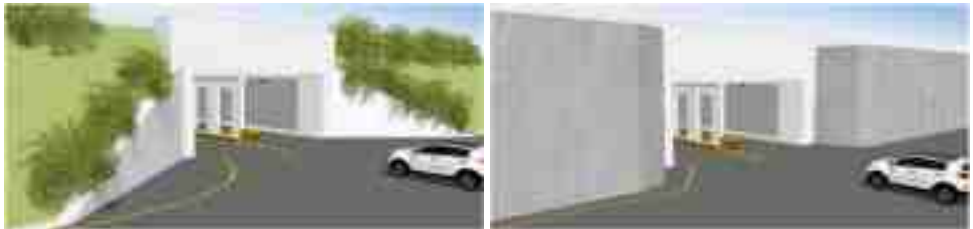


▲ 구조물 양편으로 차도와 단차가 있는 보도를 확보한 경우

▲ 방호울타리를 기준으로 편도의 보행 통로를 확보한 경우

(그림 4-84 통로박스 내부 보행동선 조성 예시)

- 통로박스 시종점부의 날개벽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출을 지양하고 완만한 경사의 식수대를 조성하여 도시차원에서의 인공적인 이미지를 순화시킬 것을 권장한다.
- 통로박스 시종점부의 날개벽, 내부 입면 등에는 벽화, 슈퍼그래픽, 도시 홍보물, 장식물의 부착을 일체 지양하며, 재료 고유의 마감 또는 간결한 패턴의 도색을 권장한다.
- 철도 하부에 조성하는 통로박스의 시종점부 상부에 방호울타리 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통로박스 구조체와의 디자인적 특징 및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자체도의 색채 및 간결한 형태를 적용하여야 한다.



▲ 권장 : 날개벽의 노출을 최소화한 후 완만한 경사의 식수대 조성

▲ 지양 : 기능성 및 경제성을 우선한 콘크리트 입면 조성

(그림 4-85 통로박스 시종점부 입면의 조성 예시)

- 주요 공원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차량 및 보행량이 집중되는 통로박스의 경우 시종점부 및 내부 입면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교신도시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디자인 개발"을 참고하여 목재(합성목), 타일 등을 이용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보차도용 통로박스 시종점부 입면 및 내부 입면 디자인 개발안

▲ 차도용 통로박스 시종점부 입면 및 내부 입면 디자인 개발안

(그림 4-86 경기도 광교신도시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디자인 개발안)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통로박스 내부에 보도가 조성되는 경우 유지관리 및 조도 확보가 용이한 타일 마감을 권장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전면타일마감과 도색혼용방안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통로박스의 폭원이 넓은 경우 전면타일 마감 시 간결한 형태의 선형 패턴을 적용하여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타일 마감 예시

▲ 타일과 도색을 혼용한 마감 예시

〈그림 4-87 보도가 조성되는 통로박스 내부 입면 마감의 예시〉

- 통로박스 중앙에 양방향 차로 구분을 위한 구조체를 설치하는 경우 벽식형보다는 기둥형을 적용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하여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지장 : 벽식형

▲ 권장 : 기둥형

〈그림 4-88 통로박스 차로 중앙의 구조체 설치 예시〉

- 통로박스 중앙에 양방향 차로 구분을 위한 구조체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진입 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시설 및 반사슈트를 취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림 4-89 안전시설 설치 예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보도를 조성하는 통로박스 내부의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통행 빈도에 따라 보차도 경계부에 방호울타리 또는 난간겸용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를 조성하는 통로박스 내부에는 벽부형 조명을 반드시 설치하고 우범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24시간 감시장치(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울타리 설치 예시

▲ 난간겸용 방호울타리 설치 예시

〈그림 4-90 보차도 경계부 방호울타리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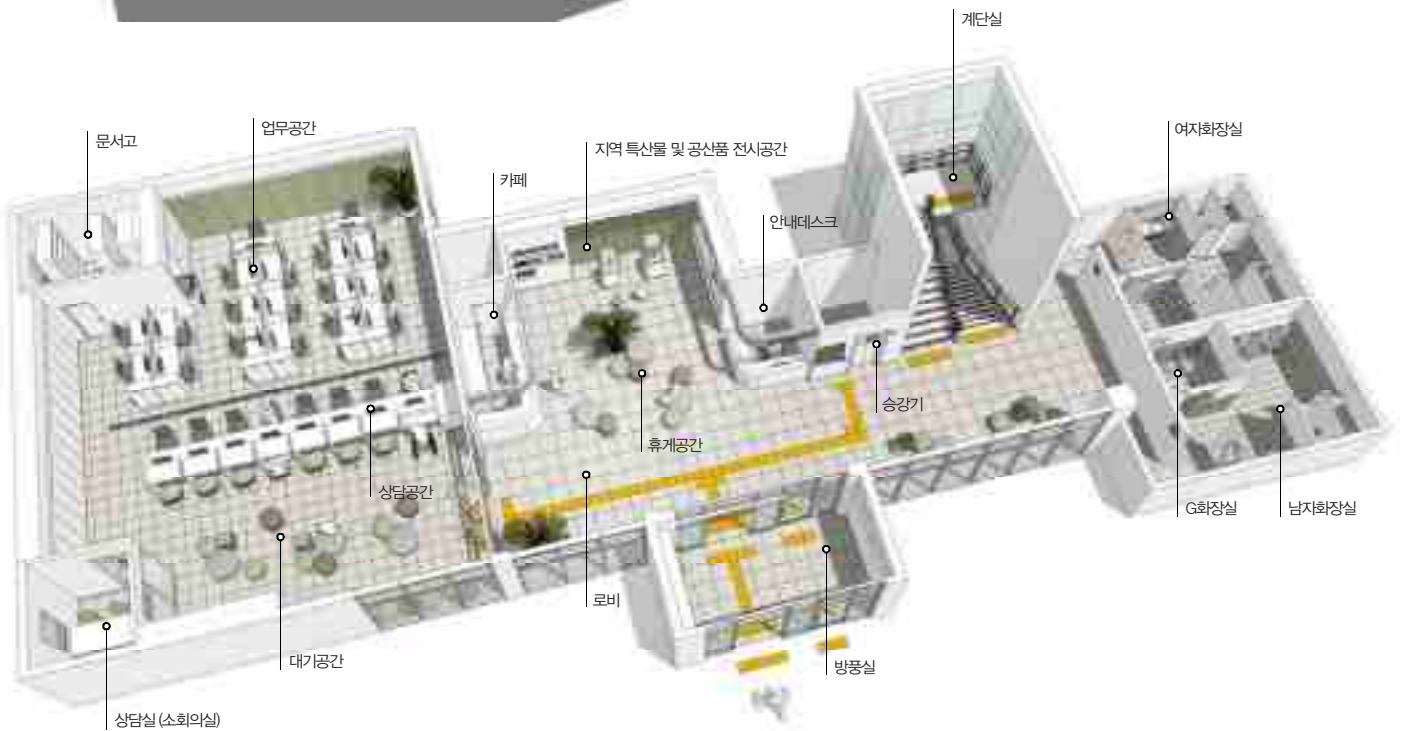
### 3. 건축물공간

#### 3.1. 공통사항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공간의 공통사항은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 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구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한다.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그림 4-91 건축물공간의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필수 가이드라인

## 1 구리시의 공공정보를 안내하는 G마크

- 건축물공간은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표현하고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 특화 요소를 적용하여 구리시의 도시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주요 공공공간으로 계획한다.
- 도시 내 위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점공간으로 계획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가 쉽게 찾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청사를 포함한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공공건축물의 외관에 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주야간 상시 원거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G마크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 및 도시 내 인지성을 강화시킨다.
- 구리시 공공건축물의 G마크 안내사인은 구리시의 영문명칭인 Guri-City를 의미하며 "G"를 제외한 내용의 표기는 지양하고 코너형(기본형)과 평면형의 세부 디자인은 <그림 4-92>와 같다.



<그림 4-92 공공건축물 G마크 안내사인 디자인(안)>

- 공공건축물 G마크 안내사인의 규격은 3,000 X 3,000의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최소 2,000 X 2,000까지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색채는 주목성이 높은 황색 (Yellow / Pantone 116 U / RGB 255 181 17 / CMYK 0 19 100 0)을 적용하고 G사인은 백색으로 표기한다.
- 주간은 물론 야간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이 매입된 블랙아웃시트로 제작하여 주간에는 시인패널의 색으로 인지하고 야간에는 조명형 글자로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조명매입을 고려하여 사인의 두께는 150~ 250m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 마감은 진회색 (Dark Grey) 도장마감을 적용한다.
- G마크 안내사인은 건물 좌측 상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코너형의 설치를 기본형으로 하며, 소형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좁아 측면 인지가 불가능한 경우 평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93 공공건축물 G마크 안내사인 디자인 적용 예시>

필수 가이드라인

## 2 간결하고 개방적인 공공공간

- 구리시의 공공건축물은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배제한 기능성 중심의 간결하고 개방적인 디자인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건축물 신축, 재건축, 대수선, 재도색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의 진행방법에 관계없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안전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턴키공모를 진행하는 대형 공공건축물의 경우 공모지침에 당선 후 설계단계에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과업내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의 외관 설계 시 시공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유기적인 형태 또는 3차원적 가공이 필요한 형태는 지양한다.
- 공공건축물 외관의 마감 및 색채는 석재(석재타일), 점토블럭, 노출콘크리트(거푸집 제외), 투명유리 등과 같이 재료 고유의 질감 및 색채의 적용을 권장한다. 인공적인 도장이 필요한 마감의 경우 중저명도 색을 적용하며 고채도 색(강조색 포함)은 지양한다.
- 공공건축물의 부지 선정 시 주출입구가 경사면에 위치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인접한 가로 공간에서 공공건축물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폐 식재 및 게이트 설치 등을 지양하여 개방형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 주차공간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는 예외로 한다.



▲ 차폐 식재 및 경계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한 경사형 주출입구



▲ 인접한 가로공간과 통합설계를 적용한 평지형 주출입구

〈그림 4-94 개방성을 강조한 공공건축물 주출입구 조성 예시〉

- 건축물공간의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옥상층 및 주차공간 캐노피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도 포함한다.
- 보도와 연결한 공공건축물의 대지경계부는 보도와의 단차 변화 및 조경석, 보도펜스 등과 같은 경계시설의 설치를 지양하며 보도를 확장한 개방형 구조의 공개공지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주출입구는 주차공간으로 차폐되지 않아야 하며 조경공간의 경우 차폐식재를 지양하여 지하고가 높은 교목 및 수고가 낮은 관목 및 지피류를 식재하여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



▲ 권장 : 보도와 연결되는 개방형 구조의 공개공지를 조성한 사례



▲ 지양 : 조경석 및 차폐식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공간적으로 차폐한 사례

〈그림 4-95 공공건축물 대지경계부의 권장 및 지양사례〉

필수 가이드라인

### 3 내용이 잘 보이는 공공정보매체

-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공정보매체의 수량을 최소화하여 방문객 및 근무자의 시각적 피로도를 최소화하되 합리적인 규격, 형태·재료·색채, 설치 위치 및 수량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기본형은 광역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규모 및 특성에 맞춰 일부 요소를 응용하여 제안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정보매체의 경우 제작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내용의 주기적인 변경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보의 가독성 및 설치하는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외한 매체 및 배경색 등에 고채도 색을 포함하여 장식적인 형태, 패턴, 재료 등의 적용을 일체 지양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공공정보 픽토그램은 KS S ISO 7001: 그래픽 심볼 공공안내심볼 (국가표준 기술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공공정보매체에 적용되는 서체는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표 4-16>과 같이 적용한다. 단,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서체를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국문 제목	윤고딕 340	-25 (장평 -50)	100% (최대 95%)	글꼴 부분 변경
② 국문 설명글	윤고딕 330	-50 (최대 -80)	100% (최대 95%)	글꼴 부분 변경
③ 영문 제목	Frutiger 55	-25 (최대 -50)	100% (최대 95%)	
④ 영문 설명글	Frutiger 45	0 (최대 -10)	100% (최대 95%)	
⑤ 숫자 제목	Frutiger 55	0 (최대 -10)	100% (최대 95%)	
⑥ 숫자 설명	Frutiger 45	0 (최대 -10)	100% (최대 95%)	

<표 4-18 공공정보 표기체계 서체 적용기준>

- 도시 내 민원인의 방문이 집중되는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공공정보매체의 디자인 유형을 <표 4-19>과 같이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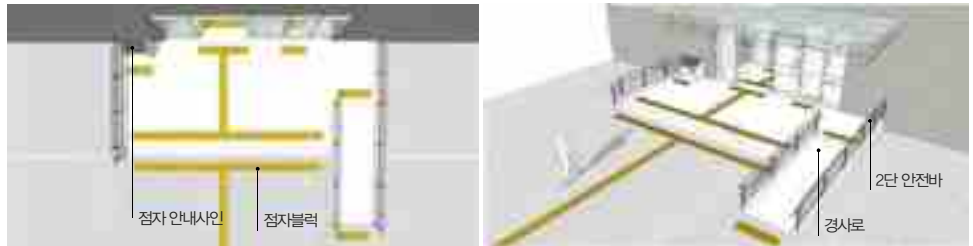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설치 위치	유형
① 건물명 안내사인	건물명칭	건축물 외관 / 외부 주출입구	벽면형 / 독립형
② 종합안내사인	층별 시설안내	로비	벽면형
③ 층별안내사인	해당층 시설안내	층별 공용공간 벽면 / 계단측면	
④ 실별안내사인	기능실 명칭안내	기능실 출입문 및 벽면	돌출형 / 부착형
⑤ 픽토그램 실별안내사인	화장실 / 탕비실 안내	해당실 출입문 및 벽면	돌출형 / 부착형
⑥ 부서 배치 안내사인	부서 배치 및 구성	해당실 출입면 측면	부착형
⑦ 행정서비스 안내사인	주요 이슈 및 정보안내	민원실	A4 / 포스터 / 배너
⑧ 민원 업무 안내사인	민원업무 안내	상담테이블 상부	천정거치형
⑨ 부서 명칭 안내사인	부서명칭 안내	업무테이블 상부	천정거치형
⑩ 주차안내사인	주차장 위치 안내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독립형
⑪ 특정주차안내사인	특정 주차구역 안내	특정 주차구역 전면	독립형 / 노면표지
⑫ 현수막게시대	행정 이슈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독립형

<표 4-19 구리시 공공건축물 공공정보매체의 디자인 유형>

필수 가이드라인

## 4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건축물의 외부 주출입구 조성 시 적절한 가로공간과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차량동선사이의 단차, 경계석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전한 접근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가로공간에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는 건축물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점자블럭을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의 경우 적절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할 것을 권장하나 배수 등을 위해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기울기 1/18 이하의 경사로에 2단 손잡이가 부착된 안전바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을 배려하여야 한다.
-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 3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하여 출입문의 회전반경과 휠체어의 접근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수평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자동문을 주출입문으로 설치하고 수동문을 보조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림 4-96 공공건축물 접근동선 및 주출입구 조성 예시>

-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건축물 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및 행정서비스가 집중되는 민원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시민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공공건축물 1층 화장실 내부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G화장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배려하여야 한다.
- "G화장실"은 휠체어이용자의 접근 및 내부 회전 등을 고려한 2m X 2m 이상으로 확보하고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용 좌변기 커버, 비상벨 등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신체 부상자 등 신체약자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화장실의 주출입문에는 픽토그램은 KS S ISO 7001: 그래픽 심볼 공공안내심볼을 응용한 대형 픽토그램을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사인표지로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97 화장실 픽토그램 부착 예시>



<그림 4-98 G화장실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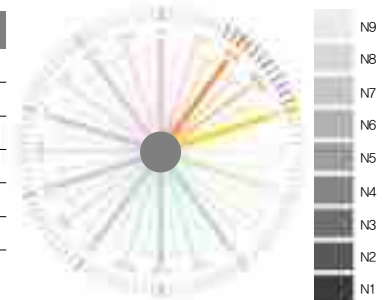
- 공공청사의 민원실, 교육관, 공연장 등과 같은 다수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는 시설 조성 시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공간 및 서비스공간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 객석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에게 전면, 중앙, 후면 등에 대한 좌석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필수 가이드라인

## 5 밝고 쾌적한 내부공간

- 건축물 내부공간의 마감재 선정 시 재료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오랜 시간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공간의 디자인적 차별성 및 특수 기능이 필요한 전시관, 공연장, 체육관 등은 예외로 한다.
- 내부공간의 마감계획은 밝고 쾌적한 공간이미지 형성을 위해 난색계열의 중·고명도 색채를 주색으로 적용하고, 동일한 마감면 내에서 3가지 이상의 색을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 공간의 안정감을 위해 바닥과 벽은 고명도 색을 적용하고 바닥은 2~3단계 낮은 명도의 색을 배색하며 교체가 용이한 이동형 가구 등으로 색의 변화를 적용한다. 단, 벽면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붙박이장의 경우 벽면과 유사한 색을 적용한다.

구분		천정색	벽체색	바닥색
유채색	색상 (H)	2.5~5Y	2.5~5Y	2.5~5Y / 2.5~10YR
	명도 (V)	90이상	80이상	5~7
	채도 (C)	10이하	10이하	30이하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N	N
	명도 (V)	9	8~9	4~7
	채도 (C)	-	-	-
기타	* 가구색은 공간 전체 색상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색상 Y, YR, 2.5GY / 명도 5~8 / 채도 60이하, N 40이상 적용			



천정색	2.5Y 9/1	5Y 9/1	N9			
벽체색	2.5Y 9/1	2.5Y 8/1	5Y 9/1	5Y 8/1	N9	N8
바닥색	2.5YR 5/1	7.5YR 6/1	7.5YR 6/2	10YR 6/1	10YR 5/2	N7
가구색	2.5Y 7/3	2.5Y 7/6	5Y 5.5/5	7.5YR 8/4	10YR 4/6	N4

〈그림 4-99 내부마감재의 사용색 범위 및 권장색의 예시〉

- 건축물 내부공간의 마감은 천정, 벽체, 바닥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모든 마감재에 유행에 민감한 무늬목의 사용은 지양한다.
- 오염이 쉬운 벽체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도색을 권장하며, 천정은 조명 및 냉난방기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모듈화된 기성마감재(예: 텍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바닥 마감재의 경우 노면이 미끄럽지 않은 자기질타일, 비닐계타일, 석재타일 등의 재료 중 〈그림 4-99〉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패턴의 변화가 적은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바닥 마감재의 경우 단일 마감재를 적용을 권장하나, 면적이 넓은 경우 최대 3가지 색을 혼용할 수 있다. 단, 마감색의 대비가 크지 않아야 한다.



〈그림 4-100 공공건축물 내부 공간 마감재의 사례〉

### 3. 건축물공간

#### 3.2. 외관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공간 외관은 공공건축물의 외부 형태, 색채, 재료, 공공정보매체 등의 디자인적 요소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청사는 구리시만의 차별성 및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외부인의 경우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며 공공건축물로서의 주목성이 부족하다.
- 대표적인 교육연구시설인 초등학교의 경우 외관에 고채도의 도색 및 원색을 이용한 패턴을 적용하여 주변 도시공간과의 부조화가 우려된다.
-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등은 차별화된 내용 및 테마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나 공원·녹지 등을 배경으로 조성된 체육관의 경우에는 우수사례와 지양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외관은 디자인적 특징이 모호하며 인접한 상업시설 등과 구분되는 차별성이 미흡하고 환경시설의 경우 기능성 및 내구성만을 우선하여 주변 도시환경의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
- 공중화장실의 경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 디자인 품질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4-101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외관의 공공디자인 현황〉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구리시의 도시 구조, 규모,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물의 기능에 따라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보다는 건축물별 창의적인 설계를 존중하되 과디자인을 지양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 공공건축물의 외관은 간결한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출입문, 유리창 등과 같은 개구부의 면적을 확장시켜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리시의 공공건축물은 재료의 물성을 고려한 고유한 색채 마감을 적용하고 인공 도색, 고풍택의 금속 패널 등의 재료 사용을 제한하여 도시차원에서 안정감있는 배경색을 형성하도록 한다.
- 건축물 마감의 배색계획 수립 시 강조색을 최소화한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구성하며 강조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재료 고유의 색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 공공건축물 외관 색채를 이용한 시각적 차별화를 지양한다.
- 공공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조색의 권장범위는 <그림 4-102>과 같으며 석재, 블록, 목재, 노출콘크리트 등과 같이 재료 고유의 색을 적용하는 경우 일부 변화를 줄 수 있다.

구분	주조색	재료 고유의 색 예시	
		블럭/목재	석재, 콘크리트
유채색	색상 (H)	YR	2.5Y / YR
	명도 (V)	5~7	3~6
	채도 (C)	30이하	60이하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
	명도 (V)	30이상	-
	채도 (C)	-	-



주조색	2.5YR 7/1	5YR 7/1	7.5YR 6/1	10YR 6/2	N8	N7
	2.5YR 6/2	5YR 5/3	7.5YR 6/2	10YR 7/1	N6	N4
재료색	2.5YR 4/3	2.5YR 4/5	5YR 4/1	5YR 4/2	7.5YR 5/1	10YR 5/1

<그림 4-102 공공건축물 주조색의 권장 범위 및 권장색의 예시>

- 석재, 블록, 목재, 노출콘크리트 등과 같은 재료마감을 적용할 경우 인공적인 도색을 제한하며 목재의 경우 내구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합성목의 사용을 권장한다.
- 석재, 블록(점토블럭, 황토블럭 등)과 같은 모듈화된 마감재를 적용하는 경우 동일 재료 내에서 강한 색의 대비는 지양하되 마감재의 모듈 변화나 쌓기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입체적인 입면 형성 및 패턴의 적용을 권장한다.
- 석재를 주재료로 적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입면이 단조로운 경우 표면의 가공방법(버너구이, 흑두기, 물갈기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 입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주재료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건물에 태양광이 반사될 경우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저반사 유리로 계획하여야 한다.
- 유색 유리의 사용 및 유리 위 고반사 필름의 취부를 제한하고 맑은 유리를 기본으로 한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적용하여 밝은 실내 분위기 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의 외관 계획 시 전면, 측면, 배면계획을 연속성있게 수립하여야 하며 옥상층, 지붕, 창호의 유리 및 프레임 색,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출입문, 난간, 배수 홈통, 실외기 등의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구리시의 공공건축물은 진흥계획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야간경관조명의 연출을 권장한다. 다만 도시의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도시 내 장소성 및 구리시만의 정체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차별화요소로 활용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한 야간경관조명계획 수립 시 도시차원에서의 입체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조경, 색채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거쳐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단, 총괄기획기는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구리시 전반의 특성을 전제로 강약감있는 계획을 도모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친환경 조명계획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상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의 구조 및 배치 등을 고려하여 중로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하는 건축물 외관을 대상으로 계획하되 주변 건축물 및 공원녹지 등에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서 부피감이 있는 면(面)적 이미지의 조명계획을 수립하되 옥탑부만을 강조하거나 라인형태의 조명계획은 지양한다.
- 공원·녹지 등에 공공건축물이 위치하거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할 경우 점등 및 소등 시간, 조도, 휘도 등을 제한하여 동식물의 쾌적한 생육환경을 배려하여야 한다.
- 조명 연출 시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광원의 움직임이 있거나 점멸이 반복되는 연출 등은 지양하고 도시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 형성을 위해 색온도 3,000 ~ 4,000K 내에서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단, 빛을 이용한 도시이벤트 시에는 경관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려한 빛의 연출 및 색온도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 광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전광판, 옥외광고물 등의 연출은 일체 제한한다. 단, 도시차원의 빛 축제 개최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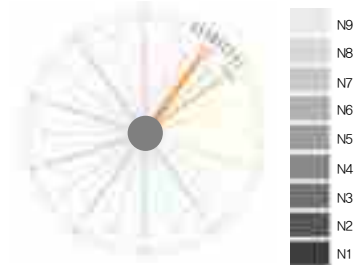


〈그림 4-103 건축물 야간조명연출의 권장 및 지양사례〉

공공청사  
가이드라인

- 석재 및 투명유리를 주재료로 하여 저채도, 중·고명도 색채계획을 적용하여 밝고 개방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전달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에 과다한 공공정보매체의 적용을 지양하되 행정 이슈 및 성과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거치할 경우 공공건축물 전면 우측 또는 측벽 등 지정 위치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시슬로건 및 슈퍼그래픽 등의 적용은 지양한다.
- 강조색의 적용을 지양하나 건축물의 배치 및 구조 상 주출입구의 인지성이 미흡한 경우 돌출되는 구조체 등에 3%이내의 강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유채색	색상 (H)	YR	YR	YR
	명도 (V)	5~7	4~6	5이하
	채도 (C)	30이하	40이하	20이하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N	N
	명도 (V)	30이상	2~7	30이하
	채도 (C)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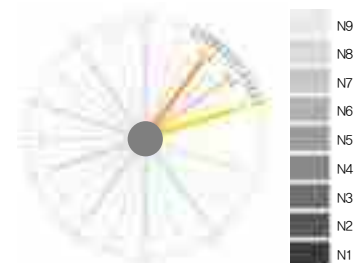
주조색	2.5YR 7/1	5YR 7/1	2.5YR 8/1	10YR 7/1	N8	N7
보조색	2.5YR 6/2	5YR 6/3	5YR 6/1	7.5YR 6/4	10YR 4/1	N6
지붕색	2.5YR 4/1	7.5YR 4/2	5YR 4/2	10YR 2/2	N3	N2

〈그림 4-104 공공청사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교육연구시설  
가이드라인

- 석재, 블록, 목재, 유리, 노출 콘크리트 등의 재료 고유의 질감 및 색채의 적용을 권장하며 강조색을 배제한 저채도, 증명도의 차분한 배색계획을 통해 따뜻한 공간환경 조성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배치 및 전면 개구부 면적을 확장하여 자연광이 풍부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재료의 모듈 및 시공방법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입면에 입체적인 변화를 부여하도록 유도한다.
- 부속건물이 위치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 색채, 재료 등을 적용하여 디자인적 연속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구분		주조색	보조색	지붕색
유채색	색상 (H)	2.5~5Y / YR	Y / YR	5~10YR
	명도 (V)	60이상	4~6	3~6
	채도 (C)	20이하	40이하	20이하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N	N
	명도 (V)	60이상	50이하	3~6
	채도 (C)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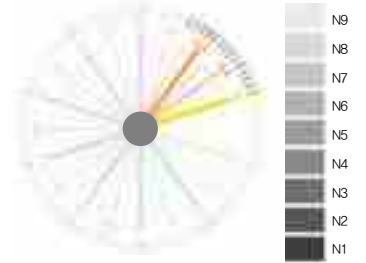
주조색	2.5YR 7/2	2.5YR 5/2	5YR 6/2	5YR 5/2	10YR 5/2	N6
보조색	2.5YR 5/4	5YR 5/3	7.5YR 4/2	7.5YR 4.5/4	10YR 5/2	10YR 4/3
지붕색	2.5Y 4/1	5YR 4/1	5YR 4/2	10YR 4/1	N3	N4

〈그림 4-105 교육연구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문화집회시설  
가이드라인**

- 공연장 및 전시장의 경우 내부 시설의 주요한 콘텐츠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외관계획을 수립하되 시공이 불가능한 형태 및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마감재의 적용은 지양한다.
- 공원녹지를 배경으로 조성되는 체육관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색에 고루 조화될 수 있는 색채 계획과 친환경 마감재의 적용을 권장한다.
- 외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문화집회시설의 경우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형물, 시설물, 포장재 등의 계획 수립 시 외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강조색은 5%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고채도의 원색 적용은 제한한다.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유채색	색상 (H)	2.5~5Y / YR	Y / YR	YR
	명도 (V)	60이상	3~6	3~6
	채도 (C)	20이하	50이하	60이하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N	N
	명도 (V)	60이상	50이하	3~7
	채도 (C)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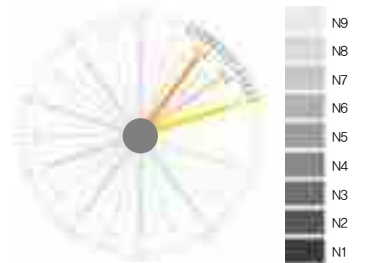
주조색	2.5Y 6/1	2.5YR 6/2	5YR 6/1	7.5YR 6/2	10YR 6/2	N6
보조색	2.5YR 5/4	5YR 5/3	7.5YR 4/2	7.5YR 4.5/4	10YR 5/2	10YR 4/3
강조색	2.5Y 4/1	5YR 4/1	5YR 4/2	10YR 4/1	N3	N4

〈그림 4-106 문화집회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 석재, 블록, 목재, 유리 등의 재료 고유색 질감을 색채의 적용을 권장하며 강조색을 배제한 저채도, 중고 명도의 유사색을 배색하여 안정감 있는 공간환경 조성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배치 및 전면 개구부 면적을 확장하여 자연광이 풍부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재료의 모듈 및 시공방법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입면에 입체적인 변화를 부여하도록 유도한다.
- 노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의 경우 색을 이용한 인지성 향상을 위해 강조색의 적용이 가능하며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조색 유사계열의 중채도 색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유채색	색상 (H)	2.5~5Y / YR	2.5~5Y / YR	5~10YR
	명도 (V)	70이상	4~6	3~6
	채도 (C)	20이하	40이하	60이하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N	N
	명도 (V)	80이상	50이하	3~6
	채도 (C)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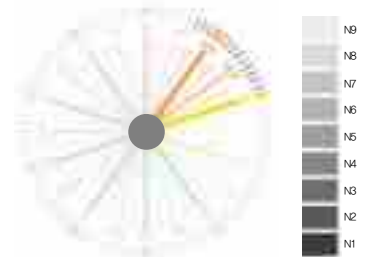
주조색	2.5YR 7/1	2.5YR 7/2	5YR 7/1	7.5YR 7/1	7.5YR 7/2	10YR 7/1
보조색	2.5YR 5/3	5YR 6/3	5YR 5/4	7.5YR 5/3	7.5YR 4/4	10YR 4/3
강조색	2.5YR 5/4	2.5YR 4/5	5YR 5/6	7.5YR 4.5/5	7.5YR 4/4	N3

〈그림 4-107 사회복지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환경시설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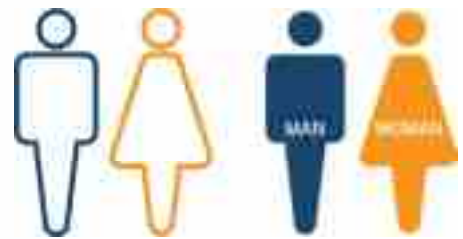
- 석재, 블록, 목재 등의 재료 고유색 질감 및 색채의 적용을 권장하며 강조색을 배제한 저채도, 중명도의 따뜻한 배색계획을 통해 배경을 형성하는 자연녹지와와의 조화성을 강조한다.
- 내부시설로 연결되는 환기, 냉난방 설비 등이 외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야간의 우범화가 우려되는 시설의 경우 비상벨, 24시간 감시장치(CCTV)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의 조성 시 주변 공원, 녹지공간, 내부 체험교육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으로 수립하여 시민들의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펌비(PIMBY)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시설의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립식 패널 등으로 마감이 불가피한 일부 환경시설의 경우 색채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전면, 측면, 배면은 물론 창호의 유리색 및 프레임, 배수흡통, 지붕, 공공정보매체 등에 대한 색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조립식 패널로 마감하는 외벽에는 주조색과 보조색을 포함하여 3가지 색 이내에서 배색하여야 한다. 단 지붕색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나 단일 색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 쓰레기소각장 등에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유지관리가 어려운 벽화의 적용을 지양하며 그래픽 패턴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재도색이 용이한 기하학적인 패턴만을 권장한다.
- 이용객이 적은 공원녹지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외관 및 주변지역의 조도를 상향 조정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 공중화장실의 성별 구분, 환경시설의 기능을 소개하는 공공정보 픽토그램은 원거리에서 인지가 가능한 규격으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킬 것을 권장한다.

구분		주조색	보조색	지붕색
유채색	색상 (H)	2.5~5Y	YR	YR
	명도 (V)	70이하	70이하	60이하
	채도 (C)	20이하	40이하	40이하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N	N
	명도 (V)	60이하	70이하	30이하
	채도 (C)	-	-	-



주조색	2.5Y 6/2	5Y 7/1	2.5YR 6/1	7.5YR 6/2	N6	N5
	2.5Y 5/1	2.5YR 5/1	5YR 4/2	10YR 4/1	N3	N4
보조색	2.5YR 4/2	2.5YR 4/1	5YR 4/2	7.5YR 4/4	10YR 5/2	N4
지붕색	2.5YR 4/1	5YR 5/1	7.5YR 4/2	10YR 3/3	N3	N2

〈그림 4-108 환경시설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 라인형 픽토그램

▲ 채움형 픽토그램

〈그림 4-109 환경시설 외관에 부착되는 공공정보 픽토그램의 예시〉

환경시설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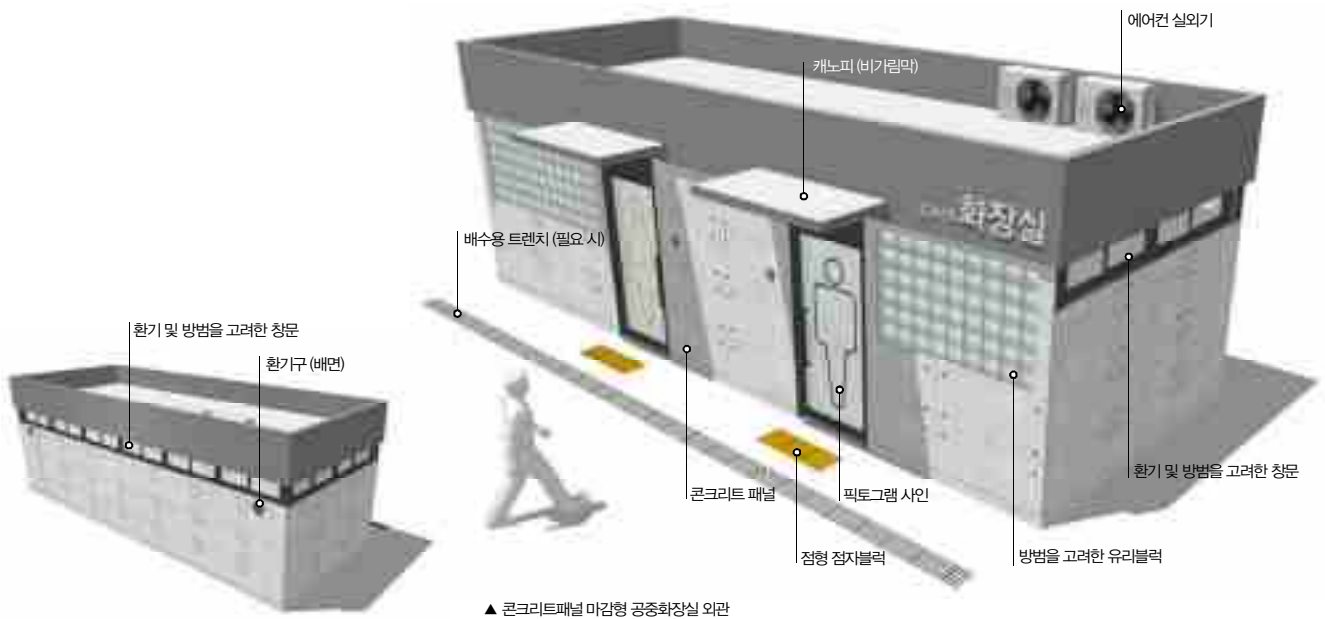
- 기 조성된 공중화장실 중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사례를 대상으로 외관 및 내부시설에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개선안의 예시는 <그림 4-1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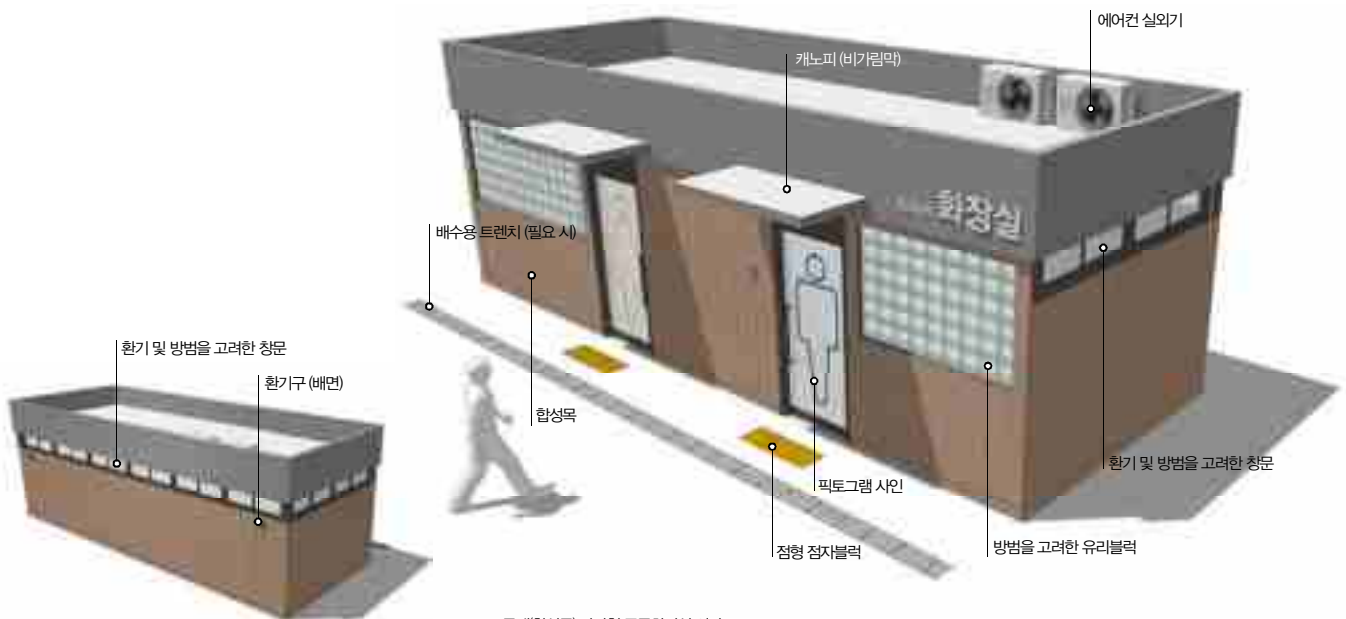
▲ 콘크리트패널 마감형 공중화장실 정면도



▲ 콘크리트패널 마감형 공중화장실 배면도



▲ 콘크리트패널 마감형 공중화장실 외관



▲ 목재(합성목) 마감형 공중화장실 외관

<그림 4-110 공중화장실의 외관 및 내부시설의 예시>

환경시설  
가이드라인

- 조립식 패널로 마감하는 환경시설 외관에 권장색을 적용한 예시는 <그림 4-111>과 같다.



### 3. 건축물공간

#### 3.3. 외부공간

##### 3.3.1. 접근공간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공간 외부 접근공간은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출입구를 포함하여 보행, 자전거, 차량 등의 접근 동선에 해당하는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물은 외관을 통해 원거리에서의 위치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주출입구의 동선 등이 고밀도 차폐 식재,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 시민들의 방문이 빈번한 공공건축물의 일부는 급경사의 접근로 조성, 보행동선의 단절, 보행안전시설의 미설치, 장애물의 방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신체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 구리시의 공공건축물 대지 내 접근동선의 경우 대부분 차량중심의 공간구조로 계획되어 별도의 보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량동선과 중첩되거나 교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공공건축물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건물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전면이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시야를 차폐하거나 보행자가 우회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 공공건축물 내부공간으로 연결되는 주출입구의 경우 접근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계단의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경사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 주출입구간 경사지에 위치하여 인근 도로에서의 인지가 미흡한 시점 (개선사업 전)

▲ 식재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개방성을 확보한 시점



▲ 차폐식재 및 주차공간 등으로 진출입구의 인지가 어려운 사례

▲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례

<그림 4-112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외부 접근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건축물공간의 외부 접근공간은 건축물 대지경계부에 위치하는 외부 주출입구와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연결도로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20>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외부 주출입구	공공건축물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보행, 자전거,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건축물 외부의 주출입구
	건물 주출입구	건물의 내부의 로비, 민원실 등과 연결되는 주출입구
	연결도로	공공건축물 주변 도로에서 보행자, 차량의 동선 연결을 위한 차도 및 보도
공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보행등, 블라드, 보도펜스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파고라, 공중전화부스, 재활용품 수거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 트랜치, 환기구, 제설함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분수대 등
공공정보매체	외부공간	출입안내사인, 주차안내사인, 종합안내사인, 시설안내사인, 방향유도표지,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노면표지 등

<표 4-20 건축물공간 외부 접근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접근공간



▲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접근동선의 인지가 어려운 주출입구

▲ 보행자의 교행이 어려운 협소한 보행 접근로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건축물공간
- 외부공간
- 접근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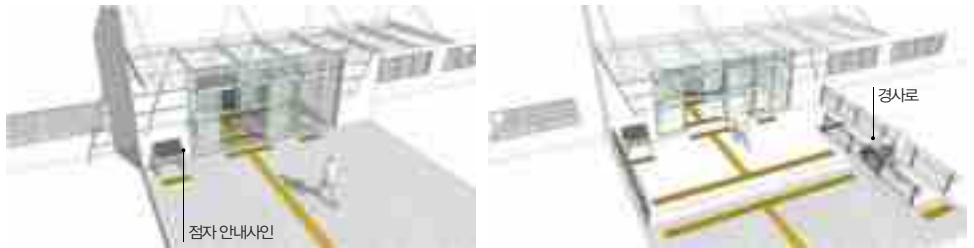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 외부 출입구의 경우 별도의 구조물을 이용한 출입문의 설치를 지양하되 건물명칭 및 기능을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공정보매체를 설치하여 개방적인 공간구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 내 주요한 거점공간으로서의 주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공공건축물의 외부 주출입구 조성 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상호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동선의 경우 인접한 보도와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4-113 공공건축물 주출입 동선 조성 예시〉

- 보도 내 차량 진출입부 동선 계획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여 보도의 평탄면을 유지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존 및 경계석의 경사를 이용하여 차량이 출입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접근을 배려하여 공공건축물의 외부 보도에서 주출입구 및 공용공간으로 연결되는 점자블럭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 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는 대지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높이를 적용하고 계단과 함께 휠체어, 유모차, 짐수레 등과 같은 바퀴장착시설 이용자의 접근을 배려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경사로 설치 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0이하(최소 1/120이하)로 설치하고 경사로 전후에 휠체어의 회전반경을 고려한 가로1.5mX세로1.5m이상의 평탄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로 좌우에는 2단 안전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114 공공건축물 내부 주출입구 조성 예시〉

- 주출입구 전면 계단 및 경사로 설치 시 출입문의 회전반경과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평탄한 여유공간을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의 상부에는 계단 및 경사로의 깊이와 동일한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여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4-115 공공건축물 내부 주출입구 대기공간 조성 예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차량 진출입부에 주차 정산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권장색을 적용하고 상부에는 투과율이 높은 투명강화유리 마감의 캐노피를 설치하여 이용자를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 접근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펜스(난간) 등을 설치할 경우 건물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고풍택 마감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지양한다.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공건축물 주출입구에는 건물명을 안내하는 지주형 공공정보매체를 설치하고 공공 청사 등에는 G마크 안내사인을 결합하여 원거리에서의 인지성 및 접근성 강화를 권장한다.
- 건물명 안내사인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확장형과 일반형 중에 선택하여 적용하고, 도시차원에서 상징성 강화가 필요한 공공건축물은 일반형을 동일한 비례로 확장하여 900 X 4,500 X 200 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116 공공건축물 건물명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 건축물공간
- 외부공간
- 접근공간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공공청사 등의 주출입구와 주차장 진입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건물명과 주차장 픽토그램을 결합한 건물명 안내사인을 <그림 4-118>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 주간은 물론 야간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명이 매입된 블랙아웃쉬트로 제작하여 주간에는 사인 패널의 색으로 인지하고 야간에는 조명형 글자로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림 4-117 공공건축물 건물명 및 주차안내사인 설치 예시>



<그림 4-118 공공건축물 건물명 및 주차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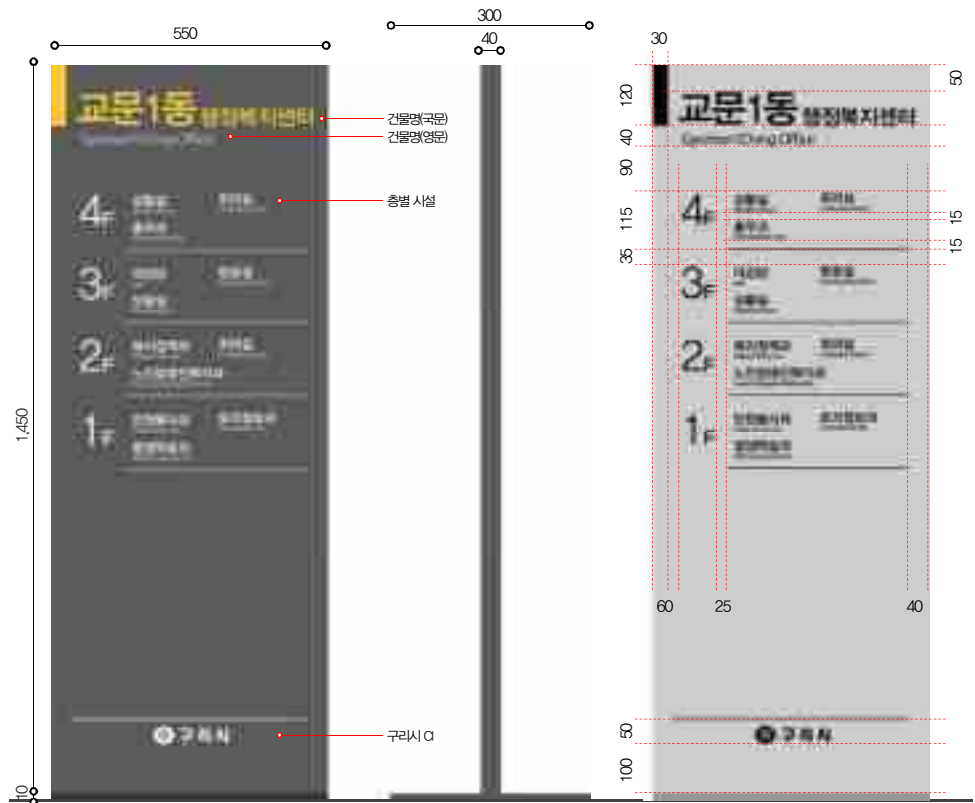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건물명 안내사인을 설치하는 주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가 인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간에 가로형 건물명 안내사인을 <그림 4-119>와 같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주출입구의 폭에 따라 안내사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글자와 배경패널의 비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그림 4-119 공공건축물 가로형 건물명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의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전면에는 독립형 구조의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층별 기능공간의 안내를 권장한다.
- 독립형 종합안내사인은 양면에 동일한 정보를 표기할 것을 권장하며 기존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가 협소하여 상황에 따른 이동이 필요한 경우 바닥판 하부에 바퀴를 장착할 수 있다.



<그림 4-120 공공건축물 독립형 종합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 3. 건축물공간

#### 3.3. 외부공간

##### 3.3.2. 편의공간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공간 외부 편의공간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 외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보행공간, 휴식공간, 식재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시의 공공건축물 외부 편의공간은 인접한 가로공간과의 단차 형성, 밀도가 높은 차폐 식재, 조경석 및 담장 등의 경계시설 설치 등으로 접근성이 단절되어 있거나 대지 내에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소외된 공간에 배치하여 방문객의 시점에서 인지성이 미흡하다.
- 공개공지 내 배치된 편의시설의 경우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물의 오염, 변형, 변색, 부식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공개공지 내 보행자의 쉼터공간이 흡연공간으로 활용되거나, 흡연공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공개공지 내 식재는 주차구역 및 공공건축물 대지 경계부의 공간구획을 주요 목적으로 계획하여 보행자에게 녹음(綠陰: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 또는 그 나무의 그늘)을 제공하기보다는 경계식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 그늘막, 파고라 등과 같이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고채도의 색상의 인공적인 도색, 불필요한 장식물의 부착, 정보매체 및 슈퍼 그래픽 등을 적용하여 과디자인을 유발하고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저해하고 있다.



▲ 가로공간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우수사례 (아트홀)



▲ 주차공간과 매우 인접한 휴식공간



▲ 과디자인을 유발하는 고채도 색상 및 장식물



▲ 접근성이 제한된 휴식공간



▲ 식재의 밀도가 높아 시각차폐 발생이 우려되는 쉼터  
(그림 4-121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외부 편의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건축물공간의 외부 편의공간은 공개공지로 정의하고, <표4-21>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공개공지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공건축물 대지 내 개방형 공지로 보행공간,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편의공간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보행등, 블라드, 보도펜스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파고라,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재활용품 수거함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트랜치, 제설함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분수대 등
공공정보매체	외부공간	시설안내사인, 방향유도표지,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노면표지 등

<표 4-21 건축물공간 내부 편의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편의공간



▲ 과다자연을 유발하는 장식물



▲ 가로공간 및 주차공간 등에서의 접근성 미흡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건축물공간
- 외부공간
- 편의공간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의 외부 편의공간은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휴식공간, 보도의 확장공간 등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동선과 인접한 공개공지 등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을 배치하여 주야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되 주변 보도 및 차도에서 자연감시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 4-122 공공건축물 외부 개방형 구조의 편의공간 조성 예시〉

- 대상지의 지형 및 배수 등으로 인해 보도보다 높은 구조의 편의공간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상부 평탄면을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계단의 디딤판은 30cm 이상, 계단의 높이는 16cm 이하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노면과 단차가 있는 편의공간 조성 시 보도 방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짐수레 등의 바퀴장착시설물 이용자의 접근을 배려하여야 한다.
- 계단 및 경사로의 노면은 미끄럽지 않는 포장재를 적용하고 계단의 모서리 등에는 요철을 각인하거나 미끄럼방지패드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세부 설치 기준은 공공건축물 접근공간 가이드라인의 주출입구 전면 경사로의 세부 설치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그림 4-123 보도와 단차가 있는 편의공간의 조성 예시〉

- 보도와 연접한 공개공지 조성 시 보도와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부여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때 보도와 공개공지 사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보도펜스, 조경석 등의 경계시설 설치를 지양한다.
- 공개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색채, 패턴)계획을 적용하고 식수대 등의 조경공간의 경우 보도와 단차를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 4-124 공공건축물 외부 개방형 구조의 편의공간 조성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편의공간 조성 시 주차공간과 직접 맞닿지 않도록 배치하고 흡연부스 등과 일정 거리 이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공간과 인접한 편의공간의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단차를 조성하고 경계부에 식수대를 조성하여 배기가스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그림 4-125 주차공간과 공간을 분리시킨 편의공간의 조성 예시〉

- 부피감이 크거나 유해물질의 배출이 우려되는 배전함, 환기구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편의공간 내에 설치를 지양하고 일정 거리 이격된 녹지 공간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동선과 인접한 편의공간 내에는 보행등을 설치하여 주·야간 상시 안전한 공간환경을 제공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 24시간 감시장치 및 비상벨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편의공간 주변의 식수대는 수고가 높은 관목 및 고밀도의 차폐식재 등을 지양하며 지피류, 지하고가 높은 교목 등을 활용하여 녹음을 제공하고 인접한 보도 및 주변 공간과의 상호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126 공공건축물 외부 편의공간의 차폐식재 지양 사례〉

- 공공건축물 옥상층에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인접한 도로에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조망시야 및 각도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파고라 등의 부피감이 큰 공공시설물 및 식재 등이 건물 외관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편의공간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공간으로서의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접한 보도와 동일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 내부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등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승인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 외부에 흡연공간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비흡연자를 배려하여 부스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며 내부공간의 환기 등이 원활한 반개방형의 구조를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외부 흡연부스 설치 사례

▲ 흡연부스 권장 디자인의 예시

〈그림 4-127 공공건축물 외부의 흡연부스 설치 사례 및 흡연부스 권장 디자인의 예시〉

### 3. 건축물공간

#### 3.3. 외부공간

##### 3.3.3. 주차공간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공간 외부 주차공간은 공공건축물 대지 내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등의 주차를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시의 공공건축물 주차공간은 대부분 옥외(지상)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객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주차공간 내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건축물 내부로 연결되는 주출입구 전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동선이 단절되거나 시각적으로 차폐된 사례가 빈번하다.
- 주차구역이 아닌 통행로 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회차가 어렵거나 주차공간의 경사면 진출입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불가하여 역방향의 이동 및 대기 시 차량의 밀림현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소외된 공간에 조성되어 있어 주출입구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하여 보행동선을 방해하거나 공공건축물의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법적 의무사항), 여성주차구역, 경차주차구역 등의 조성 여부 및 설치 기준 등이 공공건축물별로 상이하다.
- 휠체어 및 유모차 등 바퀴장착시설이용자가 주차 후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는 보행동선 내에 보차도의 단차,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급격한 경사로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미흡하다.



▲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옥외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가 어려운 사례 ▲ 보도로 진출입하는 셔틀버스 및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 옥내지하주차장의 출구 안내사인 ▲ 조도가 낮은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 정보매체의 설치가 미흡한 구리시청 옥내주차장

〈그림 4-128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외부 주차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건축물공간의 외부 주차공간은 지상(옥외)주차장과 옥내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22>와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간구조	옥외주차장	공공건축물 대지 내 야외부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옥내주차장	공공건축물 내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일부 지하층을 이용한 주차공간
공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보행동, 볼라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
	공급시설물	환기구, CCTV 등
	녹지시설물	화분대 등
	기타시설물	전기차충전기 등
공공정보매체	옥외주차장	주차안내사인, 방향유도표지,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노면표지 등
	옥내주차장	진출입방향유도표지, 주차구역안내사인 등

〈표 4-22 건축물공간 내부 민원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주차공간



▲ 주차구역을 2열로 배치하여 입출차 동선의 혼잡



▲ 장애인 주차구역 보행통로의 개선 필요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건축물공간
- 외부공간
- 주차공간

###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의 주차공간 입구는 원거리에서도 쉽고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입구와 출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명확하게 동선을 구분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진출입동선은 차량과 보행의 동선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관통하는 구조는 지양하여 안전한 공간환경을 조성한다.
-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보도가 단절되는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서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주출입구에 주차요금정산소를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회전반경 및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편도 3m 이상 확보하고,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자동화기기의 확대 적용을 통해 주출입구 점유면적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 주차요금정산소 및 주차요금정산 자동화기기는 공공시설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 간결한 형태 및 공공시설물의 권장색으로 마감할 것을 권장하며 상부 캐노피 설치 시 부피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 강화유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그림 4-129 주차공간 주출입구 조성 예시〉

- 주차공간 내 경사로가 위치하거나 주차공간이 복층으로 구성되어 층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노면에 미끄럼방지포장 또는 요철이 있는 그루빙(grooving) 시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양방향 이동이 필요한 경사로 중앙에는 차로봉을 설치하여 지정구역 외 주차를 방지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의 모퉁이, 경사로 등과 같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24시간 감시장치(CCTV)의 설치를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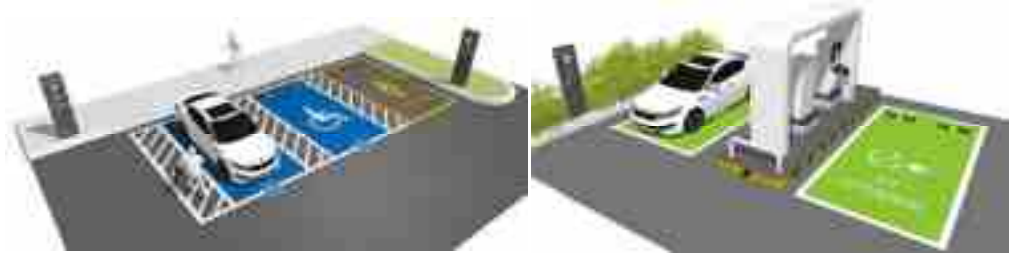
〈그림 4-130 주차공간 내 안전시설의 적용 사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차공간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3,300(가로) X 5,000(세로) 이상)을 건축물 주출입구와 인접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휠체어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보행동선과 단차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 공공건축물 내 주차대수가 30대 이상인 경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임산부, 디자녀가구, 어르신, 교통약자(일시적인 신체 부상자) 등을 우선 배려한 "G주차구역"과 경차 주차구역의 조성을 권장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G주차구역은 주차공간 내 시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엘리베이터 홀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하여야 하며 특정 주차구역 안내사인 및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권장한다.

- 건축물공간
- 외부공간
- 주차공간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시청 및 중대형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전기차 충전기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확보를 권장하며 가급적 옥내주차장에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전기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설의 내구연한 증진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림 4-131 특정 주차구역 조성 예시〉

- 공공건축물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시 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된 자전거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공건축물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전거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경우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하여 설치하고 캐노피가 없는 고리형 자전거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전거 거치대의 배면이 노출되는 경우 수고가 낮은 관목을 식재한 식수대를 조성하고 2주 이상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권장한다.
- 주차된 차량간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건축물공간의 녹시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리식수대의 조성을 권장한다. 단, 운전자 및 보행자의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고가 높은 교목 및 수고가 0.6m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관목의 식재하여야 한다.



〈그림 4-132 주차공간 내 식수대의 조성 예시〉




- 복층 구조로 조성되는 주차공간의 경우 주차 후 보행자가 안전하게 공공건축물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계단실을 조성하는 경우 내부 공용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복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민원실이 있는 공공건축물 내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해당 공간은 차양막을 설치하여 우천 시 쾌적한 보행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주차공간 내에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가능시설물 이외에는 가급적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여 개방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주차공간이 협소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주차구역 상부에 차양막(캐노피)의 설치를 지양하며 친환경에너지 활용을 목적으로 태양광패널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직접 연결되는 주차구역의 방지턱(스토퍼), 반사경 등의 가능시설물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 G 주차구역, 경차 주차구역 등과 같은 특정 주차구역을 표기하는 노면표지 및 지주형 안내사인을 <그림 4-133>과 같이 적용한다. 단, 경차 주차구역의 지주형 안내사인은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지정 차량 이외의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 구역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사인에 명시하여야 한다.
- G 주차구역의 경우 공공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주차대상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민의 특성에 따라 임산부, 어르신, 다자녀, 신체 부상자 등을 안내하는 노면표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용 주차구역	G 주차구역	경차 주차구역
			
Pantone 2192C C90 / M33 / Y6 / K0	Pantone 376C C48 / M0 / Y100 / K1	Pantone 123 C (115U) C0 / M19 / Y89 / K0	Pantone 137C C0 / M47 / Y100 / K0

<표 4-23 특정 주차구역별 전용색 적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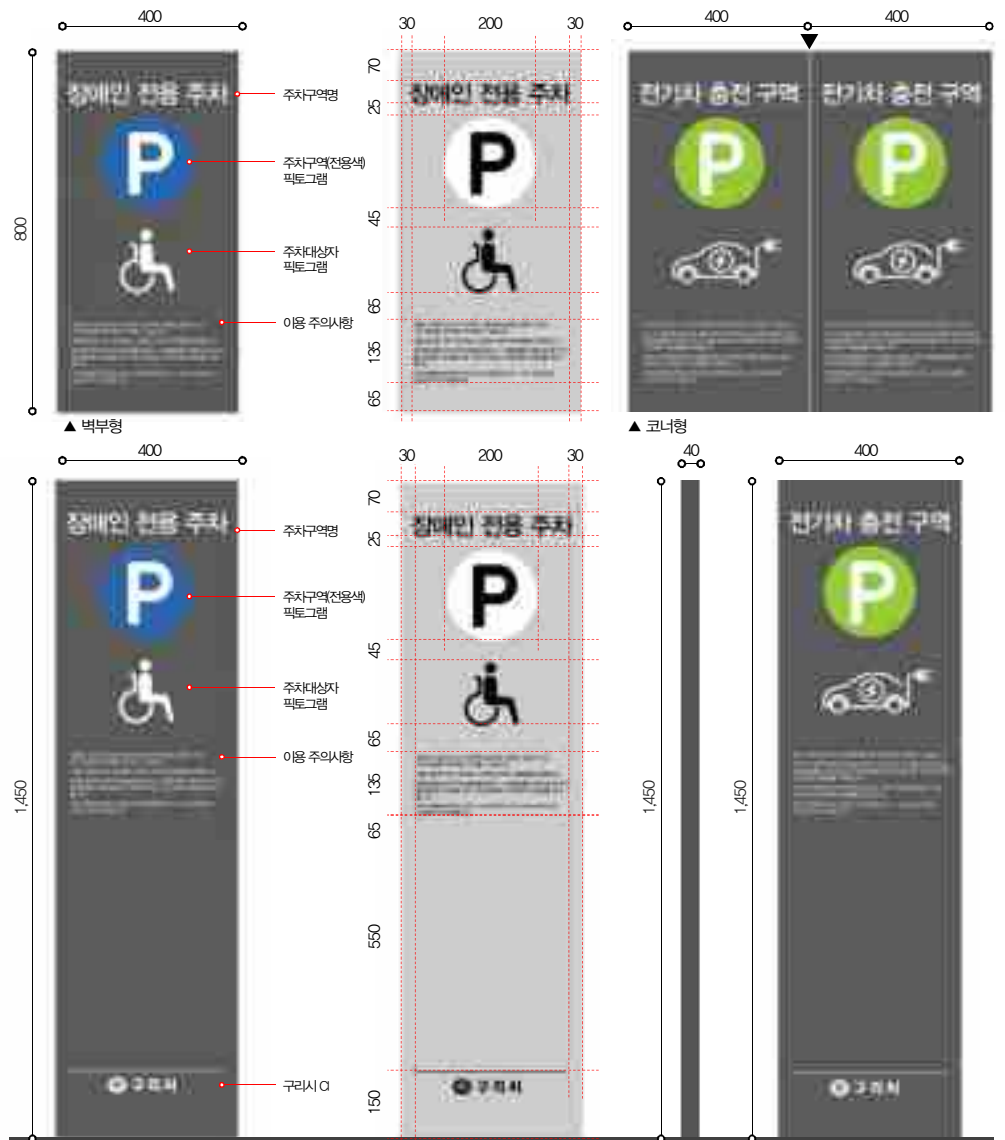


<그림 4-133 공공건축물 내 특정 주차구역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 건축물공간
- 외부공간
- 주차공간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특정 주차구역 안내사인은 바닥 기초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식수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불가한 경우 보도 위에 설치한다.
- 특정 주차구역이 건물과 인접한 경우 벽부형 안내사인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건물 각각부에 위치하는 주차구역의 경우 양방향에서 인지할 수 있는 코너형 안내사인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34 공공건축물 내 특정 주차구역 안내사인 상세 디자인 가이드라인>

### 3. 건축물공간

#### 3.4. 내부공간

##### 3.4.1. 공용공간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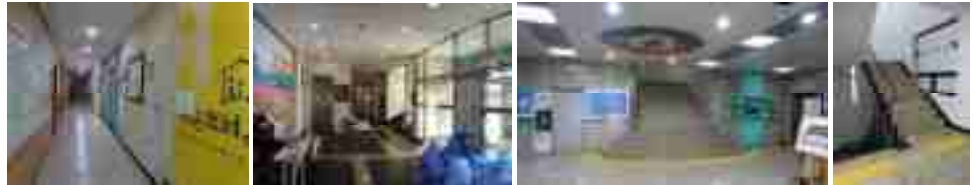
★ 본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공간 내부 공용공간은 공공건축물의 로비공간, 이동공간, 내부 편의공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규모가 작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로비공간과 이동공간, 민원공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통합적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로비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이며 공공건축물의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상징공간이나 일부 조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공간의 규모가 작아 다소 답답한 공간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 주요 동선 상에 위치한 계단실은 계단의 폭, 높이, 난간(안전바),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신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계단실 벽면 및 계단 측면을 이용하여 각종 공공정보매체를 설치하여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
- 화장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되어 접근공간의 유효폭, 출입문 바닥면의 단차, 장애인 전용 부스 내부 시설 등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다양한 마감재가 혼용된 노인화관 로비 ▲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은 로비 ▲ 각종 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로 인해 복잡한 로비



▲ 폐쇄적인 이미지의 복도 ▲ 방향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복도 ▲ 계단실에 불필요한 그래픽요소가 과다지인을 유발하는 계단실



▲ 유효폭이 좁은 복도 ▲ 고채도 색을 적용한 마감재 ▲ 불필요한 장식요소 부착 ▲ 장애인 전용 부스 내 노후된 시설  
(그림 4-135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내부 공용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건축물공간의 내부 공용공간의 공간구조는 로비공간, 이동공간, 편의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24>와 같은 공공정보매체 및 내부 시설이 설치된다.

공간구조	로비공간	이용자의 만남, 대기, 휴식, 문의 등을 위한 개방형 공간
	이동공간	계단실, 복도, 승강기(엘리베이터) 등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
	편의공간	화장실 등 이용자의 기본적인 배설, 세면, 화장 등의 기능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
공공정보매체	내부공간	종합안내사인, 층별안내사인, 실별안내사인, 부서별안내사인, 민원안내사인, 픽토그램안내사인 등
기타	로비공간	이동형 패브릭 소파, 간이 테이블, 전사용 쇼케이스 등
	이동공간	계단실 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편의공간	G화장실 전용 부스, 변기 부스, 소변기, 세면대, 청소도구함, 기저귀교환대 등

(표 4-24 건축물공간 내부 공용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 건축물공간
- 내부공간
- 공용공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공용공간



▲ 주출입구 및 로비공간



▲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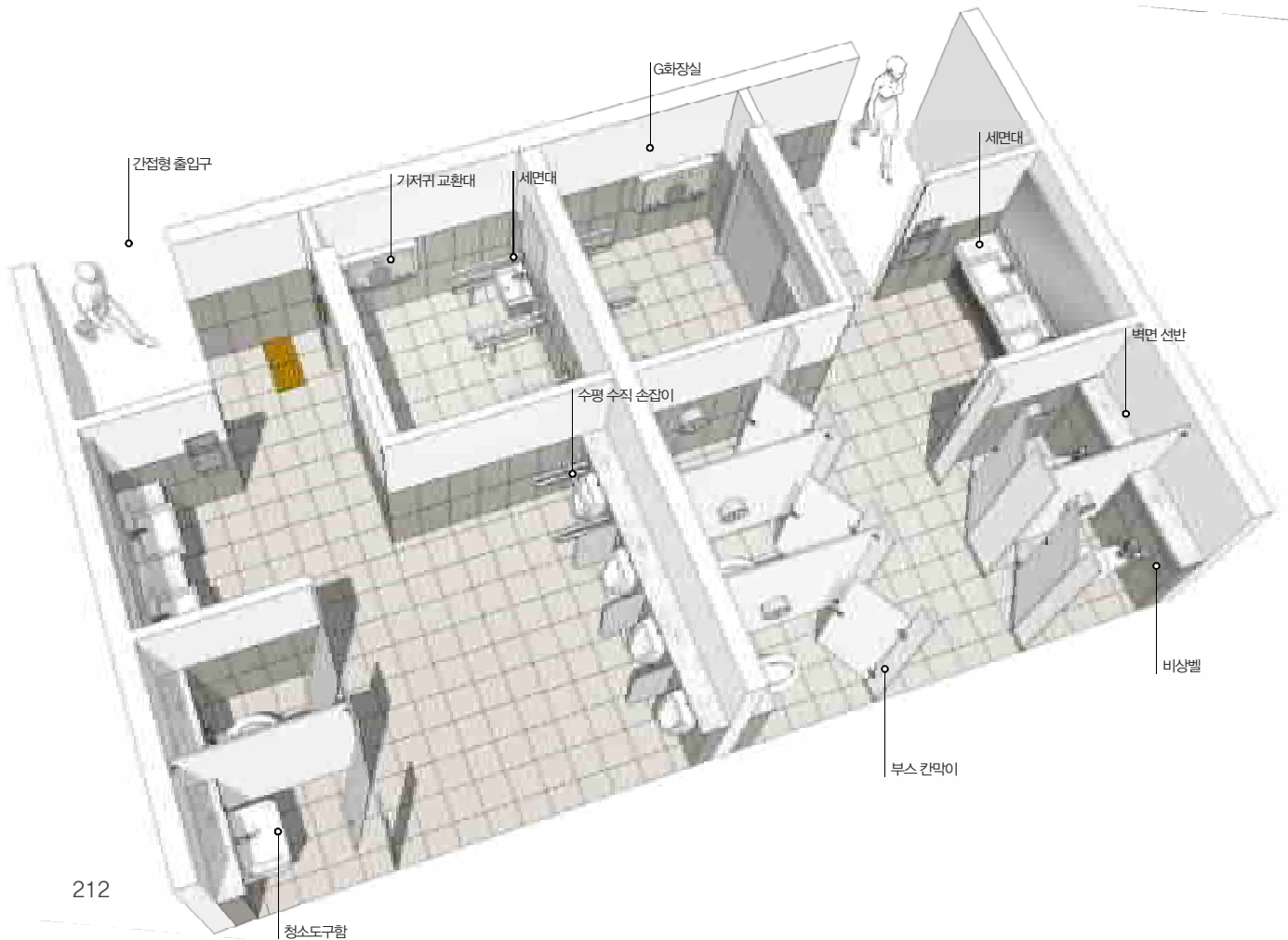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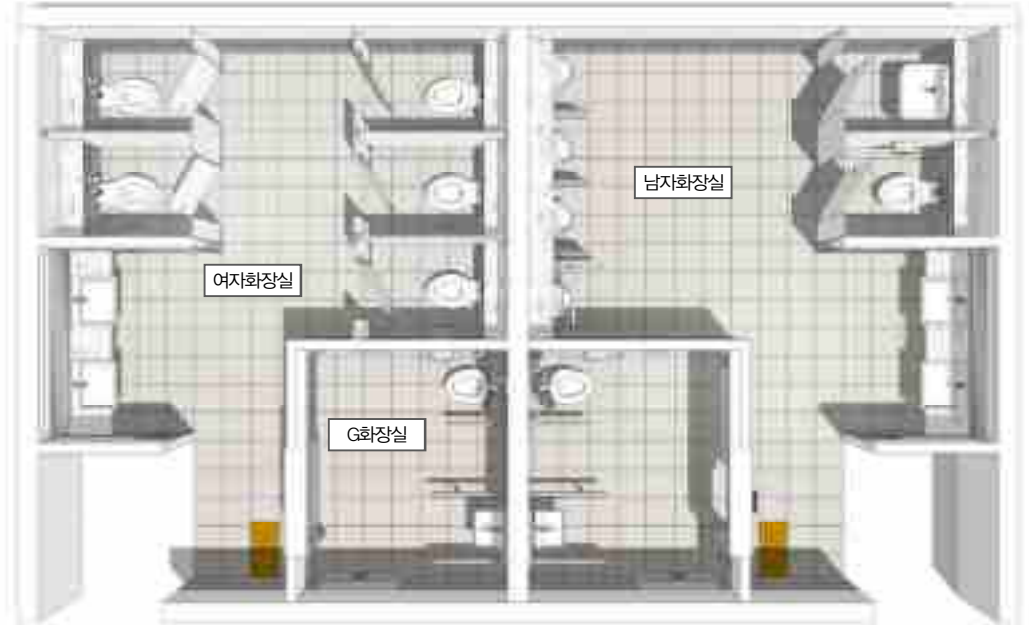
▲ 승강기 및 총별안내사인

가이드라인 적용  
평면(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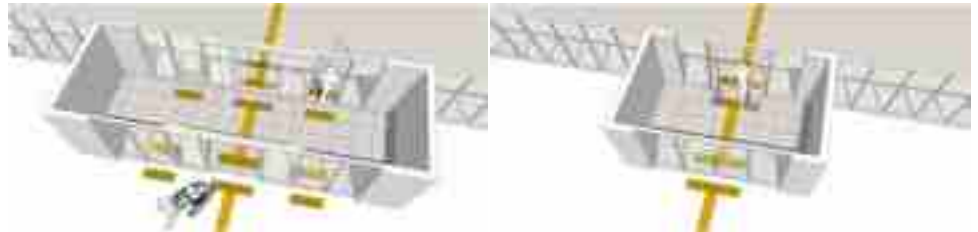
가이드라인 적용  
평면(배치)계획

■ 화장실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의 주출입문은 휠체어, 유모차, 짐수레 이용자를 배려하여 자동문의 설치를 권장하나 공간의 구조 및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양방향으로 개폐되는 수동문 중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자동문 설치 시 유지관리를 고려한 수동문을 반드시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주출입문은 양개도어(문짝 2개가 대칭형으로 열리는 문)를 설치하여야 하며 양쪽 문이 열렸을 때를 기준으로 유효 폭을 1.5m 이상(법적 유효 폭 0.8m)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주출입문과 방풍실 내부의 문은 동일한 유형(자동문 또는 수동문) 및 규격(유효 폭)의 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방풍실을 기준으로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사이의 간격은 문의 개폐반경 또는 자동문의 센서 감지거리 등을 고려하여 1.5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출입문은 무색투명강화유리로 설치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유리 위 반사시트, 유색시트, 그래픽시트 등의 부착을 일체 지양한다.



<그림 4-136 공공건축물 주출입문 방풍실의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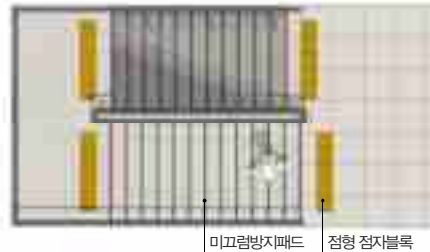
- 공공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개방형 구조의 로비공간 확보하여 안내데스크(또는 디지털안내사인 등), 카페(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준용),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로비공간 내 편의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우선으로 하여 개방형 구조 및 가변형 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37 공공건축물 로비공간의 편의시설 조성 예시>

- 공공건축물 내부 공용공간은 계단실을 제외한 바닥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하며 복도 및 계단실 등에는 유리창의 면적을 확장시켜 자연광을 유입시킴으로써 주간의 에너지절약은 물론 상시 밝고 쾌적한 공간이미지의 제공을 권장한다.
- 방문객의 층간 이동이 빈번하여 주요 동선으로 활용되는 계단실은 로비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하고 주출입문에서 연결되는 점지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실 시종점부, 계단참 등에는 점형 점지블럭을 설치하여 단차의 변화를 인지시켜야 하며 방문객이 많은 공공건축물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계단의 유효폭은 양방향의 통행이 용이한 1.5m 이상 확보하고 계단의 양측면에 2단 안전바 및 점자안내 사인의 설치를 권장한다.
- 승강기 설치 시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폭 1.6m, 깊이 1.35m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승강기 내·외부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시창의 설치를 권장한다.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그림 4-138 공공건축물 계단실의 조성 예시〉

- 계단모서리에는 마감재의 요철 가공 및 미끄럼방지패드를 부착하여 마감하고 계단의 시작점과 끝지점은 색상을 달리하여 약시자를 배려하여야 한다.
- 계단의 디딤판의 너비는 30cm 이상 높이는 16cm 이하로 하며 동일한 계단에서 높이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계단의 단면이 노출되는 경우 끝부분에 보행자의 발이나 목발, 지팡이 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높이 3cm 내외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139 공공건축물 계단실 미끄럼방지 시설의 조성 예시〉

- 신체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용이 집중되는 복지시설 등의 공공건축물 내부는 층간 주요 이동동선을 계단이 아닌 기울기 1/120이하의 경사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화장실은 반드시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부스를 성별에 따라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40 공공건축물 내부 장애인 화장실의 배치 예시〉

- 화장실의 주출입구는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를 포함한 신체 약자를 배려하여 별도의 문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단, 화장실 내부공간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간접동선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출입구 전면에 점자블록의 설치를 권장한다.



▲ 권장: 간접형 출입동선으로 내부공간이 직접 노출되는 않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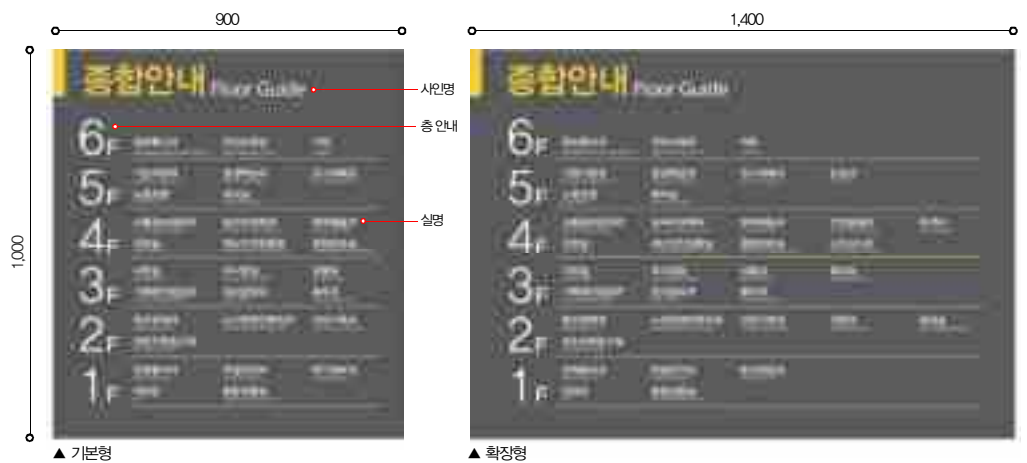
▲ 지양: 화장실 내부가 직접 노출되는 구조

〈그림 4-141 공공건축물 화장실 주출입 동선의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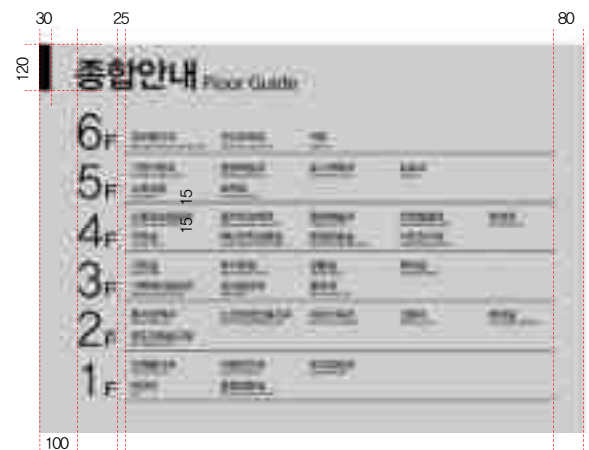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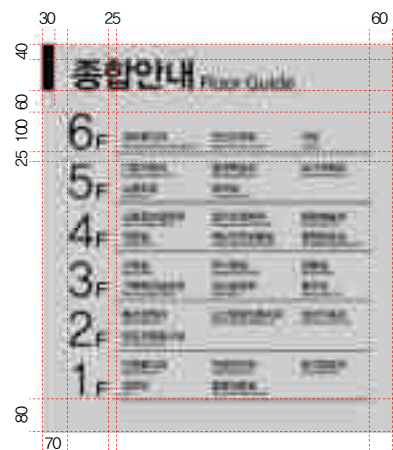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의 동선이 교차하는 로비공간에는 층별 시설을 안내하는 벽부형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벽부형의 경우 정보의 양에 따라 가로 폭 600~1,400mm, 세로 폭 800mm~1,200mm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공공건축물의 로비가 1층이 아닌 경우 종합안내사인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층의 숫자에 강조색을 적용하여 방문객이 현재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 벽면 마감에 따라 벽부형 종합안내사인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독립형 종합안내사인을 <그림 4-120>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 기본형

▲ 확장형



▲ 벽부형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한 경우



▲ 독립형 종합안내사인을 설치한 경우

<그림 4-145 공공건축물 벽부형 종합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 건축물공간
- 내부공간
- 공용공간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공공건축물 내부의 주요 동선으로 이용되는 계단실의 벽체 및 계단의 측면을 이용하여 층별 안내사인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계단의 측면을 이용할 경우 계단의 폭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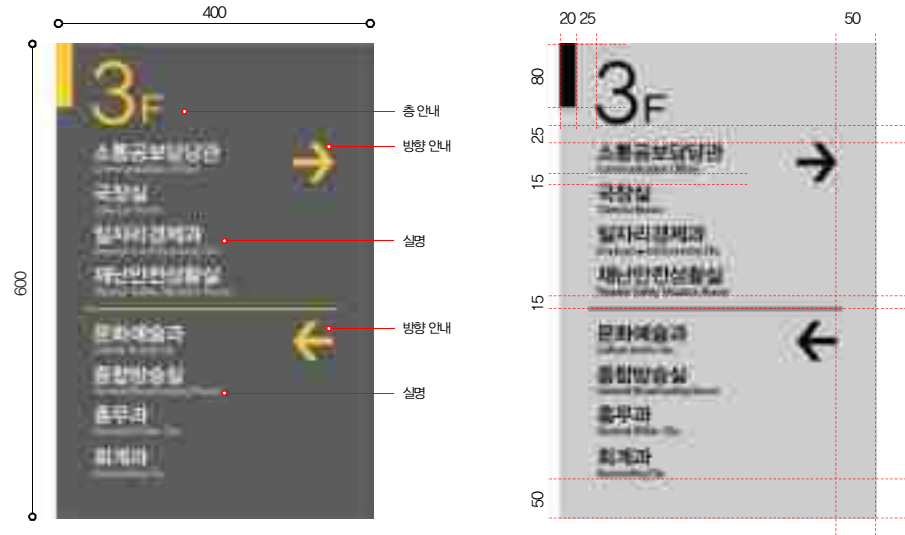


▲ 권장: 계단 폭 및 높이와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

▲ 지양: 계단 폭 및 높이 등과 무관한 규격으로 설치

<그림 4-146 공공건축물 계단형 층별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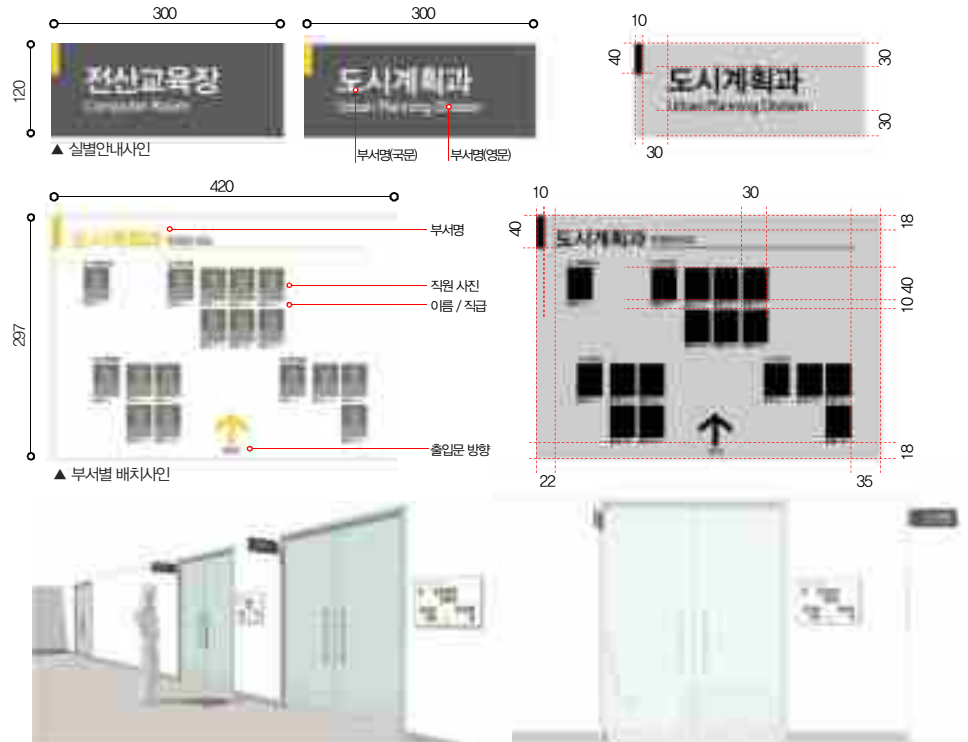
- "ㄱ"자 또는 "ㄷ"자 형태 등과 같이 동선이 꺾어지는 복도형 공용공간 벽부형 층별안내사인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방문 목적에 따라 쉽고 빨리 해당 부서 및 기능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림 4-147 공공건축물 벽부형 층별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부서 또는 기능공간의 출입문에는 돌출형 실별안내사인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부서별 배치 및 담당자를 안내하는 부서별 안내사인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 4-148 공공건축물 실별안내사인 및 부서별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 화장실의 주출입구는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안내사인을 설치하고 G화장실 출입문에는 픽토그램과 함께 기능을 소개하는 안내사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안내 픽토그램은 원거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하되 배경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인형 그래픽 슈트로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49 공공건축물 화장실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설치 예시〉

### 3. 건축물공간

#### 3.4. 내부공간

##### 3.4.2. 민원공간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건축물공간 내부 민원공간은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같은 공공청사 내부에서 주요 민원업무의 접수, 상담, 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건축물 내부 민원공간은 구리시청을 포함하여 8개의 행정동별로 운영중인 행정복지센터 등과 같은 공공청사의 주요 기능공간으로 민원업무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공간이다.
- 8개소의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공간은 규모, 배치, 마감(색채, 재료, 패턴), 가구, 공공정보매체 등의 설치 및 시공 시기, 디자인 결정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도시차원에서 일관성이 부재한 상황이다.
- 민원인의 접근 및 내부 시설 이용 시의 동선을 고려하여 외부 주차 및 건물 출입동선, 화장실 등의 편의 공간 이용동선, 대기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한 노인, 휠체어·유모차·짐수레 이용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한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



▲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그림 4-150 구리시 내 건축물공간 내부 민원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건축물공간의 내부 민원공간의 공간구조는 상담공간과 대기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각 공간구조에 따라 <표 4-25>와 같은 공공정보매체 및 내부 시설이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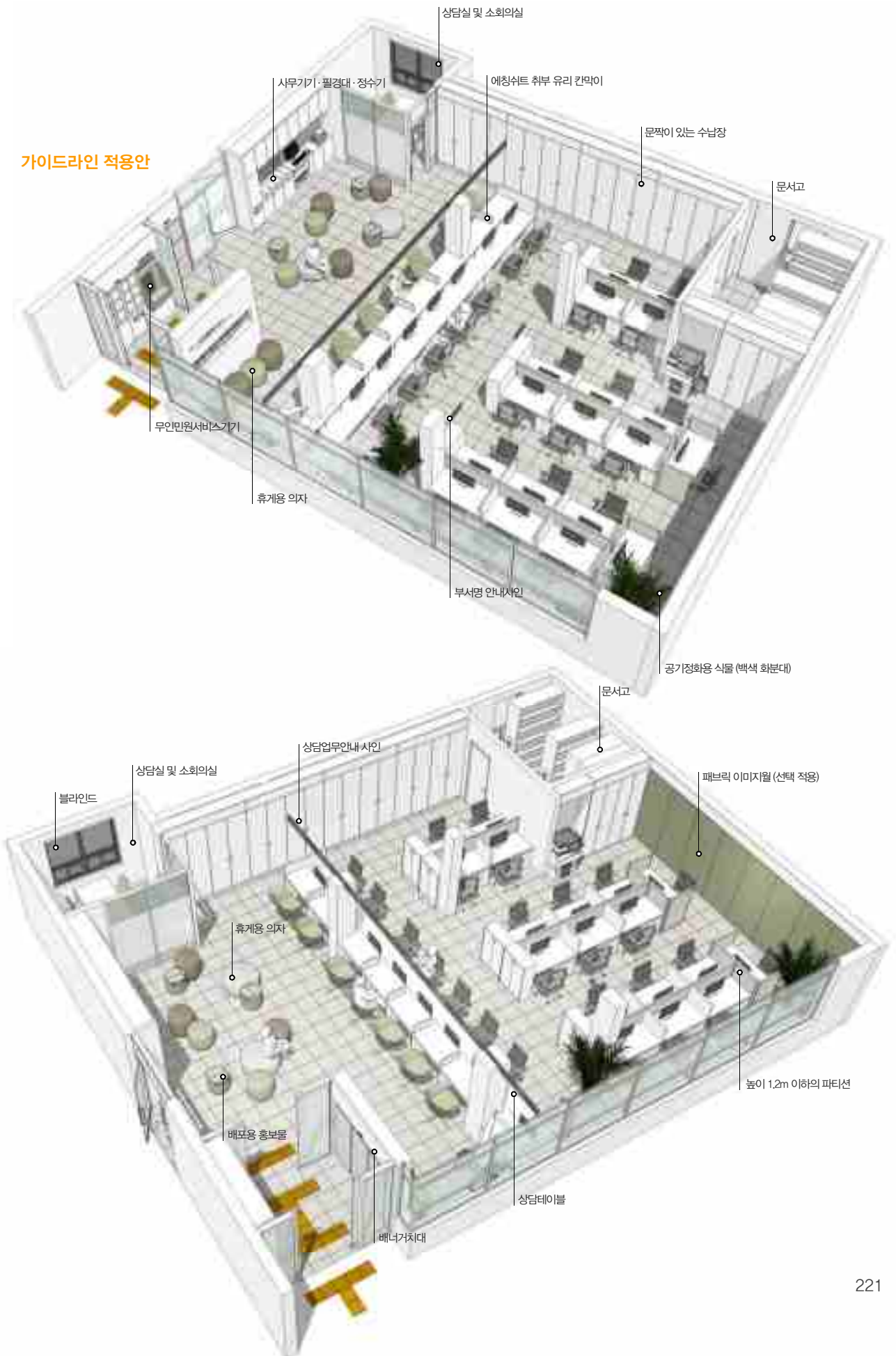
공간구조	상담공간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서비스의 접수, 상담, 처리를 위해 대면하는 공간
	대기공간	민원인을 위한 위한 대기 및 휴식공간
공공정보매체	내부공간	실별안내사인, 민원안내사인 등
기타	상담공간 시설	상담테이블, 상담의자 등
	대기공간 시설	소파, 필경대, 간이 테이블, 정수기 등

〈표 4-25 건축물공간 내부 민원공간의 공간구조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 건축물공간
- 내부공간
- 민원공간

가이드라인 적용안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민원공간 내부 상담공간은 민원인의 업무를 대면하여 처리해주는 공간으로 직원들의 업무공간과 민원인의 대기공간을 구분하는 긴 형태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마주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테이블의 높이는 휠체어 이용자의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높이 65cm 이상, 깊이 4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상담공간 사이에는 에칭슈트가 부착된 유리 칸막이(또는 에칭유리 칸막이)의 설치를 권장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배려한다.
- 민원인을 위해 상담테이블에 배치하는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설치하되, 하부받침에 바퀴가 설치되지 않은 고정형 또는 회전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한 상담테이블의 높이를 적용한 예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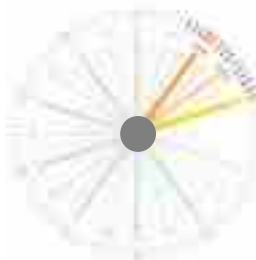


▲ 하부 바퀴가 없는 회전형 의자가 설치된 예시 이미지

〈그림 4-151 공공건축물 민원공간 상담테이블의 예시 이미지〉

- 상담공간에서 보여지는 내부 업무공간의 경우 높이 1.2m 이하의 파티션, 문짝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등을 이용하여 상시 개방적이고 정돈된 공간이미지 조성을 권장한다.
- 민원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무늬목사용을 지양하고, 백색 또는 고명도의 따뜻한 회색을 주조색으로 권장한다. 단, 패브릭(섬유)마감이 필요한 파티션, 의자 등과 같은 이동형가구에 한하여 〈그림 4-141〉와 같은 난색(따뜻한 색)계열의 중명도 색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분	권장색	
유채색	색상 (H)	Y / YR
	명도 (V)	4 ~ 7
	채도 (C)	70이하
무채색 (회색톤)	색상 (H)	N
	명도 (V)	60이하
	채도 (C)	-



5YR 7/1	2.5YR 6/2	2.5YR 4/2
5YR 5/4	5YR 5/5	10YR 4/6
2.5Y 7/7	5Y 5.5/8	2.5YR 6/4
5YR 6.5/5	5Y 6.5/8	7.5YR 6/7

〈그림 4-152 건축물 내부 민원공간 가구의 권장색 범위 및 예시도〉

-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민원업무 등의 원활한 대응을 고려하여 휴게공간과 일정 거리 이격된 독립형 구조의 상담공간의 조성을 권장한다. 해당 공간의 마감은 투명유리를 주재료로 하여 개방성을 유지하되 에칭슈트 취부 및 블라인드 설치 등을 통해 상황에 따라 외부 시야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에칭슈트 취부



블라인드 설치

〈그림 4-153 독립형 상담공간 조성방안〉

- 건축물공간
- 내부공간
- 민원공간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배려한 사무기기 배치 시 상담공간 및 업무공간의 가구색과 동일한 불박이가구를 설치하여 복잡한 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54 민원 대기공간의 사무기기 배치방안〉

- 무인민원서비스기기의 경우 민원업무가 중단되는 점심시간 방문객을 배려하여 해당 시간에도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방풍실 및 공용공간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55 무인민원서비스기기 배치방안〉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상담테이블 상부에 천정거치형 민원 업무 안내사인을 설치하되 안내사인의 하단 끝선이 바닥면에서 최소 2,100m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156 공공건축물 민원 업무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 상담공간 내부 업무공간의 부서 명칭을 안내사인을 팀별로 설치하며 과단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부서 명칭 안내사인의 글자색을 지정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 확보를 권장한다.



〈그림 4-157 공공건축물 팀별 안내사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홍보포스터 전용 게시공간을 조성하고, 핀업 및 자석의 탈부착이 가능한 스틸 위 패브릭 마감패널을 설치하되 과도한 정보로 인해 시각적 피로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 민원인에게 배포용으로 제작되는 소형 홍보물의 경우 대기공간 근처에 비치하여 대기, 휴식, 정보전달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계획을 권장한다.

## 4. 공원·휴양공간

### 4.1. 공통사항

#### 개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 공원·휴양공간의 공통사항은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 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구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필수 가이드라인으로 정의한다.

####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그림 4-158 공원·휴양공간의 공간개념 및 용어의 정의〉

필수 가이드라인

# 1 자연의 색을 강조한 공공시설물(체육시설물)

- 공원·휴양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운동시설물, 조형물, 바닥 포장재 등은 형태, 색채, 재료 등과 같은 시각적 상징성을 최소화하고 배경이 되는 자연이 강조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의 배치 시에는 공원·휴양공간 내 체육시설, 식재공간, 오픈 스페이스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분석하여 시민들의 욕외 커뮤니티활동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야간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공원·휴양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가로공간 필수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의 사용한다.
- 인증제품 선정 시 이용자의 편의성 및 배경이 되는 자연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목재(합성목 포함)마감이 혼용된 인증제품의 선정을 권장하며 해당 인증제품의 예시는 <그림 4-159>과 같다.



<그림 4-159 공원·휴양공간에 적합한 인증제품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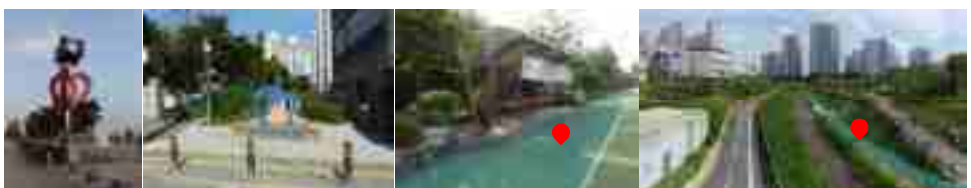
- 공원·휴양공간 내에 설치 빈도가 높은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청색, 녹색 등과 같이 고채도의 도색은 제한한다.
- 야외 운동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색채의 범위는 <그림 4-160>과 같이 저명도 회색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동시설에 부착하는 사용법 등의 안내표지 또한 고채도 색의 사용을 제한한다.

구분	권장색		N2	N3
	색상 (H)	YR / Y		
유채색	색상 (H)	YR / Y	2.5Y 2/1	2.5Y 4/1
	명도 (V)	40이하		
	채도 (C)	20이하		
무채색 (회색톤)	색상 (H)	N	5YR 2/1	5YR 3/1
	명도 (V)	30이상		



<그림 4-160 야외운동시설의 사용색 범위 및 적용 예시>

- 공원·휴양공간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고채도 색,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 불필요한 장식물 부착 등은 지양하며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공원·휴양공간 내에 조성하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경우 가로공간 필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공공공간의 연속성을 부여하되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에는 화강판석, 점토블럭, 황토블럭, 목재데크 등과 같은 재료 고유의 질감 및 색채를 적용할 수 있다.
- 보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생고무칩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유색 사용을 제한한다.



<그림 4-161 공원·휴양공간 내 조형물 및 포장의 지양사례>

필수 가이드라인

## 2 그림으로 찾는 편의시설

- 연령,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옥외활동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공공안내소, 매표, 수유실, 주차공간 등을 원거리에서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적용하여야 한다.
- 그림문자의 크기는 해당 시설의 규모 및 면적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최소 높이 60cm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그림문자의 색은 부착되는 배경면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백색, (진)회색 등과 같은 무채색의 적용을 권장하나 성별의 구분이 필요한 화장실 그림문자의 경우 유채색을 적용할 수 있다.
- 그림문자의 제작은 경제적이고 탈부착이 용이하여 부분교체 및 보수가 간편한 그래픽 슈트를 주재료로 권장한다. 다만 야간의 식별성이 중요한 시설의 경우 조명이 매입된 패널에 블랙아웃슈트로 제작할 수 있다.
-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그림문자의 디자인 기본형과 적용 예시는 <그림 4-162>과 같다.



<그림 4-162 공원·휴양공간의 대형 그림문자 디자인 기본형 및 적용 예시>

필수 가이드라인

### 3 야간에도 활발한 공공공간

- 야간에도 시민들의 옥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휴양공간 내 보행동선 및 오픈스페이스 등은 조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조도의 상향 조정 시 인접한 하천 및 식재공간 등에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동식물의 생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시민들의 이용이 줄어드는 시간을 고려하여 일정시간 이후에는 최소한의 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명은 소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원·휴양공간 내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 3701)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교량 하부를 관통하는 경우에도 연결동선과 균일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각 및 교대 등에 벽부등의 추가 설치를 권장한다.
- 교량의 폭이 넓어 하부공간이 넓은 경우 조명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쉼터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림 4-163 교량 하부 쉼터공간 조성 예시〉

- 공원·휴양공간 내 농구코트, 배드민턴/테니스코트, 인라인 스케이트/스케이드보드장, 트랙 등의 운동시설에는 해당 공간 내의 균일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투광등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권장한다. 단,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일정시간 이후 소등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자연감시가 어려운 공간에는 24시간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에는 상시 근무인력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공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인해 24시간 감시장치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접근공간 및 사각지대 등에 설치하고, CCTV 감시 중이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을 권장한다.
- 보행동선과 연접한 식재공간의 경우 갈대 숲, 집풀 등 생육속도가 빠른 수종의 경우 보행자의 개방적인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높이 1.2m 이하로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활엽수의 부피감이 줄어드는 겨울철 공원·휴양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연시를 포함한 일정기간동안 빛을 이용한 연출 및 조형물의 설치를 권장하며 주요 공원 및 광장 등을 대상으로 도시치원에서 강약감 있는 빛의 이벤트 개최를 권장한다. 단,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구리시의 2019년 겨울 빛 조형물 연출 사진

▲ 빛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의 권장사례 (프랑스 리옹)

〈그림 4-164 겨울철 빛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의 권장사례〉

필수 가이드라인

## 4 울타리가 없는 개방형 공공공간

- 공원·휴양공간의 경계부에 보도펜스, 조경석, 앉음벽 등과 같은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경계시설의 설치를 지양하여 인접한 가로공간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각적, 공간적 개방감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도시 내 지형으로 인해 인접한 가로공간과 공원·휴양공간 사이에 단차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완만한 경사의 식수대를 조성하여 지피류와 지하고가 높은 교목을 식재함으로써 보행자의 시야에서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생활가로와 평행한 구조의 연결녹지, 완충녹지 등의 선형 녹지공간 조성 시에는 폐쇄적인 이미지의 생활타리 조성을 지양하고 지피류와 지하고가 높은 낙엽 교목을 식재하여 보행자에게 녹음을 제공하고 상록수의 경우 녹지 안쪽으로 식재하여 가로공간과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65 공원·휴양공간의 경계시설 설치 지양사례〉



〈그림 4-166 개방형 구조의 식수대 조성 예시〉

-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휴양공간 조성 시 경계를 형성하는 식재공간은 밀도가 높은 상록수의 식재를 지양하고 지하고가 높은 활엽교목과 수고가 낮은 관목 또는 지피류의 혼식을 권장한다.
- 공원·휴양공간의 경계부에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경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고 30cm 이하의 생활타리를 조성하여 기능성을 충족시키면서 개방형 구조의 유지를 권장한다.



〈그림 4-167 폐쇄형 식재 지양사례와 개방형 식재의 예시〉

필수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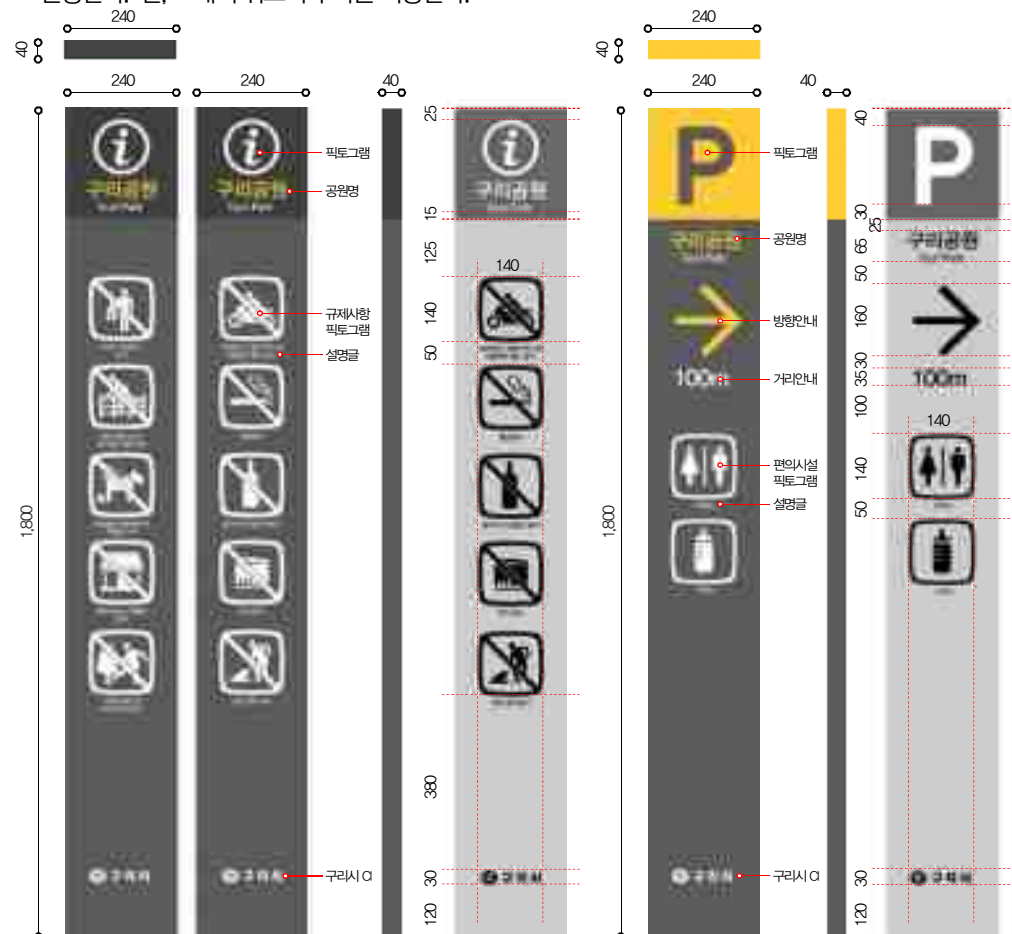
## 5 통합형 공공정보매체

- 공원·휴양공간에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정보매체의 수량과 정보를 최소화한 통합형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이용자의 시각적 피로도를 완화시킬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68 공원·휴양이용 시 규제사항을 명시한 공공정보매체의 사례〉

- 공원·휴양공간 통합형 안내표지와 함께 표기하며 설명글을 최소화하고 공공그림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 공원·휴양공간 통합형 안내표지의 서체, 색체계획은 자주형 버스안내표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 디자인은 〈그림 4-169〉, 〈그림 4-170〉과 같다.
- 정보면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실크스크린(공판화 기법)을 적용하거나 옥외용 실사출력물을 취부할 것을 권장한다. 단, 그래픽 스위트의 부착은 지양한다.



〈그림 4-169 공원·휴양공간 규제사항 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림 4-170 공원·휴양공간 주차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 4. 공원·휴양공간

### 4.2. 공원

#### 개요

- ★ 본 가이드라인에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일반 시민의 휴식, 교육 및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갖춘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 공원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이 있다. 도시공원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눈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및 기타공원으로 세분한다. 도시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분류한다.
- ★ 본 가이드라인에서 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을 대상으로 계획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우선하되 공원 내 설치하는 공공디자인 요소의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시의 생활권공원은 시민들의 거주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다양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원 경계부가 폐쇄적이거나 주출입구의 단차 등으로 인접한 가로공간에서의 개방성을 다소 미흡하다.
- 주제공원은 수변공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한강, 왕숙천, 갈매천 등을 중심으로 시민은 물론 외부인의 옥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 공원 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운동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이 배경이 되는 자연과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다.



▲ 공원 내 단차변화가 급격한 서가산공원 ▲ 출입구가 계단으로 조성된 아름공원 ▲ 야간의 우범화가 우려되는 옥밭굴공원



▲ 고채도 색상의 보도 포장재를 적용한 구리한강시민공원 ▲ 고채도 색상의 포장재 및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의 공공시설물을 적용한 왕숙천  
(그림 4-171 구리시 내 공원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공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되어 세분화되며, 공원의 규모, 구조, 지형, 특성 등에 따라 <표4-26>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공원의 분류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볼라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파고라,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음수대, 운동시설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트랜치, 제설함, CCTV 외함, 지상식 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분수대 등
	기타시설물	옹벽, 조형물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주차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노면표지 등
	공공건축물	시설안내표지 등

<표 4-26 공원의 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소공원 : 원일공원



▲ 접근이 제한적인 공원 주출입구



▲ 공원 내 공공시설물



▲ 공원 내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배치계획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공원의 주출입구는 인접한 가로공간과 단차없이 연결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단, 대상지의 지형 등으로 단차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기울기 1/18 이하의 완만한 기울기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원의 주출입구에는 별도의 게이트 설치를 지양하며 대규모 공원의 경우 공원명 안내사인 또는 공원명을 입체문자로 제작한 조형물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원 내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가로공간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며 보행의 편의성을 고려한 탄성재 포장 시 교체도 원색을 지양하고 보도와 유사한 회색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의 경우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건축물공간 외부 주차공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공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전거보관대의 경우 1대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 내에 교량을 설치하거나 교량 하부로 공원이 연결되는 경우 교량은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한 간결한 형태의 단순교 형식을 권장하며 공원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재료 및 색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교량은 구리시 경관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공원 내에 조성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건축물공간의 환경시설 외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배경이 되는 자연과의 조화성을 우선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단계에서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림 4-172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원 내 구조물 및 건축물〉

- 수변공원 양안 등에 옹벽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교체도의 도색, 슈퍼그래픽, 장식물, 특정 사물 및 동식물을 형상화한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은 지양하고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도형 옹벽의 권장형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에 설치빈도가 높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바닥면에는 탄성재 포장을 적용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권장한다.
- 어린이 모래놀이공간을 조성할 경우 놀이시설과 분리할 것을 권장하며 애완견, 길 고양이 등의 배변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30cm 이하의 펜스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공원 내 주차공간 조성 시 원거리에서도 진출입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으며 공원 내에서 주차공간의 방향을 규칙적으로 안내하는 공공정보매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173 공원 내 공공정보매체의 설치 예시〉

## 4. 공원·휴양공간

### 4.3. 녹지

#### 개요

- ★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 녹지는 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화된다.
- ★ 본 가이드라인에서 녹지는 공원녹지법에서 구분하는 녹지 및 연결녹지와 공공공지가 결합된 성격을 띠고 있는 녹지형 공공공지(쌈지공원)를 대상으로 계획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우선하되 녹지 내에 설치하는 공공디자인 요소의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 주행하는 간선도로변 주거지역 경계부 등에 조성되는 완충녹지는 식재와 함께 설치하는 방음벽의 색채 및 재질로 인한 인공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녹지의 자연색과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 보도와 평행한 구조로 조성된 일부 연결녹지의 경우 고밀도 식재공간만 조성되어 공간의 활용도가 낮으며 야간에 보행자의 시야가 차폐되어 은닉공간 조성이 우려된다.
- 도시 내 고가도로 하부, 보행 결절점 등을 이용한 녹지형 공공공지의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간의 효율성이 향상됨과 동시에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녹지형 공공공지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조형물 등의 고채도 색채 및 불필요한 장식요소 등이 과다자연을 유발하고 있다.



▲ 고가철교 하부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 녹지형 공공공지(인창동)      ▲ 각종 시설물 및 운동시설 등이 설치된 학교 주변 녹지형 공공공지(동구동)  
<그림 4-174 구리시 내 녹지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녹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세분화된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와 녹지형 공공공지로 구분하며, 녹지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라 <표 4-27>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녹지의 분류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녹지형 공공공지	대지 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대지 내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조성하는 공원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블라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파고라, 음수대, 운동시설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트랜치, 제설함, CCTV 외함, 지상식 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등
	기타시설물	방음벽, 조형물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

<표 4-27 녹지의 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녹지형 공공공지 : 이문안로 99번길



▲ 식재의 관리가 소홀하여 공간 효율성 저하

▲ 식재의 밀도가 높아 아간의 우범화 우려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가로공간과 연결한 녹지 조성 시 기능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의 시각적, 공간적 개방성을 확장시키고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보도와 평행한 구조의 연결녹지 내 보행로를 조성하는 경우 보도와 맞닿는 면에 보행로를 설치하여 보행의 유효폭을 확장시키거나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권장 : 보도와 연결하여 녹지 내 보행로를 조성한 경우



▲ 지양 : 보도와 녹지 내 보행로를 분리시켜 조성한 경우

〈그림 4-175 보도와 평행한 연결녹지 내 보행로 조성의 예시〉

- 녹지형 공공공지 조성 시 고밀도 식재 보다는 지하고가 높은 교목 및 수고가 낮은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시율을 높이고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배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완충녹지 등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하며 방음벽 전면에 식수대 조성 시 보행자의 시점에서 개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4-176 방음벽을 설치하는 완충녹지 조성의 예시〉

- 보도와 인접하여 녹지가 조성되는 경우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교통신호제어함 등의 대형 공급시설물은 장애물존이 아닌 녹지 내에 설치하여 보도의 확장감 유도를 권장한다.
- 녹지 내에 보행자의 접근이 빈번한 벤치, 음수대, 운동시설 등의 설치 시 바닥면은 식재공간이 아닌 보도 포장 또는 잔디블럭 포장을 적용하고 인접한 가로공간과 동일한 재료, 색채, 패턴 등을 통해 보도의 시각적 확장성과 디자인적 연속성 부여를 권장한다.
- 녹지 내에 환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 분진 및 냄새 등이 보도로 향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주변에 일정 높이 이상의 관목 등을 식재하여 차폐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77 녹지 내 시설물 설치 예시〉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녹지 내에는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 정보면이 식재 등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4. 공원·휴양공간

### 4.4. 광장

#### 개요

- ★ 광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고,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 광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하며, 교통광장은 다시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세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세분한다.
- ★ 본 가이드라인에서 광장은 구리시 내 조성현황을 토대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을 대상으로 광장 내 공공디자인 요소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단, 건축물부설광장의 경우 건축물공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량이 집중되는 역전광장의 경우 철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동선 연결이 미흡하거나 환승을 위한 주차공간 등이 매우 협소하다.
- 구리역 인근에 위치하는 구리광장의 경우 잔디광장, 다목적 코트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구조이나 녹음을 제공하는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미흡하여 평상 시 공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 보도와 연결한 광장에 단차가 있거나 경계시설 등이 설치되어 보행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야간에는 평균 조도가 낮아 이용률이 급격히 낮아지며 노약자를 배려한 안전시설이 미흡하다.



▲ 잔디광장으로 조성된 구리광장 ▲ 보도와 단차가 있는 구리광장 ▲ 공간의 효율성이 낮은 길매역 광장  
(그림 4-178 구리시 내 광장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광장은 관련 법령 및 도시 내 조성현황에 따라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으로 구분되며, 광장의 기능, 규모,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표 4-28>과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광장의 분류	교통광장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철도역 앞), 주요 시설광장(공항, 항만)등으로 세분화)
	일반광장	주민의 집회, 사고,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 (다수인의 집회 및 행사를 위한 중심대광장과 생활권별 오락 및 휴식을 위한 근린광장으로 세분화)
	경관광장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볼라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파고라, 공공전화부스, 음수대, 운동시설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트랜치, 제설함, CCTV 외함, 지상식 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분수대 등
	기타시설물	조형물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공간명칭표지, 종합안내표지, 관광안내표지, 주차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등

<표 4-28 광장의 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가로공간과 맞닿는 광장 조성 시에는 보도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포장재의 적용을 권장하나 광장의 기능 및 공간의 가변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석재타일(판석), 점토블럭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장 내의 편의공간은 부피감이 적은 공공시설물과 함께 이용자에게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하고가 높은 교목을 식재하여 도심 속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식수대는 노면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역전광장은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보행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접근하여 최적의 동선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역전광장 인근 버스/택시정류장에서 역사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동선에는 점자블럭의 설치를 권장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용을 배려한다.
- 역전광장의 흡연공간은 담배연기가 주변으로 분산되지 않고 담배꽂초 등의 관리가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광장 내에 조성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실, 공연무대 등은 해당 건축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배경이 되는 자연과의 조화성을 우선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단계에서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림 4-179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광장 내 구조물 및 건축물〉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광장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비흡연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차폐기능을 충족시키되 환기가 원활한 천정 오픈형 구조를 권장한다.



▲ 디자인 권장사례 (소형)

▲ 디자인 권장사례 (대형)

〈그림 4-180 구리시 내 흡연부스 설치사례 및 디자인 권장사례〉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도시 내 주요한 거점역할을 하는 광장의 명칭안내표지는 석재를 가공한 디자인을 지양하며 대형 입체문자로 제작한 디자인 또는 공공건축물 건물명안내표지와 동일한 디자인의 적용을 권장한다.
- 광장의 이용안내,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등과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여 야간에도 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공원·휴양공간

### 4.5. 휴양공간

#### 개요

- ★ 휴양공간은 "휴양"의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편안히 쉬면서 마음을 보양하기 위한 시설 및 공공공간으로 정의한다.
- ★ 본 가이드라인에서 휴양공간은 구리시 내 조성현황을 토대로 캠핑장, 둘레길 등을 대상으로 휴양공간 내 공공디자인 요소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에 개장한 구리시토평가족캠핑장의 경우 주요 이용시설인 취사장(세척장), 샤워실(세면장), 화장실, 관리실 등의 외관에 일관성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목재(또는 합성목) 및 저명도 회색의 도장패널 등을 적용하여 배경이 되는 녹지공간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수사례이다.
- 캠핑장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나 내부 판매시설이 부족하여 필요에 따라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스포츠센터 내 매점 이용)
- 이동형 부스형태로 제작된 각종 편의시설의 출입문이 노면과 단차가 있어 접근성이 미흡하며 일부 편의시설 전면에 주차구역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구리시 경계를 따라 왕숙천, 한강시민공원, 아차산, 고구려대장간마을 등을 순환하는 둘레길의 경우 일부 구간 계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있어 노약자의 접근이 제한적이다.



▲ 구리둘레길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그림 4-181 구리시 내 휴양공간의 공공디자인 현황>

#### 관련 공공디자인 요소

- 휴양공간은 도시 내 조성현황에 따라 캠핑장, 둘레길로 구분되며, 휴양공간의 유형, 규모,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표 4-29>와 같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가 설치된다.

휴양공간의 분류	캠핑장	야영을 위한 공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배치한 휴양공간
	둘레길	도시 내 산림, 하천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휴양공간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로등, 보행등, 볼라드, 보도펜스,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벤치, 휴지통, 파고라,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음수대, 운동시설 등
	공급시설물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트랜치, 제설함, CCTV 외함, 지상식 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수목보호대, 화분대, 분수대 등
	기타시설물	조형물 등
공공정보매체	공공공간	공간명칭표지, 종합안내표지, 관광안내표지, 주차안내표지, 방향유도표지, 위험안내 및 규제표지 등

<표 4-29 휴양공간의 분류 및 설치 가능한 세부 시설>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도시 내 캠핑장 조성 시에는 "경기도 캠핑장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수택가족캠핑장의 편의 시설 디자인을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단, 편의시설의 일부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일부 개선하여야 한다.
- 모든 편의시설의 주출입구는 휠체어, 유모차, 짐수레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면과 단차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세척장, 샤워실, 세면장 등과 같이 물을 사용하는 시설의 바닥면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완만한 기울기를 적용하고 시공하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요철이 있는 포장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캠핑장 내부의 편의시설을 포함한 관리실, 매점 등의 건축물 조성 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림 4-182 수택가족캠핑장 내부 편의시설 등의 건축물〉

- 일반캠핑장 조성 시 주차공간과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아영공간 및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야 한다. 단, 차량과 함께하는 오토캠핑장은 예외로 한다.
- 캠핑장 내부 아영구역 조성 시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식수대를 조성하되 식재의 간격 및 밀도를 고려하여 은닉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상시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고가 높은 교목과 수고가 낮은 관목의 식재를 권장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자연이 풍부한 산림자원 속 산책로 조성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시설을 배치하되, 동식물의 생육을 배려하여 높이 1m 이하의 볼라드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휴양공간 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보행자의 눈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안전펜스의 경우 반드시 저명도의 진회색을 적용하여 배경이 되는 녹지공간과 조화를 도모한다.



〈그림 4-183 휴양공간 내 체육시설 경계시설의 색채 지양사례〉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

- 캠핑장 내부 편의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는 해당 시설의 안내표지와 함께 주요 기능을 공공그림표지(픽토그램)를 취부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184 캠핑장 내부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공공그림표지의 디자인〉

## V. 공공디자인 특화 가이드라인

<b>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b>	<b>243</b>
1.1. 개요 및 분석	243
1.2. 기본방향	244
1.3. 가설울타리	245
1.4. 가설게이트	247
1.5. 가설가림막	252
1.6.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253
<b>2.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특화가이드라인</b>	<b>256</b>
2.1. 개요 및 분석	256
2.2. 가이드라인 및 통합설계안	258



# 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 1.1. 개요 및 분석

### 개요

- 인창주택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고려하여 도시 내 다양한 규모의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요구된다.
- 공사기간 동안 설치하는 임시 시설이지만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노출빈도가 높아 도시차원에서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도모한다.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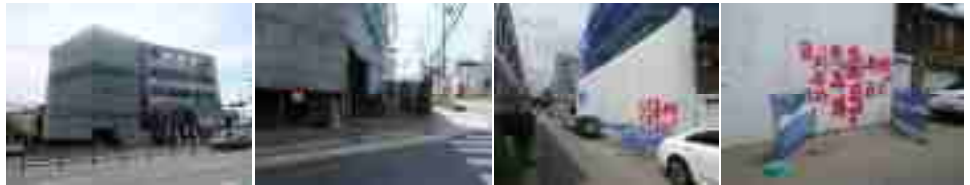
- 공사의 착공 시 가설울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신고하고 설치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 분양정보, 건설사 등의 홍보면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 저층 단독건축물의 신축 시 공사자재 및 폐기물을 인접한 공공공간에 적치하거나 공사장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야간의 우범화가 우려된다.
- 공사(사업)명칭을 명시한 가설게이트 상부 사인, 공사안내판, 건축허가판, 구리시 슬로건 등의 설치기준이 부재하여 공공정보로서의 인지도가 미흡하다.
- 건물 가림막, 추락 방지망, 분진망 등에 고채도 색을 적용하거나 가설울타리에 불필요한 그래픽 및 홍보내용 등을 적용하여 주변공간과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도시 차원에서의 과디자인을 유발하고 있다.



▲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에 부직포를 건물 가림막으로 사용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 ▲ 공사자재 및 폐기물이 방치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례



▲ 고채도 배경색을 사용한 가림막 및 각종 분양홍보가 과디자인을 유발하는 사례



▲ 공사장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아 우범화가 우려되는 사례

▲ 가설울타리에 직접 정보를 표기한 사례

〈그림 5-01 구리시 내 공사장 울타리 등 설치 현황〉

### 개선방안

- 공사의 정보를 도시차원에서 일관성있게 관리하고 공사용 울타리 등을 이용한 광고(홍보) 및 장식물 등의 부착을 지양하여 도시차원에서 정돈된 공공공간 환경을 조성한다.
- 도시 내 시민들의 안전과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우선 고려하고 주변공간과의 조화성을 전제로 한 공사장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향상시킨다.

안전성 · 공공성 · 일관성 · 조화성  
Safety · Public · Continuity · Harmony

〈그림 5-02 구리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 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 1.2. 기본방향

###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구조 및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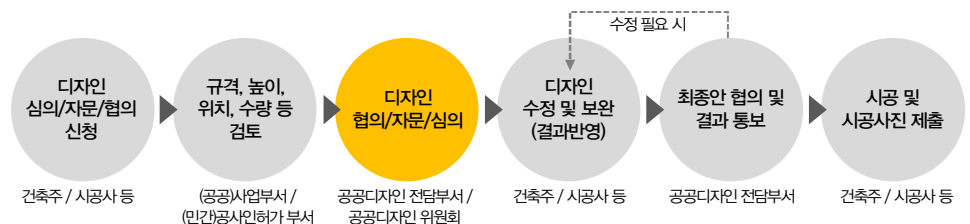
〈그림 5-03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구조 및 용어의 정의〉

###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및 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구리시 내에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공사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상징성 등으로 인한 가설울타리 등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사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각종 정보매체의 경우 규정된 서체 및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구리시 전용 서체를 개발할 경우 해당 서체를 적용한다.
- 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민간건설사의 상호 및 심볼, 기업 슬로건, 분양정보, 건설사별 매뉴얼의 그래픽 패턴 또는 사진, 장식물 등의 적용을 지양한다.
- 건축주, 시행사, 시공사 등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주체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전 대상지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접한 건축물 및 공공공간 등에 분진 및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가이드라인 적용 절차

-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의 설계안은 공사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거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의 디자인(안)의 협의는 착공 2주전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디자인(안)은 축척을 적용하고 확대 이미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 현황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림 5-04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절차〉

# 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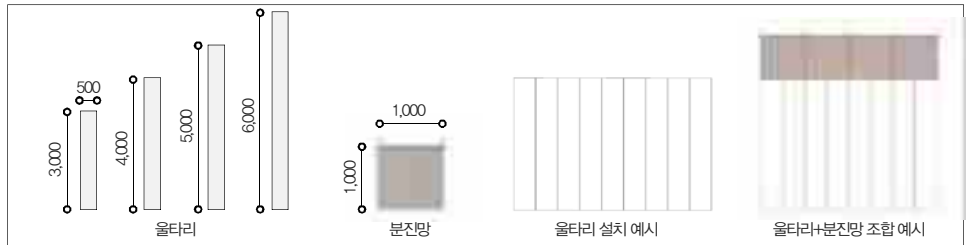
## 1.3. 가설울타리

### 가설울타리의 정의 및 기본개념

- 가설울타리는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의 오염물질이 공사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 자재 및 중장비 등의 이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울타리로 정의한다.

### 가설울타리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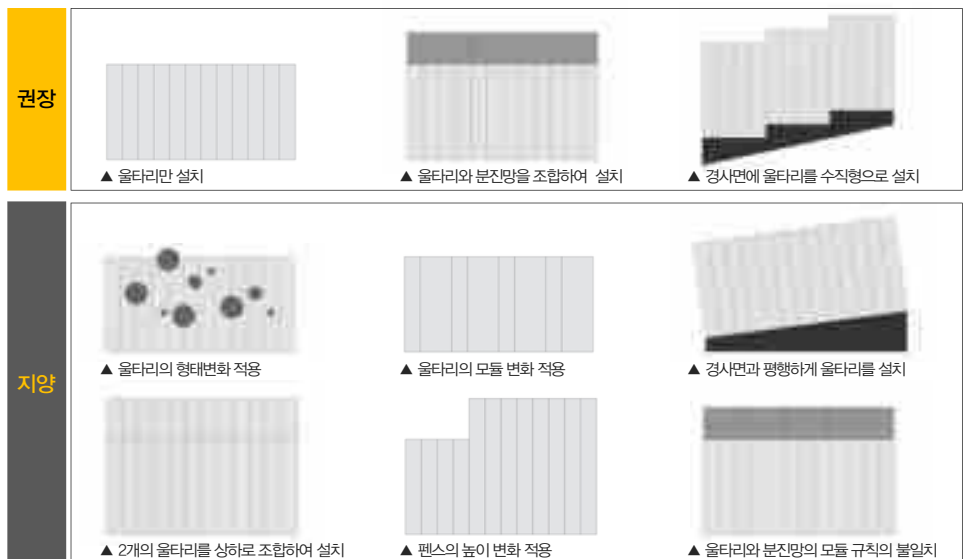
- 가설울타리는 울타리와 분진망으로 구성되며 울타리의 기본 모듈은 (가로 폭) 500mm X (높이) 3,000mm 으로 하되 울타리의 재료에 따라 가로 폭의 변화할 수 있으나 기본 모듈의 가로 폭 적용을 권장하고 높이는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구리시 내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3,000mm 이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 분진망은 공사인허가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분진으로 인한 오염이 많은 공사현장에 선택 적용하고 울타리 위 1,000mm X 1,000mm를 기본 모듈로 적용하며 500mm 단위로 확장시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5-05 가설울타리의 구성요소 및 조합 예시>

### 설치 가이드라인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공사현장의 경우 분진망의 설치보다는 가설울타리를 높게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권장한다.
- 울타리와 분진망을 조합하여 설치할 경우 울타리의 기본 모듈 2개당 1개의 분진망을 설치하여 분진망 배면의 지지대가 규칙성을 갖도록 설치한다.
- 서로 다른 크기의 울타리 및 분진망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울타리 및 분진망의 형태 변형을 일체 지양한다.
- 경사소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경사면과 평행한 각도로 설치하지 않고 수직을 유지하여 기울기를 고려하여 일정간격마다 바닥기준점을 변경하는 계단식 구조로 설치한다.



<그림 5-06 가설울타리 설치의 권장 및 지양사례>

재료 및 색채  
가이드라인

- 울타리는 RPP, EGI, STEEL 등으로 구분되는 기성 제품을 사용하되 재료 고유의 색을 적용하고 별도의 도색은 지양한다. 단, 울타리 위에 홍보 그래픽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표면의 요철이 없는 RPP 패널의 사용을 권장한다.
- 분진망은 PVC, PP, PP+PE 혼합 등으로 구분되는 기성 제품을 사용하되 기존의 고채도 색상의 적용을 지양하고 <표 5-01>에서 제시하는 권장색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단, 투과율이 낮고 오염이 쉬운 부직포의 사용은 불가하며 툰백원단의 경우는 철거공사 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RPP (강화플라스틱)    ▲ EGI (철재)    ▲ STEEL (철재)    ▲ 분진망 (PVC, PP, PP+PE 혼합)  
<그림 5-07 울타리 및 분진망의 재료 예시>

구분	권장색	권장색 예시			
유채색	색상 (H)	2.5~5Y / YR			
	명도 (V)	4.5 ~ 6.5			
	채도 (C)	1이하			
무채색 (회색톤)	색상 (H)	N			
	명도 (V)	4 ~ 6.5			
		2.5Y 6/1	2.5YR 4/1	5YR 4/1	N4
		2.5Y 4/1	2.5YR 5/1	5YR 5/1	N5
		5Y 6/1	2.5YR 6/1	5YR 6/1	N6

<표 5-01 분진망의 권장색 범위 및 예시>

공공정보  
가이드라인

- 가설울타리에는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의 상호나 로고, 기업 홍보, 분양홍보 등은 적용할 수 없으며 구리시의 CI 및 시정구호 등 공공목적의 홍보내용(이하 공공사인) 만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도시차원에서 홍보를 필요로 하거나 상징적인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하나, 반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공사인의 적용 시 서체의 기준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공공정보매체에 적용하는 서체의 기준을 권장하나 고유 서체가 개발되어 있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공공사인의 색채는 무채색을 적용하나 유채색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디자인안의 10%이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 공공사인은 출력물의 직접 부착 방식을 권장하며, 울타리 위 직접 도색, 입체사인, 조명사인 등의 적용은 지양한다. 출력물은 반드시 외부용 출력 또는 그래픽 슈트를 적용하여 변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국비 및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된 CI 및 홍보 슬로건, 지정 매뉴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림 5-8 가설울타리 위 홍보그래픽 권장 및 지양사례>

# 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 1.4. 가설게이트

### 가설게이트의 정의 및 기본개념

- 가설게이트는 공사현장의 차량, 자재 및 중장비 등의 반입 등을 위해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출입문으로 정의한다. 단,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설게이트와 인접한 공사 근로자의 출입문과 공사안내사인, 건축허가사인 등을 포함하여 가설게이트로 정의한다.

### 가설게이트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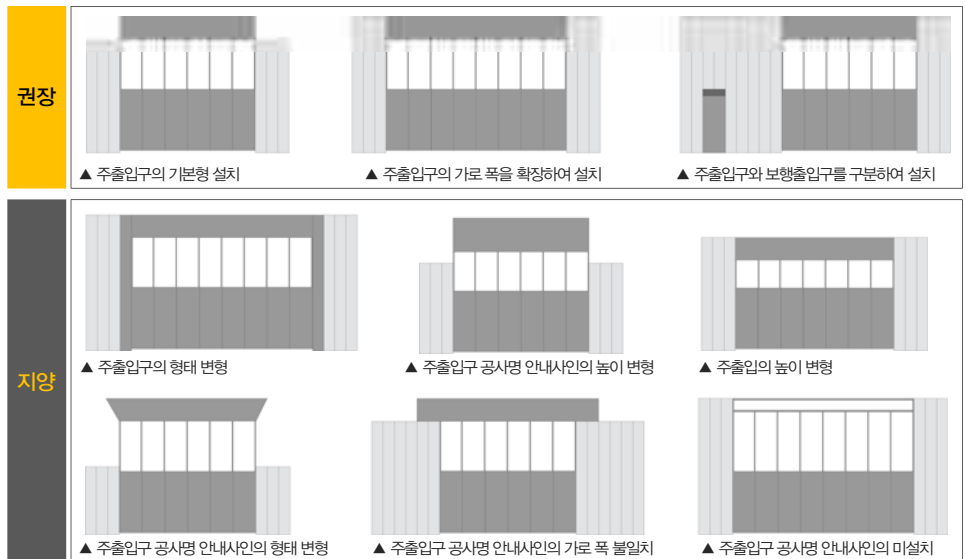
- 가설게이트는 주출입구와 보행출입구로 구분되는 출입문과 공사명 안내사인, 공사안내사인, 건축허가안내사인, 소음 및 분진측정사인 등으로 구분되는 안내사인으로 구성한다. 단, 공사의 규모 및 공사현장의 특성 등에 따라 구성요소는 공사인허가 단계에서 가감될 수 있다.



〈그림 5-09 가설게이트의 구성 요소 및 조합 예시〉

### 설치 가이드라인

- 주출입구는 (가로 폭)6,000mm X (높이)6,000mm를 기본형으로 적용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가로 폭은 1,000mm 단위로 확장하여 최대 12,000mm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높이의 변화는 불가하다.
- 주출입구 설치 시 대형 차량 및 중장비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폴딩도어로 설치하고 폴딩도어 상단에 분진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홍보그래픽의 적용은 일체 지양한다.
- 주출입구 상부에는 공사명 안내사인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가설게이트의 폭과 동일하게 맞추고 높이는 1,000mm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보의 표기기준은 홍보그래픽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주출입구와 별도로 구분하여 공사 근로자 출입을 위한 보행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 폭)1,000mm X (높이)2,700mm로 설치하고 상부에 안내사인을 부착하여 상시 안전한 공사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의 규모가 작은 저층 단독건축물의 경우 출입문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공사현장의 안전한 출입관리를 위해 가설울타리 등을 활용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5-10 가설게이트 주출입구설치의 권장 및 지양사례〉

재료 및 색채  
가이드라인

- 가설게이트는 출입문 설치 시 내구성을 고려하여 금속 가공 위 도장마감을 적용하고 권장색의 범위는 <그림 5-10>과 같으며 유채색 도장 및 홍보 그래픽의 적용은 불가하다.

구분		권장색	권장색 예시			
유채색	색상 (H)	2.5~5Y / YR	2.5Y 6/1	2.5YR 4.5/1	5YR 4.5/1	N4
	명도 (V)	4.5 ~ 6				
	채도 (C)	1이하				
무채색 (회색톤)	색상 (H)	N	2.5Y 4.5/1	2.5YR 5/1	5YR 5/1	N5
	명도 (V)	4 ~ 6				
			5Y 6/1	2.5YR 6/1	5YR 6/1	N6

<표 5-02 가설게이트 출입문 마감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공공정보  
가이드라인

- 가설게이트에 적용하는 공공정보는 공사 개요 및 현황을 안내하는 공공성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하되 민간기업 및 상업적 목적의 홍보그래픽의 적용은 불가하다.
- 근로자 출입구 상부 안내사인, 공사안내사인, 건축허가안내사인, 소음 및 분진측정사인 등의 설치 시 상단의 기준점은 높이 2,700mm에 맞춰 설치하고 각각의 사인의 모듈은 가설울타리의 가로 폭 기본 모듈에 맞춰 맞춰 500mm 또는 1,000mm 단위로 적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정보를 표기하는 요소 중 공사안내사인, 건축허가안내사인은 모든 공사현장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명 안내사인, 소음 및 분진측정사인, 보행출입구 안내사인 등은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단, 해당 공공정보의 표기체계는 <그림 5-11>, <그림 5-12>를 준용하여야 한다.



<그림 5-11> 공사안내사인 및 건축허가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정보  
가이드라인

- 가설게이트에 표기하는 공공정보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공공정보 표기체계의 서체 적용 기준과 디자인을 연계하여 <표 5-03>과 같이 적용한다. 단, C1 및 구리시 G마크는 예외로 한다.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국문 제목	윤고딕 340 ~ 360	-25 (장평 -50)	100% (최대 95%)
②	국문 설명글	윤고딕 320 ~ 330	-50 (최대 -80)	100% (최대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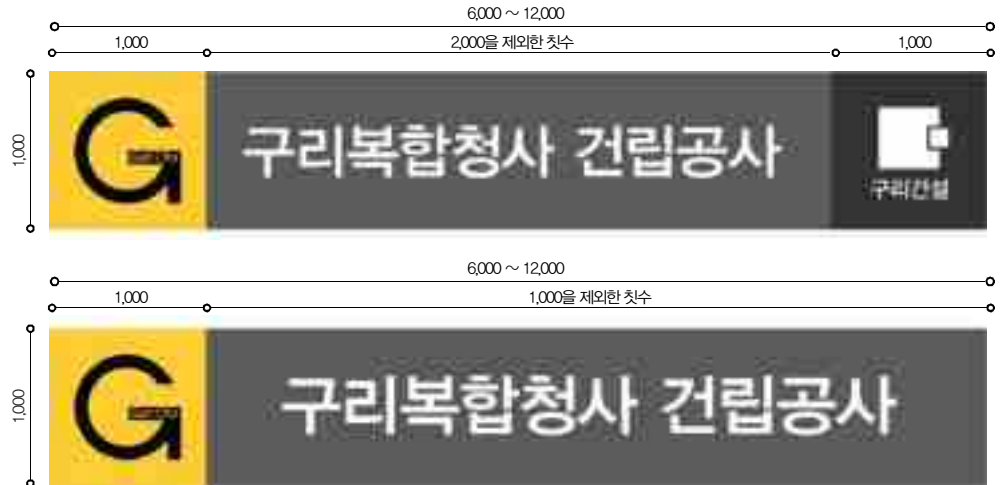
<표 5-03 가설게이트 공공정보 표기체계 서체 적용기준>

- 공공정보 안내사인의 색채 적용기준은 배경색과 정보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세부기준 <표 5-04>과 같다.

배경색	정보 글자색	정보 강조색 (G마크 / 제목)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C0 / M0 / Y0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표 5-04 가설게이트 공공정보 안내사인의 색채 적용기준>

- 공사명 안내사인의 좌측에는 구리시를 상징하는 "G"마크를 적용하고 우측에는 시공사의 C1를 선택 적용 하며 중앙에는 공사인허가 시 명시된 사업명칭을 중앙맞춤으로 표기한다. 시공사의 C1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명칭의 표기면이 확장된다.
- 주출입구의 폭이 확장되면서 공사명 안내사인의 폭이 연장될 경우 사업명칭 표기부분만 좌우 동일한 비율로 확장하여 적용한다.



<그림 5-12 공사명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 현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 색채 적용기준은 공사명 안내사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G"마크의 적용은 제외한다.
- 소음측정 및 미세먼지 현황 안내사인은 가설울타리 기본 모듈의 가로 폭 500mm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높이는 300mm로 설치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해당 안내사인을 원거리에서 인지하여야 하는 경우 기본형과 동일한 비례를 유지하여 가로 폭 1,000mm X 높이 600mm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 단, 기성제품의 사용으로 규격의 조정이 불가한 경우 각각의 안내사인의 높이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배경색은 <표 5-00>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지정된 공공정보 이외의 사진, 그래픽, 제작업체 상호 등의 표기는 불가하다.

공공정보  
가이드라인

- 소음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각종 설비는 가설울타리 내부에 설치하여 정돈된 공간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 안내사인의 세부 디자인은 <그림 5-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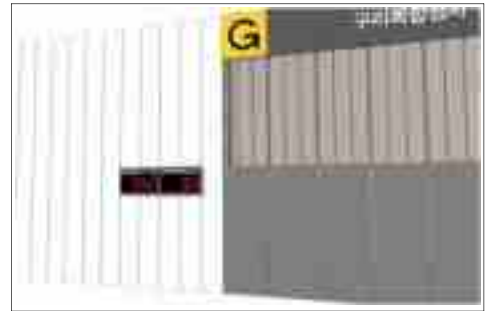


▲ 소음 측정 안내사인

▲ 미세먼지 측정 안내사인



▲ 소음 및 분진 측정 안내사인의 기본형 설치 예시



▲ 소음 및 분진 측정 안내사인의 확장형 설치 예시

<그림 5-13 소음 및 분진 측정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사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에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통해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 출입구는 가설게이트 주출입문과 동일한 재료 및 색상을 적용하고 상부 안내사인의 세부 디자인은 <그림 5-14>과 같다.



▲ 상부 안내사인을 부착한 보행 출입문의 설치 예시



▲ 보행 출입문과 소음 및 분진 측정 안내사인을 인접하게 설치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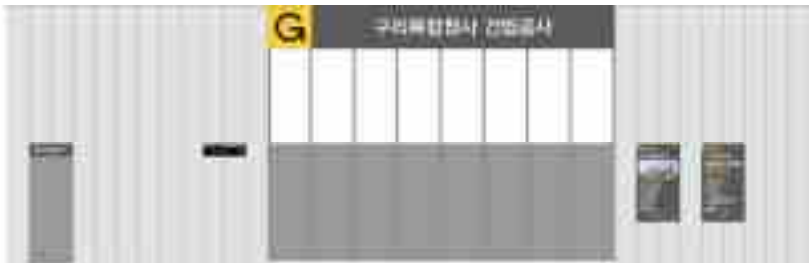
<그림 5-14 보행 출입구 안내사인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정보  
가이드라인

권장



▲ 공사명 안내사인, 공사안내사인, 건축허가판, 소음 및 분진 측정 안내사인, 보행자 출입구의 정보를 올바르게 표기한 사례 1



▲ 공사명 안내사인, 공사안내사인, 건축허가판, 소음 및 분진 측정 안내사인, 보행자 출입구의 정보를 올바르게 표기한 사례 2

지양



▲ 공사명 안내사인을 변형하여 설치한 사례



▲ 공사안내사인 및 건축허가안내사인의 규격을 변형한 사례



▲ 각가의 사인을 기준에 맞춰 디자인하였으나 설치 기준점높이(이) 불일치 하는 사례

〈그림 5-15 가설게이트 설치의 권장 및 지양사례〉

# 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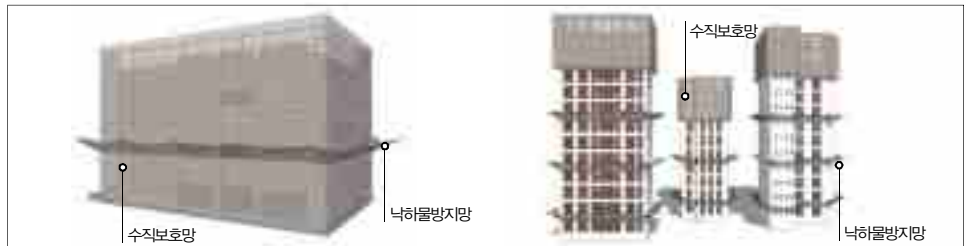
## 1.5. 가설가림막

### 가설가림막의 정의 및 기본개념

- 가설가림막은 건설 현장의 소음 및 분진을 차단하고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용 가림막으로 정의한다.

### 가설가림막의 구성요소

- 가설가림막은 수직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으로 구성되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치여부, 수량, 면적 등이 달라질 수 있다.
- 수직보호망은 공사중인 건축물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차폐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으로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외관 전체 또는 일부를 차폐한다.
- 낙하물방지망은 건축물의 3층 또는 높이 10m이하의 간격으로 20~30도의 각도로 설치하는 가설 시설로 공사 중 수직으로 낙하하는 장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이다.



〈그림 5-16 가설가림막의 구성 요소 및 조합 예시〉

### 색채 및 홍보그래픽 가이드라인

- 가설가림막의 세부 규격, 재료, 설치기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색채 및 공공정보 표기기준을 제시한다.
- 가설가림막의 권장색 범위 및 예시는 <표 5-05>과 같으며 수직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수직보호망과 비교하여 명도를 2단계 낮게 적용하여 외부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예: 수직보호망 N6적용 시 낙하물방지망은 N4 적용)

구분	색상	권장색	권장색 예시			
유채색	색상 (H)	2.5~5Y / YR				
	명도 (V)	3.5 ~ 6.5	2.5Y 6/1	2.5YR 4.5/1	5YR 4.5/1	N4
	채도 (C)	10이하	2.5Y 4.5/1	2.5YR 5/1	5YR 5/1	N5
무채색 (화색톤)	색상 (H)	N				
	명도 (V)	3 ~ 6	5Y 6/1	2.5YR 6/1	5YR 6/1	N6

〈표 5-05 가설가림막 권장색의 범위 및 예시〉

- 가설가림막의 홍보그래픽은 수직보호망에 한하여 건물 1개소당 1면에 구리시 CI, 건설사의 CI 또는 브랜드로고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고층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에는 홍보그래픽의 적용이 불가하다.
- 홍보그래픽은 가로 6,000mm X 세로 6,000mm의 크기 내에서 백색, 흑색 등의 화색톤에 한하여 적용하고 유채색의 사용을 불가하다.



〈그림 5-17 가설가림막의 홍보그래픽 권장 및 지양사례〉

# 1.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 1.6.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저층단독건축물 : 아차산로 한다리마을 입구 삼거리



<그림 5-18 저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설치 현황>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그림 5-19 저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고층단독건축물 : 경춘로 중앙예식장 앞 교차로 인근



〈그림 5-20 고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설치 현황〉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그림 5-21 고층단독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고층집합건축물 : 구리초등학교 인근



<그림 5-22 고층집합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설치 현황>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그림 5-23 고층집합건축물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2.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특화가이드라인

### 2.1. 개요 및 분석

#### 개요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8-2 주변 (동구릉로)
- 주요 공공공간 : 동구릉 일대 가로공간, 횡단보도, 교통섬, 버스정류장, 차량진출입구 등
- 주요 공공시설물 : 버스승차대, 가로등, 가로등제어함, 블라드, 펜스(보도용, 교량용, 무단횡단방지용), 지역안내사인 등

#### 계획범위

-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특화가이드라인의 공간적 범위는 동구릉 입구를 중심으로 동구릉로 약 430m의 가로공간으로 한다.
-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특화가이드라인의 내용적 범위는 보도(폭 2m 이하의 보도 및 2~4m의 보도), 횡단보도, 교통섬, 버스정류장, 차량진출입구 등의 공공공간과 버스승차대,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블라드 및 펜스 등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5-24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현황〉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보도에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럭은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 각종 공공시설물이 보도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보행 유효 폭이 확보되지 못하는 공간이 많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차량진출입구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보도, 횡단보도 등 공공공간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기준 미비 및 관리 부족으로 인해 보행 유효 폭이 확보되지 못하는 공간이 많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 가로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들 간에 디자인(형태, 색채, 재료 등)의 연계성·통일성이 부족하여 정돈된 가로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다.

■ 공공시설물의 설치 주체, 시기, 예산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 색채, 재료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복잡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방문객을 동구릉으로 유도하는 길안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향

- 보행자의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보행 유효 폭 2m 이상(최소 1.5m)이 확보된 보도공간 조성 필요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환경 개선 필요



〈그림 5-25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개선방향〉

- 각종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한 통합설계를 통해 가로경관 개선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가로환경 조성 필요
- 동구릉의 역사적 이미지와 동구릉길의 가로경관이 조화될 수 있는 특화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차량진출입구의 형태 및 재료, 색채 등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필요
- 보도와 접한 공개공지(전면공지)를 대상으로 통합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시각적·공간적 연속성 부여
- 구리시를 대표하는 동구릉의 진출입관문으로서 상징적인 진입부경관이미지 형성 필요 (경관계획과 연계)

## 2.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특화가이드라인

### 2.1. 가이드라인 및 통합설계안

#### 계획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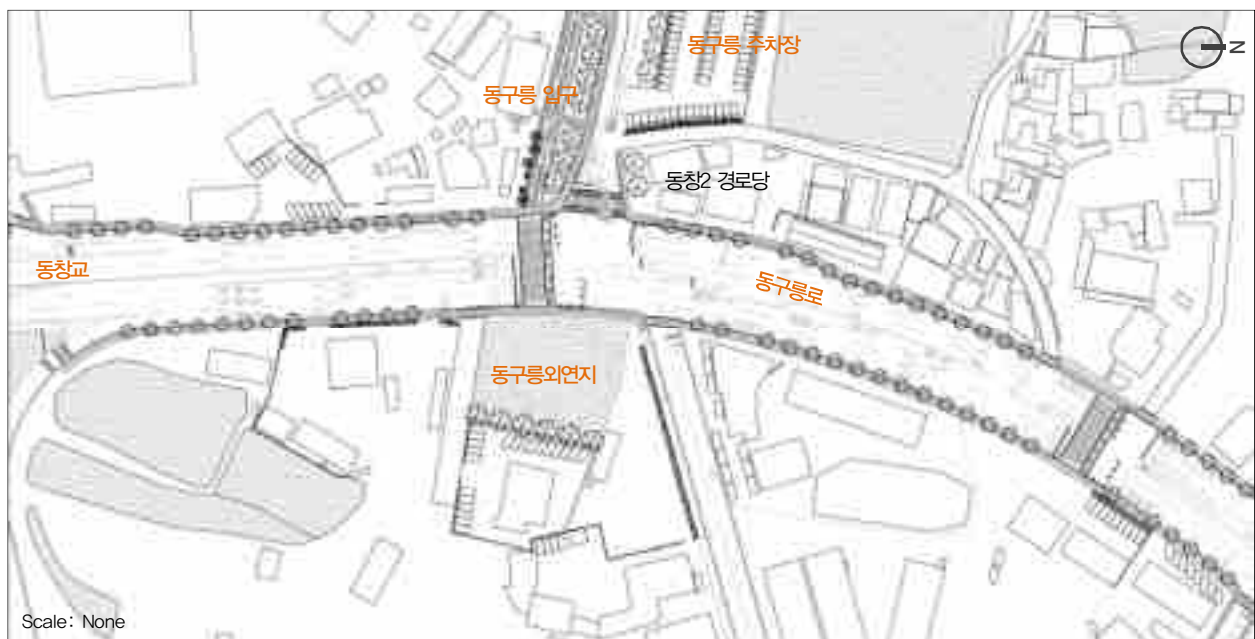
- 폭 2~4m 보도는 보행자의 보행 편의 및 안전을 위한 보행유도존과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을 설치하는 장애물존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한다.
-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횡단보도 전면의 점자블럭 및 블라드, 경사로 등을 설치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교차하는 차량진출입 구간의 디자인(형태, 재료, 색채 등)을 개선한다.
- 보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차단하는 공공시설물의 크기 및 설치 위치 등을 조정하고, 시설물 간 통합 설계를 통해 동구릉의 역사경관과 조화되는 정돈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 버스승차대, 가로등, 블라드, 펜스 등의 공공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심미성, 경제성, 사용성 등이 검증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적용한다.
- 보도와 접한 공개공지(전면공지)는 단 차이가 없게 조성하고, 포장재료 및 색채, 시설물, 조경 등은 보도 공간과 통일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개방성과 확장성이 강조된 가로공간으로 조성한다.
- 동구릉 입구(인창동 68-2)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동구릉 입구와 동구릉외연지를 연결하는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한다.
-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주 및 전선,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동구릉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을 버스정류장이나 주요 결절점(Node)에서 동구릉 입구까지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길 찾기(Way-Finding) 개념을 도입한 공공정보매체디자인을 적용한다.
-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생활가로 부분에 해당하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 관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생활가로						
보도 4m이상	보도 2~4m	보도 2m이하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교차로 및 횡단도
	●	●				●

〈표 5-06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관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디자인 통합설계도



〈그림 5-26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 공공디자인 통합설계도〉



통합설계도 디테일 A



통합설계도 디테일 B





통합설계도 디테일 C



통합설계도 디테일 D





공공디자인 통합설계(안)





공공디자인 통합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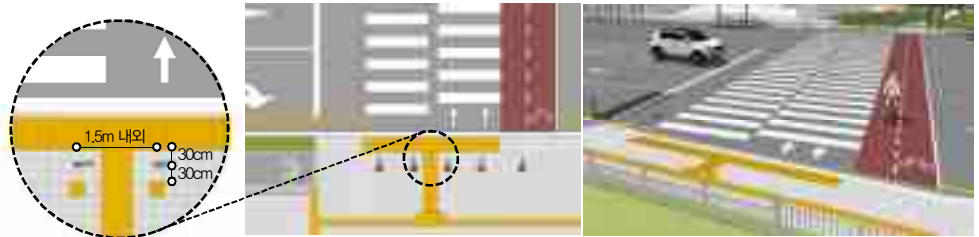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 동구릉로의 가로공간은 폭 1m의 장애물존과 보행안전존으로 구성하고, 보행안전존-장애물존-차도의 순으로 조성한다.
- 보행안전존은 보도 양변에 보행유도블럭(시각장애인용 선형 점자블럭 기능 대체)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동선이 보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 보도의 시종점부,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구간 등 보행동선의 단절 또는 교차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는 보행유도블럭이 아닌 점자블럭을 설치한다.
- 장기적 관점에서 전주 및 전선, 통신선 등을 정비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의 개선을 권장한다.



〈그림 5-27 동구릉 주변 가로공간의 공간구조 가이드라인〉

- 동구릉 입구의 횡단보도는 인접한 보도와 교통섬을 단 차이 없이 연결하는 고원식횡단보도 형식으로 조성하여 진입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진출입공간환경을 조성한다.
- 동구릉 입구 동구릉로의 횡단도는 암적색 포장의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한다.
- 횡단보도 전면에 점자블럭과 볼라드 설치 시 공공디자인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배려하여야 한다.



〈그림 5-28 동구릉 주변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 가이드라인〉

- 동구릉로의 협소한 가로공간 구조를 고려하여 보행 유효 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역상형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한다. 단, 인접한 대지 내 공개공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정방향의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 버스승차대 중심점에서 좌우 8m 이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버스 진입방향으로는 가로등을 제외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여 운전자와 대중교통이용자의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한다.



▲ 경기도 BRT 버스승차대(역상형)

▲ 버스승차대와 공공시설물 배치 기준

〈그림 5-29 동구릉 주변 버스승차대 설치 가이드라인〉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 보도 내 차량진출입구 조성 시 보도는 평탄면을 유지하고 장애물존에 기울기를 적용하여 보행자를 우선 배려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보도 내 차량진출입부 조성 시 시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결되는 보도와 다른 색상(보도 색상과 비교하여 명도 2단계 이상 낮은 어두운 색) 및 질감(미끄럼방지를 위한 줄무늬 형태의 요철이 있는 투수블럭)을 적용한다.
- 차량의 진출입 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진출입구간 양변에 1m~2m의 여유 폭을 포함한 차량진출입부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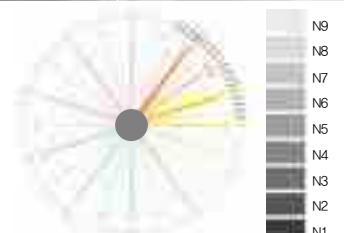


〈그림 5-30 동구릉 주변 보도 내 차량진출입구 조성 방안〉

- 보행 유효 폭을 확장하고, 정돈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가로수 등을 일정한 폭의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장애물존 개념을 도입하고 좁은 보도의 시각적 확장감을 부여하기 위해 보도형 장애물존으로 조성한다.
- 동구릉로의 가로공간 폭이 대부분 2~4m 이내로 협소하므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 유효폭 확보를 위해 장애물존의 폭은 양변에 설치되는 경계석의 폭을 포함하여 1m(보차도경계석 18cm + 장애물존 70cm + 보도경계석 12cm)로 적용한다.
- 가로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버스승차대, 블라드, 가로등, 펜스(보도용, 교량용, 무단횡단방지용), 가로등제어함 등으로 구성한다. 단, 향후 가로공간 개선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공공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심미성, 경제성, 사용성 등이 검증된 경기도공공시설물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을 적용한다.
- 버스승차대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 승차대 디자인을 적용한다.
- 공공시설물의 사용색 범위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의 색채를 바탕으로 중저명도의 회색톤으로 통일감 있게 계획(단, 반사시트 등 안전성 목적 색채 제외)을 적용한다.



구분	권장색		N2	N3
유채색	색상 (H)	YR / Y		
	명도 (V)	4이하	2.5Y 2/1	2.5Y 4/1
	채도 (C)	2이하		
무채색 (회색톤)	색상 (H)	N	5YR 2/1	5YR 3/1
	명도 (V)	3이상	7.5YR 2/1	10YR 2/1



〈그림 5-31 공공시설물 디자인 권장안 및 권장색 범위〉

## VI. 실행계획

1. 실행계획의 개요	267
2.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	268
2.1.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방향	268
2.2.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	270
3.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276
3. 공공디자인 운영체제 개선(안)	278
3.1.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방안	278
3.2.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284
3.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활용방안	286
3.4. 공공디자인 교육방안	288



# 1. 실행계획의 개요

## 실행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기반이 미흡하여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은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구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조례), 전담조직을 포함한 운영체제 등의 행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시한다.

##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방향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 자문, 협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전담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공공디자인 및 경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마인드를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개편 등의 행정기반 강화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유도하는 위원회 심의·자문·협의기준,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도 연계 등의 활용방안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등과 연계하여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활성화시켜 도시 내 공공디자인 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

<b>공공디자인 마인드 제고</b>	<b>공공디자인 교육</b> 행정기관 공무원 관 내 공공디자인 등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목적 및 필요성을 공유하고 올바른 방향성 인식
<b>행정기반 강화</b>	<b>전담부서 강화 및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 재정립</b> 공공디자인 등 정책수립 및 사업을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단시간 내 개선효과 도모
<b>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준용</b>	<b>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b>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등 사업 시행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평가

〈표 6-01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방향〉

##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수단

구분	주요 내용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면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통합조례(권장안)을 토대로 현재 시행중인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조례,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디자인 등 정책수립 및 사업시행 시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등을 근거로 의결하고 안건의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진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경관 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의 대상 및 세부영역 구분	• 구리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 및 경관심의 제외대상과 구분되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을 재정립하여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개선효과를 향상시킨다.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강화	•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부서 간 협의 시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기반의 기초를 강화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활용	•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한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표준디자인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적용을 권장하여 디자인 품질의 제고를 유도한다.

〈표 6-02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수단〉

## 2.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

### 2.1.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방향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범위를 제2조 1항과 4항에서 "공공시설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협의 대상의 범위는 제7조 4항과 23조와 관련하여 [별표1]에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과 같이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범위가 다른 상황이므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구리시 현황에 맞는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정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협의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구리시는 2020년 7월 현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 구리시의 경우 교문초, 인창초 등과 같이 초등학교 주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반영하여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를 포함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

- 2020년 7월 현재 구리시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 8. 19/도시계획과)』와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시행 2017. 6. 19/도시계획과)』 외에 공공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례가 <표 6-03>과 같이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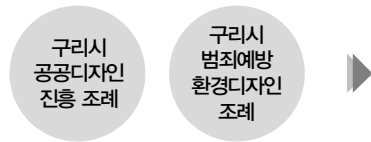
명칭	주요 내용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17.6.19/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유도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시행 2017.6.19/ 도시계획과	구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구리시 경관 조례 시행 2019.12.20/ 도시계획과	경관법 제3조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6.20/ 도시계획과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건전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유도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 2020.3.5/ 건축과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 유도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8.5.26/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6.16/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 향상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0/ 문화예술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단,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시행 2020.6.9/ 공원녹지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7.12.13/ 환경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평의와 복지증진 도모

<표 6-03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조례 현황 (2020년 7월 현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방향**

-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현황과 진흥계획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범위를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등 공공디자인 환경 전반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한다.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구리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에서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을 권장한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리시 경관조례』 및 『구리시 건축 조례』의 심의대상 등과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협의 대상 등의 변경을 제안한다.

현재 구리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개정(안)



〈그림 6-01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방향〉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의 구조**

- 현재 『구리시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의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조례안(권장형)"을 참고하여 4개의 장(총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으로 구분하여 (표 6-04)와 같이 구성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현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개정(안)	
제1조 (목적) 일부 개정	제2조 (정의)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의 책무) 일부 개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b>현행 유지</b>	제3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b>신설</b>	제4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일부 개정	제6조 (주민 참여 등) <b>현행 유지</b>	제5조 (주민참여 활성화) <b>신설</b>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일부 개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일부 개정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9조 (디자인 심의 및 자문) 일부 개정	제10조 (디자인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일부 개정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0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1조 (소위원회) <b>현행 유지</b>	제1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일부 개정	제11조 (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b>신설</b>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b>현행 유지</b>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b>현행 유지</b>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의견청취 등) <b>현행 유지</b>	제16조 (수당) 일부 개정	제15조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운영세칙) <b>현행 유지</b>	제18조 (공공디자인 운영) <b>현행 유지</b>	제17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b>신설</b>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 (제안서의 보상) <b>현행 유지</b>	제20조 (추진협의체) <b>현행 유지</b>	제19조 (위원의 해촉)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제21조 (공공디자인 전문가) <b>현행 유지</b>	제22조 (전담부서의 설치) 일부 개정	제21조 (의견청취 등)	제21조 (수당)
제23조 (공공디자인 업무협약) 일부 개정	제24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제22조 (수당)	제23조 (운영세칙)
제25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b>현행 유지</b>	제26조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일부 개정	제24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5조 (공공디자인 운영)
제27조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발굴) <b>폐지</b>	제28조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일부 개정	제26조 (제안서의 보상)	제26조 (추진협의체)
제29조 (시행규칙) <b>폐지</b>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7조 (추진협의체)	제28조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9조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등)	제29조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등)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표 6-04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의 구조〉

## 2.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제정(안)

### 2.2.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등의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게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 수립,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공모전, 전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④ 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시장, 관계기관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관계기관과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4.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공공디자인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4.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공간·환경·시각·제품디자인, 실내건축, 색채,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디자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소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집한다.

② 제1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은 해당 안건의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실시설계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터키사업의 공공건축물 외관·외부공간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경우
3.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면적의 가감, 기능실의 배치 변경 등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4.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의 단순 보수 또는 부분 교체공사로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6.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공공디자인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6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외의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3분의 2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제17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되 특정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사외의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①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심사 및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안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심의 및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도 심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

제24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1.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
2. 공공디자인 등과 관련한 사업의 제안공모 및 심사
3. 별표 1의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와 관련하여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공공디자인 용역)** ① 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6조 (제안서의 보상)** ① 시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제27조 (추진협의체)** ① 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8조 (공공디자인 전문가)**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 2.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별표 1]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대상 (제12조 관련)

##### ■ 심의대상

구분		세부 영역
공공공간	가로공간 <sup>1)</sup>	가.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차도, 공개공지 나.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라. 특화가로,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공원 및 휴양공간 <sup>2)</sup>	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sup>3)</sup> , 묘지공원, 체육공원 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녹지형 공공공지 다. 경관광장, 교통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라. 하천·산림 공공이용공간, 캠핑장 등
공공건축물 <sup>4)</sup>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나. 청사 다. 행정복지센터 라. 소방서 마. 지구대 등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연구소 마. 도서관 등
	문화집회시설 <sup>5)</sup>	가. 공연장 나. 집회장 다. 관람장 (체육관 등)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등) 등
	사회복지시설	가. 복지회관 나. 여성회관 다. 노인회관 라. 청소년회관 마. 의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포함)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발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상하수도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도시기반시설물 <sup>6)</sup>	기타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도로시설물	가. 교량 (철교 포함) 나. 고가도로 (고가철도 포함) 등
공공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보행연결로 등
	대중교통시설물	가. 보행·차량신호등 나. 통합지주 다. 버스·택시승차대 라. 중앙분리대 마.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보행등 나. 보행등 다. 볼라드 라. 보도펜스 마.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휴지통 다. 파고라 라. 공중전화부스 마. 가로판매대 바. 음수대 사. 운동시설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교통신호제어함 라. 가로등제어함 마. 트렌치 바. 환기구 사. 제설함 아. CCTV외함 자. 지상식·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가. 수목보호대 나. 화분대 다. 분수대 라. 울타리 등
공공매체	기타시설물	가. 방음벽 나. 석축 및 옹벽 다. 낙석방지장 등
	정보매체	가. 가로공간 관련 안내표지 나. 공원·휴양공간 관련 안내표지 다. 공공건축물 관련 안내표지 라.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안내표지 마. 공사용 가설울타리, 가설게이트, 공사안내표지 등
	시각이미지	가. 도시상징물 (표, 슬로건, 캐릭터, 엠블럼, 전용서체 등) 등
공공미술	공공미술	가. 슈퍼그래픽 나. 미디어아트 등
	기타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종로(폭20미터)미만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 미만인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 미만인 사업 3)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4)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일체 (외관, 내·외부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 4-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공간 및 내·외부 공공정보매체 등 4-2)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4-3)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 공공건축물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내부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교량, 고가도로, 보도육교, 보행연결로 등의 공사 * 심의, 협의, 자문대상 사업비의 기준은 보상비 제외, 설계변경비는 포함임.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 자문대상

구분	세부 영역
공공공간	가. 심의대상 기타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사업 나. 심의대상 기타2)에 해당하는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 이상 3억 미만인 사업 다.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100미터 미만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가.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정보매체의 전면 교체사업 나.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부의 부분보수로 사업비 1억이상인 사업 다. 심의를 받은 공공건축물 중 설계완료 이전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내부마감,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중 어느 하나라도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의 신축, 개보수 등을 사유로 임대건축물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내부마감 및 공공정보매체 등
도시기반시설물	가. 기 조성된 도시기반시설물의 마감재, 도색, 시설물 교체 등의 개보수사업 나. 심의를 받은 도시기반시설물의 마감재, 색채, 시설물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가. 경기도 표준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나.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이 없는 공공시설물 중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성제품을 설치하는 사업 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미만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공공매체	가. 심의대상 정보매체 목록 중 5층 이하의 단독건축물의 공용 가설울타리, 가설게이트, 공사안내표지 등 나. 공공미술 중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의 사업

■ 협의대상

구분	세부 영역
공공공간	가. 심의대상 기타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나. 심의대상 기타2)에 해당하는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 미만인 사업 다. 심의대상 기타3)에 해당하는 사업 중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공공건축물	가.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정보매체의 전면 교체사업 중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나.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부의 부분보수로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다. 심의를 받은 공공건축물 중 설계완료 이전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내부마감,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중 어느 하나라도 5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라.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외부를 부분 리모델링 사업 중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도시기반시설물	가. 자문대상 중 사업비 1억 이하의 사업
공공시설물	가.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사업 중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을 적용하는 사업 나. 경기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 다.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사업 중 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사업
공공매체	가. 심의대상 정보매체 목록 중 사공 후 3년이 경과하여 재설치하는 공용 가설울타리, 공사안내표지 등 나. 심의대상 정보매체의 신설 또는 개보수사업 중 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사업 다. 심의대상 시각이미지 중 부분 변경 및 응용형 추가 개발 등 사업비 1억 이하인 사업 라. 심의대상 공공미술 중 사업비 1억 이하인 사업

- 위 세부 영역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 심의, 자문, 협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공디자인 운영체제 개선(안)

#### 3.1.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방안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설치근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 구리시 공공디자인 통합조례 제정(안)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 개정(안)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을 균형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위원은 구리시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등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시장이 위임한다.
- 위촉직위원은 공간·환경·시각·제품디자인, 실내건축, 색채,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디자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단, 시장은 접수된 안건의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의뢰한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팀장이 되고 안건의 특성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후 공개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3분의 2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제17조에 따라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의 단축 및 사업일정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공동위원회는 도시·건축·경관·공공디자인 분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중 안건의 특성에 따라 통합대상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별 위원 비율을 조정하되 특정 위원회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이하 진흥조례(안)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대상은 아래와 같다.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진흥 조례 개정(안) 제2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 공공디자인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진흥조례(안) 별표1의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진흥조례 개정(안)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아래 대상 중 도시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 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터키사업의 공공건축물 외관, 도시기반시설물의 경우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면적의 가감, 기능실의 배치 변경 등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의 단순 보수 또는 부분교체공사로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협의로 대체할 수 있는 세부 영역은 <표 6-05>과 같다.

구분	세부 영역
공공공간	가. 심의대상 기타1) 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나. 심의대상 기타2) 에 해당하는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 미만인 사업 다. 심의대상 기타3) 에 해당하는 사업 중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공공건축물	가.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정보매체의 전면 교체사업 중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나.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부의 부분보수로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다. 심의를 받은 공공건축물 중 설계완료 이전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내부마감,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중 어느 하나라도 5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라.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외부를 부분 리모델링 사업 중 사업비 1억 미만인 사업
도시기반시설물	가. 자문대상 중 사업비 1억 이하의 사업
공공시설물	가.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사업 중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을 적용하는 사업 나. 경기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 다.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사업 중 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사업
공공매체	가. 심의대상 정보매체 목록 중 시공 후 3년이 경과하여 재설치하는 공용 가설물타리, 공사안내 표지 등 나. 심의대상 정보매체의 신설 또는 개보수사업 중 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사업 다. 심의대상 시각이미지 중 부분 변경 및 응용형 추가 개발 등 사업비 1억 이하인 사업 라. 심의대상 공공미술 중 사업비 1억 이하인 사업

<표 6-05 구리시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 진흥조례 개정(안) 별표 1에 명시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표 6-06>과 같으며 기타 심의대상의 경우 『구리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 내부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환경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구분	세부 영역
공공공간	가로공간 <sup>1)</sup> 가.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차도, 공개공지 나.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라. 특화가로,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공원 및 휴양공간 <sup>2)</sup> 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sup>3)</sup> , 묘지공원, 체육공원 나.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녹지형 공공공지 다. 경관광장, 교통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라. 하천·산림 공공이용공간, 캠핑장 등
공공건축물 <sup>4)</sup>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나. 청사 다. 행정복지센터 라. 소방서 마. 지구대 등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연구소 마. 도서관 등
	문화집회시설 <sup>5)</sup> 가. 공연장 나. 집회장 다. 관람장 (체육관 등)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력관, 기념관 등) 등
	사회복지시설 가. 복지회관 나. 여성회관 다. 노인회관 라. 청소년회관 마. 의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포함)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발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상하수도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기타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물 <sup>6)</sup>	도로시설물 가. 교량 (철교 포함) 나. 고가도로 (고가철도 포함) 등
	도로부속시설물 가. 보도육교 나. 보행연결로 등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가. 보행·차량신호등 나. 통합지주 다. 버스·택시승차대 라. 중앙분리대 마. 자전거보관대 등
	보행안전시설물 가. 보행등 나. 보행등 다. 볼라드 라. 보도펜스 마. 방호울타리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 나. 휴지통 다. 파고라 라. 공중전화부스 마. 가로판매대 바. 음수대 사. 운동시설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교통신호제어함 라. 가로등제어함 마. 트랜치 바. 환기구 사. 제설함 아. CCTV외함 자. 자상식·옥외소화전 등
	녹지시설물 가. 수목보호대 나. 화분대 다. 분수대 라. 울타리 등
기타시설물 가. 방음벽 나. 석축 및 옹벽 다. 낙석방지망 등	
공공매체	정보매체 가. 가로공간 관련 안내표지 나. 공원·휴양공간 관련 안내표지 다. 공공건축물 관련 안내표지 라.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안내표지 마. 공사용 가설울타리, 가설게이트, 공사안내표지 등
	시각이미지 가. 도시상징물 (표, 슬로건, 캐릭터, 엠블럼, 전용서체 등) 등
	공공미술 가. 슈퍼그래픽 나. 미디어아트 등
기타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종로(폭20미터)미만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 미만인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 미만인 사업 3)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4)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일체 (외관, 내·외부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 4-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공간 및 내·외부 공공정보매체 등 4-2)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4-3)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 공공건축물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내부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교량, 고가도로, 보도육교, 보행연결로 등의 공사

<표 6-06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자문대상

- 진흥조례 개정(안) 별표 1에 명시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자문 대상은 <표 6-07>과 같으며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 또는 부분 교체·변경·보수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계획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구분	세부 영역
공공공간	가. 심의대상 기타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사업 나. 심의대상 기타2)에 해당하는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1억 이상 3억 미만인 사업 다.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100미터 미만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가.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외부의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정보매체의 전면 교체사업 나. 기 조성된 공공건축물 내부의 부분보수로 사업비 1억이상인 사업 다. 심의를 받은 공공건축물 중 설계완료 이전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내부마감,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중 어느 하나라도 2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의 신축, 개보수 등을 사유로 임대건축물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내부마감 및 공공정보매체 등
도시기반시설물	가. 기 조성된 도시기반시설물의 마감재, 도색, 시설물 교체 등의 개보수사업 나. 심의를 받은 도시기반시설물의 마감재, 색채, 시설물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가. 경기도 표준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나.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이 없는 공공시설물 중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성제품을 설치하는 사업 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미만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공공매체	가. 심의대상 정보매체 목록 중 5층 이하의 단독건축물의 공사용 가설울타리, 가설게이트, 공사안 내표지 등 나. 공공미술 중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의 사업

<표 6-07 구리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자문 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대상과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 『구리시 경관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과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표 6-08>과 같이 구분한다.
-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경관법』 제26조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공공디자인 영역의 가로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도시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에 해당한다.
- 소규모 사업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100미터 미만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과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100미터 미만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는 공공디자인 자문 대상으로 한다.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공공공간)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종로(폭20미터)이상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 이상인 사업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종로(폭20미터)미만 개설 또는 총사업비가 50억 미만인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로 총 사업비가 5억 미만인 사업
	3.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미터 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	3. 『하천법』, 『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사회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물)	4. 교량, 고가도로, 보도육교, 보행연결로 등 연장이 20미터 이상인 공사	4. 교량, 고가도로, 보도육교, 보행연결로 등 연장이 20미터 미만인 공사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물)	5.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

<표 6-08 사회기반시설부문 경관심의 대상 및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비교>

**공공건축물  
경관 심의 제외 대상과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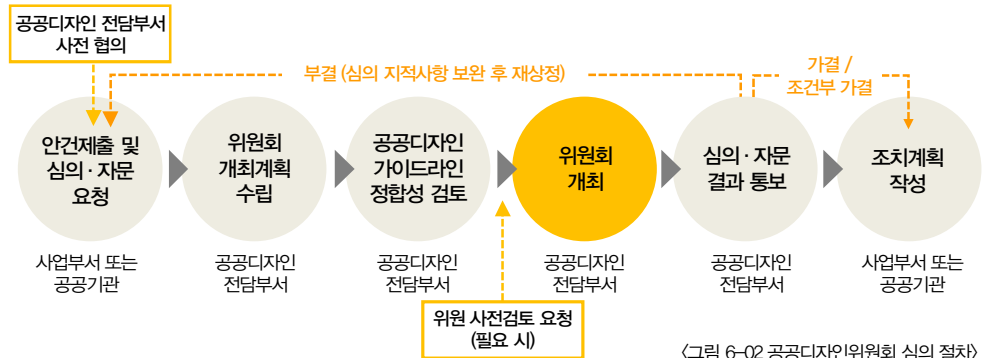
- 『경관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는 경관심의대상에 해당한다.
- 『구리시 경관 조례』 별표1에 따른 공공건축물 심의대상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 및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구분되는 공공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구리시 경관 조례』 제24조에 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 건축물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도 경관 심의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 도시차원에서 공공디자인 환경의 집중 관리를 통해 개선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예측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 심미성을 제고하여 구리시만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환경으로 부각시킬 것을 제안한다.
- 다만,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 공공건축물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공간, 공공정보매체 등으로 한정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설계안의 창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구리시 경관 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 경관 심의 제외 대상 중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은 <표 6-09>과 같다.

구분	경관 심의 제외 대상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b>건축물 (공공건축물)</b>	1.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건축물	1.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2.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 공공건축물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2.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 공공건축물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의 내부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3. 시장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규모를 변경하는 건축물	-
	5.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 중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 범위에서 변경하는 건축물	-
<b>비고</b>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1.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세부 내용 1-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0이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지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1-3. 연면적인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1-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5. 4층 미만 가설건축물 1-6.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단,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표 6-09 건축물 경관심의 제외 대상 및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비교>

**위원회 심의 절차**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2020)"을 참고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사업부서 또는 관내 공공기관(이하 사업부서 등이라 한다) 등에서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경우 해당 안건의 기간, 내용, 사업비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심의 및 자문 대상 여부, 작성 자료,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 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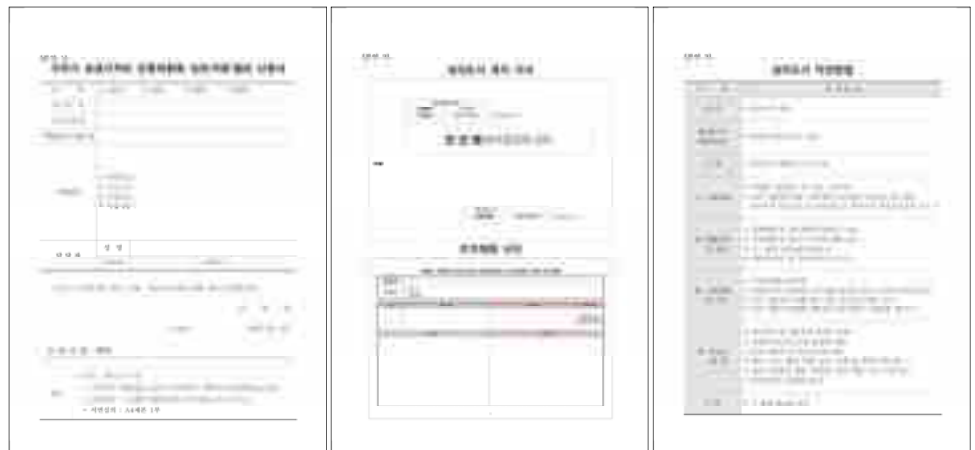
〈그림 6-02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

**사전검토 운영 방안**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부서 등에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사전 협의단계에서 안건의 규모, 내용, 일정, 도시자원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전 온라인(서면)방식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당해 위원회 참석 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심의자료를 전달하고 전담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안건을 상정한 사업부서 등에 전달한다.
- 사전검토의견은 익명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등에서는 심의자료에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계획을 반영한 디자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전검토에 따른 조치계획을 충실히 반영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 진행 시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최소 "조건부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심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위원회 심의서식 및 작성방법**

-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도시 > 도시디자인 > 디자인 DB)에 게시되어 있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자문협의 신청서 및 심의도서 서식, 심의도서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6-03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 3. 공공디자인 운영체제 개선(안)

#### 3.2.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정의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란 구리시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장이 설립한 공공기관 및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으로 정의한다.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는 공공디자인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문화체육관광부),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에 <표 6-10>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b>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b> <small>시행 2019. 1. 25 / 문화체육관광부</small>	<b>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b>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b>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권장형)</b> <small>2020 / 문화체육관광부</small>	<b>제25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b>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b>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b> <small>시행 2017. 6. 19 / 경기도 구리시</small>	<b>제22조 (전담부서의 설치)</b> 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표 6-10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필요성

- 공공디자인 관련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사업을 회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도시차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의 전문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 구리시는 공공디자인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담부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사업 시행, 부서간 협의, 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현황

-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인 도시관리팀은 부서명칭과 연계된 도시관리중심의 업무 및 기능이 강조되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서의 인지도가 미흡하다.
- 구리시 도시관리팀은 팀장(시설직)1인, 디자인 전문직1인, 시설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공디자인 업무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협의, 도시계획 상임기획 업무 총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조직의 전문성이 미흡하다.



<그림 6-04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현황>

경기도 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부서명칭과 인원 등의 현황은 <표 6-03>과 같으며 부서 명칭 중 도시디자인 11개 시·군(35%) 또는 경관디자인 8개 시·군(26%)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며 디자인을 사용한 부서의 명칭이 20개 시·군(65%)으로 부서명을 통해 디자인 관련 부서임을 인지시키고 있다.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경우 대부분 경관,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으며 직제상 위치가 "단" 1개, "과" 4개, "팀" 26개 시·군으로 운영 중이다.

가평군	도시경관팀 (5)	남양주시	경관디자인팀 (3)	안양시	도시디자인팀 (3)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 (12)
고양시	경관디자인팀 (3)	동두천시	기획팀 (5)	양주시	도시디자인팀 (5)	이천시	경관디자인팀 (4)
과천시	도시디자인팀 (3)	부천시	경관디자인팀 (4)	양평군	경관디자인팀 (3)	파주시	도시디자인팀 (2)
광명시	공공디자인팀 (3)	성남시	도시경관팀 (6)	여주시	도시경관팀 (3)	포천시	도시미관팀 (4)
광주시	마을만들기팀 (5)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22)	연천군	건축관리팀 (3)	하남시	도시디자인팀 (2)
구리시	도시관리팀 (3)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14)	오산시	경관디자인팀 (3)	화성시	도시디자인과 (18)
군포시	도시계획상임기획팀 (2)	안산시	도시디자인팀 (5)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11)	도시디자인 : 11개 시·군 경관디자인 : 8개 시·군	
김포시	도시디자인팀 (3)	안성시	도시디자인팀 (0)	의왕시	건축허가팀 (12)		

<표 6-11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전담조직(부서명/인원 수)의 현황>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개편방안

-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는 공공디자인, 경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정책수립, 사업 시행, 업무 협의, 위원회 운영, 공모전 개최, 교육 진행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명 변경, 전문인력 충원, 비전문 업무 이관 등이 필요하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본 용역 관련 부서 인터뷰 진행 결과 15개 부서 중 1개 부서만 일부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
- 부서명은 현재 도시관리팀에서 **도시디자인팀**으로 변경하여 공공디자인 및 경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서의 인지성을 강화한다.
- 전문인력 충원의 경우 타 부서와의 전문적인 협의를 업무를 총괄하는 **디자인전문직 팀장**과 실무를 담당하는 **디자인 전문직 2인**, 행정직 또는 시설직 1인 등으로 **최소 4인**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6-05 구리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개편방안>

### 3. 공공디자인 운영체제 개선(안)

#### 3.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활용방안

##### 인증제 운영의 목적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하는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및 시공 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공공디자인 환경의 심미성과 기능적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인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 인증 대상 공공시설물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대상은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별표1에 따라 <표 6-12>과 같이 세분화된다.

구분	세부 영역
가. 대중교통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나. 보행안전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다. 편의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라.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마.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바.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사. 기타시설물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표 6-12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대상>

##### 인증제 운영의 기대효과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이하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이라 한다)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증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에게 디자인 및 품질이 검증된 공공시설물이다.
- 공공시설물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등 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선정을 위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하는 구리시,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던 공공시설물에 도시차원에서 디자인적 일관성을 부여하고 디자인 및 시공의 품질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구리시 전체의 공공디자인 환경을 향상시킨다.

##### 인증제품 활용의 유도방안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통합조례(안)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품 또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의 제작단가, 수급시기 등을 사유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유사한 형태(규격), 색채, 재료 등을 적용한 디자인 제품의 선정을 권장한다. 단, 유사제품 적용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없다.
-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은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증제품의 유효기간 경과 후 재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재인증제품의 적용한다.
- 가로공간을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거나 시민들의 시야에 노출빈도가 높은 버스승차대, 보도펜스, 가로 등, 불라드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연결되는 도로와의 디자인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디자인의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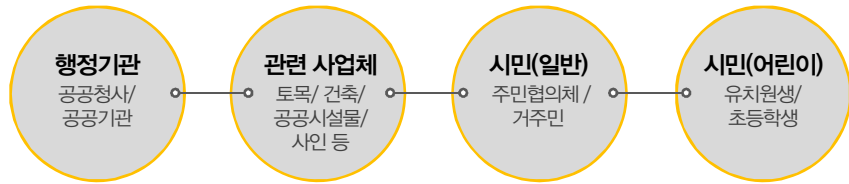
〈그림 6-06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의 예시〉

### 3. 공공디자인 운영체제 개선(안)

#### 3.4. 공공디자인 교육방안

##### 인증제 운영의 목적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교육의 대상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등 관련 사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구리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6-07 구리시 공공디자인 교육의 제안 대상〉

##### 행정기관 교육방안

- 행정기관 내 정기적인 인사 이동 및 부서간의 협업 등을 고려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방향성 및 도시 내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진흥계획의 주요 활용주체인 행정기관을 공무원으로 직급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
-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2주 ~ 4주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기간 내에서 국내 공공디자인 선진도시의 답사 등을 통해 실제 도시공간 속에 적용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경우 행정조직의 특성과 구리시의 이해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관련 사업체 교육방안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조를 소개하고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특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단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권장한다.
- 구리시 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권장사례 및 지양사례를 소개하여 도시차원에서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공유한다.
-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및 절차,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등을 소개하여 관련 사업 진행 시 단계별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주민 교육방안

-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리시 전체의 올바른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유도한다.
-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약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해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시각 장애 체험, 휠체어 체험, 목발 체험, 유모차 체험 등을 통해 생활공간 내에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



〈그림 6-08 공공기관에서 주체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시행 사례〉

## 별첨

1. 구리시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91
2.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자료	304
3. 공공디자인 의식 조사 설문지	308



# 1. 구리시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 1.1. 현수막 게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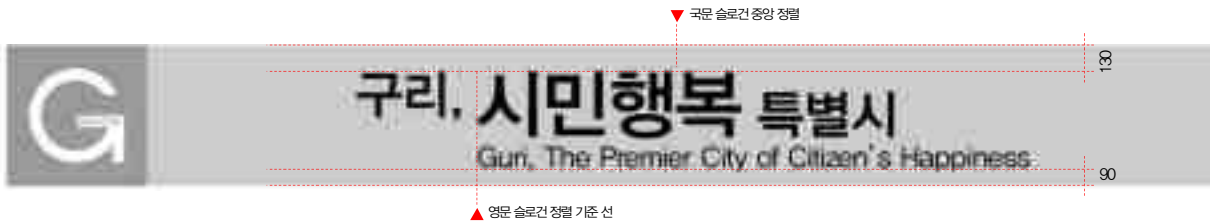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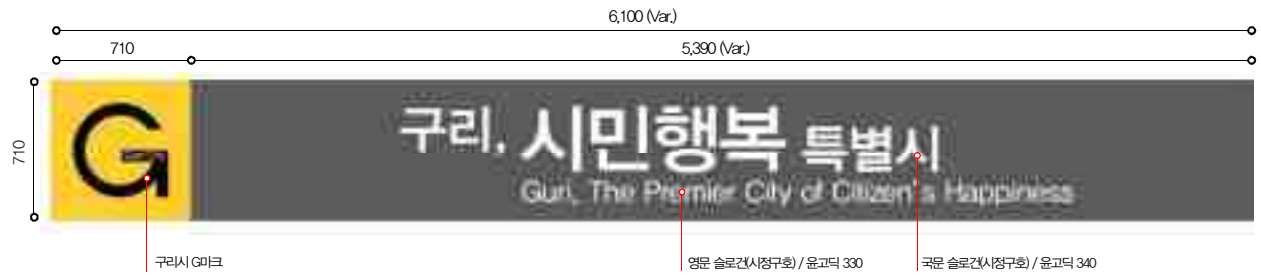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국문 슬로건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②	영문 슬로건	윤고딕 330	-50	100%	조정 불가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G마크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2.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간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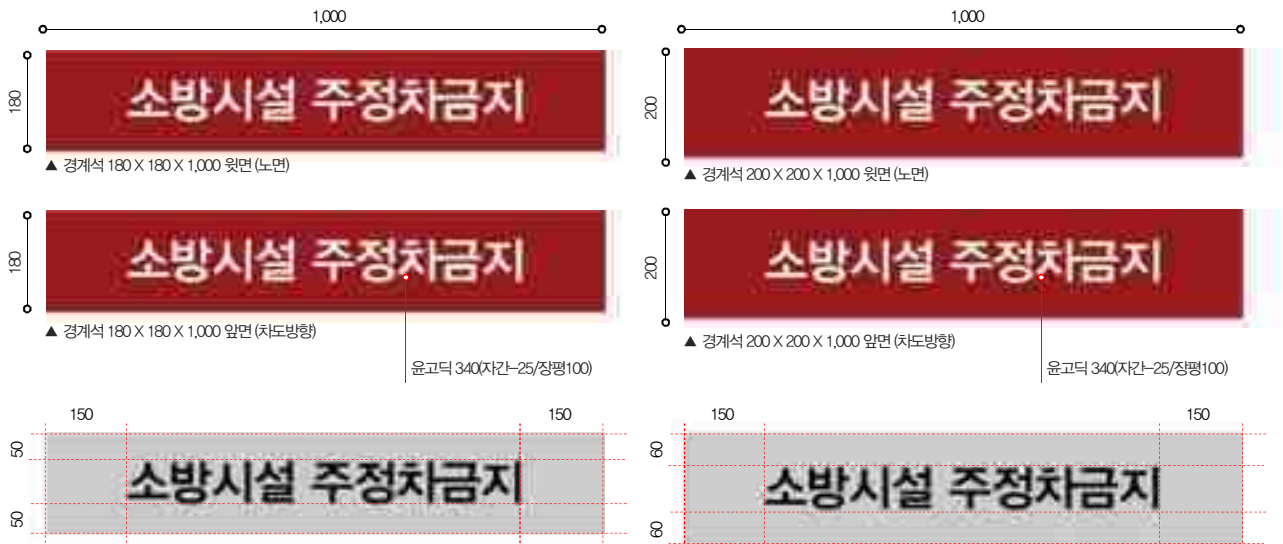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주정차금지 안내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가진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경계색 도장색	정보(서체)색
	
Pantone 1797U C24 / M100 / Y100 / 25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3. 지주형 버스안내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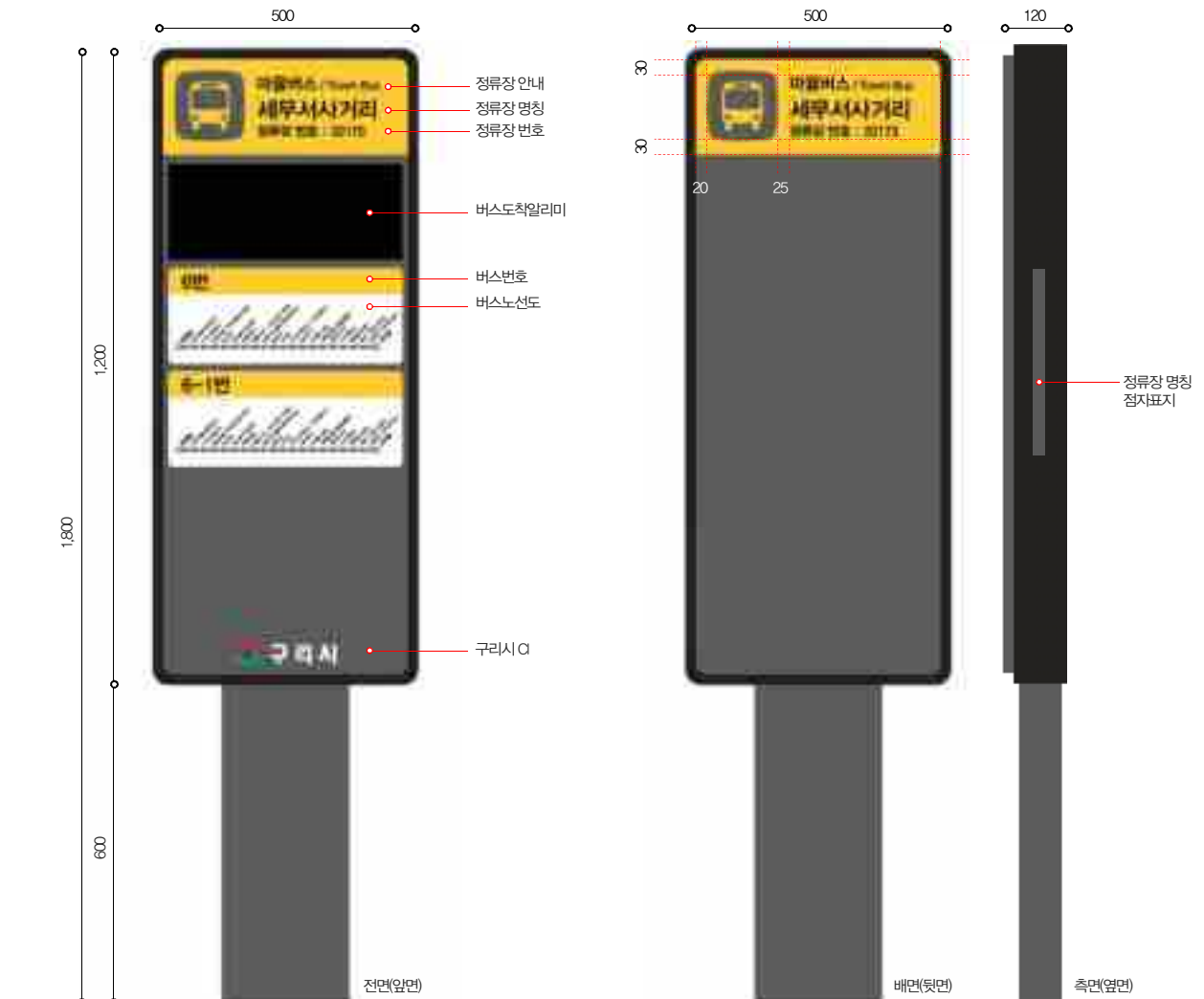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정류장 안내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정류장 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③ 정류장 번호 숫자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조정 불가
④ 버스 노선번호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⑤ 버스정류장명	윤고딕 330 / 340	-25 (장평 -50)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가진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패널 배경색	정보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Black U C69 / M63 / Y62 / K58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디자인 가이드라인



## 1.4. 건물명 안내사인 A: 지주형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건물명칭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건물명칭 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G마크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4. 건물명 안내사인 B: 주차입구안내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건물명칭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건물명칭 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G마크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디자인 가이드라인



## 1.4. 건물명 안내사인 C: 가로형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건물명칭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건물명칭 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G마크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5. 종합안내사인 A: 독립형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건물명칭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건물명칭 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③ 층안내 숫자	윤고딕 320	-25	100%	조정 불가
④ 층안내 영문(F)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⑤ 층별시설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⑥ 층별시설 영문	Frutiger 55	-50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Warm Gray 3U C19 / M15 / Y16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5. 종합안내사인 B: 벽부형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건물명칭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건물명칭 영문	Frutiger 55	-50	100%	조정 불가
③ 층안내 숫자	윤고딕 320	-25	100%	조정 불가
④ 층안내 영문(F)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⑤ 층별시설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⑥ 층별시설 영문	Frutiger 55	-50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Warm Gray 3U C19 / M15 / Y16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6. 주차안내사인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주차구역 안내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세부안내	윤고딕 320	-25 (최대 -35)	100%	글자수에 따라 조정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용 주차구역	G 주차구역	경차 주차구역
			
Pantone 2192C C90 / M33 / Y6 / K0	Pantone 376C C48 / M0 / Y100 / K1	Pantone 123 C (115U) C0 / M19 / Y89 / K0	Pantone 137C C0 / M47 / Y100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7. 층별안내사인: 계단형 / 벽부형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층안내 숫자	윤고딕 320	-25	100%	조정 불가
② 층안내 영문(F)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③ 층별시설 국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④ 층별시설 영문	Frutiger 55	-50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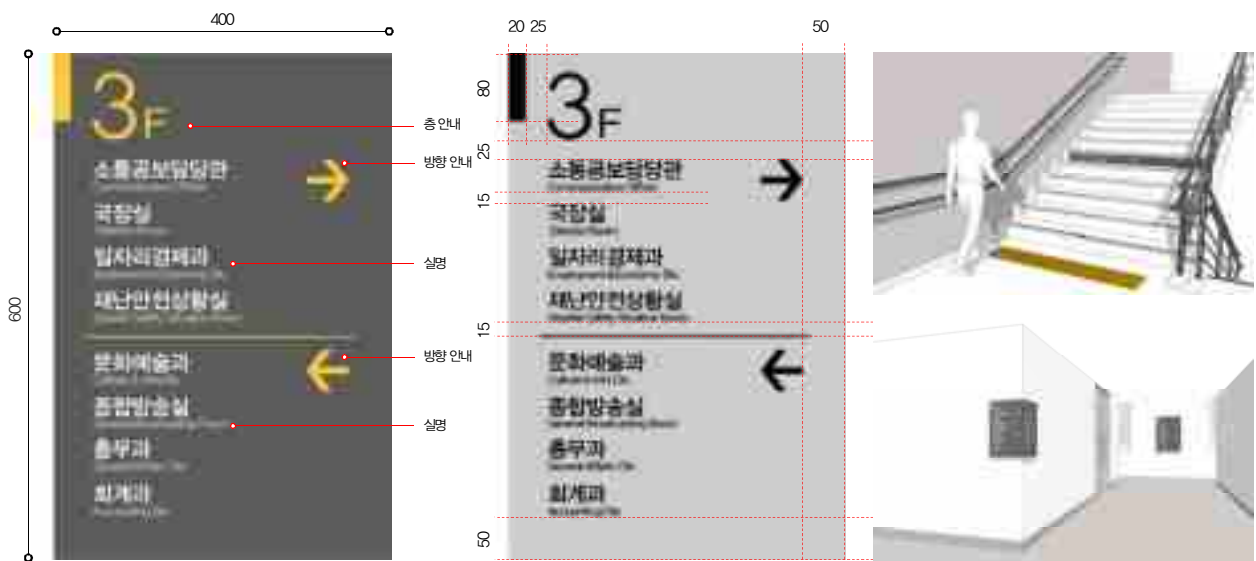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Warm Gray 3U C19 / M15 / Y16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계단형



▲ 벽부형

## 1.8. 실별안내사인 및 부서별 배치사인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부서명 영문	윤고딕 340	-25 (최대 -3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부서명 영문	Frutiger 55	-50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③ 팀명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④ 담당자 이름	윤고딕 340	-25	100%	조정 불가
⑤ 담당자 직함	윤고딕 330	-25	100%	조정 불가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가진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지주 /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C0 / M0 / Y0 / K0	Pantone Black C100 / M100 / Y100 / 10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1.9. 민원 업무 안내사인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업무구분 숫자	윤고딕 310	-25	100%	조정 불가
②	팀명 영문	윤고딕 340	-2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③	팀명 국문	Frutiger 55	-50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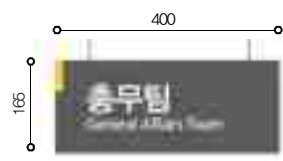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가진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정보면 구조체	정보(서체)색	강조색 (과명 / 숫자)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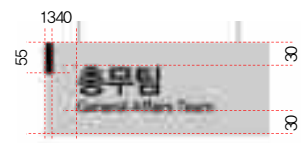
▲ 민원 업무 안내사인



▲ 팀명 안내사인



▲ 과명 안내사인



## 1.10. 공원·휴양공간 안내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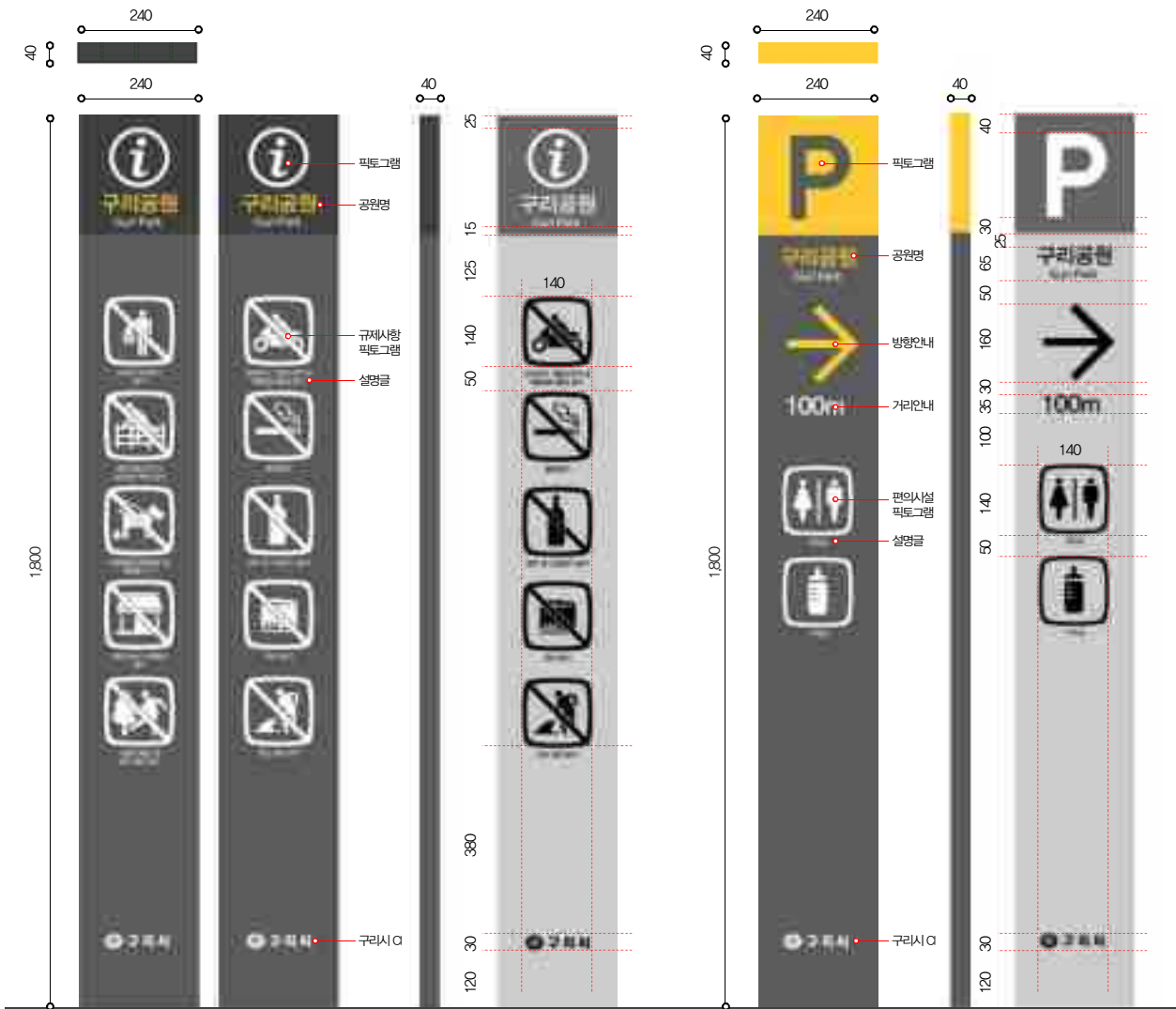
### 서체 및 색채 적용기준

구분	글꼴	자간	장평	비고	
①	공원명칭 국문	윤고딕 340	-2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②	공원명칭 영문	Frutiger 55	-50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③	픽토그램 설명	윤고딕 330	-25	100% (최대 95%)	글자수에 따라 조정
④	거리안내(숫자/m)	윤고딕 340	-25	100%	조정불가

\* 글꼴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체로 교체 가능

정보면 구조체	정보면 상부 강조색	정보(서체)색	강조색
Pantone Warm Gray 11U C62 / M54 / Y53 / K27	Pantone Black U C69 / M63 / Y62 / K58	Pantone White U C0 / M0 / Y0 / K0	Pantone 115U C0 / M19 / Y89 / K0

###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원휴양공간 규제사항 안내사인

▲ 공원휴양공간 주차안내사인

## 2.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자료

### 2.1. 공공디자인 관련 자료 목록

####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료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관련 매뉴얼, 가이드라인, 인증제품 안내 책자 등은 아래 사이트(디자인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design.gg.go.kr>

구분	수립년도	명칭
01	2020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02	2020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년 수립 후 일부 개정)
03	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04	2012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05	2011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06	2012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07	2020	제2차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08	2011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09	2012	경기도 광역 환승거점 버스승강장 디자인
10	2010	간선급행체계(BRT) 버스승강장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11	2010	경기도 택시승강장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12	2013	경기도 자전거주차장 표준디자인
13	2013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디자인 가이드라인
14	2014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표준설계 디자인 개발
15	2011	경기 명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6	2014	경기도 캠핑시설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17	2013	광교신도시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디자인
18	2013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19	2008	경기도 공사안내 표시 디자인 매뉴얼
20	매년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인증제 (제품안내)



## 2.2. 경기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 중앙차로 버스승차대 적용 디자인



- 경기도 광역환승거점 버스승강장 디자인 (p.66) 중앙차로형을 기준으로 벤치, 등받이, 사인체계 등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 (기 설치 사례 참고)



### 일반 버스승차대 적용 디자인



- 경기도 간선급행체계(BRT) 버스승강장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p.27)를 기준으로 캐노피, 벤치, 사인폴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 (기 설치 사례 참고)



가로판매대 적용  
디자인



-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p.64) 중 가로판매대 디자인 적용 권장



구두수선대 적용  
디자인



-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p.75) 중 구두수선대 디자인 적용 권장



## 2.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 공공시설물 인증제품 예시



- 기성 공공시설물 설치 시 경기도에서 매년 선정하는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적극 활용

보도펜스



가로등



벤치



블라드



보행등(공원등)



교량용 펜스



가로등 분전함



방음벽



통합지주



### 3. 구리시 공공디자인 의식 조사 설문지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공공디자인 의식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구리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과업에 의거하여 구리시민의 현실적인 의견을 과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내 사업체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설문개요

- 조사 목적 : 시민이 체감하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 구리시민 또는 구리시 내 사업체 종사자
- 조사 일시 : 2019. 11. 18. ~ 2019. 12. 06.
- 설문참여자 인센티브

성명	성별	연령
거주지	동	거주기간
		년
		직업

####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망·역량·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역사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구리시민의 정책 기공부흥 및 기여도려임을 수렴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9. 도시 내 도보보(걸어서)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유흥 목마 줄은 보도 (시설물 설치 및 가로수 식재 등으로 인한 좁은 보도 포함)
- ② 평탄하지 않고 비탈면을 형성하거나 단차가 있는 보도
- ③ 차선거리의 줄줄이 두터운 보도
- ④ 가로수가 비재되기 많아 그늘공간 부족
- ⑤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보도
- ※ 기타 ( )

10. 귀하께서 구리시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휴양공간은 어디입니까?

- ① 구리한강시민공원
- ② 왕숙천수변공원
- ③ 장지호수공원
- ④ 구리중앙 및 늘푸른공원
- ⑤ 동구릉
- ※ 기타 ( )

11. 공원 및 휴양공간 이용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편의시설의 부족 (ベンチ, 그늘막, 음수대, 공공화장실 등)
- ② 주차공간의 부족
- ③ 거주생활공간과의 거리
- ④ 휠체어, 유모차, 실수레 이용자의 접근성 저하 (계단 또는 단차가 많은 공간)
- ⑤ 조명시설의 부족 (일몰 후 위험의 우려)
- ※ 기타 ( )

12. 귀하께서 구리시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은 어디입니까?

- ① 구리시청
- ②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 ③ 구리역 또는 갈매역
- ④ 복지시설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경로당 등)
- ⑤ 문화시설 (도서관, 아호출, 생태원 등)
- ※ 기타 ( )

13. 공공건축물 이용시 가장 불편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노후된(오래되어 낡은) 공간 또는 시설
- ② 편의시설의 부족 (화장실, 휴게공간 등)
- ③ 인형 대기시간의 지연
- ④ 복잡한 이용(행선)절차
- ⑤ 주차공간의 부족
- ※ 기타 ( )

14. 귀하께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거나 접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은 무엇입니까?  
(최대 5개까지 필수 채우 가능)

번지	차량기보관대	주유보존대	버스승강대	CCTV
화조관	보도벤치	물리대	택시승차대	행수객거치대
공치동	가로등	안내서번	배안함	차액정보지형
화문대	공공전화부스	산호수(동행지루)	재경형	명물





## 참고 문헌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8
- 공공디자인 행정업무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문화체육관광부, 2020
-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기도, 2020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20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1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경기도, 2011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2
-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경기도, 2011
- 경기도 광역 환승거점 버스승강장 디자인, 경기도, 2012
- 경기도 택시승강장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2010
- 경기도 명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경기도, 2011
- 경기도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3
- 경기도 자전거주차장 표준디자인, 경기도, 2013
-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1
-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1012
-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2
-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3
-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경기도, 2013
- 캠핑시설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4
-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표준설계 디자인, 경기도, 2014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5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제품 안내서), 경기도, 2019
-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 7대 전략과제, 한국토지공사, 2007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 용역 보고서, LH, 2011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용역 공공공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LH, 2017
-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양평군, 2019
-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하남시, 2018
- 구리시 2035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구리시, 2020
- 제3차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구리시, 2017
- 2020 구리시 기본경관계획, 구리시, 2014
-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구리시, 2016
- 구리시 경관취약지역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용역 보고서, 구리시, 2016
- 구리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구리시, 2009
- 구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리시, 2009



## 참여 연구진

### • 구리시청

이민용 안전도시국장  
황홍식 도시계획과장  
박창규 도시관리팀장  
이숙진 주무관  
황선희 주무관  
김수찬 주무관

### • 책임연구원

이민주 (주)인아웃에스씨 실장

### • 연구원

이정수 (주)인아웃에스씨 대표이사  
황혁수 (주)인아웃에스씨 부장  
박홍주 (주)인아웃에스씨 부장  
소현진 (주)인아웃에스씨 팀장  
황성원 (주)인아웃에스씨 차장  
우현민 (주)인아웃에스씨 대리  
윤우철 (주)인아웃에스씨 대리  
김하늘 (주)인아웃에스씨 대리

##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

**발행일** 2020년 09월

**발행처** 구리시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T. 031.550.2779 W. <http://www.guri.go.kr>

본 출판물은 비매품으로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구리시청 및 (주)인아웃에스씨에 있으며,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본 출판물을 사용할 경우 발행처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바랍니다.